季刊 1979年 3月 13日 登錄
登錄番號 바-565

제11권 제1호 1989 봄

韓國開發研究

一般均衡模型을 이용한 平價切上의 産業部門別 效果分析 — 李 元 暎

金融構造變化와 通貨制度의 安全性
—新貨幣經濟學 및 그 示唆點에 대한 考察— — 左 承 喜

社會保障制度의 資源配分 및 所得再分配效果 — 延 河 淸

經濟構造變化와 下請生産體制 — 朴 埈 卿

國際化時代의 公正去來制度
—貿易 및 貿易政策의 競爭政策的 意味— — 劉 承 旻

貨物自動車運送産業에 대한 政府規制의 改善方案 — 金 鍾 奭

KDI

韓國開發研究院

季刊 韓國開發研究

제 11 권 제 1 호 1989 봄

一般均衡模型을 이용한 平價切上의
產業部門別 效果分析 ……李 元 暎… 3

金融構造變化와 通貨制度의 安全性
—新貨幣經濟學 및 그 示唆點에 대한 考察— ……左 承 喜… 31

社會保障制度의 資源配分 및
所得再分配效果 ……延 河 清… 51

經濟構造變化와 下請生產體制……朴 埈 卿… 71

國際化時代의 公正去來制度
—貿易 및 貿易政策의 競爭政策的 意味— ……劉 承 旻… 95

貨物自動車運送產業에 대한
政府規制의 改善方案 ……金 鍾 爽…125

編 輯 陣

委員長 兪 正 鎬
幹 事 左 承 喜
委 員 權 純 源 朴 埈 卿
宋 大 熙 沈 相 達
編 輯 申 東 祚

編輯問議：編輯委員會(960-0084)
購讀問議：發刊資料相談室(960-3283)

論評 및 書評 寄稿案內

本 季刊誌는 本誌에 發表된 論文과 本院에서 發刊되는 研究叢書 및 其他報告書에 대한 院內外 專門家들의 論評 혹은 書評을 揭載하고 있읍니다.

研究主題 및 그 內容과 관련되는 研究方法論 혹은 國家政策上의 爭點을 表出시켜 向後의 研究課題와 政策方向 設定에 寄與하고, 아울러 實質的이고 建設的인 批判과 討論의 習慣을 造成하자는 것이 그 趣旨입니다. 이를 諒知하시어 아래와 같은 要領에 의하여 虛心坦懷한 所感과 批評을 寄稿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첫째, 길이는 200字 原稿紙 基準 30枚 內外로 限定하되 原稿紙에 淨書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論評은 該當論文에 담긴 誤謬 혹은 爭點을 內容으로 하여 가급적 論文이 發刊된 후 3個月 以內로, 書評은 該當報告書의 主要內容 紹介, 寄與度 및 問題點 評價, 그리고 向後 研究課題 提示를 內容으로 하되 原則的으로 報告書가 發刊된 후 6個月 以內로 作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原稿는 郵便 혹은 人便으로 『韓國開發研究』編輯委員長에게 提出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寄稿된 論評과 書評은 本院 所定의 審査節次를 거치도록 되어 있읍니다. 論評은 該當論文 執筆者의 應答과 함께 揭載하겠읍니다. 채택된 原稿는 稿料를 支給합니다.

一般均衡模型을 이용한 平價切上의 産業部門別 効果分析

李 元 暎

本 硏究에서는 원貨의 平價切上이 産業別 生産, 價格, 雇傭, 貿易 등에 미치는 영향을 韓國經濟의 一般均衡模型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平價切上의 效果는 産業의 需要, 供給彈性値, 輸出比率, 수입품과의 代替性, 附加價値比率 등 産業이 갖는 特性에 따라서 매우 相異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혁제품, 고무제품, 섬유·직물, 조선, 의복 등의 산업에서 生産減少效果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석유제품, 철1차제품, 비철금속1차제품, 화학제품 등의 산업에서 價格下落效果가 큰 것으로 밝혀졌다.

I. 序

원貨는 최근 몇년간 급속히 平價切上되어 왔으며 이와 같은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원貨의 對美換率은 86년 상반기에 정점에 달한 이래 그동안 점진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86년말에 861원이었던 對美換率은 1988년 12월말에는 684원으로 下落하였다. 더욱이 달러貨의 주요기축통화에 대한 平價切下가 급속하였던 86, 87년과는 달리 1988년 이후에는 달러貨뿐만 아니라 日本엔貨, 獨逸마르크貨 등 대부분의 主要交易相對國의 通貨에 대하여도 원貨는 平價切上되고 있다.

平價切上은 巨視經濟變數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産業間에도 매우 상이한 영향을 가져온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輸出型 産業에서는 平價切上은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의 海外價格을 높이게 되며 이는 바로 그 산업의 生産이나 雇傭이 減少하는 요인이 된다. 반면에 수입된 원자재를 많이 사용하는 산업은 生産費用이 減少가 되어 價格이 낮아지고 生産이 增大된다. 이 이외에도 산업의 附加

筆者 : 本院 硏究委員

* 本稿의 草稿를 읽고 유익한 批評을 하여 준 本院의 郭泰元, 朴元巖, 朴埈卿, 朴泰鎬 박사에게 감사한다. 이들의 제안을 모두 받아들였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現實性 있는 模型이 되었으리라 생각하나 시간의 제약상 그 대부분이 受容될 수 없었음을 애석하게 생각한다. 後續硏究에서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價値 比率, 輸入品과의 代替性, 需要供給의 彈力性, 産業間 投入産出關係 등의 제반요인에 의하여 平價切上은 산업부문별 生産, 消費, 價格 등에 각기 다른 영향을 미치게 된다. 本稿의 목적은 이와 같은 平價切上이 産業別로 미치는 영향을 多部門 一般均衡模型을 통하여 추정하는 데 있다. 즉 산업별 수요·공급의 특성과 상호관련 등을 模型化하여 平價切上의 효과가 산업별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同 模型을 통하여 규명하고자 한다.

平價切上이 産業部門別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는 관련된 기업뿐 아니라 政策立案者에게도 매우 중요한 관심사라 하겠다. 예를 들어, 構造調整政策과 관련하여서는 平價切上에 따라 경쟁력이 약화될 産業이 무엇이며 이에 따른 産業別 生産이나 雇傭의 변화는 어떻게 될 것이냐가 중요한 관심사로 대두된다. 物價政策과 관련하여서는 平價切上이 가져오게 될 産業別로 각기 상이한 價格下落 要因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이외에도 換率의 운용이라든가 주요교역상대국과의 무역수지전망 등 각종 經濟政策樹立에서 平價切上의 效果分析은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本稿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다음 章에서는 平價切上의 산업부문별 효과를 추정하기 위한 多部門 一般均衡模型을 설명한다. 第3章에서는 政策實驗에서 사용된 産業分類體系, 對外部門의 구분, 각종 係數의 결정과정 등이 설명되었다. 第4章에서는 政策實驗의 결과를 總量指標, 生産效果, 價格效果, 貿易收支效果, 雇傭效果로 구분하여 정리하였으며, 第5章에서는 政策的 示唆點과 향후의 硏究課題를 논의한다.

Ⅱ. 基本模型의 構造

1. 模型의 槪觀

本 模型에서는 經濟를 구성하는 주체를 生産을 담당하는 企業과, 이를 消費하는 家計와 政府(국내최종수요) 그리고 海外部門으로 구분한다. 企業은 勞動과 資本 및 中間投入物을 이용하여 財貨를 생산하여 이를 가계와 정부 및 해외부문에 공급하며, 家計 및 政府는 企業에서 생산된 財貨와 해외에서 輸入된 財貨를 소비한다.

經濟에는 n개의 産業이 존재하며 각 産業은 각기 다른 財貨를 생산한다. 한 産業內에서 재화는 다시 國內財, 輸出財와 輸入財로 구분되어 경제에는 모두 $3n$개의 재화가 존재하게 된다. 이와 같은 구분은 현실적으로 同一産業에서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존재하는 현상을 감안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즉 생산측면에서 國內財와 輸出財는 完全代替性을 갖는 동일제품이 아니라 제품의 질이 서로 다른 不完全代替財이며, 이와 마찬가지로 소비측면에서 국내기업이 생산한 國內財와 해외에서 수입된 輸入財間에도 不完全代替性을 갖는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同一産業內에서의 國內財와 輸出財間의 不完全代替性은 산업의 분류를 크게 하면 할수록 더 커진다고 할 수 있다.

經濟의 一般均衡은 $3n$개 財貨의 需要와 供給이 같아지는 가격체계하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3n$개의 供給函數와 $3n$개의 需

要函數를 도출하고 여기에 $3n$개의 均衡條件을 부여하여 이에 대한 同時解(simultaneous solution)를 구하면 $3n$개 재화에 대한 均衡生産量과 均衡價格이 도출된다.

해외의 供給函數가 주어진 여건하에서 국내의 供給函數는 궁극적으로 노동과 자본 등 生産要素의 供給과 生産函數에 의하여 좌우된다. 本 模型에서는 생산함수는 불변으로 생산요소 중 자본은 각 산업내에서 고정된 것으로 가정하였다. 즉 본 모형은 政策變化에 대한 經濟의 短期的인 適應效果를 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였으므로 산업간의 資本再配分, 투자에 따른 固定資本의 증가 및 기술발전에 따른 生産函數의 변화 등은 사상되었다[1]. 재화의 수요측면을 보면 國內需要는 가계와 정부에 의한 最終需要와 기업의 생산에 사용되는 中間需要의 합이며 특정재화에 대한 수요는 가계의 지출과 그 財貨의 價格 및 그 재화의 代替財 또는 補完財의 가격에 의하여 결정된다.

2. 構造方程式

構造方程式에는 각 재화에 대한 需要 및 供給函數뿐만 아니라 家計의 支出을 결정하기 위한 방정식 및 勞動市場의 均衡을 나타내 주는 방정식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무역수지, 물가, 국내총생산 등 巨視經濟指標를 계산하는 식이 추가되었는바 이들까지 포함하여 구조방정식체계를 구성하였다.

구조방정식에서 모든 變數는 변수 (x) 그 자체가 아니라 變化率 $(\hat{x}=d\,lnx=\frac{dx}{x})$ 로 표현되었음을 밝혀둔다. 이는 이미 앞에서 언급되었던 바와 같이 본 모형의 목적이 정책적인 충격이 가해졌을 때 산업별 가격이나 생산량 등 內生變數가 변화하는 變化率, 즉 彈性値를 계산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구조방정식을 1차 미분하여 미분된 변수간의 관계로써 표현하는 것은 一般均衡模型에서 非線型인 관계를 모두 線型化(linearize)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계산이 매우 간편하여진다[2].

〈構造方程式〉

(A. 1) $$\hat{SH}_i=\varepsilon_i\,\hat{PH}_i-\varepsilon_i\sum_{j=1}^{n}[DHR_j\hat{PH}_j+DMR_j\hat{PM}_j]-\varepsilon_i VIR_i\hat{W}_i+\hat{KH}_i \quad (i=1,..,n)$$

(A. 2) $$\hat{SX}_i=\varepsilon_i\hat{PX}_i-\varepsilon_i\sum_{j=1}^{n}[DHR_j\hat{PH}_j+DMR_j\hat{PM}_j]-\varepsilon_i VIR_i\hat{W}_i+\hat{KX}_i \quad (i=1,..,n)$$

(A. 3) $$\hat{SM}_i=WIMUS_i\cdot EIMUS_i\cdot\hat{PMUS}_i+WIMJP_i\cdot EIMJP_i\cdot\hat{PMJP}_i+WIMRW_i\cdot EIMRW_i\cdot\hat{PMRW}_i \quad (i=1,..,n)$$

(A. 4) $$\hat{DH}_i=-[FCR_i+DMR_i(ESDM_i-FCR_i)]\,\hat{PH}_i+DMR_i(ESDM_i-FCR_i)\,\hat{PM}_i+\sum_{j=1}^{n}[ACR_{ij}(1-EXR_i)]\,\hat{SH}_i+\sum_{j=1}^{n}ACR_{ij}\,EXR_j\,\hat{SX}_i+FCR_i\,\hat{E}_i \quad (i=1,..,n)$$

(A. 5) $$\hat{DX}_i=-WEXUS_i\cdot EEXUS_i\cdot\hat{PXUS}_i-WEXJP_i\cdot EEXJP_i\cdot\hat{PXJP}_i-WEXRW_i\cdot EEXRW_i\cdot\hat{PXRW}_i \quad (i=1,..,n)$$

1) 이와 같은 假定들은 本 模型內에서 재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정책효과의 분석 또한 재조정된 模型內에서 가능하다.

2) 물론 政策施行 以前과 以後의 解를 별도로 구하여 그 차이를 계산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線型化를 통한 계산과 그다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一般均衡模型의 시초라 할 수 있는 Johansen 模型, Michigan模型, ORANI模型 등에서도 선형화방법을 취하고 있다.

(A. 6) $\hat{DM}_i = -[FCR_i + DHR_i (ESDM_i - FCR_i)]\ \hat{PM}_i + DHR_i(ESDM_i - FCR_i)\ \hat{PH}_i + \sum_{j=1}^{n} [ACR_{ij}(1-EXR_i)]\ \hat{SH}_i + \sum_{j=1}^{n} ACR_{ij} \cdot EXR_j \cdot \hat{SX}_i + FCR_i\ \hat{E}_i \quad (i=1,..,n)$

(A. 7) $P\hat{X}US_i = \hat{PX}_i - \hat{R} - R\hat{US} - T\hat{F}US_i \quad (i=1,..,n)$

(A. 8) $P\hat{X}JP_i = \hat{PX}_i - \hat{R} - R\hat{J}P - T\hat{F}JP_i \quad (i=1,..,n)$

(A. 9) $P\hat{X}RW_i = \hat{PX}_i - \hat{R} - R\hat{R}W - T\hat{F}RW_i \quad (i=1,..,n)$

(A.10) $P\hat{M}US_i = \hat{PM}_i - \hat{R} - R\hat{US} - \hat{TF}_i \quad (i=1,..,n)$

(A.11) $P\hat{M}JP_i = \hat{PM}_i - \hat{R} - R\hat{J}P - \hat{TF}_i \quad (i=1,..,n)$

(A.12) $P\hat{M}RW_i = \hat{PM}_i - \hat{R} - R\hat{R}W - \hat{TF}_i \quad (i=1,..,n)$

(A.13) $\hat{SH}_i = \hat{DH}_i \quad (i=1,..,n)$

(A.14) $\hat{SX}_i = \hat{DX}_i \quad (i=1,..,n)$

(A.15) $\hat{SM}_i = \hat{DM}_i \quad (i=1,..,n)$

(A.16) $\hat{E} = \sum_{i=1}^{n} [TER_i(TFR_i - 1)/TFR_i] (\hat{DM}_i + \hat{R} + \hat{PW}_i + WIMUS_i \cdot R\hat{US} + WIMJP_i \cdot R\hat{J}P + WIMRW_i \cdot R\hat{R}W) + \sum_{i=1}^{n} TER_i \cdot \hat{TF}_i + (1 - \sum_{i=1}^{n} TER_i)\ \hat{E}_o$

(A.17) $\hat{W}_i = \hat{W}_o \quad (i=1,..,n)$

(A.18) $\hat{L}_i = [(1-EXR_i)/LIR_i]\ \hat{SH}_i + (EXR_i/LIR_i)\ \hat{SX}_i \quad (i=1,..,n)$

(A.19) $G\hat{D}P = [\sum_{i=1}^{n} (FC_i + EX_i - IM_i)]^{-1} [FC_i(\hat{DH}_i + \hat{PH}_i) + EX_i(\hat{DX}_i + \hat{PX}_i) - IM(\hat{DM}_i + \hat{PM}_i)]$

(A.20) $\hat{PI} = [\sum_{i=1}^{n} (DH_i + IM_i)]^{-1} (DH_i \hat{PH}_i + IM_i \hat{PM}_i)$

(A.21) $BP = \sum_{i=1}^{n} EX_i(\hat{DX}_i + \hat{PX}_i) - \sum_{i=1}^{n} IM_i (\hat{DM}_i + \hat{PM}_i)$

(A.22) $\hat{L} = \{\sum_{i=1}^{n} [DH_i(1-EXR_i)/LIR_i]\ \hat{SH}_i + \sum_{i=1}^{n} EX_i\ (EXR_i/LIR_i)\ \hat{SX}_i\} / \sum_{i=1}^{n} (DH_i + EX_i)$

〈變　數〉

1) 內生變數

$\hat{SH}_i, \hat{DH}_i$: i산업의 國內供給, 國內需要

$\hat{SX}_i, \hat{DX}_i$: i산업의 海外供給, 海外需要

$\hat{SM}_i, \hat{DM}_i$: i산업의 輸入供給, 輸入需要

$\hat{PH}_i$, $\hat{PX}_i$, $\hat{PM}_i$: i산업 國內財, 輸出財, 輸入財의 국내가격

$P\hat{X}US_i$, $P\hat{X}JP_i$, $P\hat{X}RW_i$: i산업 輸出財의 미국, 일본, 기타지역 換算價格

$P\hat{M}US_i$, $P\hat{M}JP_i$, $P\hat{M}RW_i$: i산업 輸入財의 미국, 일본, 기타지역 換算價格

$\hat{E}$: 國內最終支出計

$\hat{L}_i$: i산업 雇傭變化率

2) 外生變數

$\hat{R}$: 換率

$R\hat{US}$: 對美換率

$R\hat{J}P$: 對日換率

$R\hat{R}W$: 對其他地域 換率

$\hat{TF}_i$: i산업 關稅率에 1을 더한 것

$T\hat{F}US_i$, $T\hat{F}JP_i$, $T\hat{F}RW_i$: 미국, 일본, 기타지역 關稅率에 1을 더한 것

$\hat{W}_i$: i산업 賃金

$\hat{KH}_i, \hat{KX}_i$: i산업 國內財와 輸出財 資本스톡

$\hat{E}_o$: 關稅를 제외한 國內支出

3) 總量變數

$G\hat{D}P$: 國內總生產 變化率

$\hat{PI}$: 國內物價指數 變化率

BP : 貿易收支 變化量

$\hat{L}$: 雇傭變化率

4) 파라미터

가) 각종 彈力性係數

$EEXUS_i, EEXJP_i, EEXRW_i$: i산업 輸

出財의 미국, 일본, 기타지역 지역별 價格彈力性

$EIMUS_i, EIMJP_i, EIMRW_i$: i산업 輸入財의 미국, 일본, 기타지역 지역별 價格彈力性

$ESDM_i$: i산업 國內財와 輸入財간의 代替彈力性

$ESLK_i$: i산업 勞動과 資本간의 代替彈力性

나) 地域別 輸出入比重

$WEXUS_i, WEXJP_i, WEXRW_i$: i산업의 對美, 對日, 對其他地域 輸出比重

$WIMUS_i, WIMJP_i, WIMRW_i$: i산업의 對美, 對日, 對其他地域 輸入比重

다) I/O資料로부터 도출되는 각종 比率

DHR_i : i산업의 國內消費(국내재+수입재) 중 國內財 比率

DMR_i : i산업의 國內消費(국내재+수입재) 중 輸入財 比率(=1−DHR_i)

FCR_i : i산업의 國內消費(최종소비+중간소비) 중 最終消費 比率

ACR_{ij} : i산업의 國內消費(최종소비+중간소비) 중 j산업의 中間消費 比率

VIR_i : i산업 總投入에 대한 附加價値 比率

AIR_{ij} : i산업 總投入에 대한 j산업 投入比率

LIR_i : i산업 附加價値 중 勞動投入比率

KIR_i : i산업 附加價値 중 資本投入比率

EXR_i : i산업 總供給 중 輸出供給比率

TER_i : i산업 最終消費에 대한 關稅收入比率

TFR_i : i산업 關稅率에 1을 더한 값

FC_i : i산업의 國內最終需要

EX_i : i산업의 輸出

IM_i : i산업의 輸入

DH_i : 國內財 i의 需要

라) 기 타

$$\varepsilon_i = \frac{LIR_i \cdot ESLK_i}{KIR_i \cdot VIR_i}$$

構造方程式의 핵심이 되고 있는 需要·供給函數의 도출과정은 李元暎·張晩浚(1989)에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함수의 도출에 전제된 假定과 그 示唆點만을 간단히 기록하고자 한다. 먼저 (A.4), (A.5), (A.6)에 표현된 最終需要函數는 Cobb-Douglas 效用函數로부터 도출되었다. 이에 따라 i산업의 國內財 및 輸入財에 대한 最終需要는 i산업의 國內財와 輸入財의 가격과 國內最終需要計에 대한 함수이다. 다시 말하면 한 산업에서 생산되는 財貨의 價格變化는 다른 산업에서 생산되는 國內財와 輸入財의 需要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모형에서는 재화간의 補完性이나 代替性은 산업간에는 감안되지 않고 다만 同一産業內의 輸入財와 國內財間의 代替性만 인정된다.

다음으로 (A.1), (A.2), (A.3)에 표현된 i산업의 供給函數는 노동과 자본 및 중간재를 이용하여 산출하게 되는 生産函數로부터 도출되었다. 同 生産函數는 2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바 노동과 자본의 결합에 의하여 가공적인 中間財가 생산되어 관련된 모든 산업의 중간재로 공급되며 이는 다시 노동 및 자본과 결합하게 되는 형태를 취하였다. 즉 생산함수 안에 일종의 媒介變數가 도입되어 있는바 그 구성은 勞動과 資本에 의하여 생산되는 純附加價値部門과 각 산업에서 수입재

와 국내재가 혼합된 中間投入物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생산함수를 2단계로 분리하여 1차적으로 각 매개변수의 생산에는 CES함수를 假定하였으며 2차적으로 매개변수로부터 최종산출물이 생산되는 과정은 Leontief 函數를 가정하였다. 그리고 純附加價値에 해당하는 매개변수는 노동과 자본을 투입물로 이용하여 CES함수에 의하여 생산되며, i산업의 中間投入物에 해당하는 매개변수는 i산업의 국내재와 수입재를 투입물로 이용하여 CES함수에 의하여 생산된다. 이같은 生産函數形態의 特徵은 투입과 산출간의 비율을 나타내어 주는 投入産出係數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勞動과 資本間의 代替性 및 輸入財와 國內財間의 代替性을 감안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이 단계의 Leontief 函數는 投入産出關聯表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생산함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각 산업에서 勞動과 資本의 代替性과 輸入財와 國內財의 代替性만 알면 된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假定下에 도출되는 산업 i의 輸出財(國內財)의 供給은 자신의 가격과 생산에 투입되는 국내재와 수입재의 가격 및 임금 등 生産投入要素의 가격의 함수이다. 단 자본은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가정하였기 때문에 자본의 가격은 동 함수에 포함되지 않고 다만 總資本스톡의 변화가 外生變數로서 포함되어 있을 뿐이다. 수입재의 공급은 세계를 美國, 日本, 其他地域으로 나누어 지역별 수입비중을 고려한 輸入財의 각 지역 換算價格의 函數로 하였다.

산업 i의 國內財 및 輸入財에 대한 需要는 家計部門의 수요와 산업에서 中間財로 사용되는 수요의 합으로 나타난다. i산업에 대한 國內最終需要는 이미 언급된 바와 같이 산업 i의 국내재 및 수입재의 가격과 國內最終需要計의 函數이다. 中間財 需要는 전산업의 생산에 필요한 수요를 합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산업부문에서 생산되는 輸出財와 國內財의 函數이다.

수출재의 해외수요는 수입재 공급함수와 마찬가지로 세계를 美國, 日本, 其他地域으로 나누어 각 지역의 輸出比重을 고려한 輸出財의 地域別 換算價格의 函數로 하였다.

式 (A.7)~(A.9)는 輸出財의 원貨價格과 輸出地域 換算價格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式 (A.10)~(A.12)는 輸入財의 각 地域別 價格과 원貨價格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단, 여기에서 TF_i는 i산업의 관세율에 1을 더한 값이다.

式 (A.13)~(A.15)는 國內財와 輸出財, 그리고 輸入財의 수요와 공급간의 均衡條件이다.

式 (A.16)은 國內最終需要計의 函數로서 국내최종수요계는 외생으로 주어진 E_o와 關稅輸入을 합한 값으로 정의된다.

式 (A.17), (A.18)에서는 勞動市場의 行態를 규명하고 있다. 본 모형에서 賃金은 외생적으로 주어지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勞動需要 또한 이에 따라 결정된다. 물론 노동시장의 행태를 다르게 정의하면 方程式體系는 달라진다.

式 (A.19)~(A.22)는 시뮬레이션 결과로부터 名目國內總生産, 物價指數, 貿易收支 및 雇傭 등 각종 總量變數의 변화를 계산하기 위하여 추가된 것으로 이들은 方程式의 解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構造方程式의 論理體系

여기서는 構造方程式에서 換率變化가 산업별 생산과 소비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를 部分均衡分析을 통하여 간략히 설명하고자 한다. 財貨間의 상대가격이 需要와 供給을 결정하는 Walrasian 模型에서는 換率의 變化는 名目物價水準만을 變化시킬 뿐이다. 따라서 平價切上은 名目價格과 名目賃金의 下落을 가져오나 實物經濟에 미치는 영향은 없게 된다.

그러나 同 模型은 순수한 Walrasian 模型은 아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정책 시뮬레이션에서는 賃金과 總支出은 換率變化에도 불구하고 불변인 것으로 假定하였다. 이 경우 平價切上은 海外의 價格과 이들 불변인 價格과의 相對價格構造의 變化를 가져온다. 다시 말하면 平價切上은 海外價格으로 표시된 賃金과 總支出을 높이는 效果를 갖게 되고 이것이 産業部門에 각기 다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와 같은 假定下에 換率의 變化가 輸出財, 輸入財 및 國內財의 수요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먼저 〔圖 1〕에는 輸出財에 대한 需要(D_X)와 供給(S_X)曲線이 표현되어 있다. 여기서 명목의 賃金과 總支出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換率의 變化는 需要와 供給函數의 위치를 變化시키게 된다. 平價切上은 國內價格에 1차적인 영향을 미치는바, 이는 需要曲線 D를 平價切上이 된 만큼 아래로 이동시키게 된다. 供給曲線은 수입되던 中間財價格등의 下落要因등에 의하여 右下向으로 이동된다. 이에 따라 輸出財의 生産이

〔圖 1〕 平價切上이 輸出財 需要·供給에 미치는 効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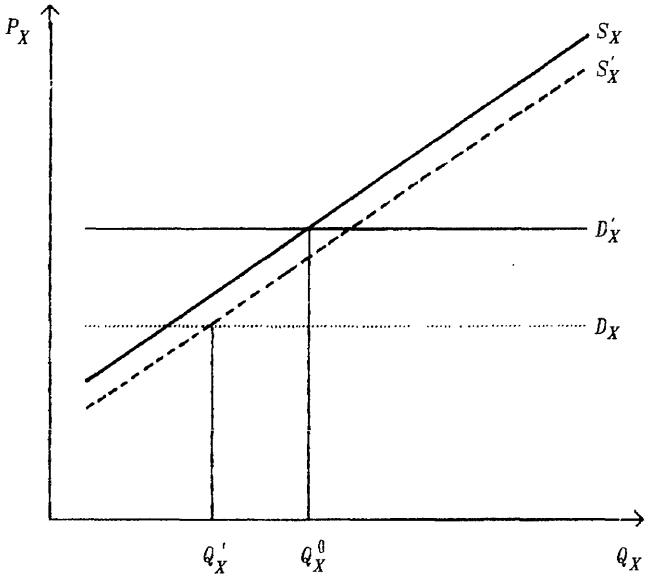

$Q_X{}^o$에서 $Q_X{}'$으로 減少되고 輸出財의 國內價格 또한 下落한다. 물론 이 이외에도 模型에서는 輸出財와 國內財의 代替效果, 다른 產業과의 상호의존적인 관계에 의한 추가적인 變化 등 2차적인 效果가 반영된다.

國內財에 대한 需要·供給曲線의 變化는 〔圖 2〕에 표시되었다. 國內財의 需要에서 가장 중요한 變化는 輸入財價格의 하락에 따라 國內財와 輸入財間에 대체현상이 생긴다는 것이다. 따라서 平價切上은 國內財 需要曲線을 左下向으로 이동시켜 國內財의 價格과 生產을 減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國內財 需要曲線 이동의 크기는 國內財와 輸入財間의 代替彈力性과 輸入財가 全需要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에 의하여 좌우된다.

이와 같은 직접적인 變化 이외에도 두가지의 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첫째, 輸入財의 價格이 하락됨에 따라 輸入財를 중간재로 사용하는 산업의 生產費用이 減少하게 되고 이는 國內財의 供給曲線을 右下向으로 이동시키게 되는바 이를 $S_H{}''$으로 표시하였다. 둘째, 일반적으로 平價切上은 대부분의 產業에서 輸出이나 內需의 需要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圖 2〕에서 고려된 產業에 대한 中間投入物로서의 需要를 감소시키게 된다. 이는 需要曲線을 左下方向으로 추가적으로 이동시키는 요인($D_H{}''$)으로 작용한다. 이와 같은 2차적인 需要는 國內財의 生產에 대해서는 불확정적인 효과를 갖게 되나 價格面에서는 추가적인 하락요인으로 작용한다.

輸入財에 대한 需要供給의 變化를 〔圖 3〕에서 보면 먼저 供給側面에서 平價切上은 國內價格으로 표시된 輸入財의 供給을 平價切上 폭만큼 下方向으로 이동시키게 된다($S_M{}'$). 반면에 輸入財의 需要를 보면 國內財와 輸出

〔圖 2〕 平價切上이 國內財 需要·供給에 미치는 效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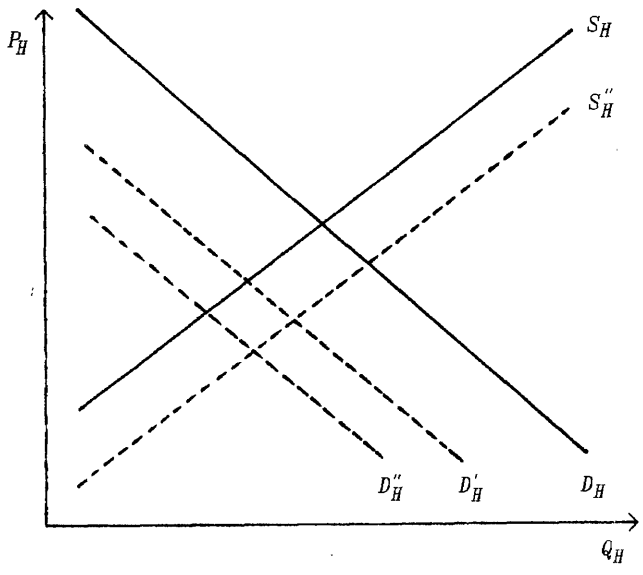

〔圖 3〕 平價切上이 輸入財 需要·供給에 미치는 影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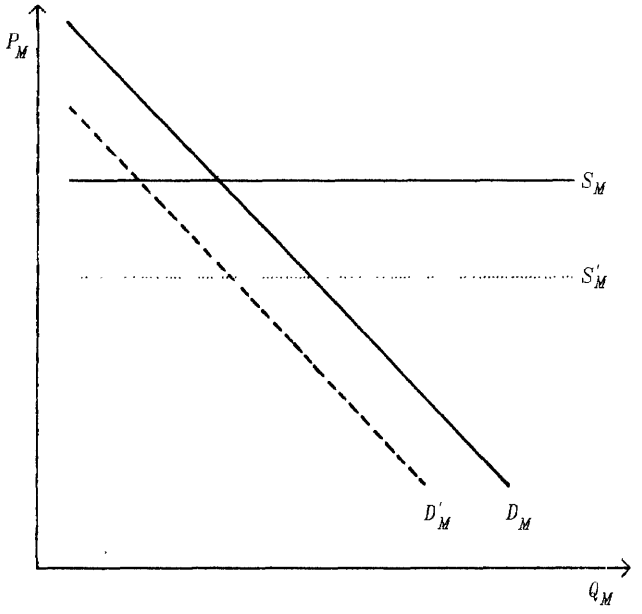

財의 사용이 감소됨에 따라 중간투입물로서의 輸入財의 需要는 감소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輸入財의 價格下落이 國內財의 價格下落보다 크기 때문에 이는 生産이나 消費에서 國內財를 輸入財로 代替하게 되어 輸入財의 需要를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輸入財의 需要가 어디로 이동하게 될지는 産業의 특징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나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供給曲線의 이동이 需要曲線의 이동보다는 크기 때문에 輸入의 量은 增大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非交易財 部門에 미치는 效果는 國內財의 경우에서 1차적인 효과를 제외한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즉 國內財와 代替되는 輸入財가 없기 때문에 〔圖 2〕에서 D'로 표시되는 變化는 없다. 그러나 非交易財를 생산하는 중간재의 輸入價格이 하락하게 됨에 따라 非交易財의 供給曲線은 〔圖 2〕에서 右下方向으로 이동한다(S''). 需要側面에서 보면 非交易財를 중간투입물로 사용하는 産業의 생산이 代替的으로 감소하게 됨에 따라 需要曲線은 左下方向으로 이동한다(D''). 따라서 非交易財의 價格은 일반적으로 下落하나 生産에 미치는 영향은 불확실하다.

Ⅲ. 政策實驗의 準備

1. 部門分類

政策實驗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産業의 分類가 확정지어져야 하는바 本章에서의 실험에서는 全産業을 〈表 1〉에서 나타난 31개

〈表 1〉 産業分類表

番 號	産 業	85년도 I/O의 基本産業
1	농림수산업	1 - 37
2	광업	38 - 51
3	음식료 · 연초	52 - 91
4	섬유 · 직물	92 - 113
5	의복	114 - 123
6	혁제품	124 - 128
7	목제품	129 - 135
8	종이 · 지제품	136 - 145
9	인쇄 · 출판	146 - 148
10	화학제품	149 - 185
11	석유제품	186 - 193
12	석탄제품	194 - 195
13	고무제품	196 - 199
14	비금속광물제품	200 - 215
15	철 1차제품	216 - 228
16	비철금속 1차제품	229 - 237
17	금속제품	238 - 248
18	일반기계	249 - 266
19	전기기계	267 - 278
20	전자 · 통신기계	279 - 290
21	조선	291 - 293
22	수송기계	294 - 303
23	정밀기계	304 - 307
24	기타제조업	308 - 316
25	전기 · 가스 · 수도	317 - 323
26	건축	324 - 342
27	상업 · 음식 · 숙박	343 - 346
28	운수 · 보관 · 통신	347 - 363
29	금융 · 보험 · 부동산	364 - 370
30	정부 기타서비스	371 - 399
31	기타	400 - 402

產業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同表에는 85년도 產業關聯表上의 402개 基本產業이 각기 어디에 포함되는가를 표시하였다. 同 產業分類에 의한 1985년 生產, 輸出 및 輸入은 〈表 2〉와 같다.

다음으로 海外部門은 美國, 日本 및 其他地域으로 분류하였다. 이는 韓國의 중요한 交易相對國인 美國과 日本間의 交易構造의 變化를 추정하기 위한 것이다[3]. 〈表 3〉에는 각 產業에 대한 1985년 기간중 國別 輸出入比重이 정리되어 있다. 다만 25에서 29까지의 서비스產業에 대한 國別 輸出入比率에 대한 자료는 발표되지 않아 포함시키지 못하였다.

2. 構造母數의 決定

本 模型이 갖는 특징은 產業別 需要·供給函數의 係數 중 그 대부분은 計量經濟的인 방법으로 추정할 필요가 없이 投入產出表, 地域別 輸出入比重 등에 의하여 산술적으로 계산되도록 한 데 있다. 따라서 本 模型에서 政策實驗에 필요한 계수는 다음의 네가지로 귀결된다: ①國產財와 輸入財間의 代替彈力性 ②勞動과 資本의 代替彈力性 ③輸出財에 대한 海外需要의 價格彈力性 ④輸入財에 대한 海外供給의 價格彈力性

이상과 같은 彈性値를 구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과거의 자료를 근거로 통계적 기법에 의하여 추정하는 것이다. 물론 기존의 연구에서 이와 같은 彈性値가 추정되어 있다면 그것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韓國經濟를 대상으로는 勞動과 資本의 代替彈力性만이 金栽元(1980)에 의하여 추정된 바 있을 뿐 그 이외에 彈性値에 대한 연구는 발견하지 못하였다. 金栽元의 경우에도 產業分類가 세분되어 있지 않고 이미 오래 전에 추정되었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또한 추정된 彈性値라도 그것이 대상으로 한 기간이 政策實驗에서 목적하는 바와 다르다. 예를 들면 平價切上後 한 분기 이후에 나타나는 반응과 1년후에 나타나는 반응은 전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필자가 택한 방법은 외국의 연구에서 발표된 자료를 골간으로 하여 이를 韓國經濟의 실정에 맞도록 수정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을 택한 배경에는 韓國經濟를 대상으로 한 각종 計量經濟的 硏究가 별로 없는 것이 주원인이라고 볼 수도 있으나, 그 나름으로 의의가 없는 것은 아니다. 韓國經濟와 같이 그 구조가 급변하는 경제에서는 오래 된 과거의 자료를 근거로 한 추정이 지금의 현실을 잘 대변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특히 國產財와 輸入財의 代替彈力性같이 對外貿易과 관련된 변수는 과거를 바탕으로 한 추정의 현실성이 매우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각종의 非關稅障壁의 內譯은 시대에 따라 변천하였고 이는 의미있는 彈性値의 計量經濟的 추정을 매우 어렵게 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앞으로 전개될 현상을 전망하는 데에는 外國經濟의 경험을 바탕으로 추정된 彈性値가 어떤 점에서 더 유리할 수도 있다. 즉 韓國經濟는 그동안 각종의 非關稅障壁을 제거하면서 自由貿易體制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시점에서 앞으로의 變化를 전망하는 데에는 自由貿易

3) 그러나 기술적인 측면에서 交易對象國을 더욱더 세분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表 2〉 産業別 生産·輸出 및 輸入

(단위 : 億원)

番 號	産 業	國 內 財	輸 出 財	輸 入 財
1	농림수산업	13677	563	2522
2	광업	1270	38	6809
3	음식료·연초	16075	507	905
4	섬유·직물	5189	1737	672
5	의복	1851	3899	93
6	혁제품	719	382	368
7	목제품	1259	138	115
8	종이·지제품	2080	115	450
9	인쇄·출판	1267	16	58
10	화학제품	9907	1207	3217
11	석유제품	6415	859	1112
12	석탄제품	1290	13	45
13	고무제품	769	1358	87
14	비금속광물제품	3135	265	308
15	철 1차제품	7014	1468	1392
16	비철금속 1차제품	1110	132	598
17	금속제품	1781	1412	396
18	일반기계	4052	323	3068
19	전기기계	2236	623	914
20	전자·통신기계	2504	3117	2330
21	조선	854	1708	241
22	수송기계	2818	684	712
23	정밀기계	456	271	711
24	기타제조업	754	1243	139
25	건축	4436	24	3
26	전기·가스·수도	15289	174	1
27	상업·음식·숙박	12315	1924	387
28	운수·보관·통신	8142	3066	833
29	금융·보험·부동산	10091	97	124
30	정부 기타서비스	20030	214	250
31	기타	3313	138	307
計		162096	27717	29166

〈表 3〉 産業別 國別 輸出入 比重

番號	産 業	輸出比重			輸入比重		
		美 國	日 本	其 他	美 國	日 本	其 他
1	농림수산업	0.05	0.77	0.17	0.39	0.02	0.60
2	광업	0.00	0.74	0.26	0.05	0.01	0.94
3	음식료·연초	0.25	0.48	0.27	0.49	0.02	0.49
4	섬유·직물	0.13	0.11	0.76	0.03	0.37	0.60
5	의복	0.44	0.19	0.38	0.18	0.53	0.29
6	혁제품	0.68	0.06	0.26	0.18	0.37	0.44
7	목제품	0.32	0.31	0.38	0.20	0.08	0.72
8	종이·지제품	0.13	0.06	0.81	0.54	0.13	0.33
9	인쇄·출판	0.34	0.20	0.45	0.25	0.53	0.22
10	화학제품	0.21	0.19	0.60	0.23	0.43	0.34
11	석유제품	0.11	0.67	0.22	0.20	0.13	0.66
12	석탄제품	0.11	0.30	0.59	0.19	0.49	0.32
13	고무제품	0.39	0.09	0.53	0.32	0.41	0.27
14	비금속광물제품	0.23	0.34	0.43	0.15	0.63	0.22
15	철 1차제품	0.24	0.28	0.48	0.17	0.61	0.23
16	비철금속 1차제품	0.14	0.22	0.64	0.13	0.27	0.60
17	금속제품	0.48	0.06	0.47	0.19	0.48	0.33
18	일반기계	0.48	0.08	0.44	0.16	0.54	0.30
19	전기기계	0.50	0.06	0.44	0.15	0.61	0.24
20	전자·통신기계	0.52	0.09	0.39	0.26	0.57	0.16
21	조선	0.11	0.01	0.88	0.06	0.28	0.66
22	수송기계	0.65	0.01	0.34	0.38	0.33	0.29
23	정밀기계	0.40	0.18	0.43	0.22	0.58	0.20
24	기타제조업	0.60	0.10	0.30	0.21	0.52	0.27
25	건축	n.a.	n.a.	n.a.	n.a.	n.a.	n.a.
26	전기·가스·수도	n.a.	n.a.	n.a.	n.a.	n.a.	n.a.
27	상업·음식·숙박	n.a.	n.a.	n.a.	n.a.	n.a.	n.a.
28	운수·보관·통신	n.a.	n.a.	n.a.	n.a.	n.a.	n.a.
29	금융·보험·부동산	n.a.	n.a.	n.a.	n.a.	n.a.	n.a.
30	정부 기타서비스	0.70	0.12	0.19	0.64	0.09	0.27
31	기타	0.14	0.35	0.51	0.05	0.10	0.85
전 산 업		0.355	0.150	0.495	0.208	0.243	0.549

體制가 계속 유지되어 온 외국의 경험을 원용하는 것도 그 나름으로 의의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들 彈性値의 결정과정과 그 값은 다음에서 보다 상세히 논의하고자 한다.

가. 國內財와 輸入財間의 代替彈力性

國產財와 輸入財間의 代替彈力性의 결정에서는 미시간模型(Deardorff and Stern, 1986)과 ORANI(Dixon et al., 1982)에서 사용된 수치를 참고하였다. 그러나 원유 등과 같이 국내에 부존자원이 없는 部門에서의 代替彈力性은 산유국인 美國과는 현저하게 다를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였다. 또한 農林水產業등 非關稅障壁이 많이 남아 있는 部門에서의 代替彈力性 또한 매우 낮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政策實驗에 사용된 代替彈力性은 〈表 4〉와 같다.

나. 勞動과 資本의 代替彈力性

產業別 勞動과 資本의 代替彈力性에 관한 연구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일부 製造業部門에 대해서는 金栽元에 의해서 행해진 바 있으며 외국에서는 이와 관련된 연구가 그동안 많이 발표된 바 있다. 〈附表 1〉에는 미시간模型에서 사용된 彈性値와 金栽元(1980)의 추정치가 수록되어 있다.

產業別 勞動과 資本의 彈性値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많은 연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計量經濟的 방법의 한계성 때문에 추정결과의 신뢰도가 별로 높지 않다. Dervis et al. (1982)은 勞動과 資本의 彈力性에 대한 각종의 연구를 綜合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린 바 있다. "產業別로 勞動과 資本의 代替彈力性을 추정한 연구결과는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產業別로 彈性値가 다르다는 결론을 내리기에는 충분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 그들의 연구에 의하면 時系列分析에 의한 분석은 대체로 彈性値가 0.5를 중심으로 약간의 변화를 갖고 나타나고 있으며 橫斷分析에서는 彈性値가 1.0 근방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논리에 근거하여 ORANI에서는 모든 산업에 대하여 彈性値를 0.5로 일률적으로 부여하였다.

本 政策實驗에서도 ORANI에서와 마찬가지로 모든 產業에서의 彈性値를 똑같이 하였다. 그러나 그 값은 ORANI에서 보다 큰 값인 0.8을 부여하였다. 이는 金栽元과 MICHIGAN모델에서의 彈性値값이 0.5보다는 현저하게 큰 것을 감안한 결과이다.

다. 輸出財에 대한 海外需要의 價格彈力性

일반적으로 小國 假定下에서는 海外需要는 完全彈力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韓國商品의 輸出이 世界市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產業도 많기 때문에 이와 같은 완전탄력적인 需要函數는 현실성이 없다. 더욱이 차별화된 제품을 생산하는 產業에서는 韓國輸出品에 대한 需要의 價格彈力性을 무한대에 가깝다고 보기는 어렵다.

南相祐(1988)의 연구에 의하면 韓國輸出에 대한 海外需要의 價格彈性値는 1970~86 기간중 약 3.5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本 政策實驗에서는 南相祐의 결과를 모든 產業에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즉 수출부문에서는 小國假定을 적용하지 않고 어느 정도 價

〈表 4〉 國內財와 輸入財의 代替彈力性

番號	産 業	使 用 値	MICHIGAN	ORANI
1	농림수산업	0.1	1.139	0.5~2.0(10부문)
2	광업	0.1	1.0	0.0~2.0(5부문)
3	음식료·연초	1.0	1.133	0.5~2.0(12부문)
4	섬유·직물	1.3	1.147	0.5~2.4(8부문)
5	의복·신발	4.0	4.296	3.4~6.8(2부문)
6	혁제품	2.1	2.3	2.0 (2부문)
7	목제품	2.2	2.555	2.0 (3부문)
8	종이·지제품	1.3	1.585	1.1 (3부문)
9	인쇄·출판	2.5	3.013	2.0 (2부문)
10	화학제품	2.0	2.612	1.4~2.6(6부문)
11	석유제품	1.0	2.359	0.34
12	석탄제품	1.0	2.359	0.34
13	고무제품	3.5	5.707	1.3
14	비금속광물제품	1.7	2.0	0.8~1.4(6부문)
15	철 1차제품	1.7	1.446	0.5
16	비철금속 1차제품	1.0	1.43	0.5
17	금속제품	2.0	3.674	1.5~2.0(3부문)
18	일반기계	0.5	1.022	0.5 (3부문)
19	전기기계	1.7	2.11	1.3
20	전자·통신기계	2.0	2.11	2.0
21	조선	2.0	3.585	0.5
22	수송기계	2.0	3.585	0.5~5.0(3부문)
23	정밀기계	1.0	2.984	0.5
24	기타제조업	2.0	2.984	1.2~2.0(2부문)
25	전기·가스·수도	1.0	non-tradable	2.0
26	건축	1.0	"	"
27	상업·음식·숙박	1.0	"	"
28	운수·보관·통신	1.0	"	"
29	금융·보험·부동산	1.0	"	"
30	정부 기타서비스	1.0	"	"
31	기타	1.0	"	"

格轉嫁가 가능한 것으로 전제되었다. 또한 國別로도 같은 彈性値를 적용하였다[4].

라. 輸入財에 대한 海外供給의 價格彈力性

우리나라의 수입의 증감에 따라 國際價格이 크게 변동하리라고 예상되는 産業은 별로 없었다. 따라서 여기서는 小國假定을 도입하여 모든 産業에 대해 彈力性을 20으로 부여하였다[5]. 또한 輸出財의 需要彈性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美國, 日本, 其他地域에서 모두 동일한 彈性値를 갖는 것으로 假定하였다.

Ⅳ. 政策實驗 結果

1. 總量指標

模型을 이용한 政策實驗結果를 보고하기 전에 먼저 本 模型에서의 결과는 平價切上 후 1~2년 기간중 일어날 수 있는 變化를 추정하기 위한 것임을 밝혀둔다. 즉 模型의 構造方程式 및 각종의 係數는 平價切上後 1~2년 기간중 일어나리라고 예상되는 變化를 밝혀내기 위하여 고안되었다. 平價切上에 따라 總量經濟指標들이 어떻게 變化하는가를 〈表 5〉에 기록하였다. 本 政策實驗에서 總量經濟指標의 換率에 대한 彈性値를 보면 平價切上 10%에 대하여 實質國內總生産이 0.6% 하락하고 있다. 반면에 KDI 巨視經濟模型에 의하면 平價切上 10%가 있은 후 1~2년간 實質國內總生産은 약 0.3%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同 模型에서의 결과가 KDI 巨視經濟模型보다 2배 가량 큰 반응도를 보이고 있다. 輸出, 輸入에 대한 KDI 巨視經濟模型의 반응도를 보면 平價切上 10%에 대하여 輸出이 달러금액기준으로 약 6% 감소하는 반면 輸入은 별로 變化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同 政策實驗에서는 輸出은 약 8% 감소하고 輸入은 3% 增加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表 5〉 換率 1% 變化에 따른 總量變數의 變化

變 數	推 定 値
名目國內總生産	-0.51
消費者物價	-0.45
雇傭	-0.13
總輸出	-4,489 (-24,539)
總輸入	-1,960 (10,408)
貿易收支	-2,530 (-34,948)

註 : 表에서 名目國內總生産, 消費者物價, 雇傭은 퍼센티지의 變化이며 輸出, 輸入, 貿易收支는 원貨(億원)로 표시된 금액이다. 단, ( )안은 달러표시금액(萬달러)의 變化임.

2. 生産效果

平價切上에 따라 産業別 生産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表 6〉에서 알아보자. 〈表 6〉에는 産業別로 換率을 1% 平價切上했을 때 生産이 몇 퍼센트가 변하는가-生産의 換率變化에 대한 彈性値(exchange rate elasticity of output : EREO)-에 대한 추정치가 나타나 있다. 同表에는 生産減少效果가 가장 큰 산업에서 減少效果가 작은 산업으로, 다음으로 增加效果가 작은 산업에서 큰 산업의 순서로

4) 물론 價格彈性値는 産業別로 國別로 다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법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後續硏究가 필요하다.

5) 政策實驗結果를 보면 10이상의 어떤 값을 선택하여도 그 결과는 별차이가 없었다.

〈表 6〉 生産效果

順位	産 業	推定値	(1)	(2)	(3)	(4)	(5)
1	혁제품	-1.217	0.35	0.34	0.62	0.36	2.1
2	고무제품	-0.908	0.64	0.10	0.25	0.20	3.5
3	섬유·직물	-0.815	0.25	0.11	0.72	0.16	1.3
4	조선	-0.797	0.67	0.22	0.11	0.19	2.0
5	의복	-0.760	0.68	0.05	0.09	0.13	4.0
6	기타제조업	-0.658	0.62	0.16	0.18	0.09	2.0
7	전자·통신기계	-0.636	0.55	0.48	0.38	0.33	2.0
8	금속제품	-0.538	0.44	0.18	0.54	0.15	2.5
9	비철금속 1차제품	-0.492	0.11	0.35	0.95	0.42	1.0
10	정밀기계	-0.476	0.37	0.61	0.33	0.23	1.7
11	화학제품	-0.414	0.11	0.25	0.80	0.23	2.0
12	철 1차제품	-0.396	0.17	0.17	0.89	0.1	1.0
13	종이·지제품	-0.358	0.05	0.18	0.96	0.1	1.3
14	목제품	-0.239	0.10	0.08	0.69	0.40	2.2
15	전기기계	-0.228	0.22	0.29	0.54	0.17	1.7
16	광업	-0.200	0.03	0.84	1.0	0.01	0.1
17	운수·보관·통신	-0.182	0.27	0.09	0.40	0.12	1.0
18	수송기계	-0.163	0.20	0.20	0.35	0.17	2.5
19	기타	-0.155	0.04	0.08	0.95	0.03	1.0
20	석유제품	-0.127	0.12	0.15	0.89	0.75	1.0
21	건축	-0.087	0.01	0.00	0.80	0.09	1.0
22	비금속광물제품	-0.071	0.08	0.09	0.91	0.11	1.0
23	상업·음식·숙박	-0.065	0.14	0.03	0.41	0.02	1.0
24	금융·보험·부동산	-0.026	0.01	0.01	0.53	0.01	1.0
25	인쇄·출판	0.004	0.01	0.04	0.71	0.05	2.5
26	농림·수산업	0.005	0.04	0.16	0.67	0.02	0.1
27	일반기계	0.010	0.07	0.43	0.47	0.16	0.7
28	음식료·연초	0.031	0.03	0.05	0.29	0.09	1.0
29	정부 기타서비스	0.096	0.01	0.01	0.18	0.05	1.0
30	전기·가스·수도	0.201	0.01	0.00	0.10	0.03	1.0
31	석탄제품	0.243	0.01	0.03	0.41	0.34	1.0

(1) 輸出比重=輸出/總産出
(2) 輸入比重=輸入/總需要
(3) 中間需要比重=中間需要/總需要
(4) 輸入財의 中間投入比重=輸入中間投入/總中間投入
(5) 國內財와 輸入財의 代替彈力性

되어 있다. 表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추정치는 -1.217에서 0.243 사이에서 産業別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EREO의 産業間 順位의 결정요인은 여러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輸出減少가 産業別로 다르다. 〔圖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平價切上은 輸出財의 需要曲線을 아래로 이동시키고, 이는 輸出을 감소시키며 이것이 國內生産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輸出財의 供給曲線의 彈性値가 클수록 總生産에서 輸出이 차지하는 比重이 클수록 순위는 높아진다.

둘째, 輸入財와 國産財間의 代替效果가 産業別로 다르다. 平價切上은 輸入財의 國內價格을 낮추고 이는 國産財를 輸入財로 代替하도록 유도한다. 따라서 國産財와 輸入財의 代替彈力性이 클수록 순위는 높다.

셋째, 國産財와 輸入財의 代替彈力性이 동일할지라도 수입이 전체수요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면 輸入財와 國內財와의 대체에 의한 生産減少는 작아진다. 따라서 輸入比重이 커지면 순위는 낮아진다.

넷째, 中間財로서의 需要가 産業別로 다르다. 平價切上은 대부분의 産業에서 生産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中間投入物에 대한 需要도 감소한다. 따라서 最終需要에서 中間需要의 比重이 큰 産業일수록 순위는 높아진다.

다섯째, 平價切上에 따라 中間投入物의 價格은 일반적으로 하락하여 生産費用을 감소시키는데 그 效果는 産業의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 즉 輸入된 中間投入物을 많이 사용하는 産業에서는 費用減少效果가 크고 이는 순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상과 같은 여러 원인 중에서 어떤 것이 EREO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가를 알기 위해서 EREO와 몇가지 외생변수간의 順位相關係數를 구하여 보았는바 그 결과를 〈表 7〉에 정리하였다. 輸出比重, 代替彈力性 및 輸入比重과의 순위상관계수는 예상되었던 바와 같은 부호를 갖고 있으며 통계적으로도 그 유의수준이 높다. 그러나 輸入財의 中間投入比重과의 순위상관계수는 有意水準이 낮을 뿐 아니라 예상과 반대되는 부호를 보이고 있다. 이는 EREO가 상대적으로 작으며 輸出比重이 낮은 非製造業部門의 輸入財의 中間投入比重이 낮기 때문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즉 輸入投入比重이 높은 産業은 동시에 輸出比重도 높기 때문에 輸入投入比重과 EREO의 순위상관계수가 예상과 반대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中間需要比重과 EREO간의 順位相關係數는 예상되었던 부호가 발견되었으나 그 統計的 有意性은 없다.

〈表 7〉 EREO와 外生變數間의 順位相關係數

外 生 變 數	相 關 係 數
輸出比重	0.825**
國內財/輸入財 代替彈力性	0.610**
輸入比重	-0.462*
中間需要比重	0.092
輸入財 中間投入比率	-0.444*

**는 1%수준에서, *는 2%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있음.

3. 價格效果

平價切上에 따른 産業別 價格의 變化率은 〈表 8〉에 보고되었다. 이론적 고찰에서 예상

〈表 8〉 價格效果

順位	産　　業	國 內 財	輸 入 財	價 格 指 數
1	석유제품	-0.998	-1.006	-0.999
2	철 1차제품	-0.805	-1.009	-0.839
3	비철금속 1차제품	-0.728	-1.009	-0.826
4	화학제품	-0.704	-0.991	-0.774
5	섬유·직물	-0.668	-1.015	-0.708
6	석탄제품	-0.666	-0.972	-0.676
7	전자·통신기계	-0.621	-0.983	-0.795
8	기타	-0.593	-0.988	-0.626
9	건축	-0.587	-0.984	-0.587
10	종이·지제품	-0.555	-0.988	-0.632
11	금속제품	-0.544	-0.959	-0.619
12	혁제품	-0.496	-1.000	-0.667
13	전기기계	-0.487	-0.964	-0.625
14	의복	-0.466	-0.905	-0.487
15	정밀기계	-0.464	-0.965	-0.769
16	고무제품	-0.436	-0.925	-0.485
17	비금속광물제품	-0.435	-0.974	-0.483
18	조선	-0.421	-0.945	-0.536
19	기타제조업	-0.413	-0.947	-0.497
20	수송기계	-0.404	-0.934	-0.511
21	일반기계	-0.403	-0.976	-0.650
22	인쇄·출판	-0.343	-0.926	-0.369
23	목제품	-0.282	-0.933	-0.336
24	운수·보관·통신	-0.278	-0.964	-0.342
25	광업	-0.254	-1.004	-0.886
26	전기·가스·수도	-0.246	-0.954	-0.246
27	상업·음식·숙박	-0.172	-0.961	-0.196
28	정부 기타서비스	-0.158	-0.954	-0.168
29	음식료·연초	-0.156	-0.957	-0.199
30	금융·보험·부동산	-0.117	-0.959	-0.127
31	농림·수산업	-0.072	-0.995	-0.216

註： 단위는 平價切上에 대한 彈性値.

되었던 바와 같이 國產財의 價格은 平價切上幅보다는 작은 價格下落效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輸入財의 價格은 平價切上이 그대로 轉嫁됨을 알 수 있다. 이는 韓國의 輸入이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比重이 낮기 때문에 전제되었던 小國假定의 결과이다. 단, 模型에서 輸入財의 供給曲線의 彈性値를 무한대로 주지 않고 20으로 주었기 때문에 輸入이 줄어드는 產業에서는 약간의 價格下落이, 輸入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약간의 價格上昇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國內財價格과 輸入財價格을 가중평균하여 價格指數가 구하여졌다.

國內財의 價格變化率은 產業別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차이는 國內財의 需要·供給의 價格彈力性이 產業間에 상이할 뿐 아니라 國內財의 生產에 있어서 輸入된 原資材의 구성비가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價格效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後者로 보인다. 價格下落의 順位가 높은 產業은 대부분 生產에서 輸入된 원자재의 比重이 높은 產業이다. 반면에 서비스產業, 農林水產業과 같이 輸入된 原資材를 별로 사용하지 않는 產業에서는 價格下落의 폭이 매우 작다.

일반적으로 實質換率(real exchange rate)은 두가지로 정의되고 있다. 첫째, 名目換率의 變化率에서 物價의 變化率을 뺀 값이다. 예를 들어 名目換率이 10% 切上되고 물가가 10% 下落하였다면 實質換率의 變化는 없다. 實質換率을 정의하는 또 다른 방법은 交易財와 非交易財의 相對價格이다. 즉 交易財의 物價指數를 非交易財의 物價指數로 나누어 實質換率이라 규정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두가지 實質換率의 變化率을 本 政策實驗의 결과에 의하여 계산하면 첫번째 정의에 의한 값은 0.56인 반면 두번째 정의에 의한 값은 0.31이다[6].

4. 貿易收支效果

平價切上에 따른 產業別, 國別, 輸出·輸入의 變化를 살펴보자. 먼저 輸出을 보면 물량기준으로 모든 產業의 輸出이 감소한다. 그러나 그 감소율은 產業別로 상이하다. 換率變化에 대한 輸出物量과 輸出價格의 彈性値는 〈表 9〉에 수록되어 있다. 同表에서 알 수 있듯이 목재품, 가죽제품과 같이 輸出財供給이 價格에 탄력적인 產業에서 物量의 減少가 큰 반면 彈性値가 낮은 농업, 석유제품 및 서비스產業에서는 物量의 減少가 작아 海外價格基準에 의한 輸出單價의 變化를 보면 物量의 減少가 큰 產業일수록 輸出單價의 上昇이 커짐을 알 수 있다.

輸入의 내역을 同表에서 보면 예상되었던 바와 같이 대부분의 產業에서 물량기준으로 輸入이 증가한다. 그러나 광업, 섬유, 석유제품, 철 1차제품, 비철금속 1차제품의 輸入은 감소하고 있다. 이는 이들 產業이 주로 다른 產業의 投入物로 사용되기 때문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平價切上은 產業生產을 감소시키고 이는 上記의 產業製品에 대한 輸入需要를 감소시키게 된다. 輸入財의 價格은 거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輸入財의 供給이 매우 탄력적인 것으로 假定

6) 여기서 非交易財로는 〈表 1〉의 產業分類表 중 25, 26, 27, 29, 30을 지칭한다.

〈表 9〉 産業別 輸出入 物量 및 單價의 變化率

番號	産 業	輸 出		輸 入	
		物 量	單 價	物 量	單 價
1	농림수산업	-0.192	0.055	0.106	0.005
2	광업	-1.378	0.394	-0.089	-0.004
3	음식료 · 연초	-0.722	0.206	0.856	0.043
4	섬유 · 직물	-0.985	0.281	-0.307	-0.015
5	의복	-1.195	0.341	1.910	0.095
6	혁제품	-1.535	0.438	0.008	0.000
7	목제품	-1.594	0.455	1.341	0.067
8	종이 · 지제품	-0.913	0.261	0.235	0.012
9	인쇄 · 출판	-1.410	0.403	1.480	0.074
10	화학제품	-0.626	0.179	0.186	0.009
11	석유제품	-0.114	0.033	-0.120	-0.006
12	석탄제품	-0.709	0.203	0.560	0.028
13	고무제품	-1.304	0.373	1.502	0.075
14	비금속광물제품	-0.749	0.214	0.525	0.026
15	철 1차제품	-0.498	0.142	-0.171	-0.009
16	비철금속 1차제품	-0.712	0.203	-0.184	-0.009
17	금속제품	-0.927	0.265	0.810	0.041
18	일반기계	-0.886	0.253	0.483	0.024
19	전기기계	-0.728	0.208	0.722	0.036
20	전자 · 통신기계	-0.837	0.239	0.339	0.017
21	조선	-1.224	0.350	1.104	0.055
22	수송기계	-0.771	0.220	1.312	0.066
23	정밀기계	-1.014	0.290	0.695	0.035
24	기타제조업	-1.054	0.301	1.061	0.053
25	건축	-0.201	0.058	0.311	0.016
26	전기 · 가스 · 수도	-1.144	0.327	0.925	0.046
27	상업 · 음식 · 숙박	-0.374	0.107	0.772	0.039
28	운수 · 보관 · 통신	-0.759	0.217	0.722	0.036
29	금융 · 보험 · 부동산	-0.462	0.132	0.820	0.041
30	정부 기타서비스	-1.687	0.482	0.911	0.046
31	기타	-0.298	0.085	0.246	0.012

註 : 單價의 變化率은 海外價格을 기준으로 한 것임.

된 데 기인한다. 輸入物量이 증가하는 産業에서도 産業別로 그 증가율은 현저하게 다르다. 增加率이 큰 産業은 의복, 화학제품, 고무제품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은 주로 國內財와 輸入財間의 代替彈力이 크고 輸入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比重이 상대적으로 낮은 産業이다.

金額基準으로 본 國別, 産業別 輸出入의 變化는 〈表 10〉에 수록되어 있다. 國別로 輸出減少效果를 보면 全體輸出額減少 중 美國, 日本, 其他地域이 각각 38%, 16% 및 46%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이들 국가들에 대한 總輸出金額은 〈表 3〉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각각 35%, 15%, 50%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輸出金額의 감소는 國別로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總輸出額과 비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輸入의 增大效果를 보면 全體輸入增大 중 美國, 日本, 其他地域이 각각 31%, 43%, 27%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국가에 대한 總輸入金額의 比重은 21%, 24%, 55%를 보이고 있어 輸入金額의 減少率은 國別로 현저하게 차이를 보이고 있다. 美國, 日本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많은 輸入增大效果가 있는 반면 기타지역으로부터는 輸入增大效果가 작다. 이는 其他地域으로부터의 輸入에는 광업, 석유제품같이 價格變化에 대하여 輸入需要가 비탄력적인 産業이 큰 部分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國別 貿易收支效果를 종합하면, 平價切上 1%는 美國과의 貿易收支를 1億 2,400萬달러, 日本과는 8,400萬달러, 기타지역과는 1,400萬달러를 감소시키는 效果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5. 雇傭效果

平價切上은 産業別 生産에 영향을 주게 되며 이에 따라 産業別 雇傭에도 영향을 미친다. 雇傭에 미치는 영향은 勞動市場의 구조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만약 賃金이 勞動需要와 供給에 따라 신축적으로 조정되며 産業間의 勞動移動이 자유롭다면 平價切上은 産業間의 雇傭構造에만 영향을 미칠 뿐 全體雇傭에는 별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名目賃金의 신축성이 없고 産業間의 勞動移動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平價切上은 産業에 대한 수요구조를 바꾸게 되고 이는 雇傭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本 政策實驗에서는 長期的인 效果보다는 1~2년간의 中期的인 效果를 측정하려 하였기 때문에 勞動市場에 대해서 後者의 가정을 택하였다. 즉 名目賃金이 고정되어 있고 産業間 勞動移動이 가능치 않은 경우의 效果를 알아 보았는바, 그 결과가 〈表 11〉에 나타나 있다.

同表의 세번째 列에는 平價切上에 대한 産業別 雇傭의 彈性値가 기록되었는데 彈性値의 絶對値는 혁제품, 석유제품, 섬유·직물에서 큰 반면 대부분의 서비스産業은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른 雇傭人力의 감소는 넷째列에 표시되어 있으며, 同表에서의 순위는 雇傭減少效果가 큰 순으로부터 되어 있다.

〈表 10〉 貿易收支效果

(단위 : 萬달러)

番號	産業	美國		日本		其他		計	
		輸出	輸入	輸出	輸入	輸出	輸入	輸出	輸入
1	농림수산업	-6	142	-85	6	-19	219	-110	366
2	광업	0	-43	-40	-6	-14	-811	-54	-860
3	음식료 · 연초	-93	495	-179	23	-102	493	-373	1011
4	섬유 · 직물	-223	-8	-191	-101	-1333	-161	-1746	-271
5	의복	-2071	40	-897	118	-1786	65	-4755	223
6	혁제품	-404	1	-36	1	-158	2	-598	4
7	목제품	-71	40	-69	17	-85	147	-225	203
8	종이 · 지제품	-13	77	-7	19	-87	47	-107	143
9	인쇄 · 출판	-8	32	-5	66	-11	28	-23	126
10	화학제품	-162	178	-146	332	-463	266	-771	776
11	석유제품	-11	-39	-67	-26	-22	-127	-100	-192
12	석탄제품	-1	7	-3	17	-6	11	-10	35
13	고무제품	-696	52	-154	67	-957	44	-1807	164
14	비금속광물제품	-47	31	-69	134	-87	47	-203	213
15	철 1차제품	-179	-56	-208	-203	-358	-75	-745	-335
16	비철금속 1차제품	-13	-19	-21	-41	-61	-90	-96	-150
17	금속제품	-640	84	-74	206	-623	140	-1336	430
18	일반기계	-141	321	-22	1096	-129	598	-293	2016
19	전기기계	-230	137	-28	539	-205	212	-463	887
20	전자 · 통신기계	-1382	291	-251	639	-1030	182	-2663	1112
21	조선	-231	25	-20	111	-1882	258	-2133	394
22	수송기계	-350	494	-5	423	-183	372	-539	1289
23	정밀기계	-111	148	-49	390	-119	138	-280	676
24	기타제조업	-806	39	-132	98	-399	50	-1337	187
25	건축	-2	0	-2	0	-2	0	-5	1
26	전기 · 가스 · 수도	-68	1	-68	1	-68	1	-203	2
27	상업 · 음식 · 숙박	-245	149	-245	149	-245	149	-735	448
28	운수 · 보관 · 통신	-791	301	-791	301	-791	301	-2374	902
29	금융 · 보험 · 부동산	-15	51	-15	51	-15	51	-46	152
30	정부 기타서비스	-257	217	-43	31	-68	92	-368	340
31	기타	-6	6	-15	12	-21	98	-42	116
계		-9272	3190	-3938	4472	-11329	2746	-24539	10408
국별 비중		38%	31%	16%	43%	46%	27%	100%	100%

〈表 11〉 雇傭效果

順位	産　　業	雇傭彈性値	雇傭效果(名)	勞動比重
1	혁제품	-1.937	-1046	0.63
2	석유제품	-1.680	-151	0.08
3	섬유·직물	-1.672	-8375	0.49
4	철 1차제품	-1.416	-1246	0.28
5	고무제품	-1.404	-2036	0.65
6	전자·통신기계	-1.385	-3006	0.46
7	조선	-1.292	-1124	0.62
8	의복	-1.224	-3416	0.62
9	기타제조업	-1.215	-1822	0.54
10	화학제품	-1.206	-2724	0.34
11	비철금속 1차제품	-1.178	-306	0.42
12	금속제품	-1.029	-1297	0.52
13	정밀기계	-0.903	-370	0.53
14	종이·지제품	-0.810	-543	0.44
15	전기기계	-0.579	-567	0.39
16	건축	-0.539	-237	0.16
17	목제품	-0.443	-319	0.54
18	수송기계	-0.424	-352	0.38
19	운수·보관·통신	-0.398	-2441	0.46
20	광업	-0.294	-420	0.68
21	상업·음식·숙박	-0.261	-7073	0.25
22	비금속광물제품	-0.173	-215	0.41
23	금융·보험·부동산	-0.088	-403	0.30
24	인쇄·출판	0.006	4	0.67
25	일반기계	0.021	32	0.47
26	농림수산업	0.038	1269	0.14
27	정부 기타서비스	0.126	2517	0.76
28	음식료·연초	0.138	487	0.23
29	전기·가스·수도	0.360	2893	0.56
30	석탄제품	0.546	98	0.45

註: 기타산업은 勞動投入이 불분명하여 雇傭效果에서 제외시켰음.

V. 政策的 示唆點 및 向後 硏究課題

本稿에서의 분석결과는 그동안 平價切上이 産業別로 가져오는 효과에 대한 논의를 대체로 지지하고 있다. 輸出型産業에서는 生産이나 雇傭의 減少效果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內需型産業에서는 그 효과가 작을 뿐 아니라 일부 산업에서는 生産과 雇傭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 價格效果의 측면에서 보면 수입된 原資材를 많이 사용하는 산업은 價格引下要因은 큰 반면 수입된 원자재 사용 비중이 낮은 서비스나 農林水産業 등은 價格引下效果가 작다.

이와 같은 결과는 模型에서 전제되었던 여러가지 假定下에서 성립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모든 産業에서 완전경쟁이 있어야 하며 소비자의 需要函數는 Cobb-Douglas函數 형태이며, 生産者의 生産函數는 1次投入物에 대해서는 CES函數, 中間投入物에 대하여는 Leontief函數이어야 한다. 또한 勞動과 資本의 代替彈力性, 國內財와 輸入財의 代替彈力性, 輸出需要函數, 輸入供給函數 등에 대한 彈性値의 결정도 이와 같은 假定 중의 하나라고 하겠다. 더욱이 海外景氣 變動에 따른 輸出需要나 輸入供給函數라든지 통화량조절, 재정지출의 증대에 따른 總支出 등과 같은 外生變數는 불변인 것으로 假定하였다.

따라서 本稿에서의 결과가 현실에서 그대로 실현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本稿와 같은 政策實驗의 의의는 앞으로의 현상을 예측한다기보다는 政府의 政策까지 포함한 經濟의 다른 제반요인이 동일하다고 假定했을 때 平價切上이 가져올 효과가 무엇인가만을 추출해 내는 데 있다 하겠다. 예를 들어 本 政策實驗의 결과에 의하면 輸入된 原資材나 部品을 많이 사용하는 産業에서는 상당히 큰 價格下落要因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平價切上이 진전되고 있는 88년 기간중 이들 産業의 物價는 하락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本稿에서의 假定 중 그 어느 것이 현실과 다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다. 國際原資材價格의 上昇, 賃金上昇, 獨寡占的 市場構造 등이 그 원인일 수도 있으며 또한 실질적인 輸入을 억제하여 平價切上에 따른 輸入價格의 하락을 저해하는 각종 非關稅的인 貿易障壁이 그 원인일 수도 있다.

本稿에서의 분석결과는 換率運用을 둘러싼 政策論議뿐만 아니라 産業政策, 物價政策 등 각종의 정책결정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産業政策的 측면에서 보면, 平價切上은 勞動集約的이며 輸出指向的인 혁제품, 섬유·직물, 고무제품, 의복, 전자, 조선산업 등의 生産을 低下시키고 이는 바로 雇傭의 減少로 연결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이들 産業 중에서도 技術革新에 의한 生産性의 향상속도가 빠른 産業은 이와 같은 平價切上의 부정적 영향을 극복할 수 있겠으나 이와 같은 대응을 못하는 일부의 産業은 이미 많은 타격을 받고 있거나 앞으로 점점 더 競爭力의 弱化가 예상된다. 따라서 平價切上에 따른 競爭力 弱化産業에 대한 政策對應이 필요하다. 즉 産業·貿易政策的인 측면에서의 정책대응이 따르지

못하면 本 政策實驗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은 一部産業의 급속한 衰退와 失業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物價政策的인 측면에서 볼 때 平價切上에 따른 價格引下要因이 반영되지 않고 있는 産業에서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만약에 價格引下要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獨寡占的 企業間의 談合 등의 원인에 의하여 價格引下가 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되면 이에 대한 公正去來次元의 政策對應이 필요하다.

平價切上期의 産業構造調整이 어떻게 될 것이냐는 데 대한 의문이 각종의 政策論議에서 흔히 제기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해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本稿와 같은 模型을 통한 분석뿐만 아니라 보다 폭넓은 여건변화를 감안한 産業別 發展시나리오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技術發展과 같은 중요한 변수가 사상되었기 때문에 本稿에서의 政策實驗의 결과가 현실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 또한 國際貿易環境의 變化, 勞使關係 등과 같은 산업의 발전에 핵심적인 영향을 주는 변수를 불변으로 假定하였기 때문에 本稿와 같은 模型을 통한 분석은 현실을 예측한다는 측면에서 많은 한계점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즉 本稿에서의 分析結果와 本稿에서 사상되었던 주요변수를 함께 고려한 産業의 發展展望이 연구되어야 하며, 효율적 産業政策의 展開는 이와 같은 바탕위에서 가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政策實驗에서 사용된 模型의 豫測力 改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첫째, 模型의 골격이라 할 수 있는 産業關聯表의 현실성을 높인다. 本政策實驗에서는 1985년의 産業關聯表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미래을 추정하고자 하는 政策實驗의 現實性을 저하시킨다. 이와 같은 문제는 일반적으로 産業關聯表가 2~3년후에야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데 그 根源이 있다고도 볼 수 있으나 暫定推定値를 활용하는 등 이를 보완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둘째, 第3章에서 언급된 각종 彈性値의 現實性을 높이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는 彈性値에 대한 計量經濟的인 推定이 꾸준히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輸出需要函數의 産業別 彈力性 및 輸入財와 國內財의 代替彈力性과 같이 模型의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係數들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있는 向後의 研究가 있어야 할 것이다.

▷ 參 考 文 獻 ◁

郭泰元, 「開發戰略과 投資誘因政策 : 一般均衡模型을 이용한 시뮬레이션分析」, 『韓國開發研究』, 第5卷 第4號, 1983 겨울호, 韓國開發研究院, 1983. 12.

金栽元, 「韓國製造業에 있어서 中小企業의 役割과 生産函數」, 『韓國開發研究』, 第2卷 第4號, 1980 겨울호, 韓國開發研究院, 1980. 12.

李元暎 · 張晩浚, 『韓國經濟의 産業貿易模型』 政策研究資料 89-02, 韓國開發研究院, 1989. 3.

韓國銀行, 『1985년 産業關聯表 作成報告』,

1988. 6.
_____, 「1985년 産業關聯表(Ⅰ)」, 1988. 8.
_____, 「1985년 産業關聯表(Ⅱ)」, 1988. 8.
_____, 「1986년 國民計定(確定)」, 1987. 12.
_____, 「1987년 國民計定(確定)」, 1988. 12.

Ballentine, Gregory and Wayne R. Thirsk, *The Fiscal Incidence of Some Community Experiments in Fiscal Federalism: Technical Report*, Community Services Analysis Division, Canada Mortgage and Housing Corp., Ottawa: Minister of Supply and Services, 1979.

Boadway, Robin W. and John M. Treddenick, "A General Equilibrium Compution of the Effects of the Canadian Tariff Structure", *Canadian Journal of Economics*, August 1978.

Deardorff, Alan V. and Robert M. Stern, *The Michigan Model of World Production and Trade: Theory and Application*, The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Press, Cambridge, Massachusetts, 1986.

_____, "A Disaggregated Model of World Production and Trade: An Estimate of the Impact of the Tokyo Round," *Journal of Policy Modeling*, 1981.

Dervis, Kemal, Jaime de Melo, and Sherman Robinson, *General Equilibrium Models for Development Policy*,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2.

Dervis, Kemal, Brian Parmenter, John Sutton, and D. Vincent, *ORANI: A Multi-sectoral Model of the Australian Economy*, Amsterdam: North-Holland, 1982.

Gunning, Jan W, G. Carrin, and Jean Waelbroeck, "Growth and Trade of Developing Countries: A General Equilibrium Analysis," Discussion Paper 8210, Centre d'Economie Mathematique et d'Econometrie, Universite Libre de Bruxelles, 1982.

Harberger, Arnold C., "The Corporation Income Tax: An Empirical Appraisal," in Tax Revision Compendium, House Committee on Ways and Means, 86 Congress, 1 Session, 1959. 1.

Keller, Wouter J., *Tax Incidence: A General Equilibrium Approach*, Amsterdam: North-Holland, 1980.

Manne, Alan S. and Paul Preckel, "A Three-Region Intertemporal Model of Energy, International Trade and Capital Flows," *Operations Research*, Stanford University, March 1983.

Nam, Sang-Woo, "The Role of Exchange Rate Policy in Four East Asian Countries," Internal Discussion Paper, Asia Regional Series, No. 15, The World Bank, May 1988.

Piggott, John, "A General Equilibrium Evaluation of Australian Tax Policy,"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London, 1980.

Serra-Puche, Jaime, "A General Equilibrium Model for the Mexican Economy," Presented at the NBER Conference on Applied General Equilibrium, San Diego, CA, August 24-28, 1981; to appear in Applied General Equilibrium Analysis, Eds.: Herbert Scarf and John B. Shoven,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4.

Whalley, John, "An Evaluation of the Recent Tokyo Round Trade Agreement Using General Equilibrium Computational Methods," *Journal of Policy Modeling*, November 1982. 4(3).

〈附表 1〉 勞動과 資本의 代替彈力性

番號	産　　業	MICHIGAN	金 栽 元
1	농림수산업	0.787	-
2	광업	1.541	-
3	음식료 · 연초	1.746	0.820
4	섬유 · 직물	0.963	1.260
5	의복	1.191	1.260
6	혁제품	1.300	1.260
7	목제품	1.000	0.060
8	종이 · 지제품	1.626	1.090
9	인쇄 · 출판	0.810	1.090
10	화학제품	1.098	1.610
11	석유제품	10.010	1.610
12	석탄제품	10.010	1.610
13	고무제품	1.647	1.610
14	비금속광물제품	1.255	0.790
15	철 1차제품	1.382	0.750
16	비철금속 1차제품	1.350	0.750
17	금속제품	0.943	0.820
18	일반기계	0.677	0.820
19	전기기계	0.521	0.820
20	전자 · 통신기계	0.521	0.820
21	조선	0.344	0.820
22	수송기계	0.344	0.820
23	정밀기계	1.272	0.820
24	기타제조업	1.272	-
25	건축	2.266	-
26	전기 · 가스 · 수도	1.541	-
27	상업 · 음식 · 숙박	1.105	-
28	운수 · 보관 · 통신	2.266	-
29	금융 · 보험 · 부동산	1.457	-
30	정부 기타서비스	1.657	-
31	기타	1.087	-

註 : ORANI에서는 노동과 자본의 대체탄력성은 모든 산업에서 0.5로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였음.

金融構造變化와 通貨制度의 安全性

- 新貨幣經濟學 및 그 示唆點에 대한 考察 -

左 承 喜

本稿에서는, 최근 金融自律化·金融革新의 진전과 때를 같이하여, 不換紙幣制度의 만성적 인플레問題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새로운 支拂制度를 주창하는 "新貨幣經濟學派"의 이론 및 그 시사점을 검토하였다.

同 學派는 貨幣의 計算單位와 支拂手段機能이 분리되고 計算單位는 實物財貨에 의해 측정되며, 支拂手段機能은 交換會計制度를 통해 投資基金銀行計定의 자동이체에 의해 수행되는 支拂制度를 제안하고 있는데, 投資計定의, 計算單位인 實物財貨로의 交換性은 인정되지 않는다. 物價安定은 計算單位의 價値安定을 통해 도모되고, 支拂手段의 需要供給과 物價와의 相關關係는 부재한다.

貨幣의 두 기능의 分離可能性이나 同 支拂制度의 自生力 측면에서의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특히 同 學派의 投資基金銀行制度는 사실상 市場價格에 의한 交換制度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支拂制度의 安全性提高 측면에서 현재의 銀行制度보다도 유리하다는 점 등 同 學派의 긍정적 공헌에 대해서도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I. 序 論

최근 우리나라의 金融産業은 金融의 自律化라는 전례없이 새로운 金融環境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金融産業의 競爭促進과 이를 통한 金融의 效率性을 제고하기 위하여 貸出金利를 중심으로 한 金利의 自由化가 단행되었고 金融市場의 國際化가 진전되고 있으며, 나아가 金融機關間의 業務領域調整을 포함하는 金融産業의 構造改編方向이 다각도로 논의, 구상되고 있다. 이러한 金融自律化의 진전은, 다시 말해 기존의 과다했던 金融産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金融産業의 業務自律性을 높이는 제반 제도적 개선은 궁극적으로 金融機關間의 경쟁을 심화시킴으로써 새로운 金融技法, 새로운 金融商品의 導入 등

筆者: 本院 硏究委員

* 草稿를 읽고 유익한 논평을 해준 本院의 柳潤河, 崔範樹 박사와 원고정리에 노고가 컸던 趙庸斗, 劉珍 연구원과 林明姬 연구조원에게 감사를 드린다.

金融革新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金融自律化方向은 逆으로 金融自律化와 金融革新이 궁극적으로 金融産業을 어떻게 변모시킬 것이냐에 대한 이해에 바탕을 두고 논의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장기적으로 볼 때 自律化된 金融環境下에서의 金融産業 및 通貨制度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金融自律化와 金融革新이 金融의 效率性提高에 기여할 수 있다 하더라도 金融産業의 構造에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함으로써 오히려 金融의 安全性·健全性을 해치거나 通貨制度의 불안을 초래할 위험성은 없는가? 이러한 질문은 금후의 金融自律化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 필수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문제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貨幣經濟의 기본틀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와도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보다 앞서 金融自律化措置를 추진해 온 美國을 중심으로 한 先進國의 金融自律化·金融革新의 양상을 배경으로 위와 같은 질문에 대한 해답을 구하고자 하는 노력이 최근 활발히 전개되고 있음은 근대적 金融經驗이 일천한 우리로서는 다행한 일이라 하겠다.

우리나라 經濟의 開放化와 世界金融의 통합이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先進國의 金融革新·自律化의 전개양상이 우리에게는 요원한 장래의 일이라고 치부할 수만은 없다 하겠다. 先進國의 經驗과 이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이론의 전개에 대한 이해를 통해 우리나라 金融産業의 미래상을 그려보고 동시에 문제점이 예상된다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강구하고자 하는 노력을 경주하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사료된다.

本稿의 목적은, 최근 급속히 진전되어 온 先進國의 金融自律化·金融革新經驗을 바탕으로 하여, 선진화된 自由金融制度의 미래상을 정립해 보고자 하는 일단의 새로운 이론적 전개의 내용을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금후 金融自律化方向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하는 데 있다.

최근 美國을 중심으로 한 先進國에서는 金融自律化의 진전과 그에 따른 새로운 金融革新이, 市場性이 높은 高收益證券을 기초로 市場利子率을 附利하는 支拂手段의 등장을 가능케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 支拂制度의 變化可能性이 예견됨과 동시에 通貨量의 의미 자체가 모호해지고 通貨量規制의 效率性이 저하되는 등 金融規制緩和의 여파가 광범위하게 감지되고 있다. 이러한 與件變化에 따라 學界에서도 現 貨幣經濟의 기본틀에 대한 재검토가 새로운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

우선 Milton Friedman을 중심으로 하는 通貨論者들의 접근방법의 탈제도적, 일반적 타당성에 대해 강한 회의가 제기되었다. 通貨의 需要供給理論을 근간으로 하는 通貨論者들의 이론은, 근본적으로 政府의 諸般金融規制措置에 의해 支拂手段(means of payment)으로서의 不換紙幣(fiat money)에 대한 需要가 창출되는 現支拂制度下에서만 타당성을 가지며, 따라서 金融自律化가 크게 진전되고 支拂制度에 새로운 변화가 생기면 同 理論은 타당성을 잃게 된다고 본다. 이러한 시각에서 새로운 이론을 전개하고 있는 일단의 經濟學者들로서는 政府規制의 需要創出機能을 가장 명시적으로 논의한 Wallace

(1983)를 비롯하여, 새로운 金融革新을 수용하면서 동시에 不換紙幣制度下에서의 인플레 問題를 완전히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自由放任的 支拂制度를 주장하는 Black(1970), Fama(1980, 1983), Hall(1982a, 1982b), Greenfield and Yeager(1983, 1986) 및 Yeager(1985)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 그룹의 이론은 최근 "新貨幣經濟學(New Monetary Economics)"으로 통칭되고 있다.

本稿에서는 이러한 新貨幣經濟學派의 이론과 이와 관련하여 전개되고 있는 이론적 논쟁을 整理, 考察하고[1] 특히 同 學派의 支拂制度改革案을 중점적으로 고찰함으로써, 金融自律化, 金融革新에 따른 支拂制度의 不安可能性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기로 하겠다.

第Ⅱ章에서는 新貨幣經濟學派가 등장하는 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金融環境變化의 특징을 정리하고 第Ⅲ章에서는 同 學派의 理論과 支拂制度改革案의 內容을 考察하고, 同 學派에 대한 평가를 시도한다. 第Ⅳ章에서는 Ⅲ章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새로운 金融環境下에서 支拂制度安全性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第Ⅴ章에서는 韓國의 金融自律化方向에 대한 시사점을 정리함으로써 결론에 대신하고자 한다.

1) 朴英哲(1984)도 通貨政策의 有效性問題를 포함한 金融革新의 여파에 대한 논의와 함께 同 學派의 이론에 대해 부분적인 고찰을 시도하고 있다. 그는 同 學派에 속하는 個別學者들의 1982년까지의 주장들을 소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本稿는 전체그룹의 이론을 묶어서 정리하면서 그 이후 同 學派와 관련하여 전개되어 온 논쟁을 소개하고, 특히 支拂制度의 安全性과 관련된 示唆點을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다소 중복이 없지 않지만 서로 補完的인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Ⅱ. 豫備的 論議

1. 旣存 支拂制度의 特徵 및 問題點

전통적으로 銀行이 餘他 金融機關과 다르다는 인식은 銀行이 支拂手段(means of payment)인 要求拂預金(Demand Deposit)을 창출함으로써 支拂制度(payment system)上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현실인식에서부터 연유한다(Corrigan, 1982).

要求拂預金이란 주지하는 바와 같이 預金主의 要求(혹은 支拂命令書)에 따라 언제든지 사전에 약정된 預金의 名目價値에 해당하는 금액을 通貨(high-powered 혹은 outside money)로 지급할 것을 약속한 銀行의 負債契約을 의미한다. 同 契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預金의, 固定名目價値에 의한 通貨交換性(currency convertibility)이 보장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預金主나 預金主의 支拂命令書(수표)를 去來代金으로 인수한 사람은 해당 예금의 價値變動을 우려할 필요가 없이 항상 사전에 약정된 名目價値에 해당되는 通貨로의 교환을 보장받게 된다. 이러한 要求拂預金이 支拂手段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은 궁극적으로 固定價格에 의한 通貨로의 교환성이 보장되기 때문이며, 銀行은 同 交換性을 보장하기 위하여 政府가 발행하는 지폐를 支拂準備金으로 보유하거나 아니면 환금성이 높은 資産을 보유할 필요가 발생하게 된다. 政府發行紙幣는 과거 금본위제도하에서의 금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銀行業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銀行의 負債支拂義務가 銀行의 實際資産價値와 무관하다는 점이다. 銀行의 負債가 要求拂預金 등의 단기성부채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 반면에, 資産은 일반적으로 시장성이 극히 제한되어 있는 中長期貸出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銀行의 貸出은 사전에 약정된 名目價値로 그 가격이 고정되고 있기는 하나 貸出債務者의 投資計劃의 성패에 따라 그 실제 회수가능액이 결정될 뿐만 아니라, 시장성이 없기 때문에 貸出期間滿了前에, 필요시, 市場에서 대출채권을 매각하여 쉽게 환금할 수 있는 길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만일 中央銀行의 再割引貸出이나 預金保險制度가 없는 상황하에서는 銀行은 預金支給要求가 일시에 몰릴 경우, 100%의 支拂準備金을 보유하지 않는 한 불가피하게 預金支給不能事態에 직면하게 될 수밖에 없다 하겠다.

이와 같이 銀行의 要求拂預金을 주축으로 한 現 支拂制度의 불안전성은 실제 실현가능한 資産價値와는 무관하게 固定名目價格에 의한 要求拂預金의 紙幣交換性을 보장하는 銀行業務의 기본적인 특성에서 연유한다 할 수 있다.

2. 새로운 金融環境의 展開와 그 特徵

金融制度, 通貨制度 측면에서 볼 때, 美國을 중심으로 한 先進國의 金融自律化·金融革新의 진전에 따른 가장 중요한 金融構造上의 변화는, 前節에서 논의한 기존의 支拂制度에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변화라 하겠다.

1971년에 최초로 美國의 金融市場에 도입된 短期金融市場相互基金(Money Market Mutual Funds: MMMFs)을 필두로 하여 1977년에 Merril Lynch社에 의해 개발된 現金管理口座(Cash Management Account: CMA)등은 證券會社가 少額投資家들의 자금을 모아 財政證券 등 각종 受益證券에 투자하여 얻는 수익을 매달 배당금의 형태로 배분하는 開放型(open ended) 高受益投資計定이면서도 동시에 제휴은행에 설정된 관련 要求拂預金計定을 통해 수표발행이 허용됨으로써 支拂手段의 創出機能도 겸하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投資計定은 會社에 따라 여러가지 상이한 명칭으로 판매되고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高受益을 보장하기 때문에 고객에게는 銀行의 無利子 要求拂預金이나 低受益 貯蓄商品에 비해 유리한 資産運用手段이 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결제계정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결제수단으로서도 要求拂預金보다 유리하다 하겠다. 물론 현재로서는 이러한 投資計定을 이용해 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권리가 제휴은행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어 그 競爭力에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기존 支拂制度의 중추를 이루는 銀行의 要求拂預金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한편 이러한 非銀行 投資 및 證券會社들의 金融革新에 자극된 美國의 銀行들도 새로운 金融商品의 개발을 통해 대응하고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은 美國의 金利自由化措置에 의해 크게 고무되고 있다. 銀行의 대응 신상품 개발을 통한 金融革新形態는 대체로 要求拂預金에 대한 利子支給制限措置 때문에 貯蓄性預金 形態에 높은 市場金利를 附利하면서 제한적이나마 수표발행권을 부여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신상품으로서는 1972년

에 개시된 NOW Accounts, 1974년에 信用組合에 의해 도입된 Share Drafts Accounts, 1981년에 도입된 Sweep Accounts, 1982년에 도입된 MMDA(Money Market Deposit Accounts), 1983년에 개시된 Super-NOW Accounts 등을 들 수 있으며 Sweep Accounts의 경우는 MMMFs와 연계운용되고 있다[2].

여기서 특기할 점은 銀行에 의해 발매되는 商品은 기본적으로 預金契約의 형태를 취함으로써 사전에 一定水準의 금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同 預金에 대한 對應資産은 여전히 市場性이 낮은 貸出債券이 대종을 이루고 있는 반면 MMMFs의 경우는 最低金利를 보장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나, 預金의 경우처럼 사전에 利子水準이 규정되지 않고 있으며, 對應資産도 시장성이 높은 短期受益證券이 대종을 이룬다는 점이다.

어쨌든, 이와 같이 銀行과 證券 및 投資會社間의 業務領域區分이 모호해지고 支拂手段의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要求拂預金과 餘他新種商品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등의 새로운 金融環境의 전개는 貨幣金融論上에 몇가지 중요한 사고의 전환을 초래하였다.

우선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通貨의 개념정의 및 측정문제로서 새로운 金融商品(MMMFs든 銀行의 새로운 預金이든)이 去來計定(Transaction Account)의 機能과 投資(Investment Account)나 貯蓄(Savings Account)機能을 동시에 수행하기 때문에 통상의 M_1 혹은 M_2의 정의 및 측정에 혼란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通貨에 대한 정의가 모호해짐에 따라 中央銀行의 通貨量規制政策의 수립 및 집행에 어려움이 따르게 되고 나아가 이러한 문제는 通貨主義者들이 주장하는 通貨量規制 중심의 通貨政策의 有效性에 대해 회의를 제기하게 되었다[3].

둘째로, MMMFs형태의 投資計定의, 支拂制度上의 잠재적 역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대두되게 되었다. 前述한 바와 같이 MMMFs의 投資計定의 價値는 사전에 名目價額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고 投資對象證券의 市場價格變動에 따라 같이 변동하게 되며, 한편 投資對象證券은 높은 시장성을 가지기 때문에 投資者의 投資回收要求에 부응하여 언제라도 換金할 수 있다. 여기서 만일 MMMFs가 현재와 같은 제휴은행의 관련 要求拂預金을 통한 수표발행을 지양하고 직접 MMMFs의 投資計定에 수표발행을 허용할 경우, 同 投資計定을 기초로 한 支拂制度는 현재의 銀行要求拂預金 중심의 支拂制度보다 더 안전하고 효과적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점이 새롭게 인식되고 있다[4].

新貨幣經濟學派는 이러한 金融環境變化를 적극적으로 이론내에 수용하고 있으며, 특히 新理論의 銀行模型을 현재의 MMMFs에서 찾고 있다. 이들은 後述하는 바와 같이 完全自律化된, 尖端技術에 기초한 金融技法이 지

2) 우리의 관심은 美國의 金融革新의 배경이나 그 구체적 내용 혹은 個別 商品의 내용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 특성 및 흐름의 이해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논의를 간략하게 하였음. 美國의 金融革新의 背景, 現況 및 個別商品에 대한 특성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全國銀行聯合會(1986), 朴英哲(1984)의 부록 및 Downes and Goodman(1985) 등을 참조.

3) 通貨量定義의 어려움과 관련하여 MMMFs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으로는 Stern et al. (1984) 및 Lown(1987) 등을 참조하기 바라며, 金融革新에 따른 通貨政策의 有效性에 대한 논의는 朴英哲(1984) 및 거기에서 인용된 文獻 등을 참조하기 바람.

4) 要求拂預金과 相互基金(Mutual Fund)의 성격의 차이와 前節에서 논의한 現 支拂制度의 不安定性의 원인을 이해한다면 이러한 인식의 논리적 배경은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 章에서 詳述하도록 하겠음.

배하는 金融制度에 있어서 銀行은 開放型 相互基金(Open Ended Mutual Funds)과 다를 바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5].

Ⅲ. 新貨幣經濟學: 새로운 通貨制度의 摸索

1. 新貨幣經濟學派 理論의 特徵

新貨幣經濟學(New Monetary Economics)이란 용어는 Hall(1982b)에 의해 최초로, Black(1970), Fama(1980), Hall(1982a), Sargent and Wallace(1982), Greenfield and Yeager(1983)[6] 등의 貨幣理論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되었으며 그후 Brunner and Meltzer(1985)와 Cowen and Kroszner (1987)에 의해 고유명사의 자리를 굳히게 되었다[7]. 新貨幣經濟學派의 이론은 金融을 보는 시각에 있어 Tobin(1963)의 이론을 따르고 있으며 貨幣理論의 전개에 있어 여러가지 혁명적 시사점을 주고 있는데, 기존의 貨幣理論, 특히 貨幣數量說이나 流動性選好說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Hall, 1982b). 이하에서는 同 理論의 주요 특징을 간략하게 정리해보기로 하겠다[8].

우선 기존의 貨幣理論은 근본적으로 金融媒介活動(private intermediation)에 가해지는 金融規制의 산물이며(Wallace, 1983), 金融制度가 변화함에 따라 기존이론의 타당성도 영향을 받게 된다고 본다. 기존의 貨幣는 政府의 金融規制의 산물(Hall, 1982b)이기 때문에 完全自由化된 自由放任의 金融構造下에서는 현재와 같은 의미의 貨幣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기존의 貨幣理論, 예를 들어 貨幣數量說이나 流動性選好理論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Black, 1970).

둘째로, 自由放任下의 선진화된 金融制度下에서는 銀行의 交換會計制度(accounting system of exchange)서비스가 중추적인 支拂手段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同 서비스活動은 貨幣理論展開의 유용한 기초가 된다고 본다(Fama, 1980).

셋째로, 전통적인 貨幣의 기능으로 이해되고 있는 計算單位와 支拂手段의 기능은 반드시 "貨幣(money)"라고 불리는 단일실체에 의해 수행될 필요는 없다고 본다(Black, 1970; Fama, 1980; Hall, 1982a; Greenfield and Yeager, 1983). 計算單位란 순수한 사회관습에 속한다고 보기 때문에(Hall, 1982a; Greenfield and Yeager, 1983), 추상적으로 정의될 수도 있으며 실물재화에 의해 정의될 수도 있다. 支拂手段은 計算單位와 분리될 수 있으며, 단순히 銀行의 金融資產에 대한 所有權形態를 취할 수 있다고 본다.

넷째로, 貨幣의 計算單位와 支拂手段機能의 분리는 計算單位의 價値變化에 따른 인플

---

5) 相互基金銀行(Mutual Fund Banking)의 의의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Goodhart(1988, Chapter 7)를 참조하기 바람. 本稿에서 고찰하고자 하는 文獻들은 일반적으로 同 概念을 銀行의 미래상으로 이해하고 있음.

6) Greenfield and Yeager(1983)는 1982년에 이미 Working Paper 형태로 출판이 되었기 때문에 Hall (1982b)에 의해 고찰될 수 있었음.

7) 특히 Cowen and Kroszner(1987)는 학설사적 고찰을 통해, 19세기 초반에서부터 新貨幣經濟學派的인 사고를 하는 선구적 學者들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들도 新學派들과 마찬가지로 특히(後述하는 바와 같이) 支拂手段과 計算單位機能을 겸하는 貨幣를 오히려 經濟均衡에 대한 교란요인으로 파악하였다고 주장한다.

8) 이하에서의 論議의 일부는 Cowen and Kroszner (1987)를 참조하였다.

레·디플레問題를 완전히 해소할 수 있다고 본다. 즉 計算單位만을 정확하게 정의함으로써, 價格의 決定(price determinacy)을 도모할 수 있고 物價를 안정시킬 수 있다고 본다(Fama, 1980; Hall, 1982a; Greenfield and Yeager, 1983).

다섯째로, 完全自由化된 金融制度下에서 銀行 및 金融部門은 단순히 支拂手段機能만을 하는 去來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기 때문에 物價 및 實物活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貨幣的 要因에 의한 巨視經濟問題는 사라지게 된다(Fama, 1980).

여섯째로, 政府의 金融規制가 없는 自由放任金融活動(Laissez-Faire Banking)을 선호하며(Fama, 1980), 福祉(welfare) 측면에서 自由放任金融制度가 現 金融規制制度보다 유리하다고 본다(Sargent and Wallace, 1982).

마지막으로, 同 學派는 최근 새로이 활기를 띠고 있는 自由金融學派(Free Banking School)와 같이 銀行活動의 완전한 자유를 선호하면서도 몇가지 중요한 점에서 이들과는 크게 다르다.

우선 自由金融學派는 計算單位와 支拂手段을 겸하는 전통적인 貨幣의 기능을 수용한다. 個別銀行은 자기상표가 표시된 貨幣를 발행하며 貨幣超過發行(인플레)可能性은, 각 銀行間의 貨幣利用者로부터의 좋은 평판(reputation)을 유지하고자 하는 自由競爭에 의해 억제된다고 본다(Klein, 1975; Hayek, 1984; White, 1984a). 나아가 實物貨幣나 政府發行不換紙幣 혹은 가장 평판이 좋은 銀行貨幣와 같은 중심화폐(a dominant money)가 經濟의 計算單位役割과 최종적 支拂手段으로 기능하며, 銀行(預金)貨幣의 同 中心貨幣로의 궁극적 교환성이 보장되고 각 銀行貨幣間에는 固定換率이 아닌 變動換率이 지배한다(Klein, 1975; Selgin and White, 1987)[9].

반면에 新貨幣經濟學派는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기존 화폐의 計算單位와 支拂手段機能을 분리하며, 銀行의 支拂手段發行과 物價와의 관계를 단절하고자 한다. 나아가, 後述하는 바와 같이 銀行貨幣의 어떤 형태로든지의 궁극적 교환성은 인정하지 않는다. 즉 支拂手段과 經濟의 計算單位間의 교환성은 인정하지 않는다[10].

이와 같이 自由金融學派는 金融規制의 완전한 철폐를 통해 政府가 독점하고 있는 화폐발행권을 일반은행에도 허용하여 각종 화폐간의 自由競爭을 도모토록 하는 등 金融活動의 自由競爭을 선호하며, 新貨幣經濟學派는 더 나아가 기존 支拂制度自體의 새로운 개혁을 주창하는데, 특히 支拂手段으로서의 實物貨幣는 銀行의 會計制度에 의해 대체된다고 본다. 여기서, 自由金融學派의 경우는 交換性(convertibility)의 유지가 필수적인 반면 新學派의 경우는 交換性 自體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2. 新貨幣經濟學派 支拂制度의 內容

Tobin(1963)은 銀行과 非銀行金融機關의 차이는 정도의 차이일 뿐 種類의 차이가 아니며, 정도의 차이도 通貨性 銀行負債 때문이 아니고 단순히 銀行에 대한 支拂準備規制와 利子率規制에 기인한다고 주장하였는데,

9) 추후 自由金融學派에 대해 좀더 자세하게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음.
10) 이 점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바로 다음 節을 참조.

新貨幣經濟學派는 바로 이러한 시각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다.

Black(1970), Fama(1980, 1983), Hall(1982a, 1982b, 1983), Greenfield and Yeager(1983, 1986) 및 Yeager(1985) 등은 技術 및 金融革新이 고도화된 경제에 있어서는, 현재와 같은 實物形態의 교환의 媒介手段은 사라지고 모든 去來는 金融機關의 복식부기 방식에 의한 自動計定移替에 의해 결제된다고 상정한다. 이러한 去來서비스는 交換會計制度(Accounting System of Exchange)(Fama, 1980)라 칭할 수 있는데 同 서비스를 제공하는 金融機關은 오늘날의 銀行이라기보다는 오히려 投資基金(Investment Funds)과 유사할 것으로 상정한다. 즉 政府의 金融規制가 없어지면 Tobin이 지적한 바와 같이 현재와 같은 銀行, 非銀行의 구별은 사라지고 兼業主義(Universal Banking)에 의한 金融이 일반화된다고 본다. 이들은 資源配分의 왜곡을 초래하는 金融規制의 철폐가 바람직하다고 보고, 나아가 오늘날의 만성적 인플레問題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不換紙幣制度를 철폐하고 새로운 支拂制度를 도입할 것을 주장한다.

새로운 支拂制度에 대한 가장 구체적인 구상은 Hall(1982a)과 Greenfield and Yeager(1983)에 의해 제시되었으며 後者는 새로운 支拂制度의 명칭을 Black, Fama 그리고 Hall의 두음자를 딴 BFH 制度(BFH System)라고 명명하였다. 이하에서는 個別著者들의 제안보다도 그룹에 공통적인 요소들을 중심으로 同 學派의 支拂制度構想을 요약해 보기로 한다.

우선 貨幣經濟에 있어서 인플레가 불가피한 것은 무엇보다도 貨幣가 計算單位(unit of account)와 支拂手段(means of payment)의 기능을 겸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이 두 기능이 분리되는 金融 및 支拂制度를 제안한다[11]. 따라서 이러한 制度下에서는 현존하는 의미의 貨幣는 존재하지 않는다. 物價를 安定시키기 위해 計算單位는 價格變動이 낮은 特定實物財貨나 實物財貨의 바구니의 一定單位로 정의함으로써, 오늘날과 같은 支拂手段으로서의 貨幣의 需要供給變動에 따른 物價變動可能性을 배제시킨다. 物價란 기본적으로 價値尺度가 되는 計算單位의 餘他財貨들에 대한 相對價格(相對的 交換比率)을 의미하기 때문에 대표성이 있는 實物財貨들의 바구니의 一定單位로 計算單位가 고정된다면 物價는 安定化될 수 있다고 본다[12].

한편 이 제도하에서는 銀行은 사실상 지금의 投資基金(Investment Funds)과 동일하게 되고 證券業과 銀行業의 분리는 사라진다. 모든 일상의 去來는 銀行이 보유하는 投資計定(例: MFs나 Share Drafts)의 자동이체를 통해 결제되고, 현재와 같은 紙幣나 要求拂預金은 존재하지 않는다. 현존하는 실체적

11) 현재의 貨幣制度는 計算單位가 支拂手段에 의해 정의되기 때문에 支拂手段인 紙幣 및 預金通貨의 需要供給에 의해 計算單位의 相對的 價値, 즉 物價水準이 영향을 받게 됨.

12) 財貨의 바구니가 全體經濟의 財貨를 다 포함한다고 한다면 物價는 정의에 의해 항상 1이 될 것이다. 財貨의 바구니가 어떤 財貨를 포괄할 것이냐는 論者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면 Hall(1982a)은 Ammonium nitrate(AN), Copper(C), Aluminum(A)과 Plywood(P)의 일정량을 포함하는 복합상품바구니를 ANCAP 달러로 정의하였으며 Greenfield and Yeager(1983)는 여기에다 다른 財貨를 추가할 수 있다고 본다. 後述하는 바와 같이 이들은 計算單位의 선택은 순수한 관습의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計算單位를 측정하는 標準商品(standard commodities)의 선택을 중요하지 않게 보고 있다. Fama(1980)는 심지어 신선한 쇠고기나 원유 등으로 計算單位를 측정할 수도 있다고 본다. 이런 자세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다음 節을 참조하기 바람.

支拂手段은 銀行이 제공하는 交換會計制度서비스에 의해 대체된다[13]. 따라서 오늘날과 같은 M_1 혹은 M_2 등의 通貨의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投資計定의 計算單位로 측정된 가치는 同 計定을 지지(back-up)하는 投資證券의 市場價格에 의해 수시로 변동하게 된다. 同 計定은 현재의 要求拂預金과 같이 去來計定의 기능을 하지만, 同 計定은 要求拂預金과는 달리 外部貨幣(outside money)나 혹은 計算單位의 역할을 하는 實物財貨(바구니)로의 交換性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計算單位가 支拂手段에 의해 정의되지 않고 다른 實物財貨로 정의되고, 同 實物財貨에는 支拂手段의 機能이 부여되지 않으며, 새로운 支拂手段에는 計算單位機能이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計算單位와 支拂手段의 분리가 이루어지게 되며, 현재와 같은 개념의 貨幣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아가 支拂手段을 창출하는 銀行에게는 支拂手段의 計算單位測定財貨(바구니)로의 交換義務가 부과되지 않는다.

計算單位를 정의하는 實物財貨의 一定量은 영구적으로 고정되거나(Greenfield and Yeager, 1983), 實物財貨의 需要供給變動에 따른 實物財貨의 市場價格變動이 物價變動을 초래할 가능성을 감안, 필요시 재조정한다(Hall, 1982a). 예를 들면 "원"이라는 計算單位는 標準實物財貨의 一定量으로 정의되며, 후자의 경우(Hall)는 同 財貨의 供給이 증가하여 그 相對價格, 나아가 원貨의 다른 모든 재화에 대한 相對價格이 반으로 저하(인플레 상황)되었다고 한다면, "원"이라는 計算單位를 標準實物財貨의 최초 一定量의 2배로 새롭게 정의함으로써 "원"貨의 交換價値 나아가 物價를 안정시키도록 한다[14]. 물론 이 경우에 있어서도 支拂手段의 標準實物財貨로의 交換性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 制度下에서 政府의 역할은 計算單位를 정의하고(Greenfield and Yeager, 1983), 同 計算單位를 國家의 法貨(legal tender)로 선포하는 일(Hall, 1982a) 이외에는 일체 金融이나 支拂制度에 간여하지 않으며 政府 및 中央銀行의 不換紙幣發行 및 金融規制機能은 없어져야 한다고 본다.

3. 新貨幣經濟學派에 대한 評價와 批判

新貨幣經濟學派의 通貨制度에 대한 많은 批判(White, 1984b, 1986; McCallum, 1985; O'Driscoll, 1985)에도 불구하고 同 理論은 貨幣理論의 발전에 중요한 긍정적 기여를 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하에서는 먼저 긍정적 측면에 대해 筆者 나름대로의 評價를 시도하고 다시 기존 文獻上의 批判的 視角에 대해 논의하기로 하겠다.

가. 肯定的 評價

우선 同 學派는 貨幣를 보는 시각에 중요한 변혁을 초래하였다. 기존의 시각은 貨幣의 支拂手段機能을 강조함으로써 貨幣의 긍

13) 실체적 支拂手段이 존재하지 않고 모든 去來가 銀行計定의 자동적 이체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Greenfield and Yeager(1983)는 그들의 BHF 制度를 복잡화된 바터制度(sophisticated barter system)라고 부르고 있다.

14) Hall의 조정방법은 사실상 S. Jevons의 價値圖表本位制度(Tabular Standard of Value)나 Irving Fisher의 달러報償制度(Compensated Dollar) 등과 같이 紙幣와 金과의 交換比率을 物價指數에 연동시키려는 제안들과 일맥상통한다 하겠음.

정적 기능을 부각시킨 데 반해, 同 學派는 오히려 支拂手段과 計算單位(價値尺度)의 기능을 겸하는 貨幣를 기본적으로 經濟에 대한 교란요인으로 파악한다. 經濟의 安定을 유지하면서 貨幣의 純機能(支拂手段機能)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計算單位機能을 支拂手段機能과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경우 物價問題는 計算單位의 價値安定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고 봄으로써 貨幣의 機能으로서 支拂手段보다도 價値尺度機能을 강조한다. 결국 同 學派는 支拂手段機能에 부수적인 기능으로 파악되던 價値尺度機能을 獨立的 貨幣機能으로 재인식하고 物價와 支拂手段의 공급량과의 도식적 관계에서 벗어나 物價問題는 計算單位의 價値安定問題라는 사실을 재인식하게 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고 하겠다.

둘째로, 金融規制, 특히 현재와 같은 支拂準備規制, 要求拂預金에 대한 利子支給制限規制 등의 經濟的 役割, 나아가 貨幣理論의 전개에 있어서의 의의를 재인식하고[15], 脫制度的 보편타당성을 갖는 貨幣理論의 追求라는 새로운 학문적 흐름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였다 하겠다.

셋째로, 政府의 金融規制가 최소화되고, 金融革新이 고도화된 金融制度의 모습을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同 制度의 特徵 및 意義를 분석함으로써, 현재 진행중인 各國의 金融自律化의 방향에 대한 가능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金融自律化, 金融革新의 진전은 금후 金融制度 및 支拂制度의 安全性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다는 기대가 일반적임에 반해, 同 學派가 전망하는 投資基金形態의 銀行의 출현은 오히려 支拂制度의 安全性을 높여줄 것이라는 새로운 시사를 주고 있다. 後述하는 바와 같이 投資計定이 支拂計定(支拂手段)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지만, 投資計定은 Ⅱ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銀行의 支拂義務가 投資對象證券의 市場價格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 銀行의 支拂不能(流動性 不足; illiquidity)事態는 발생하지 않는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銀行의 流動性不足은 근원적으로 銀行負債(預金)의 名目價値固定化와, 市場性이 없고 名目價値가 고정되는 貸出業務에서 연유한다. 投資計定을 바탕으로 한 支拂制度는 이러한 銀行의 負債 및 資産側面에서의 문제점을 해소하게 되기 때문에 個別銀行의 支拂不能 및 그에 따른 支拂要求의 暴走(bank run), 나아가 全體制度의 파탄이라는 전통적인 銀行制度의 不安을 해소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新貨幣經濟學의 支拂制度는 새로운 평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16].

15) 여기서 열거한 支拂準備規制와 要求拂預金 利子支給制限이 新學派에 의해 가장 많이 거론되는 金融規制이긴 하지만, 이외에도 Wallace(1983)는 美國에 있어서 美國貯蓄債券(U.S. Savings Bond)의 讓渡性規制(non-negotiability)와 美國財務省證券(U.S. Treasury Bills)의 소액권발행규제가, 無利子 聯邦銀行券(Federal Reserve Notes)의 유통을 도와주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Wallace의 주장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White(1987)와 Makinen and Woodward(1986)를 참조하기 바람.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新學派라고 해서 銀行의 詐欺可能性防止 등 銀行經營의 健全性을 확보하고 거래자를 보호하기 위한 일반적 규제까지를 완전히 철폐할 것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16) 이러한 측면에서의 新貨幣經濟學의 공헌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히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단지, 최근 Goodhart(1988, Chapter 7)에 의해 投資基金銀行制度의 중요성이 부각되기는 하였으나 그도 이러한 制度에 대한 아이디어를 新貨幣經濟學派와 명시적으로 연결시키지 않고 있다.

나. 新貨幣經濟學派에 대한 批判 및 關聯論爭

이상과 같은 新理論의 긍정적 공헌에도 불구하고 비판이 없는 것은 아니다. 同 理論의 비판자들은 새로운 支拂制度의 논리적 타당성(logical consistency)을 인정하고 나아가 同 制度가 바람직한 改革案임을 인정하면서도 同 制度의 自生力(viability)이나 實際適用可能性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1) 支拂手段과 計算單位機能의 分離可能性

우선 가장 중요한 문제로서 貨幣의 支拂手段과 計算單位機能의 分離可能性에 대한 강한 회의가 제기되었다. 이에 관련된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計算單位機能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Niehans(1978, Chapter 7)는 貨幣의 기능에 대한 논의에서, 貨幣가 計算單位役割을 한다는 명제는 상당히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부정확한 개념이라고 주장한다. 즉 貨幣는 計算單位役割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計算單位(unit of account)를 측정하는 計算의 媒介手段(medium of account)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명제가 더 명확한 개념으로 본다[17].

이런 입장에서 볼 때 진정한 문제는 貨幣의 支拂手段機能과 計算의 媒介手段機能의 分離可能性 與否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McCallum(1985)은 計算單位를 정하는 문제는 新貨幣經濟學派들이 주장하듯 길이의 단위, 무게의 단위와 같이 순수한 社會慣習에 관한 문제로서 政府의 선포에 의해 마음대로 바꿀 수 있을지 모르나[18], 무엇으로 計算의 媒介手段을 삼을 것이냐 하는 것은 慣習의 문제가 아니고 經濟的 選擇의 문제라고 본다. 따라서 計算의 媒介手段과 支拂手段을 혼용할 것이냐의 여부는 個別經濟主體들의 합리적, 경제적 의사결정에 맡겨야 하며 이를 강제로 분리시키는 제도는 자생력을 가질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新學派의 概念上의 오류는 計算의 媒介手段의 선택을 순수한 관습의 문제로 이해하는 데 있다고 본다. 전통적으로 支拂手段의 選擇問題는 여러 각도에서 분석되어 왔지만, 불행하게도 計算의 媒介手段의 선택에 대한 이론적 분석이 전혀 不在하기 때문에(Fischer, 1983) 이 문제에 대한 확실한 해답을 구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그러나 Niehans는 적어도 支拂手段으로서의 貨幣가 計算의 媒介手段으로서의 기능까지를 수행하지 않는 한, 공통의 支拂手段의 사용에 따른 貨幣經濟의 물물교환경제에 대한 상대적 費用節減效果는 극대화될 수 없다고 본다. 이러한 시각에서 McCallum은 新學派 支拂制度의 自生力 및 實際適用可能性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한편 White(1984b)도 貨幣制度의 역사적 진화과정에 대한 고찰을 통해 일반적 支拂手段이 去來費用의 最少化를 위한 經濟的 考慮에 의해 자연스럽게 計算單位의 기능을 겸하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pp. 703~704, 711). 計算의 媒介手段과 支拂手段이 분리된 경우, 計算의 媒介手段으로 측정한 支拂手段의 가격은 支拂手段의 需要供給에 따라 가변

17) 예를 들어 '원'이라는 計算單位는 紙幣인 韓國銀行券으로 측정되는 것이지, 韓國銀行券이라는 實物自體가 計算單位라고 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다.

18) 예를 들면 과거 우리나라에서 計算單位를 '圜'에서 '원'으로 바꾼 예와 같다.

적일 것이며, 동시에 計算의 媒介手段으로 측정한 財貨의 가격도 가변적일 것이기 때문에 財貨와 支拂手段의 교환에 있어서의 去來 및 計算費用은 두 기능이 同一手段에 의해 수행될 경우에 비해 높을 수밖에 없다 하겠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 두가지 貨幣의 機能이 자연스럽게 결합되게 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이상과 같이 貨幣의 두가지 기능의 분리가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Niehans, 1978, Chapter 7), 역사적으로 분리가 이루어진 예도 없지 않다(Cowen and Kroszner, 1987)는 점이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19].

2) 新學派 支拂制度의 自生力

다음으로 중요한 비판은 新學派가 제시하는 支拂制度의 自生的 出現可能性에 대한 의문의 제기이다. 즉 投資基金計定이 현재와 같은 要求拂預金計定을 압도하고 일반적 支拂手段으로 등장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政府發行 外部貨幣나 商品貨幣 등의 베이스 貨幣(base money)가 부재하는 순수한 交換會計制度에 의한 支拂制度가 가능할 것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첫번째 문제는, 投資計定의 가치가 투자된 證券의 價格變動에 따라 변동하기 때문에 제기되는 문제이다. 이 경우 投資計定에 대해 去來代金으로 수표를 발행한 時點과 수표를 인수한 사람이 銀行에 支拂要求 혹은 자신의 投資計定에 예입하는 時點 사이에 수표의 實際價値가 변하게 된다. 따라서 去來費用 및 情報費用의 최소화라는 측면에서 볼 때 投資計定을 이용한 去來서비스는, 현재와 같이 그 액면(利子支拂이 허용된다면 이자를 포함) 가격이 사전에 명목으로 고정된 要求拂預金을 이용할 경우에 비해 불리하다 할 수 있다(White, 1984b). 이러한 비판은 去來 및 情報費用을 최소화할 수 있는 특성을 갖는 물건(object)이 일반적 支拂手段으로 등장하게 될 것이라는 명제에 비추어 볼 때 설득력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현재의 要求拂預金도 銀行의 파산확률이 零보다 크기 때문에 그 액면이 100% 확실하게 보장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이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두번째 문제는, 支拂制度內에 가장 근본적인 價値基準(anchor)이 존재하느냐 하는 문제와 관련된다. 新學派의 支拂制度는 經濟의 價値尺度로서의 計算單位가 實物財貨에 의해 정의되지만, 支拂手段인 銀行의 投資計定에 대한 권리와, 計算의 媒介手段인 同 實物財貨와의 交換性(convertibility)이 인정되지 않는다. 銀行은 交換義務를 지지도 않으며 따라서 이를 위해 實物財貨를 보유할 필요도 없다(Hall, 1982a; Greenfield and Yeager, 1983)[20]. 나아가 外部貨幣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投資計定이 지금과 같이 外部貨幣로 교환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고객의 去來結果를 최종 마무리(決算)하기 위한 銀行間의 결제수단도 따로 존재하지 않게 된다. 예를 들

19) 현실적으로 만성적 高인플레下에서는 두가지 기능이 분리되는 경향이 있음을 볼 수 있다. 최근 筆者는 아르헨티나의 택시요금산정방법에서 한 예를 볼 수 있었다. 택시의 요금미터는 '포인트'라는 計算單位를 사용하고, 따로 法貨인 Austral과 '포인트'와의 交換比率表가 있어, '포인트'가 Austral로 다시 환산된다. 이는 높은 인플레下에서 빈번한 택시요금인상에 따른 택시미터의 교정비용 및 그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制度에서는 택시요금을 인상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포인트'와 Austral의 交換比率만 바꾸면 된다.

20) 이 점이 實物本位制度와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다.

면 A은행은 B은행에 대한 결제계정(clearing account)상의 正의 밸런스(balance)에 대해, 어떤 財貨나 外部貨幣 혹은 그에 대한 권리를 양도받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B은행의 投資計定에 대한 所有權을 이전받게 될 뿐이다. 따라서, 은행간 결제계정상 계속 正의 밸런스를 갖는(經營을 견실하게 하는) 銀行은 항상 負의 밸런스를 갖는(經營을 방만하게 하는) 銀行의 負債證書(投資證書)만을 축적하게 된다. 더구나 이러한 負債證書들은 그 單位價値가 發行銀行에 따라 상이할 것이기 때문에 동질성이 없다. 결국, 모든 銀行은 서로간에 서로의 이질적인 負債證書을 교환하는 결과가 된다[21]. White(1984b; 1986)와 O'Driscoll(1985)은 이와 같이 최종결제(final settlement)수단으로서 外部貨幣(紙幣든 商品貨幣든)가 부재하고, 이질적인 個別銀行들의 負債證書의 교환을 통해 銀行間 결제가 이루어지는 支拂制度의 自生力에 대해 강한 회의를 제기하고 있다[22].

이러한 新學派의 支拂制度에 대한 비판에 대해 Greenfield and Yeager(1986)는 경험의 축적, 支拂制度에 대한 아이디어의 開發 그리고 通信, 計算 및 記錄保存技術의 進步에 따라 投資計定을 기초로 한 支拂制度의 諸般 問題點들이 해소되고 궁극적으로는 要求拂預金보다도 投資持分(equity holdings)에 대해 수표를 발행하는 支拂制度가 우세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동시에 최종결제수단의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의 不換紙幣도 實物財貨로의 교환성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新學派支拂制度下에서의 投資證書와 실제로 다른 바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3) 計算單位의 價値安定

마지막으로, 計算單位의 價値安定問題이다. 計算의 媒介手段인 特定實物財貨의 바구니에 의해 計算單位를 정의한다 하더라도 支拂手段과 同 財貨와의 교환성이 인정되지 않고, 政府나 銀行에 의해 同 財貨의 리저브가 보유되지 않는 상황에서, 同 바구니에 포함되는 財貨들의 個別價格을 항상 計算單位의 정의에 맞게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었다(McCallum, 1985). 우선 財貨바구니에 포함된 個別財貨들의 計算單位로 표시된 市場價格이 個別財貨의 需要供給에 의해 변동할 경우 計算單位를 정의하는 이들 財貨들의 특정량의 바구니가, 政府에 의한 交換性維持나 리저브保有를 통한 價格安定化 노력이 없이도, 항상 安定的인 價格[23]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쉬운 문제가 아니다. Greenfield and

21) 나아가 이러한 문제는 國際間의 결제에 있어서 더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政府의 信認을 바탕으로 하는 표준화된 支拂手段이 아닌 個別銀行의 표준화되지도 않고 交換性도 없는 負債證書가 국제결제를 원활히 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22) 특히 White(1984b; 1986)는, 貨幣는 진화론적 생성발전과정의 산물로서 市場에 의해 그 가치가 부여되는 貨幣特有의 특성(예 : 流動性 혹은 극도의 商品性)을 가지며 規制나 역사적 우연의 산물은 아니라는 Carl Menger의 견해를 따라, 궁극적으로 동질성을 갖는 공통의 支拂手段이 貨幣로서 등장하게 된다고 본다. 이런 점에서 다양한 이질적인 投資計定이 일반적 支拂手段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데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만일 Greenfield and Yeager(1986)의 주장과 같이 技術革新에 의해 이러한 제도의 불편이 해소되어 投資計定이 일반대중 사이에 支拂手段으로 자리잡는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銀行間決濟手段으로서 동질적인 공통의 支拂手段의 필요성은 상존한다고 본다(White, 1986, pp. 850~851). 나아가, White는, 新學派의 支拂制度는 서로 다양한 이질적인 支拂手段을 도입함으로써 바로 이러한 동질적 공통의 支拂手段의 등장을 의도적으로 억제하려는 노력의 결과로 본다.

23) 이때 財貨바구니의 價格은 바구니에 포함되는 각 財貨의 비중에 의한 個別財貨價格의 加重平均價格을 의미한다.

Yeager(1983)는 이 경우에 각 財貨들의 價格調整의 어려움과 그에 따른 個別財貨市場의 교란효과를 극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한 많은 財貨가 바구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관련하여, 더 본질적인 문제는 支拂手段의 基本單位와 計算單位와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문제이다. 설령 支拂手段과 計算單位의 기능이 분리된다 하더라도 모든 財貨의 價格은 去來費用의 최소화라는 경제적 유인 때문에 支拂手段의 基本單位로 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때, 支拂手段과 基本財貨바구니, 즉 計算單位間의 교환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支拂手段의 需要供給에 따라서 支拂手段의 基本單位로 표시되는 價格, 즉 支拂手段의 餘他財貨에 대한 相對價格은 변할 수 있을 것이며, 同 價格이 經濟의 計算單位에 의해 표시되는 價格과 항상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新學派의 制度內에는 사실상 두가지의 物價概念, 즉 支拂手段 基本單位의 餘他財貨에 대한 相對價格과 經濟의 計算單位의 餘他財貨에 대한 相對價格이 존재할 수 있는데, 교환성 보장이 없을 경우 이 둘간의 일관성 혹은 일치성(conformity)을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할 수 있다[24].

이상의 논의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新理論에 대한 비판이 주로 支拂制度의 自生力, 應用可能性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에 대해, Greenfield and Yeager(1986)는 新理論의 支拂制度가 現通貨制度에 대한 대안으로서 그 所望性(desirability)에 대한 평가가 미흡하다고 지적한다.

Ⅳ. 支拂制度의 安全性 提高方案 : 新貨幣經濟學의 示唆點

新貨幣經濟學에 대한 여러가지 비판에도 불구하고 한가지 중요한 긍정적 공헌은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새로운 支拂制度의 銀行模型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Ⅱ章 1節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現 支拂制度의 불안전성, 즉 銀行預金引出要求의 폭주에 따른 銀行破產의 擴散可能性은 銀行預金의 外部貨幣로의 固定名目價額 交換性과 銀行資產의 市場性 缺如에 있다 하겠다(Goodhart, 1988, Chapter 7). 이러한 支拂制度上의 不安要因은 現 不換紙幣制度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과거 金本位制度下에서도 銀行은 固定價格으로 銀行貨幣를 금으로 교환해 주어야 하는 交換性維持義務를 지고 있었기 때문에 部分支給準備下에서는 항상 金交換要求 폭주에 따른 銀行破產可能性이 존재하였다(左承喜, 1988).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支拂制度의 安全性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다음과 같은 몇가지 대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는, 銀行의 資產運用을 엄격히 규제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예로서는,

24) 이 점에 대한 좀더 자세한 논의는 McCallum(1985)을 참조하기 바람. 이러한 비판은 사실상 支拂手段과 計算單位機能이 궁극적으로 單一貨幣에 의해 수행될 것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즉, 설령 다양한 이질적 支拂手段이 허용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중심적인 공통의 支拂手段이 등장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支拂手段이 결국은 어떤 형태로든 計算單位機能을 부여받게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支拂手段 基本單位와 따로 경제내에 존재하는 計算單位間의 일치문제를 제기하게 된다.

Friedman(1957)과 같이 銀行으로 하여금 100%의 預金支給準備通貨를 보유하도록 하거나, Tobin(1985)과 같이 銀行預金으로 조성된 자금은 貸出資金으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安全性과 流動性이 높은 特定證券에만 투자하도록 함으로써 預金과 特定資産을 명시적으로 연계시키는 방안을 들 수 있다. 또한 Litan(1987)은 Tobin의 경우와 같이 預金으로 조성된 資金을 安全性과 流動性이 높은 증권에만 투자하도록 하되 銀行의 貸出業務는 완전히 분리시켜 다른 종류의 金融機關에 의해 수행하도록 하게 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안들은 아마도 다른 부수적 조치가 없다면 銀行業務를 가장 이윤이 낮은 業務로 전락시킬 것이다[25].

둘째로는, 銀行株式所有者에게 무한책임을 부과함으로써 預金損失可能性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다. 과거 19세기초 英國 스코틀랜드지방의 自由銀行制度下에서는 일반적으로 株主의 무한책임제도가 채택되었으며, 이런 制度가 銀行에 대한 규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銀行 및 支拂制度의 安全性維持에 크게 기여하였다(White, 1984a; Selgin and White, 1987).

이상과 같이 銀行預金契約의 기본성격을 유지하면서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들과는 달리 新貨幣經濟學派의 주장과 같이 銀行制度自體의 성격전환을 모색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新貨幣經濟學派의 支拂制度의 자생력에는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전망하는 銀行制度는 支拂制度의 安全性維持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相互基金銀行(Mutual Fund Banking)의 投資計定은 현재의 要求拂預金契約과는 달리 投資資産의 市場價格에 따라 그 원금 및 수익이 지불되기 때문에 여하한 投資回收要求의 폭주하에서도 銀行의 流動性不足, 나아가 銀行破産可能性은 사라지게 된다.

최근 Goodhart(1988, Chapter 7)도 이러한 입장에서 相互基金銀行의 의의를 강조하고 이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26]. 나아가 최근 Selgin and White(1987, p.451)도, 相互基金銀行의 投資計定이 去來計定으로서 현재의 要求拂預金에 비해 열등하다는 주장과 함께 新貨幣經濟學派의 支拂制度를 신랄히 비판했던 White(1984b)의 최초의 입장을 바꿔, 現 支拂制度에 대한 심각한 대안으로 고려하고 있다. 한편 Wallace(1988)도, 預金引出要求의 暴走(bank run)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國家에 의한 預金保險制度의 중요성을 강조한 Diamond and Dybvig(1983) 이론의 批判過程에서, 政府에 의한 預金保險制度의 타당성(feasibility)을 부정하고, 대안으로 預金引出要求의 순서에 따라 지급액을 줄여 나가는 제도가 最適解가 될 수 있음을 증명하였는데, 이 결과도 결국 新貨幣經濟學派 銀行模型의 타당성을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前述한 Tobin 및 Litan의, 銀行預金과 流動性이 높고 안전한 證券과의 연계방안도 銀行預金의 성격이 MMDA나 Super-NOW 計定 등과 같이 投資計定性格으로 변

25) 부수적 조치로서, 이러한 銀行業務를 수행할 경우, 다른 수익성이 높은 金融業務를 子會社 등을 통해 영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을 것임.

26) Goodhart는 投資基金計定이 發行機關에 따라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각 機關이 발행하는 投資計定을 공통의 基本投資單位로 측정하고, 同 單位가 기본적인 支拂手段의 단위로 기능하도록 할 수 있다고 본다. 현재, 美國에서도 個別 MMMFs들이 投資計定의 標準化를 시도하고 있다. 예를 들면, '몇 달러짜리 share draft'등으로 投資計定에 대해 표준화된 권리증서를 발행한다.

모되는 추세가 강화됨에 따라서는 사실상 相互基金銀行과 본질적으로 다를 바가 없게 될 것이다[27].

나아가 左承喜(1988)는 實物本位制度와 관련하여 市場價格에 의한 交換制度를 주장하였는데, 여기서 흥미있는 것은 相互基金銀行形態의 銀行業務는 넓게 볼 때 市場價格에 의한 交換制度의 범주에 포함된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支拂制度의 安全性 提高方案으로서 新學派의 相互基金銀行을 포함하는 第3의 제안을 "市場價格에 의한 交換制度"라고 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市場價格에 의한 交換制度를 도입할 경우 新學派의 支拂制度와는 달리 현재의 不換紙幣制度를 實物本位制度로 전환하고 현재와 같은 貨幣의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新學派와 같이 金融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金融自律化 및 새로운 金融革新의 利點을 극대화하는 방안도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市場價格에 의한 交換制度는 實物本位制度의 가장 큰 문제점인 通貨의 交換性維持에 따르는 支拂制度上의 불안요인을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데 기여할 것이며, 따라서 支拂制度의 安全性維持를 위한 통상의 金融規制도 더 이상 필요치 않게 될 것이다. 同制度下에서 銀行은 新學派의 相互基金銀行과 유사한 형태를 취하게 될 것이다[28].

27) 이 점은 Tobin의 최근 訪韓時 筆者가 私席에서 그와의 토론을 통해 확인하였으며, 더구나 그는 지금 현재도 MMDA, Super-NOW 등의 銀行預金과 MMMFs와는 사실상 다를 바가 없다고 보고 있다. 또한 그는 新學派의 貨幣機能分離案은 현실성이 없어 보이나 그들의 銀行制度는 본질적으로 그의 提案(Tobin, 1985)과 유사하다고 보고 있다.

28) 同 提案을 포함하여, 추후 "市場價格에 의한 交換制度"에 대해 좀더 자세하게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음.

V. 結論 : 韓國의 金融制度 改善方向에 대한 示唆

최근 韓國의 金融自律化, 金融革新은 새로운 轉機를 맞이하고 있다. 貸出金利의 自由化, 間接規制에 의한 通貨管理方式의 導入, 競爭誘導를 위한 金融産業에의 進入自由의 확대와 金融機關間의 業務領域의 재조정 노력 등 새로운 변화가 모색되고 있다. 金融革新側面에서는 최근에 先進國의 MMMFs와 유사한 投資金融會社의 現金管理口座(CMA), 證券會社와 投資信託會社의 BMF, 投資信託會社의 株式型受益證券 등이 도입되는 등 특히 非銀行金融機關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高受益金融商品導入이 적극화되고 있다. 여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는 業務領域調整과 관련하여 銀行과 證券業務의 분리문제라 하겠다. 예를 들어, 현재의 CMA, BMF, 株式型受益證券 등이 先進國의 MFs처럼 支拂計定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銀行의 證券投資範圍를 확대하는 등의 兼業主義 원칙을 도입할 것이냐 아니면 종래의 專業主義를 고수할 것이냐 하는 결정은 대단히 어려운 政策課題가 아닐 수 없다.

銀行의 安全性問題는 銀行이 支拂制度上의 중추적 기관이라는 사실 때문에 항상 중요한 政策問題가 되어 왔다. 美國에 있어서 銀行의 證券投資 및 證券貸出에 대한 엄격한 제한조치 및 투자은행의 預金受取禁止 등은 1930년대초의 金融恐慌 경험에서 연유한다. Friedman and Schwartz(1963, Chapter 7)

는, 同 金融恐慌은 1929년의 證券市場暴落에 따라 債券을 포함한 證券投資 및 證券貸出에 적극적이던 銀行의 資產價値가 暴落하게 됨으로써 결국 광범위한 銀行破產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본다[29]. 이러한 가설은, 아직도 美國에 있어서 金融을 보는 기본시각이 되고 있으며 金融自律化 論議에 있어 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이 가설은 銀行의 負債가 固定名目價値를 가지는 경우에만 성립하게 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自由化된 兼業主義下의 銀行의 형태가 新貨幣經濟學派의 銀行, 즉 相互基金銀行形態를 취하게 된다면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銀行의 安全性은 오히려 더 제고될 수 있을 것이며 銀行의 資產運用에 대한 규제는 불필요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만일 投資基金計定이 측정단위의 표준화가 이루어지는 등 支拂手段으로서 對要求拂預金競爭力을 갖추어 간다면 장기적으로 兼業主義의 수용 등 自律化 이후의 支拂制度의 安全性問題에 대해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금후 우리나라의 金融制度改編에 있어서도 특히 장기적으로 兼業主義의 수용여부문제를 논함에 있어 이러한 시사점을 충분히 감안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29) Rockoff(1974)와 Rolnick and Weber(1982)도 美國의 19세기 중반 自由金融時代에 있어서 銀行破產의 주요원인이 詐欺銀行(Wildcat Banking)보다는 銀行의 主要投資 및 保有資產이었던 州政府債券價格下落에 있었다고 보고 있다.

▷ 參 考 文 獻 ◁

朴英哲, 「金融의 革新과 金融發展의 推移」, 金秉柱 · 朴英哲, 『韓國經濟와 金融』, 第6章, 1984.

全國銀行聯合會, 『美 · 日의 金融自由化와 銀行經營』, 1986.

左承喜, 「암스텔담銀行의 스미스金融理論上의 意義와 世界通貨制度 改善方向에 대한 示唆」, 『韓國開發硏究』, 1988 겨울호.

Black, Fischer, "Banking and Interest Rates in a World without Money", *Journal of Bank Research*, 1, Autumn 1970.

Brunner, Karl and Alan Meltzer, *The 'New Monetary Economics', Fiscal Issues and Unemployment*, Carnegie-Rochester Conference Series on Public Series, Vol. 23, 1985.

Corrigan, Gerald E., "Are Banks Special?", Annual Report, Federal Reserve Bank of Minneapolis, 1982.

Cowen, Tyler and Randall Kroszner, "The Development of the New Monetary Economic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95, No. 3, 1987.

Diamond, Douglas W. and Philip H. Dybvig, "Bank Runs, Deposit Insurance, and Liquidity",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91, No. 3, 1983.

Downes, John and Jordan E. Goodman, *Dictionary of Finance and In-*

vestment Terms, Barron's Educational Series, Inc., New York, 1985.

Fama, Eugene F., "Banking in the Theory of Finance",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Vol. 6, 1980.

_____, "Financial Intermediation and Price Level Control",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Vol. 12, 1983.

Fischer, Stanley, "A Framework for Monetary and Banking Analysis", *The Economic Journal*(Conference Papers), 1983, pp. 1~16.

Friedman, Milton, *A Program for Monetary Stability*, Fordham University Press, New York, 1957.

_____ and Anna J. Schwartz, *A Monetary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1867-1960*,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1963.

Goodhart, Charles, *The Evolution of Central Banks*, The MIT Press, 1988.

Greenfield, Robert L. and Leland B. Yeager, "A Laissez-Faire Approach to Monetary Stability", *Journal of Money, Credit, and Banking*, Vol. 15, No. 3, August 1983.

_____, "Competitive Payments Systems: Comment",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76, No. 4, September 1986.

Hall, Robert E., "Explorations in the Gold Standard and Related Policies for Stabilizing the Dollar", Robert Hall(ed.), *Inflation: Causes and Effects*,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2a.

_____, "Monetary Trends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A Review from the Perspective of New Developments in Monetary Economics,"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December 1982b.

Hayek, Friedrich A., "The Future Unit of Value", Pascal Salin(ed.), *Currency Competition and Monetary Union*, Martinus Nijhoff Publishers, The Hague, 1984.

King, Robert G., "On the Economics of Private Money",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Vol. 12, 1983.

Klein, Benjamin, "The Competitive Supply of Money", *Journal of Money, Credit, and Banking*, Vol. VI, November 1975.

Litan, Robert E., *What Should Banks Do?*, The Brookings Institution, Washington, D.C., 1987.

Lown, Cara S., "Money Market Deposit Accounts Versus Money Market Mutual Funds", *Federal Reserve Bank of Dallas Economic Review*, November 1987.

Makinen, Gail E. and G. Thomas Woodward, "Some Anecdotal Evidence Relating to the Legal Restrictions Theory of the Demand for Money",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94, April 1986.

McCallum, Bennett T., "Bank Deregulation, Accounting Systems of Exchange, and the Unit of Account: A Critical Review", Karl Brunner and Allan Meltzer(eds.), *The 'New Monetary Economics', Fiscal Issues and Unemployment*, Carnegie-Rochester Conference Series on Public Policy, Vol. 23, 1985.

Niehans, Jurg, *The Theory of Money*,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78.

O'Driscoll, Gerald P., "Money in a

Deregulated Financial System", *Federal Reserve Bank of Dallas Economic Review*, May 1985.

Rockoff, Hugh, "The Free Banking Era", *Journal of Money, Credit and Banking*, 6, May 1974.

Rolnick, Arthur J. and Warren E. Weber, "Free Banking, Wildcat Banking, and Shinplasters", *Federal Reserve Bank of Minneapolis Quarterly Review*, Fall 1982.

Sargent, Thomas J. and Neil Wallace, "The Real-Bills Doctrine Versus the Quantity Theory : A Reconsideratio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90, No. 6, 1982.

Selgin, George A. and Lawrence H. White, "The Evolution of a Free Banking System", *Economic Inquiry*, July 1987.

Stern, Gary H., Thomas M. Supel, and Danny Quah, "Money Market Mutual Funds Are Hardly Money", *Quarterly Review*, Federal Reserve Bank of Minneapolis, Summer 1984.

Tobin, James, "Commercial Banks as Creators of Money", Dean Carso (ed.), *Banking and Monetary Studies*, Irwin, Homewood, 1963.

_____, "Financial Innovation and Deregulation in Perspective", *Bank of Japan Monetary and Economic Studies*, Vol. 3, No. 2, September 1985.

Wallace, Neil, "A Legal Restrictions Theory of the Demand for 'Money' and the Role of Monetary Policy", *Quarterly Review*, Federal Reserve Bank of Minneapolis, Winter 1983.

_____, "Another Attempt to Explain an Illiquid Banking System : The Diamond and Dybvig Model with Sequential Service Taken Seriously", *Quarterly Review*, Federal Reserve Bank of Minneapolis, Fall 1988.

White, Lawrence H., *Free Banking in Britai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4a.

_____, "Competitive Payments Systems and the Unit of Account",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74, No. 4, September 1984b.

_____, "Competitive Payments System : Reply",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76, No. 4, September 1986.

_____, "Accounting for Non-interest-bearing Currency : A Critique of the Legal Restrictions Theory of Money", *Journal of Money, Credit and Banking*, Vol. 19, No. 4, November 1987.

Yeager, Leland B., "Deregulation and Monetary Reform",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May 1985.

社會保障制度의 資源配分 및 所得再分配效果

延 河 清

本稿에서는 社會保障制度擴充과 관련된 資源配分과 所得再分配效果를 國際比較와 經驗的 結果를 중심으로 논하였다. 90년대를 향한 韓國社會가 처한 중요한 과제는 넓은 의미에서 衡平의 提高 및 國民福祉水準의 向上이다. 따라서 장기적 측면에서 볼 때 우리의 社會保障政策의 基本方向은 소극적 성격의 단순한 所得移轉的 福祉政策이 아니라 그 원인을 제거하고 발생을 예방하는 적극적 福祉政策이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社會保障部門에 대한 政府의 책임이 보다 강조되어야 하며 구체적으로 財政支出의 優先順位를 높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衡平의 追求를 段階的으로 추진하면서도 동시에 經濟成長의 效率을 상당한 수준에서 유지하는 슬기를 가져야 할 것이다.

I. 序

급속한 産業化過程에서 파생된 都市－農村間, 階層間, 地域間의 不均衡과 隔差의 심화로 말미암은 疎外階層의 불만은 社會葛藤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해 앞으로 韓國經濟의 발전과정에서 持續的 成長에 못지 않게 모든 부문의 不均衡과 隔差를 해소하는 균형된 先進和合經濟의 추구가 요구되고 있다. 90年代로 향한 韓國社會가 처한 중요과제는 넓은 의미에서 福祉의 向上이며 이는 社會的 意思決定過程에서의 國民參與 擴大와 生活의 質的 向上이라는 두 차원에서 동시에 시도되어야 한다. 앞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安定된 國民生活이라는 것은 더불어 「고르게 잘 산다」는 의미로서 새로운 經濟·社會政策에 뚜렷하게 反映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어려운 問題의 해결을 위하여 정부는 적극적으로 정책을 개발해야 할 일차적 의무를 지니고 있다. 즉, 住宅, 醫療, 教育 등 國民基本需要問題를 해결하고 農漁村住民, 都市勤勞者를 포함한 都市庶民層의 生活向上과 改善을 위한 政府의 과감한 福祉政策이 요구된다.

앞으로 國民的 合意下의 成長과 福祉의 均

筆者: 本院 副院長

衡的 發展은 成長, 福祉, 參與의 調和로운 發展이라는 基本理念의 구현으로 가능하고 이것은 21세기를 향한 經濟·社會의 成熟化를 가능케 하는 길이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衡平의 追求를 段階的으로 추진하면서도 동시에 經濟成長의 效率을 상당한 수준에서 維持하는 슬기를 가져야 할 것이다.

韓國의 경우, 지난 20여년간 적극적인 產業化政策에 의해 前例없는 經濟成長을 이룩했으나 社會福祉分野는 아직까지 적극적인 政策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社會·經濟的 構造의 급격한 改編과 社會秩序의 變化, 새롭게 形成된 다수의 勞動者階級, 그리고 계층간의 갈등이 심화됨으로써 國民連帶意識의 强化가 절실히 필요하게 되어 이제는 좀더 社會的 公正과 經濟的 效率이 調和를 이룰 수 있는 새로운 經濟·社會發展모델을 마련해야 할 轉換期的 時點에 와 있다고 할 수 있다. 持續的인 經濟成長과 國際收支의 黑字로 社會福祉向上이 어느 정도 가능해졌으므로 社會福祉政策의 과제는 첫째, 部門間, 階層間 및 都農間의 不均衡과 왜곡을 시정하고, 둘째, 소외된 階層의 열등의식을 해소하여 참여의식을 제고하며, 셋째, 持續的으로 經濟成長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社會的 衡平도 촉진시켜야 한다. 1988년부터 실시된 國民年金制度와 最低賃金制度 및 醫療保險制度의 擴大는 바로 이러한 問題意識에 기반을 둔 結果라고 볼 수 있다.

國際的 經驗으로 볼 때 2000년대의 韓國의 社會保障費負擔은 經濟總量規模의 增加速度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다음과 같은 展望에 기인된다. 첫째, 人口構造의 變化를 볼 경우 老年階層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둘째, 1988년부터 실시된 國民年金制度가 成熟段階에 들어갈 것이며, 셋째, 노년계층의 醫療需要가 증가하여 이들 계층에 대한 社會保障의 給與水準이 上向調整되고, 넷째, 醫療技術水準의 발달로 인한 醫療費上昇要因에 대한 抑制方案이 需給 兩側面에서 강구되지 않는 한 國民醫療費負擔은 급격히 상승할 것이기 때문이다.

本稿는 社會保障制度擴充을 위한 政策決定에 있어서 效率的인 資源配分과 社會保障制度를 통한 所得再分配效果를 國際比較와 經驗的 結果를 中心으로 논하고자 한다. 本稿에서는 우선 社會保障制度의 資源配分과 所得再分配間의 문제를 國際比較를 통해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둘째로 당면한 社會保障制度擴充의 필요성과 예견되는 제도적 변화를 검토하고자 한다. 그리고 특별히 시사적이고 비평이 필요한 부문을 재검토하고 계속적인 연구가 더 필요한 문제점들을 언급하면서 結論을 내리고자 한다. 또한 本稿는 社會保障 諸制度의 구체적이고 자세한 문제보다는 效率과 衡平에 관한 全般的인 考察에 중점을 두고자 했다. 紙面의 制限으로 韓國의 각종 社會保障制度의 구체적이고 지엽적인 문제점들은 자세히 논하지 않고자 한다.

Ⅱ. 社會保障과 資源配分

社會保障은 個人에게 닥친 生活上의 不安을 輕減 내지 解消하기 위한 公共的 裝置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社會保障은 1次的으로 個人이 현실에서 그러한 不安의 事態에

처하는 경우, 困窮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社會保障制度에 의해 구제해 주는 保障, 즉 福祉機能을 기본으로 한다. 社會保障의 充實이라는 것은 결국 社會經濟的 위험의 發生에 대하여 社會保障裝置가 包括的이고 體系的으로 정비되어 개인이 필요로 하는 수준만큼 社會保障制度가 실제로 제공하도록 充足度를 높여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巨視經濟學的으로, 특히 資源配分에 관련하여 볼 때, 社會保障의 充足度에 대한 評價에는 몇가지 문제점이 있으며 그 해답을 찾기도 용이하지 않다.

첫째, 社會保障은 個人의 生活保障을 어느 정도까지 보장해야 되는가? 市場經濟를 基調로 하는 社會에 있어서 社會保障과 私的保障과의 적절한 分擔比率은 相互補完性과 적정 社會保障水準 및 社會保障의 充實度의 고려에 있어서 직접적인 관계를 갖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둘째, 社會保障擴充과 效率的인 資源配分間의 相衝關係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또한 國民經濟資源에 대한 社會保障費用의 適正比率을 어떻게 설정하면 좋은가? 社會保障水準이 높아지는 것은 保障을 받는 個人에게는 바람직한 것이지만 풍요한 社會로의 接近을 전제로 하여 保障에 있어서의 適正水準이 점차 높은 수준으로 설정되어 가는 경우, 그것이 社會保障을 넘어서 資源을 과도하게 흡수하여 다른 분야의 발전에 沮害要因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所得階層間 혹은 世代間 社會保障費負擔의 歸着問題를 야기시킬 것이다.

셋째, 社會保障은 集團的 次元에서 財源調達과 給與 사이에 所得再分配의 機能을 갖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서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社會保障의 本來的 福祉機能은 그것에 부수하는 經濟的 波及效果로서의 所得再分配와 資源配分機能과의 관계에서 이해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1. 社會的 要求水準과 實現水準

社會保障體系擴充에 대한 要求는 基本的으로 資本主義經濟의 發展·變動에 수반하는 雇傭 및 生活의 不安定化, 급속한 工業化가 가져온 勞動·生活環境에 있어서 危險(risk)의 多發化 등이 원인이지만, 다른 한편 그러한 擴充을 가능케 한 基盤은 經濟의 持續的 成長 바로 그것이다. 문제는 풍요한 社會로 接近해 감에 따라 社會保障이 그 基本的 機能에 수반하는 經濟效果 -즉 所得再分配效果와 資源配分效果-를 어떻게 變容시키는가 하는 것이다.

우선 資源配分效果에 注目해 보자. 지금 貧困한 社會에서 풍요한 社會로 성장함에 따라 社會保障의 實際水準과 最低必要水準이 어떠한 관계로 변화하는가를 抽象的으로 圖示해 보기로 한다. 〔圖 1〕의 橫軸은 經濟發展의 時間的 經過로 보아도 좋고, 「크로스섹션」(cross section)으로 생각하여 빈곤한 社會(開發途上國)에서 풍요한 社會(先進產業國)로의 접근으로 보아도 좋다. 어쨌든 건강하고 문화적인 最低必要限度의 生活水準이 설정되어 BB'線으로 나타내면, 그것은 各國別로 보았을 때 最低必要水準(national minimum) 즉 最低限의 社會的要求水準(social needs)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으며, BB'線이 완만하기는 하지만 右上向의 기울기를 갖

〔圖 1〕 經濟發展과 社會保障水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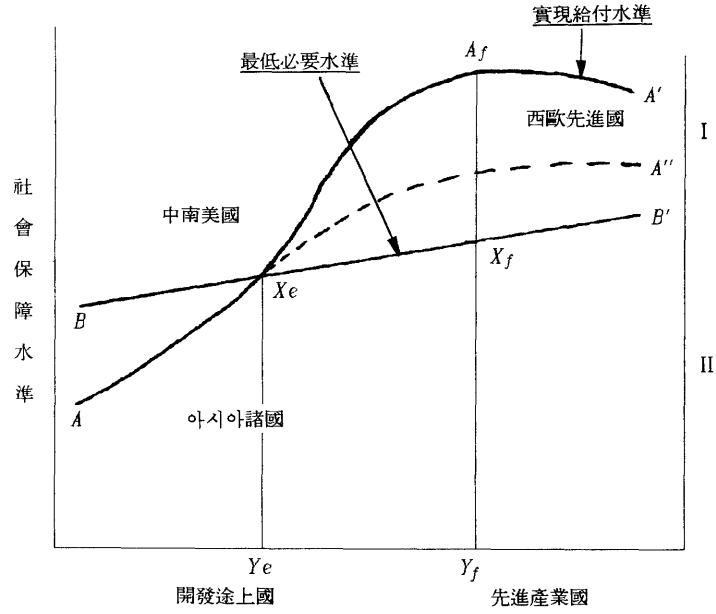

는 것은 生活의 最低必要水準 自體가 時間의 經過와 함께 상승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에 대해 現實의 給付水準은 右上向의 AA'線으로 所得水準의 函數를 나타내고 있다.

AA'線과 BB'線과의 交點을 Xe라고 하면 國民所得이 Ye水準에 달할 때까지 社會保障의 實際水準은 最低必要水準을 下廻하고 따라서 前者를 後者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政策課題이다. 그리고 이것은 所得水準을 주어진 것으로 하면 分配側面의 機能이 그만큼 강하게 작용될 것이 要請되는 것이다. 이 要請은 그 背景에 開發途上國社會에서는 所得分布의 不均等度가 크고 풍요한 社會로 접근함에 따라 不均等度가 相對的으로 감소한다는 假說을 세우면 보다 잘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理解에 입각해서 〔圖 1〕의 Xe點보다 左側領域에서는 實現되는 需要(D–AA'上의 任意의 點)가 아직 그 社會가 바라는 最低必要水準(N–BB'上의 任意의 點)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所得再分配機能에 의해 最低必要水準(N水準)에 접근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Xe點에서는 $D=N$이고, AA'曲線이 Xe點을 지나 BB'線의 上方에 위치하면 實現된 需要는 最低必要水準을 넘는 그 이상의 部分이 첨가되어 $D>N$의 狀態로 된다. 이 段階에서는 資源制約을 주어진 것으로 하면 超過需要에 대한 選別·抑制의 必要가 점차 증대할 것이다. 따라서 Xe點의 右側領域, 즉 I의 범위에 있어서는 所得再分配機能에 대신하여 資源配分의 觀點에서 社會保障의 적정한 供給水準을 설정할 필요가 발생한다.

그러나 $A'XeYe$의 右側의 領域에서 所得再分配機能이 소멸하여 그것이 전부 資源配分機能으로 移行하는 것은 아니고, Ⅱ범위에 있어서는 작기는 하지만 所得再分配機能의 有效性이 여전히 존재한다. 따라서 $A'XeYe$의 右側領域에서는 Ⅰ과 Ⅱ의 混合程度에 따라 所得再分配機能에서 資源配分機能으로 점차 그 比重이 이행하는 것이다. 〔圖 1〕의 XeA''의 點線은 實際水準의 經路가 Xe點을 지난 다음에는 XeA'을 XeA''의 水準으로 내리누르는 힘이 작용하는 것을 나타낸다. 일단 이러한 超過需要에 대한 調整이 이루어진 것으로 가정하고 國民所得 Y_f水準에서 社會保障의 實際水準이 A_fY_f로서 설정된다면 A_fY_f는 X_fY_f와 A_fX_f의 2個部分으로 나누어서 X_fY_f = 國民共通의 最低必要水準, A_fX_f = 個別的要求 내지 選擇에 기초한 附加的 部分으로 이해할 수 있다. 물론 附加的 部分은 社會保障水準의 高度化에 수반하는 BB'線自體의 上方移動(upward shift)에 의해 最低必要水準 중에 포함되는 것도 있을 것이다.

요약하면 Xe點의 左側領域은 效率보다 衡平이 강조되는 부분으로 社會的 觀點에서 社會保障이 추진되어야 하고 所得再分配機能의 강화가 요구되는 領域이다. 이에 대해 Xe點의 右側領域은 社會保障의 既存體制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그 위에 自律的 要素가 첨가되어 社會保障水準이 增大될 때 資源配分上의 制約條件이 점차 강해져 社會保障에 대한 과다한 資源配分이 다른 분야의 沮害要因이 되는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문제가 되는 곳으로 資源配分의 效率的 觀點이 중시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問題는 韓國의 實際水準이 現在 〔圖 1〕의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하는 것으로, 이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의 하나는 한 나라의 社會保障費支出이 GNP 혹은 國民所得에서 차지하는 比率의 長期時系列을 考察하는 것과 現在水準에서 國際比較를 시도해 보는 것일 것이다.

2. 經驗的 結果

1983년도 資料를 사용하여 1人當GNP 500달러 이상의 59個國을 對象으로 하여, 政府의 總財政支出 중 社會保障 및 福祉部門에 대한 財政支出比重을 從屬變數로, 1人當GNP를 獨立變數로 보고, 低所得 開途國(1人當 GNP 520달러 : 볼리비아)에서 高所得 先進產業國 (1人當 GNP 16,300달러 : 스위스)에 이르기까지 兩變數의 關係를 살펴보면 社會保障에 대한 財政의 役割을 보여주는 다음과 같은 趨勢線을 구할 수 있다.

$$\ln SWE_i = \underset{(-3.82)}{-4.1246} + \underset{(6.15)}{0.8232} \ln PGNP_i \quad \cdots\cdots (1)$$

$R^2 = 0.40$, $F(1, 57) = 37.81$,

( )안은 t- 統計値

여기서 SWE_i : i 國의 中央政府財政支出중 社會保障 및 福祉部門이 차지하는 比重

$PGNP_i$: i 國의 國民 1人當 GNP

IMF의 財政支出分類基準[1]에 의하면 우리

1) IMF,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Yearbook*, 1984, 1985.

〈表 1〉 主要國의 中央政府 財政支出中 社會保障 및 福祉部門이 차지하는 比率(1983)

(단위 : %)

	實績値	推定値[1]	1人當 GNP (달러)
美 國	33.99	42.13	14,110
西 獨	49.97	35.42	11,430
스 웨 덴	46.13	32.05	10,120
日 本	17.30	32.05	10,120
오스트리아	45.55	29.76	9,250
아르헨티나	33.37	8.68	2,070
韓 國	5.15	8.47	2,010
브 라 질	34.91	8.02	1,880
말레이지아	3.95	7.95	1,860

註 : 1) 여기서 推定値는 (數式 1)을 이용하여 구한 것임.
資料 : IMF,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Yearbook*, 1984, 1985.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Vol. 39, 1986.
The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Report*, 1985.

나라의 경우 中央政府의 總財政支出에서 차지하는 社會保障 및 福祉部門 財政支出比重의 1983년도 實績値는 5.15%인데 비해 數式(1)의 世界趨勢線에 우리의 經濟水準(國民 1人當 GNP)을 代入한 값은 8.47%로서 우리나라의 社會保障 및 福祉水準은 經濟開發水準에 따른 이 部門에 대한 社會的 要求(social needs)의 世界的 趨勢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主要圈域別 社會保障 및 福祉部門에 대한 財政의 役割을 보면 대체적으로 西歐產業國 및 中·南美諸國이 다른 圈域의 同一 經濟發展水準國들과 비교하여 볼 때 社會保障에 대한 財政의 役割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日本을 비롯한 아시아圈域國家들은 이 部門에 대한 財政의 役割이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圖 1, 表 1 참조).

즉, 〔圖 1〕에서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南美國들은 그 나라의 財政能力을 넘어선 과다한 社會保障費支出이 經濟的 效率을 저하시켜 경제의 成長潛在力을 위축시킨 경우로 볼 수 있고, 스위스, 西獨, 英國 등 西歐先進諸國의 경우도 政府財政支出의 50% 내외를 차지하는 社會保障費支出은 高福祉와 高負擔 그리고 지속적인 財政赤字를 초래하여 經濟的 效率을 저하시키고 國際競爭力을 약화시킴으로써 1970년대 이후 대부분 福祉國家의 經濟停滯와 國際收支惡化를 가져온 主要原因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이들 國家들은 1970년대 이후 低成長期로 이행되었을 뿐 아니라 租稅·社會保障費負擔이 이미 거의 限界에 도달해, 社會保障費膨脹의 抑制政策이 요청됨에도 人口의 高齡化 및 核家族化 趨勢 등의 社會變動으로 社會保障需要는 계속 증대할 전망이어서 社會保障에 수반하는 經濟的 波及效果로서 所得再分配機能도 중요하지만 效率的인 資源配分方法을 모색하는데 보다 중점을 두어야 할 단계에 와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빠른 經濟成長을 위해 成長主導部門과 다른 部門間의 어느 정

도 차별적인 競爭條件(rule of game)을 용인하는 短期的 眼目의 '先成長·後福祉政策'을 추구해 온 결과 社會保障水準은 世界的 趨勢線에 미달하는 수준에 있다. 즉, 〔圖 1〕의 Xe 點 左側에 위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社會保障水準은 社會가 바라는 最低必要水準에 못 미치고 있으므로 效率보다는 衡平의 側面을 강조하여 社會保障의 확대를 통한 所得再分配로 우리나라 社會保障水準을 BB'線에 도달하게 하는 것이 당면과제라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의 社會保障政策은 우선 社會保障의 所得再分配機能에 역점을 두고, 社會保障制度의 進展에 따른 先進福祉國家들의 경험을 교훈삼아 社會保障政策이 經濟的 效率에 미치는 副作用과 試行錯誤를 최소화하고 福祉와 效率의 調和를 기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3. 韓國의 社會保障費支出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지난 20여년간 우리나라의 國家開發戰略의 性格은 社會的 衡平(equity)보다는 經濟的 效率(efficiency)을 중시하였고 社會福祉政策도 經濟成長過程에서 누적된 所得不均衡, 失業問題 등을 事後的으로 무마하기 위한 소극적인 방법에 지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經濟成長이 계속됨에 따라 高所得層으로부터 低所得層으로의 所得擴散效果(trickling-down effect)가 자연적으로 발생할 것이라는 인식에 기초한 것이었다. 그러나 量的成長에도 불구하고 低所得層의 相對的 貧困感이 증대하고 있고 社會的 衡平에 대한 要求가 다각도로 표출되고 있는 것을 볼 때 經濟成長은 國民福祉向上을 위한 必要條件에 불과할 뿐 充分條件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70년대 이후의 社會福祉政策을 살펴보면 社會保障에 대한 政策的 考慮가 저조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表 2〉에서 보듯이 政府의 社會福祉에 대한 支出은 지난 20여년간 증가하여 中央政府의 社會開發費의 比重은 1970년의 25.8%에서 1987년의 29.1%로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社會保障費의 比率은 매우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社會保障費支出

〈表 2〉 韓國의 社會開發費에 대한 政府支出推移[1)]

(단위 : %)

	1970	1975	1980	1987
政府支出對比率	25.8	22.2	26.6	29.1
教育	17.7	14.0	17.1	18.2
健康	1.4	0.1	1.2	2.6
社會保障[2)]	5.1	5.2	6.4	6.5
住宅	0.1	1.1	1.1	0.8
기타[3)]	1.5	0.8	0.8	1.0

註 : 1) 中央政府
2) 社會保障 및 福祉
3) 기타 社會서비스
資料 : IMF,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Yearbook*, 各年度.

의 政府支出에 대한 比率이 약 50%를 차지하는 西歐福祉國家에 비추어 볼 때 韓國의 社會保障은 매우 낮은 순위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韓國으로서는 社會福祉의 촉진을 위해 社會保障擴大가 매우 필요하며 과다한 社會保障費支出로 야기되는 非效率的인 資源配分에 관해서 우려할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은 國防費負擔이다. 韓國은 北韓과 對峙하고 있는 까닭에 國防費支出이 많아 이것이 社會保障擴充에 또한 制約이 되고 있다. 그러나 〈表 1〉과 〈表 3〉에서 보듯이 西獨, 美國 및 이스라엘은 모두 높은 國防費負擔을 안고 있으면서도 社會保障費支出比率은 韓國보다 높게 나타나 있다. 韓國은 可用資源의 相當部分을 經濟開發에 사용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반면에 先進產業國들은 이에 대한 負擔이 적었다. 따라서 韓國經濟가 規模面에서나 構造面에서 先進化되고 國防費負擔이 크게 增加되지 않게 되면 社會保障에 대한 支出도 크게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제 우리나라 社會保障豫算의 政府豫算에 대한 比率 및 政府豫算의 GNP에 대한 比率의 推移分析을 통하여 우리나라 社會保障政策의 現況을 資源配分의 측면에서 고찰해 보기로 한다. 우리나라 中央政府의 社會保障豫算으로 사용한 資料는 IMF의 財政統計便覽(A Manual on Government Finance)의 기준에 따르는 中央政府의 社會保障 및 福祉에 대한 歲出資料로서[2] 一般會計 및 特別會計, 그리고 基金으로부터의 社會保障費支出을 포함하고 있다.

社會保障費支出은 社會保障部門에 어느 정도의 政策優先順位를 두느냐에 의해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表 4〉는 1971~86년간 우리나라 社會保障主要指標의 규모 및 段階別配分率의 추이를 나타낸 것인데 GNP에서 차지하는 中央政府豫算의 配分比率과 政府豫算에서 차지하는 社會保障豫算의 配分比率 모두 일정한 增加趨勢를 나타내지 않고 해마다의 變動幅이 심하다.

그러나 1971~86년의 全體期間을 고려할 경우 中央政府豫算의 對 GNP比率 및 社會保障豫算의 對政府豫算配分比率 모두 증가추세에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우리나라 社會保障豫算이 「베이스업型」[3]을 따른다는 假定下에 다음의 分析을 행하기로 한다.

t 年度의 中央政府支出(GVE_t) 중 社會保障費支出(SSE_t)은 다음과 같이 세 要素의 函數로 표시될 수 있다.

$$SSE_t = f(SSE_{t-1},\ SSEP,\ SSEB)$$

여기서

SSE_{t-1} : 前年度(t-1)의 社會保障費支出

$SSEP$: 前年度의 配分率(SSE_{t-1}/GVE_{t-1})이 t 年度에서도 보장되는 경우 t 年度 政府豫算增加에 따른 社會保障費增加分

2) 財務部, 『韓國의 財政統計』, 各年度 및 IMF,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Yearbook*, 各年度 참조.

3) '파이'가 增加할 때 이를 나누는 方法은 「파이의 論理型」과 「베이스업(base-up)型」으로 大別될 수 있다. 「파이의 論理型」은 各部門間의 配分比率이 일정하게 지속되지만 「베이스업型」은 '파이'增加와 동시에 특정부문의 配分率이 增加되는 것으로 配分率의 增加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하는 점에 政策優先順位가 고려된다. 「베이스업型」의 假定을 취한 것은 政府의 豫算配分이 部門別 優先順位에 의해 政策的으로 決定되어 온 경향이 있어 왔으므로 社會保障部門의 政策的 優先順位를 파악해 보고자 한 때문이다.

〈表 3〉 國防費支出負擔

(단위 : %)

	政府支出에 대한 比率	
	1980	1983
스웨덴	8.0	7.4
西獨	22.5	23.2
美國	24.0	29.6
日本	5.1	5.4
스페인	15.9	13.4
이스라엘	32.6	24.9
브라질	7.5	0.8
韓國[1]	30.5	33.8

註 : 1) 韓國資料는 1978년과 1982년도 것임.
資料 :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IISS), *The Military Balance : 1985~86, 1987~88*, London.

〈表 4〉 社會保障關聯主要指標의 推移 및 配分構造

(단위 : 10億원, 經常價格)

	GNP	政府豫算[1]	社會保障豫算[2]	政府豫算 / GNP(%)	社會保障豫算 / 政府豫算(%)
1971	3,406.9	541.9	26.1	15.91	4.82
1972	4,177.5	751.3	37.4	17.98	4.98
1973	5,355.5	707.2	41.7	13.21	5.90
1974	7,564.5	1,065.4	60.4	14.08	5.67
1975	10,064.6	1,600.7	83.5	15.90	5.22
1976	13,818.2	2,293.7	105.4	16.60	4.60
1977	17,728.6	2,804.3	140.8	15.82	5.02
1978	23,936.8	3,781.9	186.2	15.80	4.92
1979	30,741.1	5,224.0	282.4	16.99	5.41
1980	36,672.3	6,562.0	416.5	17.89	6.35
1981	45,126.2	8,044.8	479.5	17.83	5.96
1982	50,724.6	10,115.0	974.9	19.94	9.64
1983	58,985.8	10,681.3	550.3	18.11	5.15
1984	66,408.2	11,874.6	652.0	17.88	5.49
1985	72,849.8	13,336.9	753.7	18.31	5.65
1986	83,833.0	15,314.8	1,005.2	18.27	6.56

註 : 1) IMF의 中央政府 統合豫算基準임.
2) 一般會計, 特別會計 및 基金을 포함한 것으로 IMF의 기준에 따름.
資料 : IMF,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Yearbook*, 各年度.
財務部, 『韓國의 財政統計』, 1979~86.
經濟企劃院, 『主要經濟指標』, 各年度.

$SSEB$: 社會保障制度를 새로이 시행하거나 制度를 擴充함으로써 발생하는 社會保障費增加分

이를 回歸모델로 바꾸면

$$SSE_t = \beta_1 + \beta_2 SSE_{t-1} + \beta_3 \frac{SSE_{t-1}}{GVE_{t-1}} (GVE_t - GVE_{t-1}) + \beta_4 D(GVE_t - GVE_{t-1}) + \epsilon_t \cdots\cdots\cdots \quad (2)$$

여기서 D는 「더미」(Dummy)變數로서 특정 계기에 의해 社會保障豫算의 政府豫算에 대한 配分率이 전년도보다 크게 증가한 경우에 1, 그렇지 않은 경우 0으로 주었다[4]. 〈表 4〉의 資料를 이용하여 1971~86년간을 대상으로 한 數式(2)의 推定結果는 다음과 같다.

$$SSE_t = \underset{(1.71)}{15.451} + \underset{(30.43)}{1.131} SSE_{t-1} + \underset{(0.33)}{0.066} \frac{SSE_{t-1}}{GVE_{t-1}} (GVE_t - GVE_{t-1}) + \underset{(6.26)}{0.063} D(GVE_t - GVE_{t-1}) \cdots\cdots\cdots\cdots \quad (3)$$

여기서 $R^2 = 0.997$, $D.W. = 1.80$,
( )안은 t-統計値

우리나라 社會保障豫算이 增分主義理論(파이의 論理型)[5]을 따른다면 數式(2)의 推定結果는 β_2와 β_3가 1에 근사한 값을 가져야 한다. 그런데 數式 (3)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우리나라 中央政府의 社會保障豫算은 前年度의 社會保障豫算(SSE_{t-1})보다는 증가하지만 특별한 계기에 의해 社會保障政策이 확대된 경우($D=1$)를 제외하면 政府豫算의 增加率만큼 증가하지 않아 增分主義理論이 우리나라 社會保障豫算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開發戰略이 分配보다는 成長에 역점을 두어 經濟開發에 우선순위를 두고 社會開發, 특히 그 중에서도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社會保障政策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체계적으로 시행되지 않았다는 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지금까지 社會保障豫算의 段階別 配分構造를 살펴보았는데 다음은 段階別 配分構造가 일정할 경우 社會保障豫算의 궁극적 決定要因이라 할 수 있는 GNP와의 關係를 분석하기로 한다. GNP의 증가에 따라 社會保障豫算은 얼마나 증가하는가를 알기 위해 우리나라와 主要福祉國家의 社會保障豫算의 GNP에 대한 彈力性을 구한 값이 〈表 5〉이다. GNP의 成長率과 社會保障豫算의 增加率이 같다면(파이의 論理型) 彈力性은 1에 近似한 값을 갖겠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社會保障豫算의 對GNP 彈力値는 1을 넘는 경우와 1에 미달하는 경우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최근 1984~1986년간에만 계속해서 彈力値가 1을 상회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와의 比較를 위해 스웨덴, 西獨 및 日本과 같은 대표적인 福祉國家의 경우를 보면, 彈力値가 1보다 큰 경우가 韓國보다 훨씬 많으며, 특히 스웨덴과 日本의 경우는 彈力値가 持續的으로 1을 상회하고

4) 本 分析에서는 1980년과 1986년의 경우 「더미」(Dummy)를 1로 주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0을 주었는데 1980년의 경우는 公務員 및 軍人에 대한 年金支給 및 보훈사업의 확대로, 1986년의 경우는 産災保險行政費 및 軍人年金支給, 그리고 기타 社會福祉事業費의 增大로 政府의 社會保障費支出이 다른 연도에 비해 크게 증가한 해이다.

5) 配分率은 일정하고 '파이' 자체가 增加하는 것으로 단순히 實物量이 增加된다. 이러한 「파이의 論理」는 優先順位가 검토되지 않는 傾向을 가지므로 '파이'의 成長이 멈추는 段階에서는 部門間의 갈등이 야기되기 쉽다.

〈表 5〉 中央政府 社會保障費支出의 對GNP彈力性[1)]

	韓 國	스웨덴	西 獨	日 本
1971	-	-	1.29	-
1972	1.91	2.70	1.26	1.42
1973	0.41	1.08	0.76	1.52
1974	1.09	1.56	2.61	2.23
1975	1.16	1.01	5.37	2.90
1976	0.70	1.98	0.86	1.62
1977	1.19	2.75	1.50	1.68
1978	0.92	1.99	0.69	1.98
1979	1.82	1.20	0.69	1.67
1980	2.46	1.14	1.90	1.00
1981	0.66	1.53	2.06	1.33
1982	8.33[2)]	1.43	1.58	-
1983	-2.67	1.32	0.66	-
1984	1.47	0.84	0.74	-
1985	1.61	1.16	-	-
1986	2.21	-	-	-

註 : 1) 彈力性 $= \frac{(SSE_t - SSE_{t-1}) / SSE_{t-1}}{(GNP_t - GNP_{t-1}) / GNP_{t-1}}$

2) 1971~86년중에서 1982년의 경우는 特別會計 중 公務員 및 軍人에 대한 年金支給의 急增으로 中央政府의 社會保障費支出이 예외적으로 높아 分析對象에서 제외하였음.

資料 : IMF,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Yearbook*, 各年度.
財務部, 『韓國의 財政統計』, 1979~86.
日本 社會保障硏究所(編), 『社會福祉改革論 I』, 東京大學出版會, 1986.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西歐 福祉國家에 있어서 政府支出에 대한 社會保障費支出比重이 거의 50%에 가깝기 때문에 財政赤字의 主原因이 社會保障制度의 팽창이었음도 알 수 있다. 日本의 경우는 政府豫算에서 차지하는 社會保障費支出의 比率이 아직 福祉國家水準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 比率은 점차 增加趨勢에 있고 社會保障費支出의 對GNP彈力性도 지속적으로 1을 상회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社會保障關聯 諸制度가 도입되고 성숙하여 감에 따라 현재 西歐福祉國家들이 당면하고 있듯이, 社會保障費支出의 增大가 궁극적인 '파이'의 크기라고 할 수 있는 GNP成長에 마이너스요인이 되는 경우도 발생하겠지만, 社會保障費支出의 對GNP比率(혹은 對政府豫算比率)의 절대적 低位性 및 낮은 增加速度[6)], 그리고 최근 社會福祉에 대한 社會的 要求의 沸騰을 고려할 때 現段階에서는 여러가지 社會保障制度의 擴大가 시급하다고 하겠다.

6) 물론 1971~86년의 全期間을 통해서는 社會保障費支出의 增加速度가 GNP의 成長速度를 상회하지만 社會保障費支出의 對GNP彈力性이 1보다 작아 社會保障費支出의 增加率이 GNP 成長率을 하회하는 경우도 여러 번 나타나고 있다.

Ⅲ. 財源調達方法과 所得再分配効果

社會保障이 갖는 所得再分配效果는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社會保障의 基本的 機能에 수반하는 것으로 그것 自體가 目的은 아니다. 그러나 미리 再分配效果를 예측할 수 있다면 生活上의 危險分散이라고 하는 本來的 機能 또한 보다 효율적으로 행해질 수 있을 것이다.

社會保障의 所得再分配效果를 分析하는 경우 社會保障費의 醵出項目과 受給項目을 대응시키는 데에는 다양한 조합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를 개괄적으로 나타내면 〔圖 2〕와 같다.

〔圖 2〕에서 公的扶助와 社會福祉서비스는 租稅를 財源으로 하고 있고 醫療 및 年金給付는 각 구성원이 지불하는 保險料를 基本財源으로 하고 있다는 面에서 所得再分配에 미치는 效果가 근본적으로 다른데 이를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7].

보통 社會保障의 所得再分配效果는 租稅를 財源으로 하는 公的扶助制度에서 典型的으로 나타난다. 이는 財政收支機構를 통해 歲入面에 있어서 個人所得稅의 累進制度와 歲出面에 있어서 低所得層에의 生活扶助費와의 연

〔圖 2〕 社會保障의 所得再分配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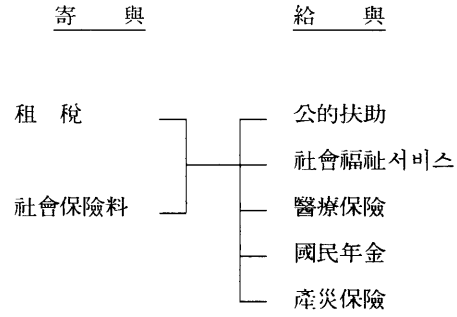

결을 추구하여 高所得層에서 低所得層으로 所得再分配가 행해지는 관계로서 高所得層에서 低所得層에로의 再分配라는 측면에서 垂直的 再分配라고 부를 수 있다. 여기서 公的扶助와 관련하여 Milton Friedman등에 의해 제기된 負의 所得稅(negative income tax)의 개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最低所得層에 대해 所得保障을 一律的으로 적용하는 것을 피하고 受給者自身의 勤勞에 기초한 追加的 所得이 受給額의 減少에 의해 相殺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所得保障을 행하여 勞動의 인센티브를 보존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公的扶助에 있어서 社會的 公正을 個人的 能率과도 결부시키려는 것이므로 현행 公的扶助制度와 비교하여 社會保障의 公平性側面에서 그 效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公的扶助 이외에 租稅를 財源으로 하여 政府의 行政서비스로서 행해지는 社會保障으로는 社會福祉서비스를 들 수 있다. 社會福祉서비스의 對象은 身體障碍者, 정신박약자, 老人, 婦女, 兒童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것이다. 따라서 被保障者는 心身의 治療를 필요로 하는 사람과 生의 週期(life cycle)上

7) 社會保險料가 公的扶助와 社會福祉서비스의 財源으로 사용되지는 않지만 一般租稅中의 一部는 社會保障의 國庫負擔으로 쓰여진다. 따라서 〔圖 2〕에서 租稅와 公的扶助, 社會福祉서비스를 연결시키고 社會保險料와 醫療保險, 國民年金, 産災保險을 연결시키는 二分的 圖式은 필요치 않다.

特定의 被扶養段階에 있어 援護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로서 社會保障 本來의 福祉機能을 중심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公的扶助가 最低限度의 所得維持를 위한 現金給付인데 대해 社會福祉는 現物로서의 福祉서비스의 供與가 중심이고 福祉施設과 運營費가 차지하는 비중도 커서 再分配效果는 公的扶助에 비해 약화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社會保險料를 그 財源으로 하는 社會保險[8]의 再分配效果는 醵出→給付의 關係가 高所得層→低所得層이라는 垂直의 所得移轉이 아니고 失業保險의 경우 勤勞階層에서 失業者로, 産業災害補償保險의 경우 無災害者에서 被災害者로, 醫療保險의 경우 健康者에서 傷病者로, 年金의 경우 醵出年齡層(젊은층)에서 受給年齡層(老年層)으로의 再分配를 의미하며 同一 所得階層內에서도 所得再分配가 행해진다. 이러한 의미에서 社會保險의 所得再分配效果를 水平的 再分配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特定 個個人에 대하여 볼 때 特定 個人은 일생동안 때로는 純寄與者로, 때로는 純受惠者로서의 입장에도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한 個人의 全生涯로 볼 때 그의 寄與金全體와 그의 給與受領額 全體가 均衡을 이룰 것이라는 保障은 기대할 수 없고 단지 各種 事故를 당하여 經濟的, 社會的으로 불리한 입장에 자주 처하게 되는 사람이 惠澤을 좀더 많이 입게 된다.

물론 社會保險의 경우도 保險制度의 運營에 國庫負擔이 포함되어 있어 垂直的 再分配要素를 지니고 있는데 國庫負擔比率은 租稅負擔比率이므로 社會保險收入合計에서 본 國庫負擔比率이 社會保險財政에 있어서 垂直的 再分配의 程度를 나타낸다.

〈表 6〉은 1986년도의 우리나라 社會保險의 國庫負擔比率을 나타낸다. 이 중에서 公·敎醫療保險과 公務員 및 軍人年金의 國庫負擔比率이 각각 41.9%, 49.1% 및 85.1%로 높은데 이는 이들 制度에 대해 政府가 使用者로서 保險料를 負擔했기 때문이다.

또한 醫療保險 및 年金의 경우는 각 개인의 賃金을 標準報酬月額의 상당등급에 위치시키고 해당 標準報酬月額에 保險料率을 곱하여 保險料醵出額을 정한다는 점에서도 垂直的 所得再分配의 要素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醫療保險 및 年金의 垂直的 所得再分配機能은 最上位의 標準報酬等級이 上限으로 고정되어 있다는 점과 보너스부분은 等級設定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效果가 약화될 수 있는데 標準報酬 最上位의 등급이 實際 所得分布의 어디에 위치하는가에 따라 보너스부분이 그것을 포함한 總所得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각각 再分配效果가 감소되는 정도를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들은 醫療保險의 경우 醫療費膨脹의 抑制作用을 하는 등 效率的 側面 또한 내포하고 있어 兩效果의 균형여부가 문제이다.

社會保障의 所得再分配效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公的扶助의 擴大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高所得階層에서 低所得階層에로의 所得移轉政策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韓國

8) 社會保險은 크게 醫療, 年金, 失業(雇傭), 産災(産業災害補償保險)의 4분야로 나누어지는데 이들은 民間의 私保險의 原理를 社會保障活動의 收支計算에 적용시킨 것으로 한편으로는 被保險者 個人에 있어서 미리 事故發生에 수반하는 危險(risk)을 분산하는 機能을 가짐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결과로서 保險集團內에서의 所得再分配效果를 기대할 수 있다. 이들 두가지 機能이 相互補完關係에 있다는 점에서 社會保險은 私保險과는 다른 長點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表 6〉 社會保險에 있어서 國庫負擔比率(1986)

(단위 : 百萬원)

	總收入	國庫負擔[1]	國庫負擔 / 總收入(%)
醫療保險			
公·教	201,426	84,444	41.9
職 場	544,876	0	0
示範, 任意地域 및 職種	53,499	2,121	4.0
小 計	799,801	86,565	10.8
年 金			
公務員[2]	406,711	199,842	49.1
軍 人[3]	225,914	192,192	85.1
私立學校教員[4]	78,250	9,625	12.3
小 計	710,875	401,659	56.6
產 災[5]	256,060	1,000	0.4
總計 및 平均	1,766,736	489,224	27.7

註 : 1) 醫療 및 年金의 경우 政府의 使用者로서의 保險料負擔을 포함.
2) 總收入에서 基本利殖收入, 合算返納金, 雜收入 및 國庫貸與奬學金 등은 제외.
3) 總收入에서 國庫貸與奬學金과 其他收入 등은 제외.
4) 總收入에서 基金利殖收入, 合算返納金, 其他收入 등은 제외.
5) 總收入에서 其他收入 제외.

資料 : 經濟企劃院, 『豫算概要』 및 『豫算概要 參考資料』, 1986, 1987 ; 大韓民國政府, 『歲入歲出決算報告書』, 1986 ; 公務員年金管理工團 및 私立學校教職員年金管理工團 內部資料 ; 勞動部, 『產災保險事業年報』, 1986 ; 保健社會部, 『保健社會』, 1986 및 「醫療保險事業現況」, 保社部 內部資料, 1987. 2 ; 醫療保險組合聯合會, 「1986 醫療保險統計年報」, 第9號, 1987 ; 醫療保險管理工團, 『1986 醫療保險統計年報』, 第8號, 1987.

〈表 7〉 政府의 社會保障費支出의 推移

(단위 : 億원, %)

	1975		1987	
	支出額	比 率	支出額	比 率
社會保險	362	41.6	17,407	76.5
公的扶助	488	56.1	4,586	20.2
社會福祉서비스	20	2.3	761	3.3
計	870	100.0	22,754	100.0

資料 : 大韓民國政府, 「歲入歲出決算報告書」, 各年度.
醫療保險組合聯合會, 『醫療保險統計年報』, 各年度.
勞動部, 『產災保險事業年報』, 各年度.
保社部, 國防部, 私立學校教職員年金管理工團 內部資料.

에서의 公的扶助制度는 社會保險에 비해 相對的으로 저조하다. 〈表 7〉에서 보듯이 社會保險이 보험료에 의해 대부분 財政充當이 되지만, 政府의 社會保障費支出中 社會保險이 차지하는 比率은 1975~87년간 41.6%에서 76.5%로 增加된 반면 公的扶助 比率은 公的扶

助制度가 政府補助金으로 財政充當이 되고 社會保險보다도 더 所得再分配的임에도 同期間中 56.1%에서 20.2%로 감소하였다. 더욱이 生活保護對象者가 全人口의 5.4%에 불과하며 受惠所得도 適正水準에 미달하고 있다.

그러므로 公的扶助制度에 보다 많은 比重이 주어져야 하며, 특히 低所得階層을 위한 公的扶助 및 福祉프로그램이 强化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租稅를 통해 財源調達이 이루어지는 福祉制度를 擴大함에 있어서 社會保險制度와 調和를 이루어야 한다. 즉, 社會保障制度는 貧困階層의 最低生活을 保障할 뿐만 아니라 貧困의 세습화를 방지하도록 改善되어야 할 것이다.

韓國의 社會保障制度가 아직 導入段階에 있고 그동안 각 관련부서의 경쟁적 입법으로 인해 制度가 分散되어, 給與가 部分的으로 重複되고 制度間 優先順位가 一貫性을 상실하여 資源의 非效率的 配分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社會保障制度를 全般的으로 計劃하고 調整할 行政機構의 新設이 필요하다.

社會保險은 危險分散機能을 極大化해야 하며 受惠者에 의해 財源이 調達되어야 하는 반면 公的扶助는 一般財政收入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리고 貧困階層의 經濟的 自立能力을 높이기 위해서 직업훈련과 노동관련 프로그램을 擴充해야 한다.

Ⅳ. 社會保障의 類型과 所得再分配效果

지금까지 租稅를 財源으로 하는 社會保障制度와 社會保險料를 財源으로 하는 社會保障制度間에는 所得再分配效果에 차이가 있음을 살펴 보았는데 다음에서는 租稅를 社會保障의 主要財源으로 하는 스웨덴과 英國, 그리고 社會保險料를 主要財源으로 하는 西獨과 프랑스를 예로 들어 社會保障의 所得再分配效果를 比較·分析해 보기로 한다.

〈表 8〉 社會保障의 所得再分配効果

	課稅前[1] 지니係數	課稅後[2] 지니係數	지니係數 改善率	社會保障에 의한 지니係數改善率[3]	社會保障制度의 特徵
스웨덴(1972)	0.346	0.302	12.72%	5.43%(42.71%)[4]	福祉國家型
英 國(1973)	0.344	0.318	7.56%	2.85%(37.69%)[4]	비버리지型
西 獨(1973)	0.396	0.383	3.28%	1.41%(43.13%)[4]	비스마르크型
프랑스(1970)	0.416	0.414	0.48%	0.20%(41.51%)[4]	비스마르크型

註: 1) 課稅前所得 = 當初所得 + 社會保障給付
2) 課稅後所得 = 課稅前所得 - 租稅 - 社會保障醵出
3) 社會保障에 의한 지니係數改善率 = 지니係數改善率 × (社會保障財源 / 總課稅)
4) ( )안의 數値는 各國의 해당연도의 總課稅 중 社會保障財源의 比率(%)임.

資料: 社會保障硏究所, 「OECD諸國における所得分配」, 『海外社會保障情報』, No. 55-59, 1982.
ILO, *The Cost of Social Security : 1972~1974*, 1979.
OECD, *Revenue Statistics of OECD Member Countries : 1967~1981*, 1982.

〈表 8〉에서 社會保障에 의한 「지니」(Gini) 係數改善率[9]은 總課稅(租稅+社會保障醵出)에 의한 「지니」係數改善率에 단순히 總課稅對比 社會保障財源의 比率을 곱하여 구했지만 이들 國家들의 比較는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4個國 중에서 스웨덴과 英國의 경우가 社會保障의 所得再分配效果가 크고 西獨과 프랑스의 경우는 所得不平等度의 改善에 미치는 效果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差異는 社會保障制度의 形態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스웨덴 및 英國의 社會保障制度가 租稅를 主要財源으로 하는 制度인데 반해 비스마르크型인 西獨과 프랑스의 社會保障制度는 社會保險을 근간으로 하는 組合主義的 性格의 制度로서 組合員間의 所得不平等度를 완화할 수 있다. 즉, 社會保險을 위주로 하는 비스마르크型도 어느 정도 所得 不平等을 완화시켜주는 機能을 수행하지만 全般的인 所得再分配效果面에서는 租稅를 社會保障의 主要財源으로 하는 福祉國家型이나 비버리지型이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韓國社會保險의 所得再分配效果로서 國民年金制度 導入實施가 향후 所得階層別 所得再分配에 미칠 영향과 아울러 現行 醫療保險制度가 所得再分配에 미치는 영향을 垂直的 再分配의 側面에서 분석해 보기로 한다.

有效保險料率(effective contribution rate)이라 함은 法定保險料負擔의 價値를 一定時點에서 勤勞所得階層別 當該勤勞者의 保險給與額과 비교하여 실제로 當該勤勞者의 保險料負擔分을 산정한 것으로 各 所得階層別 有效保險料率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EPR_i = SP + SP(1 - \frac{RB_i}{RP_i})$$

EPR_i : i 所得階層의 有効保險料率

SP : 法定保險料率 (國民年金의 경우 5% 假定)

RB_i : 全所得階層에 대한 i 所得階層의 保險給與占有率

RP_i : 全所得階層에 대한 i 所得階層의 保險料占有率

法定保險料率은 각 所得階層 勤勞者의 平均賃金에 대해서 一定 保險料率을 適用하지만, 有效保險料率은 實際的인 保險給與를 加重한 것으로 所得階層別로 다르다. 이러한 有效保險料率概念의 導入은 社會保險制度의 所得再分配에 대한 檢證을 매우 간편하게 한다. 즉, 基本假定으로 現行 社會保險制度가 垂直的 所得再分配效果를 지닌다고 가정하면 低所得階層의 保險料占有率은 保險給與占有率보다 작으므로 $SP[1-(RB_i/RP_i)]$項이 負의 값을 갖게 되어 低所得層에 대한 有效保險料率이 法定保險料率보다 작게 되며($EPR_i < SP$), 高所得階層에게는 保險料占有率이 保險給與占有率보다 크므로 결국 $SP[1-(RB_i/RP_i)$項이 正의 값을 갖게 되어 高所得階層에 대한 有效保險料率은 法定保險料率보다 크게 된다($EPR_i > SP$).

〈表 9〉는 1981년과 1985년 현재 醫療保險의 所得階層別 有效保險料率과 國民年金制度를 실시했을 때 1981년을 기준으로 향후 20

9) 社會保障寄與金은 社會保障稅 및 社會保險料를 의미한다.

〈表 9〉 우리나라 社會保險制度의 所得再分配効果

所得分位[1]	醫療保險[2]		國民年金[3]	
	給與占有率 / 保險料占有率[4]	有效保險料率(%)[5]	給與占有率 / 保險料占有率	有效保險料率(%)[5]
Ⅰ	1.13(0.89)	2.73(3.43)	1.33	3.35
Ⅱ	1.19(1.02)	2.54(3.03)	1.11	4.45
Ⅲ	1.29(1.14)	2.23(2.66)	0.99	5.05
Ⅳ	1.24(0.74)	2.39(3.89)	0.92	5.40
Ⅴ	0.70(0.74)	4.08(3.89)	0.88	5.60
法定保險料率		3.14(3.09)		5.00

註： 1) 所得分位方法은 標準報酬月額 10萬원 미만을 Ⅰ分位, 10萬~20萬원을 Ⅱ分位, 20萬~30萬원을 Ⅲ分位, 30萬~50萬원을 Ⅳ分位, 50萬원 以上을 Ⅴ分位로 任意區分한 것이다. 단 1981년 醫療保險의 경우는 Ⅳ分位와 Ⅴ分位를 통합하여 계산한 것임.
2) 1985년 144개 職場醫療保險組合資料를 分析對象으로 하였고 ( )안의 數値는 1981년을 對象으로 한 分析임.
3) 1981년을 기준으로 向後 20년후의 保險給與現價 및 保險料終價를 기초로 한 推計임.
4) 給與占有率 및 保險料占有率은 各 所得分位別 勤勞者數(혹은 被保險者數)를 加重하지 않고 各 所得分位에는 各 所得分位를 대표하는 勤勞者(혹은 被保險者)가 1명씩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各 所得分位別 占有率을 산출한 것임.
5) 有效保險料率이란 所得段階別 保險料占有率 對比 保險給與占有率의 比率을 加重한 所得階層別 實質的인 保險料負擔率이다. 그 算出方式은 有效保險料率 = 法定保險料率 + 法定保險料率(1-所得階層別 給與占有率/所得階層別 保險料占有率)

資料： 延河清 外, 『國民經濟와 福祉年金制度』, 硏究叢書 50, 韓國開發硏究院, 1982.
延河清 外, 「醫療保險擴大改善方案」, 政策討議資料 8612, 韓國開發硏究院, 1986.

년 時點에서 본 勤勞所得階層別 有效保險料率의 推計値를 각각 나타내고 있다.

醫療保險의 경우 所得階層別 有效保險料率은 1981년과 1985년을 比較할 때 1981년은 所得再分配의 逆機能을 보여주고 있으나 1985년에는 所得再分配의 긍정적인 面을 보여주고 있다. 즉, 1981년에는 第Ⅰ分位에 속하는 所得階層은 保險料占有率보다 保險給與占有率이 낮아 有效保險料率이 法定保險料率을 상회했으나 1985년에는 所得 第Ⅰ分位의 有效保險料率이 法定保險料率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1977년부터 實施되어온 醫療保險制度가 定着段階에 이르렀고 本人負擔率을 적정수준으로 調整한 때문일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1985년의 경우도 부분적으로는 (所得階層 第Ⅰ分位에서 第Ⅲ分位까지) 낮은 所得階層일수록 有效保險料率이 높아 낮은 所得階層의 實質保險料負擔率이 상대적으로 높은 양상이 나타나므로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醫療保險은 所得階層全般에 걸친 所得再分配效果를 갖는다고는 볼 수 없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表 9〉에서 國民年金制度實施에 따른 所得再分配效果의 推計는 所得階層別 保險料에 대한 給與比率이 所得이 증가할수록 감소하여 國民年金制度導入이 所得再分配의 肯定的인 效果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分析되었다. 다시 말해서 實質負擔保險料率인 有效保險料率은 所得 第Ⅰ分位의 경우 3.35%로 가장 낮고 단계별로 증가하여 所得 第Ⅴ分位階層의 경우는 法定保險料率을 상회하는 5.6%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우리는 資料制約등의 이유로 우리나라 醫療保險과 國民年金의 所得再分配效果를 개별적으로밖에 살펴볼 수 없었는데, 社會保障의 所得再分配 및 資源配分效果의 豫測이 社會保障의 本來的 機能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전제가 된다는 측면에서 今後는 社會保險뿐만 아니라 公的扶助 및 社會福祉서비스 등 社會保障制度全體를 포괄하는 社會保障의 經濟效果分析이 필요하며 특히 稅制와 社會保障制度를 연계시키는 總合的 分析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V. 結　　言

韓國經濟가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政策的 課題란 그동안의 급속한 經濟成長過程에서 심화된 階層間 不均衡의 완화이며, 동시에 이를 가능케 하는 持續的 成長으로 集約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의 基本的 欲求에 부응하고 持續的인 成長潛在力를 擴充한다는 차원에서, 전반적인 國民福祉水準을 향상시키고 最低所得層의 基本生活을 보장함으로써 階層間의 갈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한바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성장에 따른 고용창출과 소득증대로 빈곤문제를 해소할 수 있으나, 사회보장의 관점에서 볼 때 돌봐 주는 사람도 없고 勞動能力도 없는 노령자, 연소자, 장애자 등의 생활유지를 위한 所得保障이 필요하며 사회안정적 차원에서도 경제적 취약인구계층에 대한 생활의 보장이 필요하다. 둘째, 都市化 및 核家族化 現象에 따라 家族間 連帶感 및 責任感이 약화되고 있고 빠른 속도로 공업화가 진전됨에 따라 產業災害등 社會的 危險發生可能性이 높아져 사회보장을 통한 제도적 보호가 보다 절실하다. 셋째, 경제가 발전하여 산업화가 진전되고 소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인간다운 삶'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사회적 욕구가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相對的 所得隔差와 生活與件의 質的水準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어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이 필요하다.

資源配分의 效率性 側面에서 볼 때 과다한 社會保障費支出은 다른 부문과의 상충을 야기하여 궁극적으로 非效率을 초래할 수 있다. 先進產業諸國의 경우 社會保障費支出이 政府財政支出의 절반에 육박한 결과 만성적인 政府財政赤字, 勤勞意慾의 감퇴, 地下經濟의 팽창 및 對外競爭力의 약화를 초래하였다. 또한 開發途上國에 있어서도 국민소득수준에 비추어 볼 때 분수에 넘치는 과다한 社會保障費支出은 資源配分의 비효율을 초래하였다. 지나친 사회보장비지출로 결국은 經濟破綻에 이른 대표적인 예로서 「페론」시대의 아르헨티나 및 스리랑카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는 社會福祉, 公的扶助事業과 함께 醫療保險과 國民年金 등의 社會保險體制를 중심으로 선진국형 社會保障體制로 급속히 이행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사회보장의 전반적인 體系問題와 제도상호간의 整合性 및 連繫性 問題를 적절히 조정하여 資源의 浪費를 막고 效率性 提高를 극대화하여야 할 것이다.

의료보장으로서 의료보험제도의 발전방향은 장기적으로 危險分散效果를 극대화하고

衡平負擔을 기할 수 있는 醫療保障體制로 발전되어야 한다. 이와 아울러 醫療供給施設의 확충, 醫療傳達體系, 醫藥分業 등 관련의료제도의 합리적 개편, 全國民 醫療保險化에 따르는 國民醫療增加의 적절한 관리방안의 강구 및 醫療費支出方法의 개선 등이 요구되고 있다.

韓國의 인구구조는 현단계로서는 老齡人口比率이 높지 않으나 앞으로 빠른 속도로 先進國型에 접근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사회보장제도는 人口老齡化에 대비하여 老人福祉에도 큰 비중을 두어야 할 것이다. 所得保障으로서의 연금제도의 발전방향은 앞으로 농·어민, 도시자영자 등을 포함한 全國民年金制度로 확대되어야 하며 保險給與 및 醵出料 負擔의 적정화와 年金財政의 안정적 관리를 도모함으로써 빈곤을 예방하고 國民基本生活을 보장한다는 公的年金制度의 취지에 충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財政의 健全性과 受惠의 公平性을 모두 고려한 國民年金制度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재정문제를 고려하여 積立方式으로 하되 장기적으로는 賦課方式으로의 전환이 필연적이며 이때 世代間 費用負擔轉嫁에 대한 문제는 사전에 國民的 合意를 이루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장기적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 사회보장정책의 기본방향은 소극적 성격의 단순한 所得移轉的 福祉政策이 아니라 그 원인을 제거하고 발생을 예방하는 積極的 福祉政策이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사회복지부문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보다 강조하여 이 부문에 대한 財政支出의 優先順位를 높여야 할 것이다. 또한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정착에 있어서 종교단체 및 각종 사회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福祉欲求를 全社會的 努力으로 수렴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아울러 지방의 自律權을 강화하여 중앙정부에 의해 주도되는 강제적 방식에서 탈피해야 할 것이다.

국제비교상 한국의 社會保障費支出水準은 社會的 適正水準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所得再分配를 강화하도록 사회보장제도를 확충하는 것이 우선적인 정책과제라 할 수 있다. 즉, 사회보장부문의 財政支出比重을 높이고 특히 저소득층을 위한 公的扶助 및 社會福祉事業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정부재정지원 중심의 公的扶助事業과 受益者負擔原則의 社會保險制度擴充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각종 사회보장제도를 전반적으로 조정, 기획할 수 있는 行政機構의 신설이 필요하다.

또한 국민의 기본적 욕구를 보다 광범위하게 수용하는 한편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과도한 期待心理를 관리하기 위하여는 사회보장제도의 확충뿐만 아니라 社會開發政策의 內實化와 社會意識 提高를 통해 貧困感을 해소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선진국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과도한 복지제도가 무기력하고 정체된 사회를 만들 수 있고 福祉의 政府依存이 과도해지면 가족의 유대관계가 약화되고 세대간의 무관심 내지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均衡있는 社會保障政策은 국민복지증진이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성장전략의 능률성, 효율성 제고의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즉, 社會保障의 擴充은 경제적 효율에 역효과를 미치는 社會的 緊張을 완화시킴으로써 生産性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보장제도의 확대 및 도입·실시에 대한 강한 국민적 욕구는 비용부담의 공평성과 소득계층 및 세대간 負擔의 歸着問題를 야기할 것이다. 복지재정의 확대는 추가적인 재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財政構造의 變化를 수반해야 할 것이나 단기적으로 복지재정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함으로써 稅收增大를 초과하는 總財政規模의 팽창없이 복지재정지출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 參 考 文 獻 ◁

經濟企劃院, 『主要經濟指標』, 1971~86.

財務部, 『韓國의 財政統計』, 1979~86.

延河清 外, 『國民經濟와 福祉年金制度』, 韓國開發硏究院, 1982.

延河清 外, 『社會保障制度의 政策課題와 發展方向』, 韓國開發硏究院, 1988.

IMF,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Yearbook*, 1977~86.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IISS), *The Military Balance*: *1985~86*, *1987~88*, London.

Friedman, M., *Capitalism and Freedom*,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2.

Rosa, Jean J. (ed.), *The World Crisis in Social Security*, San Francisco: The Institute for Contemporary Studies, 1982.

The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Report*, 1985.

經濟構造變化와 下請生産體制

朴 埈 卿

本稿에서는 大企業과 中小企業간의 合理的 生産分業體制를 論議하기 위한 參考資料로서 後進的 狀況에서 출발하여 效率的 分業體制를 형성하게 된 日本下請制의 展開過程과 下請論의 主要論點을 槪括的으로 整理하였다. 下請制의 展開過程에는 日本에 特殊한 經濟的·社會的·文化的 要因들이 작용하였지만, 産業技術發展과 市場規模擴大에 의한 分業의 擴大·深化, 分業體制의 再編過程에 一貫된 經濟的 合理性과 競爭原理의 貫徹, 分業集團全體로서 高生産性과 環境適應性을 실현하는 企業間 連結組織의 特性 등은 日本的 條件과 무관한 經濟論理로 설명될 수 있다.

I. 序

工業化過程에서 大企業과 中小企業간의 下都給分業은 産業技術發展과 市場規模擴大에 의하여 擴大·深化된다. 加工組立型 産業의 國際競爭力을 支持하는 日本의 下請制에서도 下請組織의 機能的 編成과 企業間 協力關係의 形成이 工業化初期에 실현된 것은 아니다. 日本의 下請生産體制는 戰時統制經濟下에서 軍需財閥의 生産體系에 中小機械工業을 編入시키기 위한 系列化에 의하여 階層的 構造가 형성된 후 量産型 機械工業의 國際競爭力이 培養된 高度成長期에 機能的 編成이 진전되었고, 低成長基調下의 知識集約化過程에서 外注下請管理의 合理化와 外注下請企業의 再編成을 통하여 分業集團全體로서 高生産性과 環境適應性을 실현하는 企業間組織으로 進化하였다.

이러한 下請制의 展開過程에서 下請企業간에 技術力·經營力의 隔差가 확대되면서 階層分化가 진행되고 多數의 下請企業이 淘汰되었으나, 環境變化에 適應하려는 下請企業의 自主的 努力과 新舊企業의 交替를 통하여 下請企業 全般의 技術力·經營力이 향상되고 下請組織도 柔軟한 環境適應力을 발휘하는 連結組織으로 進化하고 있다. 下請組織을 포함한 生産分業體制도 企業集團 중심의 統制

筆者: 本院 硏究委員

型 垂直的 連結組織에서 參加型 水平的 連結組織이 結合된 複合的 連結組織으로 進化하면서 專門性·競爭性·協力性의 調和를 통하여 高生產性과 環境適應性을 발휘하고 있다. 支配·收奪의 問題를 제기하던 下請制가 效率的인 社會的分業體制로 轉化하는 과정에 一貫된 特徵은 經濟的 合理性과 競爭原理가 貫徹된 것이라 할 수 있다.

下請制의 變化와 더불어 下請論의 視角과 論點도 多元化되었다. 戰時中의 下請論爭과 戰後의 系列化論爭을 一貫한 下請企業의 技術的 後進性과 下請關係의 支配·收奪性에 관한 論議는 高度成長期를 지나면서 後退하고 下請組織을 포함하는 企業間 組織全體로서 效率性을 발휘하는 要因을 解明하려는 多樣한 論點이 제시되었다.

本稿에서는 大企業과 中小企業간의 合理的 生產分業體制를 論議하기 위한 參考資料로서 後進的 狀況에서 출발하여 效率的 分業體制를 형성하게 된 日本下請制의 展開過程과 下請論의 主要論點을 概括的으로 整理하였다. 下請制의 展開過程에는 日本에 特殊한 經濟的·社會的·文化的 要因들이 작용하였지만, 產業技術發展과 市場規模擴大에 의한 分業의 擴大·深化, 分業體制의 再編過程에 一貫된 經濟的 合理性과 競爭原理의 貫徹, 分業集團全體로서 高生產性과 環境適應性을 실현하는 企業間 連結組織의 特性 등은 日本的 條件과 무관한 經濟論理로 설명될 수 있다.

1) 通商產業省(1963) 참조.

Ⅱ. 高度成長期의 下請系列化

下請工業은 滿洲事變(1931년) 이후에 中小機械工業이 軍需工業의 生產力增强에 動員되면서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당시에는 中小下請工業의 前近代性이 近代的 機械工業, 특히 互換性部品의 分業生產을 통하여 規模의 經濟를 실현하는 量產型 機械工業의 성장을 제약하였다. 당시의 下請工業에는 品質·精度에 대한 요구가 엄격한 量產型 機器의 部品을 製造·加工할 수 있는 生產設備, 技術力 및 經營管理力이 결여되어, 大工場에서 多種少量의 部品까지 內製하는 一貫生產方式을 취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生產費用面에서 國際競爭力을 확보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 軍需工業의 大規模 增產에도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1930년대 중반에 工業組合의 組織을 통하여 中小下請工業을 육성하게 되었다. 下請關係 工業組合이 조직되어 軍工廠과 大工場의 發注가 地方廳에 의하여 적합한 工業組合에 配定되고, 工業組合이 受注한 作業을 工程別로 分割하여 組合員에 配分하였다. 組合員의 대부분이 규모가 영세하고 技術力이 빈약하였기 때문에 工業組合은 工程을 細分하여 個別 組合員의 作業內容을 單純化하고 組合의 檢査機能을 강화하였다[1].

그러나 地方廳을 經由하여 工業組合이 受注하는 下請管理로는 急增하는 軍需工業의 發注를 소화하는 데 문제가 많았다. 地方廳의 統制로는 복잡해지는 下請去來의 管理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技術指導가 불충분하여 作業內容이 다양하고 특수한 加工技術이 요구되는 大工場의 發注를 소화하기 위해서는 大工場과 下請工場간의 直接去來가 필요하였다. 당시의 浮動的 下請去來로는 下請企業의 指導·育成이 어려웠기 때문에 長期去來를 통하여 有機的 協力關係를 구축하기 위한 專屬下請化로 정책이 전환되었다. 1940년에 協力工場管理가 도입되었고 1944년에는 軍需財閥의 大工場을 頂點으로 하여 專屬協力工場(母企業 依存度 80%이상), 共同協力工場(母企業 依存度 30~80%) 및 一般集團利用工場으로 구성되는 階層的 下請生產體制를 구축하기 위한 系列化가 추진되고, 戰時型 標準工作機械의 製造에서 集團體制의 效率性을 추구하는 系列管理가 실시되었다.

그러나 당시의 日本經濟에는 量產型 機械工業의 自生的 成長이 가능한 諸條件이 具備되지 않아서 下請工業의 발전에는 한계가 있었다. 軍需工業이 전개되기 이전에 日本의 機械工業은 內需에 기반을 둔 多種少量의 產業機械를 注文生產하는 段階에 있었으며, 技術的 後進性과 市場規模의 制約으로 國際競爭力의 培養이 어려웠던 量產型 機械工業에서는 完製品의 輸入과 外資企業의 國內生產에 의존하여 技術蓄積도 不振하였다. 이러한 상태에서 軍需工業이 전개되었으므로 戰時中에 學習效果에 의하여 技術·노하우가 상당히 축적되었어도 先發工業國과 경쟁이 가능한 技術水準에 도달할 수는 없었다[2].

戰時中에도 精密機械技術의 부족으로 高級工作機械는 輸入에 의존하였으며 國產化된 軍用車輛도 品質·性能이 先發工業國의 수준에 현저히 未達하였고 生產性의 차이가 현격하여 價格競爭力도 없었다.

戰前의 工業化를 뒷받침한 加工貿易은 低賃金의 過剩勞動人口에 기반을 둔 輕工業(주로 綿工業)에 의하여 전개되었다. 이러한 加工貿易이 經濟循環에서 遊離되어 軍需에 의존하던 重工業部門에 필요한 原材料·生產設備의 輸入財源을 조달하였다. 過剩勞動人口의 低賃金에 의존하여 殘存하던 前期的 中小企業이 問屋制下請을 통하여 加工貿易에 動員되었다. 1920년대 후반의 金融恐慌으로 問屋과 地方中小銀行이 몰락하여 金融基盤을 상실하게 된 中小企業을 都市銀行의 融資集中을 통하여 主要產業에서 支配機構를 확립한 大企業群이 問屋制下請을 통하여 조직적으로 이용하였다[3]. 戰前의 工業構造高度化는 輕工業段階의 工業構造를 重工業型 工業構造로 편성하려는 政治的·經濟的 强制에 의하여 皮相的으로 전개되었기 때문에 基底部門의 前期的 要因이 工業化過程에서 개선되지 않았다. 蓄積資本의 不足, 技術的 後進性, 협소한 國內市場, 低賃金의 過剩勞動力 등 後進的 諸條件에 의하여 工業發展이 제약되었고, 大企業과 中小企業의 관계에서도 前期的 收奪이라는 逆行的 性格이 固着되었다.

1930년대초 이후 世界經濟와 隔離되어 技術的 後進性이 固着되었던 日本經濟는

2) 尾高煌之助(1983) 참조.

3) 問屋은 江戶時代(1600~1868)에 商品別·產地別로 特化한 仲介商人들로서 連携하여 獨占的 商權을 행사하면서 流通過程과 家內工業의 生產段階를 支配하였다. 明治維新 이후 近代的 都賣商이 출현하고 問屋은 부분적으로 殘存하게 되었다. 小宮山(1941)은 中小工業의 存立形態別 分類에서 百貨店, 貿易商社, 都賣商 등 商業資本의 支配下에 纖維, 衣類, 雜貨 등을 생산하는 中小下請工業을 問屋制下請으로 指稱하였다.

1950년대 전반부터 獨寡占 大資本의 競爭的 技術導入에 의하여 급격하고 광범위한 技術革新을 실현하였다. 戰後 日本經濟는 落後된 生產技術과 陳腐化된 生產設備로 인하여 經濟自立의 關鍵인 輸出伸張을 기대할 수 없었다. 이러한 難關을 극복하기 위하여 生產設備의 近代化와 先進技術의 導入에 의한 國際競爭力의 강화를 목적으로 企業合理化促進法(1952년)이 제정되었다. 合理化政策의 保護·支援下에 大量生產技術이 도입되고 設備投資의 伸張이 가속되면서 旣存產業이 近代化되고 新產業(石油化學工業, 家電工業, 合纖工業)이 勃興하여 1950년대 중반 이후 重工業構造의 高度化가 급속히 진행되었다. 大規模設備投資를 뒷받침한 融資集中機構에 의하여 企業集團이 형성되고 大企業體制가 재건되었다[4].

戰時經濟下에서 부분적으로 展開되었던 系列化는 1950년대 전반에 產業全般에서 再開되어 工業生產이 급격하게 신장하기 시작한 1950년대 중반부터 급속히 확대되었다. 寡占的 大資本간의 市場占有競爭이 加熱되면서 生產力增强을 위한 外注下請의 이용이 확대되었다. 外注下請의 排他的 利用을 위하여 종래의 浮動的 下請工場이 아니라 連繫가 강화된 協力工場을 경쟁적으로 확보하려 하였다. 高成長部門의 大資本은 거액의 設備投資와 병행하여 下請系列集團을 編成하였다. 舊財閥系 集團과 結合關係가 약한 家電, 自動車, 鐵鋼部門의 大資本이 보다 적극적으로 下請系列集團을 확대·강화하였다. 舊財閥系 企業集團의 同系企業間 相互依存關係에 대항하기 위하여 關聯部門의 系列支配에 의한 企業集團化를 지향하지 않을 수 없었다. 關係會社와 下請系列의 擴張은 資本蓄積이 충분하지 않았던 大資本이 生產力을 增强하는 유효한 수단이었다.

外注下請이 급격히 증대하면서 下請企業의 生產力不足, 納期遲延 및 不良增加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管理技法이 도입되고 施行錯誤가 반복되었다. 下請企業도 母企業의 요청에 따라 生產力의 量的·質的 擴充, 經營管理의 近代化, 單價引下 등에 노력하였다. 母企業은 우수한 下請工場을 선별하여 系列에 編入시키고 技術指導·設備貸與·融資斡旋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육성하였다. 취약한 下請工場은 再下請工場으로 정리되고 再下請工場의 管理가 부분적으로 系列下請工場에 위임되었다. 系列下請工場이 專門業體로 육성되어 系列外部로 販路를 확대하고 技術·經營力이 향상되어 母企業의 부담을 경감하는 사례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貿易外換自由化가 진행된 1960년대 전반에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母企業의 量產體制가 확립되면서 下請體制의 前近代性이 障隘要因이 되어 母企業의 量產體制에 적합하게 下請系列集團이 再編成되었다. 1963년의 불황을 계기로, 下請系列集團의 量的擴大도 둔화되었다. 自動車工業에서는 工程別 分散發注에서 集中發注와 一括發注(unit發注)로 發注方式을 전환하면서 下請企業을 整理하고 系列集團의 質的强化策으로 系列企業의 提携·合併을 추진하였다. 電氣電子工業에서도 量的으로 팽창해온 系列集團을 再編成하여 系列集團의 利點을 강화하는 것이 經營管理의 핵심적 과제가 되었다. 電氣電子工業의

4) 衣本篁彦(1987) 참조.

大企業은 資本의 重點移動, 經營의 多角化 및 脆弱部門의 整理·統合을 추진하면서 下請系列集團을 再編成하고 系列企業을 축소하였다. 이와 같이 量産體制가 확립되는 過程에서 獨占資本의 系列에 編入되어 성장한 中小企業·中堅企業의 階層分化와 企業系列의 少數精銳化가 진행되었다.

經濟規模가 확대되면서 專門業體도 광범위하게 출현하였다. 電子業種의 部品業體가 中堅企業으로 성장하고 機械加工의 下請企業이 專門加工業體로 성장하였다. 專門業體의 육성은 母企業의 發注方式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系列下請企業에 대한 集中發注와 完成品發注로 전환하여 勞動力不足을 해결하고 外注에 의한 生産擴大를 달성할 수 있게 되었다. 系列下請企業이 獨立專門業體로 육성되면서 購買·外注의 競爭的管理(外注管理에서 競爭原理를 활용)와 部品의 安定供給을 위한 複數發注가 확대되었다. 部品業體도 母企業의 複數化에 의하여 量産體制의 確立·專門技術의 蓄積·硏究開發投資가 가능하게 되었다.

外注管理의 合理化의 수단으로 定時定量納入制와 價値分析(value analysis)이 導入되었다. 系列企業에 品質管理와 價値分析의 思考가 침투되고 設備能力과 硏究開發機能이 강화되었다. 系列企業은 專屬的 下請企業(협력공장)에 대하여 동일한 生産管理의 도입과 철저한 原價管理를 강제하고 하청기업의 合併·提携와 選別·整理를 추진하였다. 下請價格의 결정에서도 母企業의 原價計算技法이 고도화되어 단순한 事後的 原價計算을 지양하고 「標準原價」主義를 지향하여 하청기업의 原價意識을 향상시키고 計劃的·定期的으로 單價引下를 강제하기 시작하였다.

1960년대 후반에 下請去來關係가 系列集團內部의 閉鎖的 關係에서 集團外部로 去來先을 多邊化하는 開放的 關係로 이행하기 시작하였다. 賃金隔差를 이용하는 종래의 下請管理는 폐쇄적 親子關係(支配·從屬關係)를 기반으로 운영되었으나 1960년대 전반부터 勞動力不足이 심화되고 賃金隔差가 축소되어 下請管理의 合理化가 불가피하였고 貿易黑字의 定着으로 經濟의 國際化가 가속되면서 國際競爭에 대비하는 大型合併 중심의 産業再編成이 진행되어 外注下請體制의 再整備가 요구되었다. 下請企業을 포함하는 企業集團 전체로서 國際競爭力을 강화하기 위하여 合理的 生産分業體制를 확립한다는 관점에서 外注下請管理의 合理化가 전면적으로 추진되었다. 效率的인 分業生産體制를 확립하는 企業集團이 內外市場에서 優位를 점하게 되므로 外注企業을 獨立型專門業體나 專屬型專門業體로 육성하여 發注企業과 外注企業이 장기적으로 안정된 이윤을 확보하는 合理的 生産分業體制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였다. 外注利用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計劃的 內外製政策이 수립되고 計劃的 內外製政策下에 重點外注制度에 의한 下請再編成이 진행되었다. 重點外注制度는 外注·下請企業 중에서 生産能力·技術力·經營力·人材 등을 고려하여 장래의 中核的 協力工場으로서 有望한 重點工場을 선정하고 母企業의 生産過程에 編入시켜 集中發注하며 脆弱한 下請企業을 中核的 重點工場下에 再下請(2次, 3次)으로 編成하여 重層的 下請構造를 정책적으로 구축하는 것이다.

重點外注制度가 새로운 再編成方法은 아니

지만, 重點工場은 位置·役割·生産規模 등에서 종래의 系列工場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었다. 重點外注制度에 의한 體制整備와 함께 外注管理體制의 近代化가 추진되었다. 重點外注의 擴大를 통하여 生産過程의 外延的 擴大가 진행되면서, 사실상 分工場化된 重點外注工場의 管理를 포함하는 生産管理體制 全般의 近代化가 추진되었다. 外注管理專門職制가 정비되고, 設計·生産管理 및 外注管理의 機能的 統合과 外注管理의 電算化가 진전되었다. 價値分析에 의하여 外注下請工場의 作業·工程을 검토하고 設計·仕樣을 수정하여 部品點數를 削減하고 組立을 簡素化하였다. 價値分析專門職을 도입하고, 關係技術陣과 外注工場의 職員을 動員하여 協力體制를 구축하였다. 母企業에서 看板方式에 의한 在庫管理·工程管理가 철저히 실시되면서 直納制가 확대되고 納期遲延에 대한 벌칙이 강화되었다. 外注管理에서 品質管理·價値分析·無缺點運動이 강화되고 無檢査納入이 확대되면서 母企業과 重點工場간에 生産의 同期化가 진전되었다.

企業集團의 階層的 經營構造를 보면, 關係會社의 管理에서는 長期經營計劃의 일환으로 社會的分業에 의한 協業體制를 구축한다는 開放的 立場에서 協力·調整하여 經營全體의 발전을 도모하였다. 系列企業의 관리에서는 生産·技術의 系列化·合理化를 강화하면서 品種別 量産化·高級化·機能部品의 unit생산·技術開發機能(商品企劃力, 販賣促進能力, 轉換機能 등을 포함)의 강화를 위한 集團化와 提携·合併이 추진되었다. 費用節減을 위하여 量産化를 시도하는 系列企業에서 母企業의 複數化에 의하여 開放的 要素가 증대하였고 모기업은 資本的 支配·管理와 技術開發機能의 利用을 강화하였다. 專屬的下請(系列·協力工場)의 管理에서는 종래의 勞動集約的 工程에서 高加工度 機能部品의 生産으로 전환시키고 規格化·標準化를 촉진시키기 위한 經營指導·情報提供·技術指導의 協力工場管理(外注管理)를 강화하였다. 協力工場管理는 品質, 納期, 價格, 財務, 勞務, 生産能力(技術·設備), 經營, 協力度, 採算性 등을 포괄하는 綜合的인 管理로 발전하였다[5]. 中小企業白書(1969)에 의하면 自動車産業에는 14개의 母企業下에 350개의 部品業體(子會社, 系列會社)와 專屬下請企業을 포함한 8,000개의 1次, 2次, 3次 下請企業과 浮動的 下請企業이 종속되어 있는 多層的 生産構造가 형성되어 있었다.

이러한 階層的 經營構造에서 獨寡占 大企業이 關係會社와 系列會社를 관리하고 系列會社가 專屬的 下請企業을 관리하며 專屬的 下請企業이 浮動的 下請·再下請企業을 支配管理하는 階層的 管理機構를 통하여 獨占利潤의 實現에 따른 負擔이 下請과 再下請으로 轉嫁되었다. 低賃金 收奪의 下請管理가 뿌리박고 있는 底層의 浮動的 下請企業과 再下請企業은 여전히 相對的 低賃金·劣惡勞動條件 長時間勞動에 의존하는 불안정한 經營狀態에 있어 家內勞動·季節勞動·內職·臨時工·時間制勞動 등과 결부되었다. 階層的 經營構造는 母企業을 중심으로 集中·支配를 强化하며 企業集團의 再編成을 통하여 負擔轉嫁·收奪機構로서의 機能을 보다 强化한다는 비

5) 加藤誠一·水野武·小林靖雄(1976) 참조.

판이 제기되었다[6].

1960년대 후반에 零細下請企業의 數가 현저히 증가하여 3次 이하의 再下請으로 編成되었다. 戰前부터 生業的 自己雇傭의 開業이 中小企業을 再生産하는 機構로 존재하였으며 高度成長期에 開業機會가 확대되면서 大企業과 中小企業에서 技術·技能을 연마한 從業員에 의하여 生業的 自己雇傭이 아닌 經濟的 地位의 향상을 위한 開業이 확대되었다. 勞動力의 不足과 賃金隔差의 縮小에 대응하여 中堅企業과 中規模企業도 정책적으로 종업원을 독립시켜 協力下請工場을 확보하고 分散的 生産方式을 취하여 부족한 노동력의 확보와 생산확대를 실현하였다.

獨占資本간의 關係에는 協助와 競爭의 兩面性이 있어 「非獨占企業의 體系的·制度的 利用」에서 協助性이 나타난다. 母企業의 複數化는 量産效果와 受注競爭을 통하여 合理化를 촉진시킨다. 이러한 多重的 去來關係가 系列企業과 專屬下請企業에서는 확대되기 시작하였으나 底層의 再下請에서는 閉鎖的 去來關係가 지속되어 母企業에 대한 從屬性이 강하였다. 從屬性이 강한 再下請에서는 經營의 不安定性·母企業의 强制(再下請의 合理化에 소극적인 行態)·再下請간의 過當競爭으로 近代化가 부진하였다. 1970년에 下請中小企業의 體質强化와 下請關係의 近代化를 목적으로 「下請中小企業振興法」이 제정되어 再下請에도 정책이 침투하기 시작하였다.

下請中小企業의 近代化와 專門化에 의한 自主獨立化(脫下請)도 정상적인 社會的分業의 發展과 관련하여 問題性을 內包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母企業의 複數化→獨立專門業體化→정상적 社會的分業으로의 發展可能性이 문제가 되었다. 母企業의 複數化가 이루어진 中堅企業도 資本·人的關係를 통하여 特定 母企業의 支配下에서 硏究開發力(商品企劃力)이 利用·收奪될 가능성이 있다. 下請價格의 決定에서도 目標原價에 의한 費用管理에 의하여 工程別 單價決定이 적용되는 범위가 축소되고 母企業의 目標原價와 下請企業의 價格見積에 의한 價格決定이 확대되면서 下請企業의 能率과 費用에 따라 個別的으로 下請單價를 결정하게 되어 하청기업이 結束하여 價格引上을 교섭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 價格決定面에서 外注·下請企業의 分離支配가 강화된 것이다.

Ⅲ. 低成長期의 外注下請

高度成長期에 下請企業이 母企業에 系列化되어 專屬化하는 경향을 보인 것은 下請企業의 입장에서도 經營安定(受注保全), 技術·經營指導, 母企業과 함께 成長할 수 있는 將來性 등 利點이 있었기 때문이다. 母企業간의 競爭이 치열하여 系列·下請企業을 指導·育成하면서 合理化를 요청하였고 下請再編成이 波狀的으로 진행되었다. 好況期에 下請利用이 확대되고 不況期에 限界下請企業이 정리되었다. 優良下請企業은 母企業의 엄격한 요청(原價節減, 品質向上, 納期管理)에 대응하기 위하여 精度向上·加工度向上(unit化)·技術開發에 노력하는 과정에서 專門性이 심

6) 加藤誠一·水野武·小林靖雄(1976) 참조.

화되었다. 下請中小企業이 專門技術을 축적하고 開發力(技術·製品)을 배양하여 母企業과의 結合關係가 약화되면서 社會的分業이 深化되었다.

多重的 去來關係의 확대에 의한 社會的分業의 深化는 低成長基調로 이행하면서 가속되었다. 不況期의 一時的 下請整理가 아닌 構造的 下請整理가 전개되었다. 發注比率과 發注先의 변경에 의하여 限界下請企業을 정리하고 有力下請企業과 協力關係를 强化하여, 價値分析·硏究開發의 협동추진을 확대하고 生産의 同期化를 철저히 추진하였다. 「最惡의 狀態에서도 採算性있는 生産體制」를 구축한다는 基本方針下에 外注加工費도 綜合的 原價管理의 관점에서 엄격히 관리하였다. 下請價格이 協議에 의하여 결정되는 형식을 취하지만 실제로는 現實的·潛在的 競爭과 下請再編成에 직면하여 下請企業이 스스로 저렴한 가격을 제출하지 않을 수 없어 철저한 合理化에 의한 原價節減을 시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최악의 상태에서도 불가결한 下請企業群(重點外注工場과 特殊技術을 지닌 專門下請業體)에 적용되는 溫情主義도 실제로는 合理化의 강제를 수반하였다. 主要部品의 安定供給을 위하여 外注下請企業의 經營에 개입하고 合理化를 구체적으로 指示·監督하였다. 協力下請工場의 生産現場 再點檢·中間在庫의 壓縮에 의한 費用節減·母企業과 下請工場의 生産管理統合이 실시되고 간판방식에 의한 納入이 확산되었다. 母企業이 요청하는 費用節減·納期短縮·精度確保·品質管理를 실현하기 위하여 自動化機械(數値制御工作機械, machining center)를 도입하는 外注下請企業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外注·下請管理에서 內外製와 外注先의 변경에 의하여 競爭壓力을 활용하였다. 外注品目의 一部를 內製하면서 생산비를 비교하고 內製가 有利해지면 外注에서 內製로 전환하였다. 複數發注와 外注先別 發注量의 변경에 의하여 外注企業간의 경쟁이 강화되었고 外注企業의 선정에서 탈락된 多數의 下請企業도 潛在的 競爭者로 대기하였다. 個別的 協議를 통하여 外注企業이 生産費를 回收하는 수준에서 購入價格을 決定(購入價格의 差別化)하고, 最低購入價格을 上廻하는 生産費에서도 一部를 內製하면서 合理化와 價格引下를 요청하고 外注下請을 再編成하였다.

構造的 長期不況이 外注下請體制의 近代化를 가속시켰다. 不況을 이유로 合理化와 價格引下의 요청이 강화되었다. 10~20%의 가격인하를 通告하고 受容하지 않는 外注下請企業과 거래를 중단하였다. 重點協力工場에 대하여 減量經營(規模縮小·人員削減)을 권유하였다. 不確實性의 增大로 發注量의 보장이 어렵게 되어 重點協力工場의 經營體質을 강화시키고 發注先의 多邊化를 권장하였다. 高度成長期의 下請再編成에는 生産分業體制全體로서 規模의 經濟性이 追求되었으나 構造的 長期不況下에서 下請體制를 철저히 減量하여 規模의 非經濟性을 배제하기 위한 下請再編成이 진행되었다. 外注下請體制의 減量은 中堅·中小企業의 母企業 依存度를 저하시키는 것이다.

中堅·中小企業도 적극적으로 受注先을 개척하고 技術開發力을 배양하여 독자적인 經營戰略을 전개하는 동시에 母企業의 旗本軍團으로서 共同運命體的 性格을 강화하였다. 高機能 機械設備를 도입하고 工程自動化를

도모하며 技術力의 培養에 노력하여 專門加工企業으로 성장하는 下請企業이 증가하였다. 下請企業간의 경쟁이 격화되고 價格引下·品質向上·性能提高의 요청이 엄격하여 독자적 技術開發이 생존의 핵심적 요소가 되었다. 主要製品의 自體設計·自體製作에 의한 工程合理化·自社의 特許權使用·主要設備의 自體開發·新技術의 自體開發·金型의 自體製作에 노력하는 下請企業의 비중이 확대되었다. 下請企業에 있어서도 獨立型 中小企業과 같이 經營基盤(技術力, 人材, 市場力, 財務力)의 확충이 중요하게 되었다. 母企業이 항상 內製化와 下請再編成에 의한 합리화에 노력하므로 母企業의 技術的 要求에 대응할 수 있는 독자적 技術力과 새로운 發注先을 개척하는 受注交涉力의 강화에 노력하였다.

2次 石油波動을 계기로 外注下請關係의 변화가 가속되었다. 石油波動에 수반된 급격한 價格體系의 變化와 價格引下의 强制에 대응하여 外注下請企業은 技術革新과 經營體質改善을 적극적으로 도모하였다. 構造不況이 下請中小企業에 生存하기 위한 엄격한 自己革新을 요청하였다 할 수 있다. 生存을 위한 自己革新을 통하여 경영자의 능력(先見性·思考의 柔軟性·獨自的인 經營哲學, 명확한 經營方針), 간판방식의 生產·納入管理를 소화할 수 있는 管理能力, 新技術을 이용하여 製品을 改良하고 專用機를 開發하며 工程自動化를 추진할 수 있는 技術力, 市場動向을 把握하고 시장요구를 분석하며 新市場을 개척하는 마케팅力 등이 강화되었다. 축적된 專門技術을 綜合하여 자체적으로 新製品을 개발하거나 自體開發의 專用機·工程을 상품화하고 독자적 製品의 賣出比重을 확대하여 종래의 下請形態에서 탈피하는 中小企業이 증가하였다. 技術力·經營力의 隔差가 전제된 종래의 下請形態를 탈피하여 적극적으로 經營戰略을 선택할 수 있는 下請型 中小企業이 출현하였다. 母企業(主要去來先)依存度를 일정한 범위내에 유지하면서 적극적으로 獨自的 市場을 개척하거나 高度의 專門技術을 기반으로 專門製造業體나 專門加工業體로 獨立하며 여러 산업에 걸쳐 受注先을 개척하고 다양한 注文를 소화하여 독자적 經營戰略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中小下請企業의 工程自動化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自動化機械의 사용이 原價計算의 標準이 되었다. 1970년대에는 少數의 下請企業이 自動化機械를 도입하였으나 2次 石油波動 이후 自動化機械의 使用이 보편화되었다. 工作機械의 NC化率은 1980년대 전반에 현저히 제고되어 下請中小企業은 自動機械를 구사하여 多品種少量生產을 영위하게 되었다. 體質强化의 핵심적 수단으로 中小企業의 工程革新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中小企業이 工程革新에 성공하려면 經營者의 적극적인 태도와 技術的 判斷能力·專門人力과 專門組織 技術情報를 획득하는 情報 network이 구비되어야 한다. 이러한 條件이 구비되지 않으면 投下資本이 증대하고 所要期間이 長期化되어 危險負擔이 증대한다. 中小企業이 工程革新의 추진에 동원할 수 있는 經營資源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러한 제약을 극복하려면 經營者의 決斷力과 實行力·外部專門人力의 活用·政府政策의 活用이 필요하다.

母企業과 下請企業간의 情報傳達方法도 변화를 보여 指導書·明細書·去來記錄이 電算化되고 팩시밀리가 情報傳達手段으로 이용되

고 있다. 일부 大企業의 LAN에 유력한 協力工場이 편입되어 情報傳達이 即時化되고 있다. 컴퓨터에 의한 情報傳達은 주로 受發注管理 및 納期納入管理와 관련이 있어 下請企業의 受注業務가 合理化되고, 經營體質의 강화로 연결된다. 電算化에 의하여 管理機能이 高度化되고 受注競爭力이 강화되며 모기업도 on-line network 化된 下請企業을 우대한다.

硏究開發型 新企業이 群生하여 大企業이나 硏究所가 注文하는 특수한 部品·機器·소프트웨어의 開發을 소화한다. 製造設備를 보유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開發·設計한 機器·部品의 製造를 外部에 위탁한다. 製造·加工業體를 조직하여 製造工程을 완비하고 內部에서 完成品을 검사하여 自社製品으로 출하한다. 近年에는 下請企業간에도 異業種 連携에 의한 情報交換·共同開發·共同受注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종래의 完成品下請·包括下請이라 할 수 있는 OEM 生產도 성행하고 있다. 종래의 包括下請과 달리 發注者가 設計圖와 明細書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기술을 종합하여 完成品을 제작하는 능력을 지닌 企業이 販賣戰略의 一環으로 OEM 生產을 受注한다.

低成長基調下의 技術·知識集約化 過程에서 下請企業간에 技術力·經營力의 隔差가 확대되고 多數의 下請企業이 脫落·淘汰하였다. 그러나 下請企業群 全體로서 專門技術·經營力을 보유하고 連結組織을 통하여 柔軟한 環境適應力을 발휘하는 受注型 製造·加工集團으로 轉化하였다. 이러한 受注型 企業群을 포함하는 企業間 組織(生產分業體制)도 企業集團 중심의 統制型 垂直的 連結組織과 參加型 水平的 連結組織이 結合된 複合的 連結組織으로 轉化되면서 專門性·競爭性·協力關係의 調和에 의한 機能的 統合을 指向하여 體制全體로서 高生產性과 環境適應性을 발휘하고 있다. 支配·收奪의 문제를 제기하던 下請制에서 效率性과 柔軟性이 높은 社會的分業體制로 上昇轉化하고 있다. 一貫된 特徵은 競爭原理의 貫徹이며, 市場機構에 의한 社會的分業의 擴大였다. 그러나 下請問題가 소멸된 것은 아니다. 競爭原理를 惡用하는 價格引下의 强制·優越的 地位의 濫用·經營統制(支配從屬性의 殘影)의 逆機能을 부정하기 어렵다. 體制의 效率性과 不公正去來의 問題性이 併存하여 專門加工型 中小企業에도 母企業과 對等한 거래를 한다는 면에서는 한계가 있다.

Ⅳ. 下請制의 問題性

下請制의 變化와 더불어 下請論의 論點도 多元化되었다. 戰時中의 下請論爭에서 高度成長期의 系列化論爭에 이르는 下請制의 問題性에 관한 論議는 高度成長期를 지나면서 褪色되고 下請分業體制의 效率性에 관한 다양한 論點이 제기되었다.

小宮山과 藤田간의 下請論爭에서 下請中小工業의 問題性에 대한 事實認識은 차이가 없었으나 戰時中에 추진된 專屬下請化의 評價가 爭點이 되었다. 問題性의 認識에서는 生產力의 문제인 「二重隔絶性」과 生產關係의 문제인 支配·收奪性을 一體的으로 파악하는 공통된 立場을 보였으나, 專屬下請의 評價에

서는 小宮山은 大工業과 中小工業의 有機的 結合을 통하여 「二重隔絶性」이 해소되고 對等한 去來關係가 형성될 수 있는 契機로 보았으나 藤田은 技術指導가 강화되어도 外業部的 支配에서 脫皮하지 않으면 「二重隔絶性」이 해소될 수 없다고 보았다[7].

藤田(1943)은 下請制의 本質을 商業資本的 支配로 파악하였다. 商業資本的 支配라 함은 產業資本이 생산활동에 자본을 투하하지 않고 流通面에서만 機能하는 商業資本과 같이 產業資本的 危險과 責任을 回避하면서 產業資本 이상의 利潤을 얻는다는 것이다. 藤田은 下請制의 本質規定에서 資本간의 關係가 아니라 資本과 勞動간의 關係에 주목하였다. 藤田에 의하면 產業資本은 自己經營下에 勞動을 結集시켜 직접적으로 지배하는 동시에 經營外部에 분산되어 있는 勞動을 外業部에 繫留시켜 간접적으로 지배하여 外業部인 中小資本의 獨立性은 전혀 虛構的이며 勞動과 支配資本을 중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 下請關係에 있어 支配資本이 從屬資本과 生產關係를 갖는다는 것을 藤田도 인정한다. 藤田은 外注를 購買와 下請으로 구분하고 購買는 주로 社會的分業의 觀點에서 채택하는 外注이며 下請은 生產力의 一時的 補充·費用節減·資本의 과대한 固定化抑制·勞動對策의 관점에서 채택하는 外注로 규정하여 下請을 社會的分業에 기반을 두지 않는 外注로 설명하였다.

小宮山(1941)은 中小企業의 存立形態를 獨立形態와 從屬形態로 分類하고 從屬形態를 商業資本이 지배하는 問屋制工業과 產業資本이 지배하는 下請工業으로 再分類하였다. 下請에 대한 理解에 있어서 藤田과 小宮山의 차이는 問屋制工業과 下請工業의 區分에 대한 是非에서 나타난다. 小宮山에서 支配資本이 商業資本인 下請과 支配資本이 產業資本인 下請과는 支配從屬關係의 內容이 다르다. 小宮山도 產業資本이 商業資本的으로 기능하는 경우가 있음을 인정하고 浮動的 下請의 性格은 產業資本的이기보다 商業資本的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專屬的 下請에서는 大工業과 中小工業간의 關係가 社會的分業에 기반을 둔 相互依存關係로 발전할 수 있다고 보았다. 小宮山은 生產力發展의 桎梏이 되는 產業資本의 商業資本的 支配가 해소되고, 產業資本으로 기능하는 大工業과 中小工業간의 關係가 형성되는 계기를 專屬的 下請에서 발견하였다. 小宮山은 浮動的 下請의 專屬化가 下請工場의 生產을 部分工程에 特化시켜 大工場의 基本的 生產과 有機的으로 結合시키는 계기가 된다고 보았다.

小宮山이 想定한 理想的 關係는 生產技術面에서 有機的 關係가 형성되어 等價交換이 貫徹되는 外注關係라고 이해할 수 있다. 下請制가 浮動的 關係에서 專屬的 關係로 轉化하는 과정에서도 優位資本이 劣位工業資本을 支配하는 下請制의 性格은 변하지 않지만 轉化過程에서 下請制 자체를 脫皮하여 社會的分業에 바탕을 둔 對等한 關係가 형성되는 萌芽를 본 것이라 할 수 있다. 下請制는 問屋制와 달리 從屬性에서 脫皮할 수 있는 契機를 內包한다고 본 것이다. 小宮山의 下請理論은 下請制를 中小工業의 從屬形態로 파악하면서도 靜態的이 아니라 動態的으로 이해하였다 할 수 있다.

7) 渡邊幸男(1985) 참조.

戰時中에 제기된 問題意識이 承繼되어 戰後에도 下請工業의 「二重隔絶性」과 下請關係의 「支配·收奪性」에 대한 問題意識을 共有하게 되었다. 이러한 공통의 問題意識下에 새로이 直面하게 된 現象이 高度成長期에 전개된 下請系列化이다. 1950년대 후반에 量產機器의 生產이 急增하면서 部品供給을 담당할 下請企業의 技術的 後進性이 문제로 대두되었다. 당시에 下請企業의 대부분은 여전히 「二重隔絶性」의 상태에 停滯되어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下請系列化가 전개되고 中小下請企業의 一部에서 技術水準이 급속히 향상되면서 下請系列化의 評價와 관련된 系列論爭이 전개되었다. 藤田(1957)은 下請系列이 支配機構라는 점에서는 下請制와 차이가 없으나 技術的·經營的 合理性을 추구하는 有機的 結合이라는 점에서 下請制의 단순한 延長이 아닌 全面的 改裝이라고 주장하였다. 小林(1958)은 藤田의 系列評價를 비판하면서 問屋制下請에서 下請工業을 거쳐 企業系列에 이른 辨證法的 發展이 전개된 것으로 이해하였다. 小林에 의하면, 下請系列化는 本質的으로 下請制의 範疇에 속하는 現象이며 下請關係로서 系列化가 전개된 것은 獨占資本간의 경쟁이 優良下請企業의 組織的 利用을 요구하였기 때문이다.

系列化現象에 의하여 戰時中의 下請論爭에서 제시된 下請論에 誤謬가 있음이 명백해졌다. 下請制 自體가 中小工業의 生產力發展에 桎梏이 된다고 주장한 藤田이나 專屬下請을 통하여 中小工業의 生產力發展과 對等한 去來關係가 실현된다고 전망한 小宮山이나 系列化에 의하여 中小下請工業의 技術的 停滯性은 해소되고 있으나 下請關係의 支配·收奪性이 개선되지 않는 現實을 설명하기에 적합하지 않았다. 生產力의 문제와 生產關係의 문제를 一體的으로 파악하는 小宮山과 藤田의 視角에서는 下請制의 理解에 한계가 있다는 問題意識이 대두되면서 下請制와 下請問題간의 關聯을 理論的으로 解明하려는 論點들이 제시되었다.

伊東(1961)은 下請制를 獨占資本主義의 構造的 矛盾으로 파악하는 입장에서 下請關係의 成立過程을 설명하였다. 伊東은 獨占資本主義體制下에서 中小企業은 小生產者가 아닌 工業資本家이지만 사실상 問屋制下의 家內工業과 유사한 위치에 처하게 되어 資本蓄積의 諸條件이 제약되고 독자적 발전의 가능성을 박탈당하고 下請關係에 흡수된다고 보았다. 資本主義經濟가 獨占段階로 들어서면서 獨占的 巨大資本의 市場支配가 확립되어 原料의 購入市場, 製品의 販賣市場, 資本市場에서 차단된 中小企業은 독자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상실하고 大企業의 下請으로서 存續을 시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下請制는 大企業간의 대등한 外注나 市場去來에 의한 部品調達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며 일반적으로 對等하지 않은 支配從屬關係를 특징으로 하여 經濟的 內容은 不等價交換이라고 보았다. 下請制를 不等價交換을 통하여 上位資本이 中小資本의 利潤을 收奪하는 機構로 본 것이다.

中村(1962)은 下請制의 本質을 「社會的 分業關係에 있는 諸階層간의 不等價交換의 關係」로 파악하고 下請制의 形態를 購買獨占의 大資本과 中小資本간의 「對等하지 않은 外注關係」로 규정하였다. 獨占資本에 의한 下請利用의 本質이 購買獨占이므로 問屋制支配의

기초인 前期的 獨點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며 발전된 資本主義에 있어서 購買獨點은 集積·集中에 기반을 둔 市場支配力을 전제로 한다고 설명하였다. 中村은 低賃金-中小企業의 過當競爭-獨占收奪의 關係에 기반을 둔 資本의 分裂·分散이 社會的分業의 增殖過程에서 資本集中을 停滯시키고 技術進步와 專門化를 沮害하며 獨寡占大企業에 대한 中小企業의 從屬을 강화시킨다고 보았다.

藤田은 下請을 社會的分業에 기초하지 않은 外注로 이해하였다. 小宮山도 이 점에 관해서는 藤田과 같으며, 社會的分業에 바탕을 둔 一般的인 外注關係를 下請制 解消의 목표로 설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下請制와 社會的分業을 대립적으로 이해하였다고 할 수 있다. 伊東의 견해도 同一線上에 위치한다 할 수 있다. 「日本의 下請制」는 大企業과 中小企業의 社會的分業으로도 볼 수 있으나, 大企業이 中小企業에 部品의 製造·加工을 發注하는 근본적 이유는 外部經濟를 추구한다는 分業的 理由보다는 下請이 비용면에서 內製보다 유리하다는 下請工場의 低賃金을 利用하는 특수한 事情에 있다고 보았다. 大企業과 社會的分業關係를 형성하는 技術水準이 높은 專門工場은 中小規模라 해도 危險負擔의 轉嫁나 單價引下의 강제가 적은 去來關係를 유지하며 이러한 관계가 하청관계가 아닌 대등한 外注關係라고 보았다.

이와 같이 下請制는 대등하지 않은 外注關係로 이해되어 社會的分業인 外注關係와 對峙되었다. 社會的分業인 外注關係는 藤田에서는 「購買로 불리는 外注」이며 伊東에서는 「技術水準이 높은 專門工場」과 「대등한 外注關係」이다. 下請制의 本質을 資本간의 支配從屬關係로 이해한 것이다. 社會的分業이 아닌 外注關係는 支配從屬關係를 內藏한 外注關係가 되며 社會的分業인 外注關係는 支配從屬關係가 아닌 對等한 外注關係로 對峙되었다.

藤田은 隔差가 작은 大中小資本이 適性에 따라 社會的分業에 가까운 去來가 가능한 상태에 도달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伊東도 「日本의 下請制」는 獨占資本主義의 商業資本的 寄生性을 特性으로 부여할 수 있으며, 下請制가 그러한 특성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大企業과 中小企業간의 對等한 分業關係가 형성되어 不等價交換이나 危險負擔의 轉嫁에 의한 收奪이라는 성격이 개선되어야 하며, 이렇게 되면 下請制라는 槪念도 소멸할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下請制를 對等하지 않은 社會的分業關係로 규정하는 中村(1964)은 下請과 社會的分業을 對立시키는 입장을 비판하고 下請制의 發展과 擴大를 社會的分業의 발전의 결과로 파악하였다. 社會的分業을 특별히 企業간의 對等한 관계에만 국한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下請制를 社會的分業으로 보는 입장에서 종래의 社會的分業을 대체하는 새로운 개념인 專門企業化를 下請制解消의 목표로 제시하였다. 下請制의 보급은 社會的分業이 발전한 결과이지만 下請制는 社會的分業의 지속적 발전을 沮止하는 요인으로 보고 이러한 점에서 下請制의 보급을 生產의 專門化와 대립시켰다. 中村에 의하면 下請關係가 발생하는 根因은 母企業과 下請企業間의 拮抗力의 차이로서 中小企業이 大企業에 충분히 대항할 수 있는 힘을 배양하는 것이 下請問題를 解消하는 唯一한 방법이며 量產體制

에 적합하게 독자적인 製品開發力·設計能力·販賣市場을 보유하는 專門製造業體로 발전하지 않으면 안된다. 專門化企業을 大企業의 量産化에 따라 組立部品을 생산하거나 一般的 市場性을 지닌 部品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규정한 것이다.

量産化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출현한 專門企業은 대기업에 의하여 제약받지 않는 獨自的·一般的 市場을 확보하는 기업으로 나타났다. 專門企業은 市場條件에서 外注關係로부터 離脫하는 중요한 계기를 內包하고 있다. 中村이 제시하는 專門化를 통한 下請制解消는 社會的分業化에 의한 下請制解消와 현저히 다르다. 社會的分業化에 의한 下請制解消는 外注關係의 支配從屬性을 부정하지만 外注關係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中村은 하청기업이 專門企業으로 발전하는 과정에 過渡的 形態로 量産加工型 企業이 나타난다고 설명하였다. 中村에 의하면 下請企業은 단순한 加工業體에서 量産型 加工業體로 이행하여 자본을 축적하고 專門企業으로 발전하며 中小企業系列化도 過渡的 形態의 量産加工型 企業으로서 적극적 평가를 받지만, 동시에 量産加工型 企業이 系列中小企業에 대응한다는 점에서 아직 外注關係의 非對等性을 內包하고 있다 할 수 있다.

中村은 下請企業과 專門企業간의 過渡的 形態인 量産加工型 企業에서 下請制解消의 「專門企業化過程」과 「社會的分業化過程」을 연결하는 가능성을 발견하였다. 下請의 社會的分業化를 量産加工型企業으로의 移行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해가 성립한다면 下請制解消의 專門化過程은 社會的分業化過程을 초월하는 것으로 想定할 수 있다. 결국 外注關係의 테두리 안에서 下請制解消過程의 진전을 인정하면서 下請制解消는 外注關係를 탈피하는 專門企業化로 파악한 것이다.

專門企業의 專門性을 大企業에 대한 對抗力(價格形成力, 市場占有率, 技術水準, 資本調達力 등의 제요소로 구성되는 經濟的 能力)으로 이해한 北澤(1975)은 大企業의 經濟的能力과 對峙되어 의미를 지니는 相對的 能力인 對抗力이 장기에 걸쳐 保持될 수 있다면 專門企業이 下請制解決의 목표가 될 수 있으나 技術的·資本的 要因에 의하여 장기적으로 견지될 수 없다면 專門企業은 下請企業의 一定段階까지의 成長可能性은 제시해도 下請制解消의 目標는 될 수 없다는 異見을 제시하였다. 北澤은 部分的으로 가능한 專門企業化를 下請關係全般의 變化過程으로 파악하거나 專門企業을 析出하는 下請關係의 苗床機能을 간과하는 誤謬도 지적하였다.

日本의 下請組織은 母企業의 內部組織과 類似한 結合要素를 지니는 準內部組織 또는 準垂直結合으로 설명된다. 下請組織에서 母企業의 指示가 受容되고 統制가 貫徹되는 것이 內部組織의 命令受容과 類似한 性格을 지닌다. 下請企業이 經營의 自主性을 保持하므로 內部組織에서와 같이 受容範圍가 광범위하지 않으며 下請企業의 經營資源이 축적되면서 受容範圍가 변한다는 점에서 安定的이지도 않다. 母企業과 下請企業의 관계는 潛在的 緊張關係에 있다 할 수 있다. 母企業은 보다 철저한 統制의 貫徹을 指向하며 下請企業은 技術力을 강화하여 自立·脫下請을 시도한다. 獨自的 技術力을 배경으로 母企業과 對等한 去來關係를 형성하는 下請企業의 증

가는 下請關係가 相對的 力關係에 따라 규정되는 것임을 시사한다. 港(1985)은 下請組織에서 母企業의 指示가 受容되는 根據를 母企業의 經營資源에 대한 依存으로 설명한다. 下請企業이 母企業의 경영자원에 의존하는 정도가 母企業의 통제를 수용하는 범위를 규정한다고 이해한다. 下請組織의 展開過程에서 産業全般의 技術·知識集約化에 대응하여 經營資源을 충분히 축적할 수 없었던 下請企業은 母企業이 보유한 優位의 經營資源에 의존하여 성장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資本循環이 不完全한 下請企業은 母企業의 經營資源에 대한 依存이 불가피하다. 商社·問屋·百貨店으로부터 食品·衣類·雜貨의 製造를 受注하는 下請企業의 資本循環에서는 生産手段·原資材에 대한 資本投下와 價値實現이 商業資本에 의하여 補完된다. 下請企業의 産業資本이 生産過程을 주도하면서 商品企劃에서 販賣過程의 일부에 걸쳐 순환하고 있으나 市場競爭에 이르는 일관성이 없다. 自動車·家電·産業機械의 部品을 제조하는 1次下請企業은 機械設備·原材料·勞動力을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면에서는 일반 産業資本과 같으나 價値實現은 기본적으로 母企業에 의하여 보완된다. 母企業에 의한 價値實現過程의 補完에 의하여 産業資本으로서의 循環이 完結된다. 複數의 母企業이 補完하는 경우도 같은 성격를 지닌다. 鑄造, 鍛造, 프레스가공, 열처리, 鍍金, 機械加工 등의 工程을 분담하는 再下請企業의 資本循環은 部品業體의 生産工程을 代行하는 특이한 循環이다. 不完全한 循環으로 相互依存이 불가피하여 集團을 형성하여 循環을 完決시키게 된다. 集團을 구성하는 個別企業의 特化에 의하여 低費用을 실현하는 生産工程의 重層的 分割이 가능해진다.

下請企業에 공통된 要素를 보면, 同一商品의 生産·流通過程이 分割되어 企業間 關係가 組織되고 資本循環 全般이 最終的 管理機能을 수행하는 産業資本에 의하여 根源的으로 指揮·監督된다. 機械設備의 貸與·指定, 原材料의 支給·貸與·指定, 作業方法의 指定 등으로 下請企業이 자신의 의지로 資本循環을 결정하는 經營管理의 自主性이 制約된다. 새로운 生産技術의 導入과 成果의 配分에서도 母企業이 指揮·監督한다. 下請企業의 生産合理化의 成果를 意識的·組織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品質管理와 價値分析을 指導하고 共同으로 推進한다. 母企業의 指揮·監督에 의하여 下請企業의 生産合理化는 촉진되지만 自立·脫下請에 이르는 經營資源의 蓄積은 沮害될 수 있다. 商品企劃이나 生産過程에 관한 管理機能의 향상이 부진하고 市場에서 販賣價格을 형성하는 機能이 退化되어 價値實現이 제약될 수 있다.

下請企業의 技術力이 향상되어도 負擔轉嫁가 해소되지 않은 것은 技術力의 차이로 설명될 수 있다. 尖端·高度技術分野의 비중이 큰 母企業은 革新的 新技術·新設備를 보유하며 部品加工이나 成熟型製品의 生産을 담당하는 下請企業은 주로 標準化된 技術·設備를 사용한다. 尖端·高度技術分野에서는 硏究開發費와 技術者·硏究者가 투입되어 高附加價値가 실현되지만 標準的 技術分野에서는 주로 標準化된 技術·設備가 사용되는 低附加價値 活動이 큰 비중을 점한다. 加工組立型 産業에서는 尖端·高度技術과 標準的 技術이 일체가 되어 製品이 製作되므로 母企

業과 下請企業이 技術的 分業體制를 형성하게 된다. 技術力의 차이로 母企業이 內製로 전환할 가능성이 常存하고 技術이 標準化되어 新規進入이 용이한 下請生産分野에서는 경쟁이 치열하여 交涉力이 약한 下請企業은 購買獨占의 母企業이 강제하는 不等價交換을 회피할 수 없다. 長期間의 專業的 生産에 의하여 機械設備가 專門化되고 노하우와 熟練機能이 축적된 下請企業이 細分化된 技術分野에서 母企業보다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지만 母企業의 經營資源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需要가 不安定하거나 少量이어서 費用과 品質에서 下請利用이 內製보다 유리하여 母企業이 內製化에 費用이나 人材를 투입하지 않기 때문이다. 細分化된 分野에서 下請企業의 技術力이 母企業보다 우수해도 斷片的인 技術로는 獨自的 市場을 開拓하여 自立하기 어렵기 때문에 母企業에 依存하게 된다. 近年에는 高度의 專門技術을 交涉力으로 하여 母企業과 對等한 去來關係를 形成하는 中小企業이 증가하고 있으며 下請企業의 技術蓄積이 장기적으로 下請關係를 변모시키는 중요한 要因이지만 現時點에서는 下請企業 全般의 技術力이 下請制의 特性을 變質시키는 수준에 이르지 않고 있다[8].

下請企業을 再生産하는 社會構造도 下請企業의 交涉力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다. 日本的 經營의 特性인 年功序列給은 사실상 大企業에서만 관찰되며 中小企業의 從業員은 40代 전반에 賃金이 下向하기 시작한다. 中小企業의 종업원에게는 습득한 技術·技能을 활용하여 독립하는 것이 經濟的 地位를 개선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이다. 下請企業을 부단히 再生産하는 社會構造에 의하여 下請企業간의 競爭이 유지되고 「市場原理와 組織原理의 相互浸透」가 실현되는 것이다.

母企業과 下請企業간의 賃金隔差도 技術力의 차이로 설명된다. 尖端·高度技術分野에서는 硏究者와 技術者가 상당한 비중을 점하며 標準的 技術分野에서는 標準的 知識과 技能을 지닌 從業員으로 충분하고 標準的 知識이나 技能이 필요하지 않은 單純勞動者도 많다. 熟練勞動이 필요하지만 未熟練勞動分野도 있어서 熟練工과 未熟練工이 함께 作業을 진행시킨다. 母企業에서는 高度의 知識과 經驗을 요구하는 作業이 많아서 高學歷·長期勤續의 熟練技能이 큰 비중을 점하며 下請企業에는 熟練技能을 요하는 作業도 있으나 女子·低學歷者·中途採用者 등 低賃金階層의 單純作業이 적지 않아서 母企業과 下請企業간에 平均賃金이 상당한 차이를 나타낸다. 그러나 性·年齡·學歷·勤續年數를 감안하면 賃金隔差가 축소된다. 勞組組織率과 勞動需給狀況도 規模別 賃金隔差를 설명한다. 大企業의 勞組組織率이 높으며 勞動需給 狀況도 知識勞動의 超過需要와 未熟練勞動의 超過供給에 처하기 쉽다. 특히 勞動市場의 分斷性이 강하여 大企業의 勞動市場은 폐쇄적이며 大企業의 勞動市場에서 배제된 계층이 中小企業으로 流入된다. 標準的 技術分野에서도 일반적으로 賃金과 勞動條件에 隔差가 있을 때 下請이 광범위하게 이용된다. 標準的 技術分野의 作業은 일반적으로 標準的 知識과 設備를 사용하므로 人件費 이외의 製造費用이나 品質에서 母企業과 下請企業간에 큰 차이가 없다. 勞動時間의 伸縮性도 標準

8) 河崎亞州夫(1985) 참조.

的 技術分野를 下請企業으로 移轉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勞組가 조직되지 않은 下請企業에서 勞動時間의 伸縮性이 커서 自動化設備의 長時間 稼動이 가능하다.

V. 企業間 組織의 効率性

高度成長期를 통하여 中小下請企業의 技術力이 적어도 大企業의 國際競爭力을 제약하지 않는 수준에 도달하였다는 事實認識에 의하여 中小企業의 技術的 後進性·停滯性에 관한 論議가 退潮하면서 下請硏究의 視角·課題·方法의 再檢討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下請組織이 포함된 企業間 組織 全體로서 高生產性과 環境適應力을 발휘하는 要因을 解明하려는 다양한 論點이 제기되었다. 中村(1977)은 問題性을 重視하는 종래의 視角을 否定하고 下請에서 탈피하여 自立을 시도하는 專門加工企業群에 注目하였다. 中村(1981)은 底層의 零細下請企業도 新舊企業의 交替를 통하여 종래의 再下請과 다른 專門加工企業群을 형성하고 있다는 事實을 강조하면서 低賃金利用과 資本節約을 위한 종래의 下請關係가 專門技術에 기반을 둔 對等한 分業關係로 轉化되어 企業間 情報傳達體制로서 유효한 機能을 발휘한다고 주장하였다. 問題性을 부정하는 中村의 見解가 계기가 되어 問題性論과 效率性論이 對立하면서 基本認識에 관한 다양한 論點이 제시되었다.

日本型 下請制가 自動車·家電 등 加工組立型 產業의 輸出競爭力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要因이라는 共通認識이 전제되어 下請制가 定着하게 된 背景과 效率性을 발휘하는 要因에 관한 論議가 전개되었다. 問題性論의 立場에서도 效率性의 認識이 바로 問題性의 否定으로 連結되는 論調를 비판하면서 問題性과 效率性을 동시에 解明하려는 論議가 전개되었다. 中村(1983)은 下請制를 垂直結合과 市場이 媒介하는 社會的分業의 中間에 위치하여 兩形態의 長點을 취하는 準結合으로 설명하였다. 中村은 下請企業의 統制에 의한 情報把握과 指導連絡이 技術進步와 生產性向上을 실현하고 동시에 負擔轉嫁와 資本節約을 가능하게 하여, 下請制가 問題性을 내포하는 企業結合의 독특한 형태로서 日本의 產業發展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평가하였다. 中村은 準結合이 定着된 要因으로 日本 特有의 集團主義下에 支配從屬關係와 協力關係가 共存함을 지적하였다. 資本·人的 關係가 없는 下請企業의 協力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역시 日本의 社會的·文化的 要因으로 설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今井(1984)은 文化論的 要素를 배제하고 日本經濟의 成果를 日本的 產業組織인 企業間 連結組織(network)에 의하여 설명하였다. 今井은 情報化에 수반하여 技術的 聯關과 企業間 關係의 再編이 진행되어 連結組織型 產業社會가 도래하게 되며 日本의 中小企業이 형성하는 產業組織이 連結組織으로 進化되고 있다고 보았다. 港(1984)은 日本型 生產體制로서 下請制의 編成要因을 技術導入에 의하여 급속히 진행된 工業化過程에서 資本不足을 補完하는 수단으로 在來工業部門의 中小企業이 動員되었던 특수한 條件에서 구하였으며, 下請制의 基本性格을 危險負擔과 經營資源의 配分에 기초한 情報傳達體制로서의 統合으로 보고 긴밀한 情報

交換·階層的 構造의 情報傳達效率性·技術情報의 擴散으로 下請制의 效率性을 설명하였다. 本章에서는 今井과 港의 論議를 중심으로 企業間組織의 效率性에 관한 論點을 略述하기로 한다.

情報化가 진전되면 產業社會의 效率性을 결정하는 要因으로서 「連結의 經濟性」이 중요해지고 市場이 매개하는 分立型分業이 「連結의 經濟性」을 실현하는 連鎖型 分業으로 이행한다. 「連結의 經濟性」은 複數財의 生產간에 低費用으로 轉用可能한 共通要素(情報·노하우 등)가 존재하여 複數財를 單一主體가 複合生產할 때 生產費用이 저하하는 「範圍의 經濟性」에 부가하여 共有要素(情報·노하우 등)의 多重利用에 의하여 複數主體간의 結合이 創出하는 相乘效果(企業間 結合에 의한 情報費用·決濟費用·在庫費用의 節減 등)를 포함하는 넓은 槪念이다. 「連結의 經濟性」은 市場과 組織의 中間形態인 中間組織과 關聯이 있다. 中間組織은 資源配分過程에서 去來費用을 절약하기 위한 「市場原理와 組織原理의 相互浸透」를 槪念化한 것이며 「連結의 經濟性」은 市場과 組織을 結合시키는 連鎖型組織에서 創出되는 效果의 槪念化에 力點을 둔다. 企業間 連結組織(network)에서 創出되는 機能補完的이며 連鎖的인 相乘效果가 「連結의 經濟性」의 核을 이룬다[9].

市場과 組織간에 子會社·系列企業·下請企業·關聯企業 등으로 구성되는 다양한 中間組織이 존재하는 것이 日本的 產業組織의 특성이다. 企業間에 市場去來가 계속되면서 去來關係에 組織原理가 浸透되어 企業間 連結組織이 형성된다. 企業간의 連結이 去來가 계속되는 정도이면 軟性 連結組織이 형성되며, 資本·人的 關係가 介在하면 硬性 連結組織이 형성된다. 日本의 企業集團이 硬性連結組織이며, 企業集團의 內部去來에 市場原理가 浸透하고 構成員이 集團外部로 多重關係를 확장하여 軟性 連結組織으로 轉化되기도 한다. 規模의 經濟性을 保持하면서 環境適應性을 강화하기 위하여 中間組織을 이용하는 것이 日本的 經營의 特性이다[10].

自社의 경영자를 分封시켜 內部化되었던 機能이나 새로운 활동을 子會社로 組織化한다. 大企業은 日常的인 活動을 分封하고 硏究開發을 비롯한 知識集約的 活動을 保持한다. 子會社의 설립과 함께 中小企業과 다양한 垂直的 連繫를 발전시켜 過大規模의 硬直性을 회피한다. 下請企業과의 관계는 排他的이 아니다. 革新的 小企業은 集團外部와도 거래한다. 母企業도 集團內外에서 혁신적인 下請企業을 구한다. 內部資源의 效率的 利用을 위한 協力企業의 다양화로 多重關係가 광범위하게 전개되어 企業集團의 仲介 없이도 企業間關係가 형성된다. 革新的 活動이 頂點에서 底邊까지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獨自的 專門技術을 개발하려는 의욕이 결여된 中小企業은 企業集團의 구성원으로 존속할 수 없게 된다. 大企業이라도 環境適應에 실패하면 集團內部에서 영향력을 상실한다. 產業全般에서 統制와 革新活動의 非集中化와 分散化가 진전되고 있다.

統合的 集中化에 비하여 軟性 連結組織에서 환경변화에 대한 下部單位의 革新的 適應과 적절한 方向選擇이 용이하다. 巨大企業集

9) 宮澤健一(1975) 및 K. Imai and H. Itami (1984) 참조.
10) 青木昌彦(1984) 참조.

團의 意思傳達機構는 下部單位에 확산되고 있는 革新的 適應의 활용에 실패하기 쉽다. 軟性 連結組織에서는 下部單位에 대한 감독도 유효하게 이루어진다. 거대한 統合企業의 內部去來에도 市場原理가 도입될 수 있으나 連結組織의 下部單位가 利潤形成原則에 보다 철저하게 되고 실패하면 존속할 수 없다. 勞使關係에서도 신축성있게 대응할 수 있다. 企業規模가 클수록 組合指導者는 組合員의 다양한 利害를 調整하기 어렵게 된다. 從業員의 雇傭條件을 均質的으로 유지하여 人的資源의 관리를 보다 신축성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大企業과 中小企業간에는 賃金이나 雇傭條件에서 차이가 있다.

日本產業의 特性인 製品開發의 柔軟性과 迅速性은 連結組織型의 產業組織과 밀접한 關聯이 있다. 微細한 分業·節次의 學習·連結組織을 통한 情報의 集積과 擴散을 특성으로 하는 中小零細企業의 連結組織은 母企業이 의도적으로 편성하였던 下請組織이 業務連携를 통하여 細胞分裂이 일어나면서 自然發生的으로 軟性 連結組織으로 進化한 것이다. 量產型 大工場의 生產性向上과 製品開發은 東京·川崎의 下町에 群居하는 零細企業群의 連結組織에 集積된 技能과 技術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零細企業들이 連携하여 大企業이나 企業硏究所가 注文하는 少量의 特殊品이나 試作品의 製作을 소화하는 軟性 連結組織을 형성한다.

零細企業간에는 市場이 媒介하는 分立型 分業이나 大企業 內部의 제약된 分業과 달리 自律性을 지니면서 긴밀히 相互依存하는 분업이 이루어진다. 分業의 增殖過程에서 需要集中에 의한 分業의 細分化로 中小企業의 從業員이 독립하여 開業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다. 零細企業은 技術領域을 壓縮하여 특수한 專門機能을 硏磨하고 大企業 內部의 제약된 분업과 달리 적극적으로 試行錯誤를 행하여 기능이 자유롭게 신장된다. 細分化·差別化된 分業이 零細企業간의 連帶를 강화시켜 분화된 기능이 통합되는 軟性 連結組織이 自然發生的으로 형성된다.

零細企業의 連結組織은 試作品 製作에서 節次에 관한 學習效果(learning in arrangement)를 나타낸다. 試作品의 注文이 다양해도 製作에 필요한 技術·技能의 범위가 한정되어 注文에 따라 변하는 節次(作業順序)만 習熟하게 되면 學習效果에 의하여 製作費用이 저하되고 製作時間도 단축되어 製品開發의 迅速性과 伸縮性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 連結組織을 구성하는 零細企業간에는 業務連携를 통하여 자연적으로 情報의 共有와 신속한 情報交換이 이루어진다.

母企業과 1次下請企業간의 硬性 連結組織에서는 計劃的으로 情報交換이 이루어진다. 母企業은 下請企業에 技術情報를 이전하고 1次下請企業은 自社의 經驗과 2次下請企業의 情報에 근거하여 部品과 工程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다. 1次下請企業이 連結組織의 情報傳達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며 垂直的 情報交換의 효과가 나타나면 母企業도 1次下請企業의 역할을 강화시키는 誘因이 생긴다.

連結組織의 去來關係는 長期契約과 달리 安定的 去來를 보증하지 않고 市場條件에 의하여 決濟하는 관계로서 거래가 계속되는 과정에서 當事者간에 信賴關係가 형성된다. 連結組織의 거래는 市場去來와 組織內去來의 중간에 위치하여 短期的 市場交換과 長期的

信賴關係와의 中間的 性格을 지닌다. 下請企業에 대한 技術·資金支援의 反對給付로서 母企業의 權力이 발생하고 下請企業은 母企業에 從屬하는 지위를 감수하게 된다. 그러나 下請企業이 經營資源을 축적하여 母企業이 下請企業의 技術과 情報를 重視하게 되면 互惠的인 관계로 轉化된다.

下請制가 效率的인 生産分業體制로 발전하게 된 것은 産業發展過程에서 大企業과 中小企業이 직면했던 經濟環境의 特殊性·階層的 下請構造의 情報傳達效率性·長期去來關係의 經濟效果(企業間組織의 生産性) 등 經濟的 要因으로 설명된다. 企業間 關係가 形成·維持되는 것은 下請企業의 經營環境이나 經營資源을 고려하면 母企業과 下請企業에 모두 이익이 된다는 經濟的 合理性이 존재하기 때문이며 이로 인하여 集團歸屬意識등 傳統的인 意識構造가 변화해도 下請制가 여전히 유효하게 기능하며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企業間 組織의 生産性이 經濟的 合理性을 설명한다고 볼 수 있다. 下請生産體制의 중요한 構造的 特性은 階層構造이다. 階層構造는 下位階層을 收奪하기 위한 機構로 인식되어 주로 企業規模別 賃金隔差에 의하여 설명되어 왔다. 이러한 지적도 현실을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나 長期結着型 去來를 통하여 下請分業生産에 의한 「分業의 利益」과 下請企業의 성장에 의한 「成長의 利益」이 실현된 사실도 간과될 수 없다. 긴밀한 협력관계에 의하여 장기에 걸친 技術向上과 原價節減을 실현할 수 있고 급격한 환경변화 속에서 經營成果를 달성한 日本企業의 環境適應力도 企業間 去來의 유연한 調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엄격한 契約을 지양하여 契約內容이 변경되기 쉽다. 去來當事者는 可變的인 去來契約이 含意하는 진정한 의미를 파악하고 去來先이 발하는 信號를 정확히 判別하여 거래선의 행동을 예상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일상적인 公式·非公式 接觸이 불가결하다. 企業間 組織이 유연하게 운영되려면 不確實性을 경감하는 組織成員間의 密着된 情報交換이 필요하다. 企業間 組織의 階層構造는 去來先의 數를 줄여서 情報處理負荷를 경감시키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下請組織의 再編成도 情報處理負荷 및 情報傳達效率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階層的 企業間組織은 情報傳達費用과 情報把握密度에서 우위성을 발휘한다. 階層的 企業間組織에서는 直接去來하는 下請企業의 數가 감소하므로 빈번한 접촉에 의한 高密度情報交換이 가능하다. 日本의 階層的 下請組織은 各階層에 集約된 情報端末을 보유하는 階層的 情報傳達體制라 할 수 있다. 數千社 이상의 下請企業과 직접 거래하는 美國의 自動車會社는 빈번한 접촉에 의한 高密度情報의 把握이 불가능하다. 長期的 視角에서 環境變化에 공동으로 對處하는 協力關係의 形成·維持에 불가결한 高密度情報의 交換이 곤란하다.

Ⅵ. 結　言

自動車工業의 保護·育成을 위하여 外資企業의 國內生産(Ford와 GM의 knock down生産)을 중단시키고 國産化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한 1930년대 후반에 日本의 自動車

部品工業은 低價의 補修用 模造部品을 생산하는 段階에 머물어 組立用 部品의 대부분은 內製되거나 輸入되었다. 自動車部品工業會의 調査資料에 의하면 1950년대 중반에도 自動車部品工業은 여전히 生產設備·技術이 빈약한 小規模 企業으로 구성되어 品質·性能이 國際水準에 현저히 미달하였고 勞動生產性은 歐美諸國의 1/5 수준에 불과하였으며 部品價格은 國際價格보다 6~7割이 높았다. 1950년대 중반부터 自動車生產이 급격히 신장되면서 母企業의 要請에 따라서 生產設備·技術을 개선하고 品質向上에 노력하여 1967년에 自動車部品工業會는 品質·技術이 國際水準에 도달했다고 公言하게 되었다[11]. 그러나 生產性은 당시에도 여전히 낮아서 自動車工業의 勞動生產性은 美國의 1/2 水準을 下廻했으며 1970년대초에 와서 美國水準에 接近하게 되었다[12]. 自動車의 國產化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이래 30여년이 지나서 技術力이 國際水準에 接近하게 된 것이다.

後發國의 工業化過程에서 技術導入과 導入技術의 消化·改良에 의한 產業技術의 發展이 累積的이고 段階的인 樣態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自動車工業과 같이 規模의 經濟性이 중요한 量產型 機械工業에서는 市場規模가 產業技術의 發展을 制約하는 核心的 要因이 된다. 要素賦存에 적합한 勞動集約的 生產方式을 개발할 수 있는 技術力이 결여된 後發國의 工業化過程에서 量產型 機械工業의 品質과 生產性이 國際水準에 도달하려면, 先進國으로부터 技術이 體化된 專用機械와 自動化設備를 사용하는 資本集約的 生產方式을 導入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市場規模가 충분히 크지 않으면 資本集約的 生產方式은 經濟性이 없다. 1955년에 7萬台에 지나지 않던 日本의 自動車生產은 1960년에 50萬台, 1968년에는 400萬台로 급격히 신장하였고 이 과정에서 生產技術體系가 全面的으로 改良되어 國際水準의 大量生產體制가 확립되었다. 高度成長에 의한 消費水準의 급속한 向上과 生產費用을 저하시키는 大量生產體制의 구축이 相乘的으로 작용하였다. 이 時期의 下請再編成도 分業集團全體로서 規模의 經濟性을 追求하였다 할 수 있다.

日本企業의 國際戰略이 최근의 엔高를 계기로 새로운 局面에 들어서면서 加工組立型 業種의 下請分業體制에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엔高 이후 海外生產의 성격이 변하여서 母企業이 資材·部品의 現地調達을 확대하고 있다. 과거에는 아시아地域에 輸出生產基地를 확보하는 輸出補完型 海外生產에서 貿易摩擦을 회피하기 위하여 北美·유럽地域에 立地하는 輸出代替型 現地生產으로 전환하면서도 國內下請生產의 國際競爭力이 강하여 資材·部品의 現地調達은 크게 확대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의 엔高로 인하여 國內生產의 경쟁력이 저하되면서 北美·유럽地域의 現地生產이 단순한 貿易摩擦의 회피보다는 生產費用과 販賣價格을 고려하는 企業內 國際分業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資材·部品의 現地調達이 확대되고 있다. 엔高 이후의 現地調達擴大는 現地政府의 요구에 의한 것이기보다는 現地에서 競爭力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아시아地域에서도 現地通貨의 平價切下로 인하여 資材·部品의 對日依存이 높

11) 尾高煌之助(1983) 참조.
12) 衣本筧彥(1987) 참조.

은 業種에서는 國產化가 기업의 死活問題로 대두되고 있다. 現地에 진출한 日本系企業도 競爭力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生產의 現地化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을 수 없다. 現地工場의 CKD(complete knock down)生產이 一貫生產으로 확충되고 競爭關係의 母企業들이 현지에서 공동으로 下請業體를 活用·育成하고 있다.

海外生產의 擴大 및 生產의 現地化와 더불어 母企業은 資材·部品과 製品의 輸入도 확대하고 있다. 國內外注業體에 發注하던 부품을 海外에서 調達하기도 하고 自社에서 생산하던 製品을 海外에서 OEM 生產하여 逆輸入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향은 中小企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아시아지역에서 逆輸入을 위한 合作投資先을 구하는 中小企業이 최근에 급증하고 있다. 部品輸入은 1979~86년간에 倍增하여 商品輸入의 4%를 점하게 되었고 이러한 증가세는 향후 수년간 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시아中進國의 공업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非價格競爭力에서 日本企業과 경합하는 분야가 加工組立型 業種의 下請生產에서도 확대되고 있고 경합하는 市場도 輸出市場에서 日本의 國內市場으로 확장되고 있다. 日本이 세계의 下請生產基地로서 역할해온 加工組立型 業種에서도 日本企業이 競爭力强化를 위하여 아시아中進國과 工程間 分業을 확대해야 되는 分野가 증대하고 있다.

國內外에서 品質·價格條件이 가장 유리한 資材·部品을 調達하는 것이 母企業의 중요한 과제가 되면서 閉鎖的이었던 下請去來의 開放化가 진행되고 있다. 全業種으로 확산되고 있는 國際的 企業提携도 下請去來의 開放化와 國際化를 가속시키고 있다. 多國籍企業간의 商品別·市場別 紐帶가 강화되면서 企業提携의 형태도 技術提携나 販賣提携 등 部分的 提携에서 硏究開發로부터 下請生產에 이르는 모든 經營活動에서 協力을 강화하는 全面的 提携로 변모하고 있다. 開放化와 더불어 一括發注化와 技術去來化가 가속되고 있다. 工程別·部品別 分散發注가 축소되고 製品別·시스템別 一括發注가 확대되고 있다. 低位技術工程의 賃加工的 下請生產이 경쟁력을 상실해가고 大量生產體制에서 工程別·部品別 分散發注가 지니는 量產效果가 海外生產의 확대와 生產의 多品種少量化로 소멸되기 때문이다. 母企業과 下請企業간의 生產同期化, 短納期化, 高品質化 등도 一括發注化를 가속시킨다. 一括發注化는 下請分業生產이 工程·設備分業生產에서 技術分業生產으로 이행하는 技術去來化와도 관련이 크다. 국제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려면 協力業體와 技術的 紐帶가 긴밀해야 된다. 協力業體를 포함한 全社的 VE活動을 추진하며, 開發段階에서부터 協力業體를 참여시켜 VE에 의한 費用節減幅을 극대화한다. 製品壽命의 短縮과 製品의 多樣化에 따른 母企業의 設計·開發能力의 부족도 技術分業化를 가속시킨다. 이와 같이 최근의 엔高에 의하여 技術開發力을 지닌 專門業體 중심의 技術分業體制로 이행하고 있다.

日本의 自動車工業이 輸出에서 現地生產으로 전환하고, 製品別·生產工程別로 國際競爭力을 지닌 분야에 특화하여 多國間 相互補完關係를 형성하는 등 國際化가 급속히 진전됨에 따라 自動車部品工業에서도 國際化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自動車部品業體의 對外活動에서는 自動車輸出에 따른 補

修用 部品의 供給이 주류를 이루어 왔으나 近年에 와서는 自動車業體의 現地生産에 참여하는 부품의 現地生産, 開途國의 自動車國産化計劃과 관련된 産業協力, 系列關係를 벗어나 해외의 自動車業體에 納品하는 國際下請 등 독자적인 國際戰略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自動車部品工業會에 의하면 1985년 5월 現在 自動車部品業體의 海外現地法人은 生産會社가 152社 販賣會社가 60社에 달하며 技術供與도 273件에 달하고 있다. 1983년 12월의 시점과 비교하면 生産會社가 23社, 販賣會社가 5社, 技術供與가 89件이 증가하였으며 地域別로는 臺湾, 韓國 및 美國에 진출하는 사례가 많았다.

日本의 下請制는 日本的 條件에 의하여 規定되는 定形的 分業體制가 아니다. 下請系列化가 확대되기 시작한 1950년대 중반에서부터 部品工業의 國際的 展開가 본격화된 최근에 이르기까지 環境變化에 대응하여 分業集團 全體로서 效率性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下請組織과 下請關係의 變化가 波狀的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과정에 일관된 특성은 經濟的 合理性에 입각하여 競爭과 協力의 調和를 추구하는 下請組織의 再編成과 分業集團의 統制·調整이라 할 수 있다.

下請制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分業體制는 個別 生産單位에 分散되어 있는 生産過程을 媒介·統合하는 機能을 요구한다. 市場이 매개하는 分立型 分業과 달리 市場原理와 組織原理의 相互浸透에 의하여 高生産性과 環境適應性을 실현하는 連鎖型 分業에서는 自主性을 지닌 諸生産單位를 統制·調整하는 管理機能이 요구된다. 連鎖型分業의 管理는 制度的 權限에 의하여 貫徹되는 組織內分業의 管理와 달리 競爭을 통한 管理로서 管理의 對象·方法·媒體가 광범위하다. 이러한 管理機能은 外注下請管理로 具體化되며, 下請組織을 編成하여 效率的으로 관리하는 원리를 이해함으로써 準結合의 형태를 취하는 下請關係의 問題性과 效率性을 一體的으로 파악하고 支配·從屬의 의미를 해명할 수 있게 된다.

下請制는 環境變化에 대응하여 社會의 生産資源을 諸生産單位간에 再配分하고 기능적으로 統合하는 分業集團의 管理機構로 이해할 수 있다. 産業發展에 수반하여 分業이 심화되면서 分業組織을 편성하고 관리하는 社會的 機能의 高度化가 요구되어 大企業이 下請企業의 生産過程을 指揮·監督하는 支配의 社會的 基盤이 형성된다. 産業發展段階·市場規模·勞動力의 質的構成·勞使關係·最低賃金制·對外去來環境의 變動에 대응하여 分業組織을 編成·管理하는 具體的 內容이 변하며, 이러한 變化가 分業集團의 構成員간에 수용되는 것은 構成員의 대다수에 이익이 된다는 經濟的 合理性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經濟的 合理性은 分業體制의 高生産性과 環境適應性으로 설명될 수 있으며, 高生産性과 環境適應性은 競爭原理가 관철되는 分業集團의 編成과 管理·分業組織의 階層的 構造에 의한 情報傳達效率性·信賴關係에 바탕을 둔 유연한 企業間 去來·下部單位의 革新的 適應을 活用하는 連結組織의 特性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 參 考 文 獻 ◁

青木昌彦,「擬似ツリー構造　つうじる革新的適應」,『季刊 現代經濟』, 第58號, 1984.

伊東岱吉,『中小企業論』, 日本評論社, 1961.

今井賢一,「ネツトワーク　産業組織」,『季刊 現代經濟』, 第58號, 1984.

Imai K. and H. Itami, "Interpenetration of Organization and Market", *International Journal of Industrial Organization*, 1984.

尾高煌之助,「自動車部品工業の發展と停滯」,『經濟研究』, 34巻 4號, 1983.

加藤誠一・水野武・小林靖雄(編),『經濟構造と中小企業』, 同友館, 1976.

河崎亞州夫,「今日の下請系列と中小企業」, 日本中小企業學會(編),『下請・流通系列化と中小企業』, 同友館, 1985.

北澤康男,『中小企業成長論の研究』, 世界思想社, 1975.

衣本篁彦(編),『日本工業構造の變動』, 中央經濟社, 1987.

小林義雄(編),『企業系列の實態, 獨占資本の相互提携と支配强化』, 東洋經濟新報社, 1958.

小宮山琢二,『日本中小工業研究』, 中央公論社, 1941.

瀧澤菊太郎・小川英次(編),『先端技術と中小企業』, 有斐閣, 1988.

通商産業省,『商工政策史・ 第12巻 中小企業』 1963.

中村秀一郎,『日本の中小企業問題』, 合同出版社, 1962.

_____,『中堅企業論』, 東洋經濟新報社, 1964.

_____,『中小企業』, 日本經濟新聞社, 1977.

_____,『現代中小企業史』, 日本經濟新聞社, 1981.

中村精,『中小企業と大企業』, 東洋經濟新報社, 1983.

港徹雄,「日本型　生産システムの編成構造」,『青山國際政經論集』, 第2號, 1985.

藤田敬三(編),『下請制工業』, 有斐閣, 1943.

_____,「日本産業における企業系列」,『經營研究』(29), 1957.

宮澤健一,『産業の經濟學』, 東洋經濟新報社, 1975.

渡邊幸男,「下請・系列中小企業」, 中小企業事業團・中小企業研究所(編),『日本の中小企業研究』, 有斐閣, 1985.

國際化時代의 公正去來制度

- 貿易 및 貿易政策의 競爭政策的 意味 -

劉 承 旻

國際化가 進展되면서 貿易 및 貿易政策이 갖는 競爭政策的 意味는 競爭政策當局에게 중요한 관심사항으로 부각될 것이다. 本稿에서는 國際化와 관련된 競爭政策의 主要問題를 소개하고 國際的 次元의 통일된 競爭規範인 國際公正去來制度와 個別國家次元의 競爭政策이라는 두가지 側面으로 兩分하여 論議를 展開한다. 특히 國別次元의 分析에 있어서는 國際去來行爲의 主要類型이 갖는 競爭政策的 意味를 分析하고 貿易政策과 競爭政策의 連繫性에 대한 考察을 중심으로 하여 國際化에 대비한 競爭政策方向을 제시하고자 한다. 本稿에서의 論議를 중심으로 韓國의 政策現況을 살펴볼 때 自由主義的 貿易政策의 채택과 함께 競爭政策의 明示的인 適用範圍가 國際去來를 포함하도록 再調整하고 貿易政策과 競爭政策間의 相衝關係를 解消하며 兩者間 優先順位를 再調整하는 등의 課題가 부각된다.

I. 序論: 國際化와 관련된 公正去來制度의 主要問題

財貨와 用役, 資本과 技術의 國家間 去來에 있어서도 國內市場에서의 國內企業間 去來와 마찬가지로 不公正한 혹은 競爭制限的인 측면이 발견된다. 國家間 相互依存度가 높아감에 따라 個別國家의 입장에서는 國際化의 進展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경우 相對國과의 각종 去來行爲에서 발견되는 不公正去來行爲 혹은 競爭制限的 去來慣行 등은 貿易政策當局뿐만 아니라 競爭政策當局의 중요한 관심사항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國內企業들간의 競爭制限的 혹은 不公正한 去來行爲는 전통적으로 競爭政策의 主要規制對象이었는데 國際去來에서의 유사한 慣行은 國內法爲主로 운용되어 온 競爭政策만으로는 해결이 어렵거나 혹은 競爭政策의 適用 자체가 여타 政策들의 立法趣旨와 상충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특히 貿易政策은 國內, 國際市場에서의 競爭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筆者 : 本院 硏究委員

* 著者는 本 論文의 草稿를 읽고 귀중한 論評을 해 준 本院의 李奎億, 朴埈卿 博士와 李在亨 主任硏究員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원고정리에 수고한 韓光錫 硏究員, 金銀淑 硏究助員에게도 감사드린다.

市場機能의 원활한 작용을 촉진하기 위한 競爭政策은 두가지의 중요한 이유에서 貿易 및 貿易政策과 관련된다. 첫째, 國際貿易은 價格, 品質, 技術革新, 新製品과 生產工程의 開發 등의 측면에서 國內市場에서의 競爭的 要素를 尖銳化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둘째, 特定國內產業을 보호하기 위한 貿易障壁은 國內市場에 反競爭的 效果를 야기할 수 있다. 이 경우 貿易障壁을 貿易政策的 次元에서 선택하는 이유로서 國內企業들에게 國際競爭力을 확보할 시간적 여유를 제공한다는 점을 들고 있으나 長期的, 產業組織論的 관점에서 본다면 '統制된 貿易'(managed international trade)이나 '內部指向的 貿易政策'(inward-oriented trade policies)은 결국 競爭壓力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없는 市場構造를 초래하여 효과적인 競爭政策의 執行을 불가능하게 한다. 또한 國內產業을 보호하는 貿易政策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국가에서는 이러한 保護措置의 혜택이 特定生產階層에게만 귀속되는 반면 產業全般에 걸친 效率性 損失과 함께 消費者, 納稅者 혹은 여타 國內生產者에게도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그 政策의 전체적인 효과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競爭政策과 貿易政策의 聯關性에 대한 고찰은 각 政策의 目標를 비교함으로써 더욱 분명해질 수 있다[1]. 多者間 自由貿易體制가 약화되고 一方的 貿易措置, 雙務的 協定, 市場共有協定 등의 사용이 빈번해지면서 總貿易에서 통제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 이 현상은 여러가지로 설명될 수 있겠으나 海外競爭力이나 技術變化의 충격으로부터 國內產業을 보호하려 한다거나, 혹은 景氣沈滯에 따라 需要와 供給能力의 격차가 심화되고 費用과 技術의 側面에서 國際競爭力이 약화되어 輸入의 內需市場浸透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失業率이 증가하고 國內企業의 利潤率이 하락하여 국내의 保護主義的 壓力을 형성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와 같이 保護主義的 貿易政策은 國內產業發展을 위해 필요한 適應過程을 원활히 해주고 適應의 社會·經濟的 費用을 경감시켜 준다는 점에서 합리화되고 있으나, 중요한 점은 이러한 限時的 貿易政策이 때로는 國內產業의 適應을 촉진시킬 만한 충분한 압력으로 작용하지 못하거나 혹은 相對國이 이에 대항하여 유사한 保護主義的 報復措置를 취할 수 있다는 經驗的 事實이다[2].

競爭政策의 基本的 目標는 財貨와 用役의 生產·分配에 있어서의 效率性을 提高하고 動態的으로는 技術革新과 技術變化에 대한 企業의 適應에 있어서 肯定的인 效果를 부여함으로써 持續的인 經濟成長을 도모할 수 있는 競爭體制를 유지·촉진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3]. 競爭體制維持를 통한 經濟的 效率性의 極大化가 競爭政策의 基本目標이나 各國이 이러한 목표를 추구하는 정도는 여타 社會·政治的 目標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1) OECD(1984), pp. 85~87을 참조할 것.
2) 게임理論에서 말하는 prisoner's dilemma의 상황을 말한다. 즉 상대방이 保護主義的 政策을 취하는 한 이에 상응하는 報復措置를 취하는 것이 自由主義的 政策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나은 결과를 갖고 온다는 것인데 이러한 의미에서 保護主義的 貿易政策은 그 자체가 傳染性을 갖고 永續的일 수 있다는 지적에 유의한다. 持續的 成長을 위해서는 保護主義的 次元을 벗어난 과감한 適應政策, 市場機能의 活性化 및 生產的인 投資 등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3) 競爭政策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Scherer(1980), pp. 12~14, pp. 491~496, 尹暢皓·李奎億(1988), pp. 47~56, pp. 402~411 및 Schotter(1985)를 참조할 것.

國家에 따라서는 競爭政策의 目標가 과도한 經濟力集中 防止와 進入障壁의 除去 등과 동일시되기도 하는데 이 역시 長期的으로는 競爭體制의 確立을 추구하는 목표에 기여한다고 본다[4].

自由主義的 貿易政策과 競爭政策은 競爭的 秩序를 해치는 障礙要因을 제거함으로써 모든 生産者에게 공평하게 市場을 開放하는 공통된 목표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相互 順機能을 강화시키는 관계를 갖게 된다. 그러나 景氣沈滯가 長期化되는 경우 등 政府가 競爭的 市場메카니즘에 개입할 필요성을 느낌에 따라 保護主義的, 反競爭的 政策을 채택하려는 유혹이 커진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景氣沈滯가 競爭體制를 옳게 시행하지 못했던 결과일 수도 있으며 景氣沈滯期일수록 競爭的 市場構造의 確保라는 長期的 役割을 갖는 競爭政策의 維持가 중요하며 그 전반적인 효과는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5].

本 論文은 國際去來行爲의 諸類型 및 貿易政策의 競爭政策的 意味를 고찰함으로써 國際化時代의 競爭政策이 고려해야 할 問題點을 파악하고 政策方向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問題點을 파악함에 있어서 우선 이에 대한 두가지의 상이한 接近方法을 고려한다. 첫째, 동일한 혹은 유사한 去來行爲에 대한 各國의 競爭政策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國際的 次元에서 公正한 國際去來를 보장할 수 있는 통일된 國際競爭規範을 추구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둘째, 國際去來行爲가 特定國家의 貿易政策의 結果이거나, 民間次元의 行爲라고 하더라도 自國의 競爭政策 適用對象에서는 제외되고 오히려 相對國의 競爭政策에 적용될 가능성이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 關聯國家들은 特定行爲를 두고 상이한 視角을 갖게 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문제는 個別國家의 次元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國際化時代의 公正去來制度를 연구함에 있어서 이처럼 두가지의 상이한 차원의 接近方法을 分類하는 것은 단순히 分析上의 利點외에도 本質的인 重要性을 갖고 있다고 판단된다. 國家主權이 獨立的인 한, 한 國家의 經濟와 다른 國家經濟間에는 競爭·貿易政策的인 측면에서 뚜렷한 구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 貿易의 경우에도 國際貿易規範으로서의 GATT와 各國의 國別貿易政策이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으면서도 독립된 것으로서 인식되듯이, 競爭의 경우에도 國際的 次元의 競爭規範과 各國이 國內法 次元에서 유지하고 있는 競爭政策은 상호 관련이 있으면서도 분리되어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本 論文에서는 이와 같은 接近方法의 分類에 따라 먼저 Ⅱ章에서는 國際的 次元의 競爭規範을 소개한다. 대표적인 것으로서 OECD 코드와 UN코드를 간략히 소개하고 이들의 背景, 內容 및 效果, 各國이 이들 國際的 競爭規範에 대하여 갖는 視角 등을 논의하고 國際的 競爭規範의 限界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또한 國際貿易規範으로서의 GATT도 競爭政策的 示唆點을 갖고 있는 條項의 경우에는 國際競爭規範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간략히 논의하기로 한다.

Ⅲ章 및 Ⅳ章에서는 두번째 接近方法에 따라 國家間 去來行爲가 關聯個別國家에 대하

4) 그러나 公益性, 平等性 등 經濟的 效率性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목표들이 競爭政策에 고려될 경우에는 本文에서 제시한 基本目標와 상이할 수도 있다.
5) OECD(1981)를 참조할 것.

여 어떠한 競爭政策的 意味를 갖는가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國別次元의 논의에 있어서도 여러가지 기준에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데 어떠한 分類方法이든지 論議의 근저에는 競爭政策과 貿易·貿易政策의 連繫性이 그 主題가 될 것이다. 첫번째 가능한 分類는 去來國을 A, B라 할 때 A國의 競爭政策과 B國企業의 對A國 去來行爲의 關係, A國의 競爭政策과 B國의 競爭·貿易政策의 關係, A國의 競爭政策과 A國의 貿易政策의 關係 등으로 분류하여 國別次元의 分析을 시도하는 것이다. 둘째의 가능한 分類는 市場의 競爭機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競爭政策的 關心對象이 될 수 있는 國際去來行爲의 諸類型에 대한 分析과 市場構造에 反競爭的 영향을 미침으로써 競爭政策的 關心對象이 될 수 있는 保護主義的 貿易政策手段의 諸類型에 대한 分析으로 分類하여 國別次元의 分析을 시도하는 것이다. 本 論文은 두번째 방법을 선택하여 Ⅲ章에서는 國際去來行爲의 競爭政策的 意味에 대하여, Ⅳ章에서는 貿易政策의 競爭政策的 意味에 대하여 분석을 시도한다[6].

그동안 輸入自由化, 資本自由化 등의 對外開放措置를 통하여 國際化를 도모하고 對內的으로는 政府規制緩和 등을 통하여 經濟의 自律化를 이룩하려는 政府의 政策方向은 對內的, 對外的 次元에서 모두 市場의 機能을 회복하고자 하는 시도로 해석된다. Ⅴ章에서는 結論을 대신하여 本 論文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國際化와 관련된 韓國의 政策現況을 살펴본 뒤, 韓國競爭政策에 대한 示唆點과 政策方向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國際公正去來制度: 國際的 次元의 競爭規範[7]

保護主義와 카르텔化 現象이 1930년대의 世界的 不況에 기여했다는 판단 아래 2次大戰後 先進國들은 보다 자유로운 世界貿易秩序를 維持·擴大하기 위한 方案을 모색하고자 했다. 일반적으로 自由貿易秩序는 ①交易을 방해하지 않는 수준의 關稅體系維持, ②交易 및 投資에 있어서의 無差別原則과 相互主義原則의 固守, ③非關稅貿易障壁과 投資障壁 撤廢, ④公正한 國際競爭을 不公正한 國際競爭과 구별하는 制度的 裝置의 確立 등에 의존한다고 볼 수 있다[8]. 이러한 要因들 중에서 不公正한 國際競爭을 방지하는 制度的 裝置를 마련하는 것은 당초부터 理想的인 自由貿易秩序를 확립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어 왔다. ①~③項에 명시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채택된 브레튼우즈協定은 새로운 國際貿易機構의 創設을 통하여 自由貿易을 보장하고 各國의 保護主義的 貿易政策을 완벽히 규제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GATT라는 過渡期的 協定을 탄생시킴으로써 목적

6) 去來關聯國을 A, B 兩國으로 단순화시켜 놓은 상황을 想定할 때 첫번째 分類方法이 보다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동일한 經濟現象이나, 競爭·貿易政策이 項目別로 중복될 수 있는 분석상의 問題點이 발견된다. 어느 방법을 채택하든 분석내용에 중요한 차이점은 없다고 생각한다.

7) 本 論文에서는 國際公正去來制度(international antitrust laws)란 용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國際的 次元에서 國家間 協議에 따른 통일된 競爭規範이라는 좁은 의미로만 사용함을 밝혀 둔다. 論者에 따라서는 國際公正去來制度를 해석함에 있어서 國際去來에 대한 國別次元의 競爭政策까지도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8) Davidow(1983), p.119를 참조할 것.

의 상당부분을 달성할 수 있었다. 이와 비교해 볼 때 公正한 國際競爭이라는 目標를 달성하기 위한 國際的 次元의 競爭規範을 채택하는 문제는 오랫동안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으나 본격적인 진전이 없었다[9].

1953년에 와서야 最初의 多者間競爭規範이 歐洲石炭鐵鋼共同體(ECSC)協定의 일환으로서 나타나게 되었는데 'Schuman Plan'이라고 불리는 同 協定에 따라 鐵鋼系統의 企業合併이 효과적으로 규제받게 되었다. 또한 1958년 歐洲經濟共同體(EEC)를 탄생시킨 로마協約의 85條 및 86條에 의하면 歐洲共同市場內에서의 競爭을 저해하고 會員國間의 자유로운 交易을 방해하는 효과를 갖는 制限的 協定이나 優越的 地位의 濫用이 배격된다. 이같은 地域的 競爭規範은 歐洲自由貿易聯合(EFTA) 등에도 포함되어 있으나 그 실효성은 의문시된다. 이러한 展開過程에서 볼 때 70년대초 OECD가 채택한 獨占禁止原則 및 1980년 UN이 채택한 制限的 去來慣行의 規制原則 등은 國際的 次元의 競爭規範을 발전시킴에 있어서 획기적인 轉換點이 되었다. 하지만 아직도 國際的 次元의 競爭規範을 집행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극히 初步的인 段階에 머물러 있다.

1. OECD의 競爭規範

가. OECD RBP專門家委員會의 勸告條項

獨占禁止(antitrust)[10] 또는 制限的 去來慣行(RBP : restrictive business practices)의 規制에 관한 한 현재까지 가장 효과적으로 시행되어 온 國際的 次元의 競爭規範은 1967년에 制定되어 1979년에 改正된 OECD의 通報勸告條項이라고 본다. 이에 따르면 競爭政策을 시행하고 있는 OECD會員國은 他會員國의 國益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制限的 去來慣行의 조사 내지는 처벌을 하기 전에 이를 關聯國家에게 通報할 것을 권고한다. 이러한 節次를 갖게 된 목적은 關聯國家들 모두에게 중요한 利害關係를 갖고 論難의 餘地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關聯國 政府間의 相互諮問이 용이하게 하기 위함인데 1979년의 改正時에는 이와 같은 諮問節次 또한 公式化되었다. 通報 및 諮問뿐만 아니라 調整(conciliation)의 次元에서도 OECD는 1967년 이후 勸告條項을 두고 있는데, 調整의 槪念에 의하면 特定國家가 他國에서 일어나는 制限的 去來慣行에 의하여 被害를 당하고 있다고 판단할 경우 他國에게 이의 是正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調整勸告條項의 경우 실제 사용되어 본 적은 별로 없었다. 調整槪念에는 많은 문제가 있는데 他國에서의 制限的 去來慣行에 自國의 競爭政策을 적용할 意志만 있다면 他國政府의 도움이 필요없을 것이며 他國政府 또한 國內市場에 反競爭的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合法的 規制가 어렵게

9) 1948년, 1952년에 UN에서 獨占禁止規約이 제안되었으나 주로 美國側의 반대로 채택되지 못했다. 그러나 2次大戰 직후 美國의 압력으로 國內法 次元의 競爭政策을 日本, 獨逸 등이 채택했다. 美國側의 반대이유는 國別次元의 競爭政策을 본격적으로 導入한 國家가 거의 없었던 상태에서 國際的 次元의 통일된 競爭規範의 施行은 어려우며 따라서 競爭制度의 國家別 혹은 地域別 發展이 先行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10) 獨占禁止(antitrust)란 용어는 日本飜譯을 따랐지만 상당한 問題點을 내포하고 있다. 獨占(monopoly)과 트러스트(trust)간에는 상당한 차이점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後者가 보다 광범위한 의미를 내포한다. 또한 'anti'를 '禁止'보다는 '反'으로 해석함이 옳을 것이다. 尹暢皓 · 李奎億(1988), p.250 및 OECD (1965), p.15, p.25를 참조할 것

된다. 第3者에 의한 調整의 경우 역시 獨占禁止와 관련된 決定權을 第3者에게 위임한다는 것은 主權을 포기한다는 상징적 의미를 갖기 때문에 이를 자발적으로 하지 않을 것이다.

나. OECD의 多國籍企業 指針

이와 같이 OECD RBP專門家委員會는 勸告機能만을 수행할 뿐 企業行爲의 구체적인 측면에 대한 直接·强制的인 規制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多國籍企業에 대해서는 그 政治·經濟的인 중요성을 감안하여 1976년 29個 項目의 指針을 설정했다. 이 중 4個 項目이 多國籍企業의 制限的 去來慣行과 연관되어 있는데 이들 競爭原則들은 ①優越的 市場支配力의 濫用 禁止, ②流通業者, 契約當事者의 자유로운 購買·再販賣 保障, ③政府가 承認하지 않는 國際카르텔에의 參與 禁止, ④各國의 競爭政策當局에 대한 情報提供義務 등으로 요약된다[11]. 이러한 指針의 채택에도 불구하고 이를 執行할 수 있는 機構를 설립하지는 않았으며 다만 會員國政府가 自國의 多國籍企業에게 이를 권고함에 그쳤다. 실제 OECD의 投資·多國籍企業委員會(CIME)가 同 指針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諮問을 주는 기능을 하고 있으나 多國籍企業 指針이 결정적인 有權解釋의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同 指針은 多國籍企業의 制限的 去來慣行을 規制하는 실제적 효과를 갖고 있다고 인식되어 왔다.

2. UN의 競爭規範

1970년대 중반 이후 UN에서도 多國籍企業의 制限的 去來慣行이 중요한 문제로 등장했다. UN의 경우에는 開發途上國들을 중심으로 貿易, 投資, 技術移轉 등 여러 측면에서 기존의 체제를 再構成하여 開途國에게 보다 公正한 새로운 國際經濟秩序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있어 왔다. 이러한 배경 아래 UN貿易開發會議(UNCTAD)는 制限的 去來慣行의 規制原則과 技術移轉行爲에 대한 原則의 채택을 위한 협상에 착수했다. 이 두가지 事案은 모두 國際的 次元의 獨占禁止制度, 즉 國際公正去來制度와 관련된 것인데 制限的 去來慣行에 대한 國家間 合意가 技術移轉에 대한 合意보다 훨씬 용이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前者의 경우 1980년 UN總會에서 승인되었으나 後者의 경우에는 難航을 거듭했다. 특히 制限的 技術契約慣行에 관한 條項 및 技術契約關聯紛爭의 解決方案 등에 있어서 先進國과 開途國間의 意見對立이 첨예화되었다[12].

制限的 去來慣行과 技術移轉契約에 관한 協商過程에서 나타난 어려움은 各國이 이러한 國際競爭規範에 대하여 갖는 認識의 背景 및 目的上의 乖離에 기인한다. 制限的 去來慣行에 관한 한 開途國들이 問題를 提起하기 훨씬 이전부터 先進國들은 이미 이에 관한 規制를 지지해 왔으며, 일부 開途國들이 그나마 채택하고 있는 獨占禁止法이란 결국 先進國들의 先例를 본따 온 것이기 때문에 貿易이나 投資에 대하여 별다른 언급이 없을

11) OECD의 多國籍企業 指針에 대해서는 OECD (1976) 및 Davidow(1977)를 참조할 것.

12) 國際技術移轉에 관한 行爲規則(code of conduct)의 最近動向에 대해서는 UNCTAD(1985)를 참조할 것. 梁明朝(1986), p. 216에서는 國際技術移轉에 관한 先進國과 開途國의 利害關係對立을 事案別로 정리하고 있다.

뿐 아니라 先進國과 상이한 特性이 있을 수도 없었다. 그러나 技術移轉契約의 制限的 側面에 관한 規制란 開途國에 의해 考案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더구나 開途國들은 技術移轉契約의 規制를 기본적으로 技術供與者의 利益을 保護해 온 從來의 慣行을 약화시키는 수단으로 받아들인 반면, 美國을 위시한 先進國들은 技術의 主要供給源이었던만큼 工業所有權을 保護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했다.

UN의 競爭規範을 法的 拘束力이 있는 國際條約의 形態로 할 것인가, 혹은 OECD의 경우와 같이 自發的인 勸告에 그칠 것인가의 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 역시 先進國들은 前者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러한 문제는 UNCTAD를 자기에게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國際經濟秩序의 변화를 도출하는 수단으로서 인식하는 開途國과 國際公正去來制度의 執行機構로서의 UNCTAD를 반대하는 先進國의 立場差異에 기인하는 결과이다. 制限的 去來慣行의 規制內容 또한 OECD의 多國籍企業 指針만큼 단순·분명하거나 직접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解釋의 問題가 야기되며 이는 결국 그 實效性을 제약하게 된다[13]. 이러한 이유 때문에 制限的 去來慣行에 관한 UN의 競爭規範은 自明한 原則 이상의 것이 되지 못했다. 그러나 종전에는 先進國을 상대로 獨占禁止 혹은 公正去來에 관한 問題를 提起할 수 없었던 開途國이 先進國으로 하여금 이를 진지하게 고려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정도의 효과는 있었다. OECD의 경험으로 볼 때 各國이 自國의 多國籍企業이 誘致國에서 행한 制限的 去來慣行에 대하여 誘致國과의 協商에 임한다든가, 혹은 多國籍企業에 대한 規制를 약속한다든가 하는 것은 매우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 OECD의 경우 주된 問題類型은 多國籍企業의 制限的 去來慣行에 대해 誘致國이 自國의 獨占禁止法을 適用할 것인가인데 UN競爭規範의 경우에 있어서는 問題를 提起하는 開途國들이 아직도 獨占禁止法의 적용에 대한 준비가 불충분하다.

13) 예컨대 "流通이나 事後서비스 등과 관련된 合理的 理由가 없는 한 企業은 輸出을 制限함으로써 市場支配的 地位를 濫用해서는 안된다"라는 原則은 論難의 餘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個別企業의 立場에서는 어떤 去來行爲가 이에 違背되는지를 파악하기조차 어렵다.

3. GATT의 競爭關聯條項

國際的 次元의 貿易規範인 GATT條項 중에서 특별히 競爭政策的 關心對象이 되는 것은 덤핑 및 相計關稅(6條)와 輸出補助金(16條)에 관한 條項이라고 본다. 덤핑防止措置의 경우에는 케네디라운드에서 주된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GATT 6條 및 이의 執行節次에 의하면 첫째, 덤핑防止措置를 취하고자 하는 國家는 自國에 수출하는 相對國企業이 自國內에서 販賣하는 價格과 相對國의 國內販賣價格을 비교하여 덤핑行爲가 발생했는지를 결정하고 또한 덤핑行爲가 自國의 生産業者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했는지를 평가해야 하며, 둘째, 國內産業이 입은 피해가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라 바로 덤핑에 의한 것이라는 因果關係(causality)를 증명해야만 한다. 輸出補助金 및 相計關稅는 自由貿易秩序를 왜곡시키고 다른 國家들의 정당한 貿易機會를 박탈할 수 있기 때문에 GATT의 主要關心事項이 되어 왔다. 특히 도쿄라운드에서 이 문제에 대한 큰 진전을 보았는데, 相

計關稅를 책정하기 위한 前提條件으로 덤핑防止措置의 경우와 같이 國內產業에 대한 심각한 피해가 相對國의 輸出補助金에 의하여 초래되었다는 因果關係의 成立을 요구하며 책정된 相計關稅는 輸出補助金의 限度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GATT體制內에서 덤핑防止와 輸出補助金에 대한 相計關稅를 취급하는 節次는 매우 유사한데 주된 差異點은 덤핑防止措置는 輸出企業의 行爲에만 적용되는 반면 相計關稅의 경우에는 輸出企業을 지원한 輸出國政府의 行爲에 적용된다는 것이다.

4. 國際公正去來制度는 可能한가?

國家間 去來行爲의 競爭制限的이고 不公正한 側面을 國際的 次元의 통일된 競爭規範인 國際公正去來制度를 통하여 規制함으로써 國內·世界市場의 市場機能을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은 OECD, UN, GATT 등의 경우에서 具體化되고 있으나 아직도 그 實效性이 의문시되는 단계이다. OECD와 비교할 때 UN의 경우 先進國群과 開途國群이 國際去來의 諸類型에 대한 상반된 利害關係를 이유로 자기측에 유리한 制度를 정착시키려 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OECD의 경우에는 진정한 의미의 國際公正去來制度라기보다는 地域的 競爭規範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經濟與件이 유사한 國家들이 상호마찰이 없는 한도내에서 國別 競爭政策을 확대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진정한 의미의 國際公正去來制度로서의 UN競爭規範과 OECD의 경우와 같이 제한된 地域的 競爭規範을 비교함으로써 향후 國際公正去來制度의 進路에 대한 示唆點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國家間 利害關係의 對立을 완화시키고 國際公正去來制度의 適用對象이 되는 去來類型의 範疇를 넓혀가는 것이 實效性이 있는 國際公正去來制度의 先行條件이라는 것은 自明한 사실이다. 그러나 特定去來行爲에 있어서 國家間 利害關係의 對立程度를 결정짓는 요인은 극히 복합적일 것이며 따라서 가까운 장래에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문제는 아니다. 다만 開途國들이 향후 市場機能을 더욱 중요시하는 競爭政策을 채택하고 保護主義的 貿易政策보다 開放的인 貿易政策을 선호할 만큼의 經濟的 與件이 갖추어질 때에만 可能性이 있을 것이다.

둘째, OECD의 競爭規範이 보다 效果的이었다는 사실을 最近 世界經濟의 블록화趨勢와 관련시켜 볼 때, 地域主義의 擴散은 地域的 競爭規範의 擴散을 초래할 것이라 예측된다. 地域主義 자체가 自由貿易圈 등의 形成을 통하여 共同의 利益增大를 도모하려는 노력인만큼 汎世界的 國際公正去來制度보다는 地域內 競爭規範이 강화될 現實的 可能性이 크다.

셋째, UN競爭規範의 경우 이의 適用과 관련된 세가지 主體인 企業, 國家 및 UN을 중심으로 國際公正去來制度의 問題點을 살펴보면 企業의 경우 UN의 制限的 去來慣行에 대한 規制가 多國籍企業을 1次的 對象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適用經路는 投資國政府를 통해서만 가능한 間接的인 것일 뿐 아니라 그 內容 또한 法的 拘束力을 갖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原則은 企業에 대하여 가장 미약하게 적용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規範으로써 企業行爲에 대하여 중요한 변화

를 초래할 수 있다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UN의 競爭規範은 各國政府 혹은 國際機構에 대해서는 비교적 잘 적용되는 반면 가장 중요한 規制對象인 企業에게는 오히려 바르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矛盾을 안고 있다. 아직도 國際公正去來制度가 企業次元의 制限的 去來慣行을 직접 규제할 수 있는 實質的인 規範으로 정착되는 것은 요원한 과제이다.

Ⅲ. 國別次元의 分析(Ⅰ): 國際去來行爲의 競爭政策的 意味

GATT體制를 발전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各國의 貿易政策이 GATT原則에 위배되는 문제가 있듯이 競爭의 次元에 있어서도 國別競爭政策이 國際公正去來制度의 原則과 상충될 경우에 問題點이 야기되는 可能性을 상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國際公正去來制度가 극히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고 國家間 利害對立으로 논란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可能性은 희박하다고 판단된다. 오히려 이러한 이유 때문에 個別國家의 競爭政策은 다른 國家에게 별다른 異議의 對象이 되지 못하고 있다[14]. 獨占禁止法을 채택하지 않고 있는 國家들이 아직도 많은 상황에서 獨占禁止法이나 이와 유사한 競爭政策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진보된 競爭政策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는 현실이다. 신뢰할 만한 國際的 次元의 競爭規範이 존재하지 않는 한 國際去來行爲의 競爭制限的인 側面에 대한 規制는 자연히 該當國家의 競爭政策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問題分析에 본질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國別次元에서 競爭政策과 貿易 및 貿易政策의 連繫性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먼저 國際去來行爲의 競爭政策的 意味를 去來行爲의 類型別로 파악하고자 한다.

競爭政策的 意味를 갖는 國際去來行爲란 "企業이나 政府의 行爲 중에서 競爭政策의 適用範疇에 포함되어 있고, 國際去來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따라서 去來相對國의 利害關係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말한다[15]. 國家間 相互 依存度가 높아가고 經濟活動에서 對外去來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면서 이러한 問題들은 실로 광범위하다. 本章에서는 個別 去來行爲에 대한 理論的, 實證的 深層分析이 아니라 各國의 競爭政策과 관련하여 特定類型의 經濟現象이 어떤 측면에서 競爭의 槪念과 연관되며 制限的 去來慣行에 대한 規制의 限界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論議를 展開하고자 한다. 本章에서 취급할 經濟現象들은 먼저 貿易과 관련된 것으로서 輸出入카르텔, 貿易商社, 輸出自律規制, 垂直的 制限, 多國籍企業의 貿易關聯行爲 등이다[16]. 貿易 이외에도 資本과 技術의 去來行爲로서 競爭의 槪念과 연관되는 것은 多國籍企業의 企業合併, 工業所有權 및 技術移轉契約 등을 들

14) '主權免責의 原則'(sovereign immunity doctrine) 혹은 '國家行爲의 原則'(act-of-state doctrine) 등에 의하여 國別 競爭政策의 '不可侵權'이 合理化되기도 한다는 사실에 유의한다.

15) OECD(1984), p.25를 참조할 것. 本 論文에서는 國際去來를 貿易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資本 및 技術의 去來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16) 이외에도 相計貿易(countertrade), 國營貿易(state trading), 政府調達(government procurement), 規制產業의 貿易, 公企業에 의한 貿易 등이 競爭에 대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는 國際貿易의 諸類型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政府의 介入이 보다 강한 측면을 지니고 있는데 本 論文에서는 제외시켰다.

수 있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광범위한 問題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疑問을 중심으로 論議를 展開한다. 첫째, 企業行爲가 貿易障壁의 役割을 하는가? 企業行爲와 貿易政策間의 關係는 무엇인가? 企業行爲가 政府의 貿易規制에 대한 反作用의 結果인가 혹은 政府措置에 의하여 묵인되거나 장려되고 있는가? 企業行爲에 競爭政策을 적용함에 있어서 나타나는 問題點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둘째, 企業行爲 및 企業間 協定에 대한 競爭政策의 立場과 貿易政策의 立場은 獨立的인가, 相互一致하는가, 혹은 相互 矛盾되는 것인가? 셋째, 漸增하는 保護主義的 壓力에 대항하기 위하여 貿易關聯 去來行爲를 規制함에 있어서 競爭政策이 보다 중요한 役割을 담당할 可能性이 있는가?

1. 貿易關聯 去來行爲

가. 輸出카르텔

財貨와 用役을 海外에서 販賣하거나 海外市場占有率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혹은 海外市場에의 新規進入을 위하여 企業들은 輸出競爭相對들과 協定을 맺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合意가 輸出카르텔을 포함하고 있으나 반드시 이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輸出카르텔이란 海外市場에 輸出되는 財貨와 用役의 價格, 生產量 등에 대한 意思決定을 個別輸出企業이 獨立的으로 하지 않고 企業間의 水平的 協定을 통해서 수행하는 것이다. 輸出카르텔은 카르텔의 目的에 따라 純粹輸出카르텔(pure export cartels)과 複合輸出카르텔(mixed export cartels)로 분류되며, 構成員의 國籍에 따라서는 國別輸出카르텔(national export catels)과 國際輸出카르텔(international export cartels)로 분류된다. 純粹카르텔은 海外市場에서의 競爭에만 관련된 반면, 複合카르텔은 海外市場뿐만 아니라 國內市場의 競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카르텔을 말한다. 그러나 純粹카르텔이라 할지라도 본래 의도와는 달리 國內市場의 競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國家에 따라서는 純粹카르텔과 複合카르텔의 구분을 아예 競爭法體系內에 명시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共同輸出行爲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共同輸出行爲를 통하여 輸出機會를 확대하려는 貿易政策的 立場과 市場支配力을 濫用하는 共同行爲를 금지하는 競爭政策的 立場이 어떻게 조화되느냐의 문제이다. 傳統的으로 國際카르텔은 市場支配的 地位를 바탕으로 國別市場에서의 競爭相對를 배척하고 價格 및 販賣量을 제한하는 등 競爭制限的 效果가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國家들은 이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競爭法을 적용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國別카르텔에 대해서는 많은 국가들이 輸出增大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를 묵시적 혹은 명시적으로 승인하고 있다. 政府의 카르텔承認을 合理化시켜 주는 것은 이같은 共同行爲가 輸出業者들에게 生產·流通에 있어서 規模의 經濟를 실현할 수 있게 하고 輸出行爲에 필요한 專門性, 市場情報 등을 제공하며 危險性과 資本負擔을 分散시키는 등 輸出費用을 삭감시키는 肯定的 效果를 갖는다는 것인데 특히 中小企業들의 輸出에 있어서 타당한 측면일 것이다. 輸出國家의 貿易政策的 次元에서 본다면 이러한 효과를 갖는 共

同行爲는 장려할 만한 성질의 것이다.

國別카르텔을 권장하는 政策이 성공할 것인가의 여부는 이러한 政策이 海外市場에서 報復措置를 초래할 것인가와도 관계가 있으며 카르텔의 比重, 카르텔構成員의 數, 카르텔의 活動形態 등과도 관계가 있다. 輸出市場에서 카르텔에 의한 販賣의 比重이 작을 경우에는 非構成員들로부터의 競爭壓力 때문에 카르텔이 價格을 인상할 능력이 크지 않을 것이다. 또한 카르텔이 多數의 構成員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카르텔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실제로 國別카르텔을 권장하는 政策이 그 政策目標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OECD (1974)에 의하면 輸出카르텔이 中小企業으로 구성된 경우는 드물며 오히려 成功的인 事例는 少數의 大企業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輸出카르텔이 輸出國의 競爭政策當局에게 특별히 관심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國內市場에 대하여 가질 수 있는 波及效果(spillover effects) 때문이다. 構造的 觀點에서 볼 때 輸出카르텔에 참가함으로써 國內企業들이 상호 협력한다는 사실 자체가 國內市場에서의 共同行爲를 용이하게 할 것임은 분명하다. 특히 이들이 價格과 生產費用 등에 대한 情報를 교환할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輸出카르텔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요인들 또한 國內市場에 대한 波及效果를 높인다. 예컨대 輸出카르텔에 속한 企業들이 國內市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海外市場에서의 市場支配力 또한 높을 경우 輸出市場에서의 價格引上뿐만 아니라 國內市場에서의 價格共同引上도 가능하다. 즉 成功的인 輸出카르텔일수록 國內市場에 대한 波及效果 또한 크다[17].

때로는 相對國이 채택한 輸入規制措置에 대항하여 國內企業의 輸出機會를 증대시키는 수단으로 카르텔을 政府가 承認하기도 하며, 이와는 반대로 相對國政府의 요청에 의하여 輸出을 제한할 목적으로 카르텔을 승인하기도 한다. 前者의 경우 海外市場에 존재하는 輸入카르텔, 相對國政府의 制限的 購買政策, 기타 需要獨占的 行爲를 극복하는 수단으로 政府가 輸出카르텔을 장려하는데 이러한 예는 資源輸出의 경우에 많이 발견된다. 後者의 경우 輸出카르텔은 輸出自律規制와 매우 유사하다.

各國의 競爭法體系內에서 輸出카르텔의 法的 地位는 대부분 國家들의 경우 國內市場에 競爭制限的 波及效果를 미치지 않는 共同輸出行爲는 競爭法의 適用對象에서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제외시키고 있다. 이 경우 輸出促進이라는 順機能만을 하는 共同行爲와 海外市場에 대하여 競爭制限的 機能을 갖는 共同行爲를 구별하지 않는데 이는 相對國 市場의 競爭狀態에 대해서는 중립적 내지는 무관심하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日本의 경우 輸出카르텔은 원칙적으로 獨占禁止法의 適用對象이나 輸出入法 등과 같은 特別法에 의하여 適用對象에서 제외될 수 있다. 日本의 公正取引委員會는 國內 消費者利益을 침해하지 않는 등의 特定要件을 충족시키는 輸出카르텔에게는 이러한 免責을 승인하고 있다.

美國의 경우에는 共同輸出行爲를 관장하는

17) Larson(1970), p. 497을 참조할 것. 이러한 輸出카르텔의 波及效果에 대한 논의는 韓國의 主要輸出產業에서의 企業行爲에 대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輸出促進을 위하여 輸出共同行爲에 가담한 大企業들이 이를 토대로 國內市場에서 競爭制限的 行爲를 할 가능성이 클 것이다.

세가지의 關聯法條項이 있는데 첫째, 獨占禁止法 適用除外에 관한 特別法과는 무관하게 共同輸出行爲가 구성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適法性 與否는 전통적인 獨占禁止法에 의하여 결정된다. 1982년의 Sherman Act 개정 이후 共同輸出行爲는 "直接的, 實質的이고 合理的으로 豫測可能한 競爭制限的 效果를 國內去來 및 輸出入去來에 미치지 않는 한" 同法의 適用을 받지 않는다[18]. 따라서 輸出價格維持에 관한 共同謀議도 國內市場에 대한 波及效果가 없는 한 免責對象이 된다. 둘째, Webb-Pomerene Act는 輸出關聯目的으로만 형성된 輸出協定을 Sherman Act로부터 制限的이고 臨時的인 免責를 받을 수 있도록 明示的인 條件을 제공한다[19]. 셋째, 1982년의 輸出商社法(Export Trading Company Act) 또한 輸出카르텔에 대하여 유사한 내용의 免責條項을 갖고 있다. 日本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特別法制定에 의한 輸出카르텔의 獨占禁止法 適用除外라는 日本의 경험과 Webb-Pomerene Act를 통한 美國의 경험은 매우 유사하다. 自由貿易에 反하는 保護主義的 貿易政策이 特別法 등에 의하여 형성되듯이 競爭原理에 反하는 '保護主義的 競爭政策'이 유사한 형태로 형성됨을 의미한다.

18) 이러한 法改正의 배경에는 美國獨占禁止法이 輸出에 적용되는지의 여부를 둘러싼 不確實性 때문에 適法한 輸出카르텔까지도 방해받고 있다는 美國輸出業者들의 불만이 있었다.

19) 그 조건은 첫째, 輸出카르텔이나 이와 유사한 共同輸出行爲가 國內에서의 去來를 제한하거나 國內競爭者의 輸出을 제한해서는 안되며, 둘째, 輸出商品의 美國內 價格을 의도적으로 引上·引下하는 共同謀議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나. 輸入카르텔

輸入카르텔이란 特定國家의 企業들이 財貨 및 用役의 輸入을 調整할 目的으로 맺는 協定이다. 일반적으로 輸入카르텔이 아니더라도 購買者간의 共同行爲는 去來, 貯藏, 經營, 保險 등의 費用을 共同負擔할 수 있게 하고 大量購買時 割引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金錢的 規模의 經濟'(pecuniary economies of scale)를 실현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肯定的인 效果를 가질 수 있다. 競爭政策當局의 관심대상이 되는 輸入카르텔은 市場支配力의 獲得 혹은 濫用을 目的으로 輸入商品의 價格과 物量을 調整함으로써 輸入關聯競爭을 제한하는 것들이다. 이 경우 輸入카르텔의 市場支配力이란 國內市場에서의 再販賣時 행사되는 市場支配力과 海外市場에서의 購買時 행사되는 需要獨占的 市場支配力으로 분류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이 두가지 類型을 분리하여 논의한다.

첫째, 國內市場에서의 販賣와 관련해서는 輸入카르텔이 輸入을 規制함에 따라 非構成員들이 供給을 받을 수 없게 되거나 構成員들과 비교할 때 불리한 조건으로 購買하게 될 경우 輸入카르텔은 國內市場에서의 供給을 제한하고 價格을 높게 책정하는 등의 競爭制限的 效果를 갖는다. 輸入카르텔이 海外市場에서 需要獨占力을 가지지 않는 한 國內市場에서의 販賣와 관련하여 이들이 행사하는 市場支配力이란 결국 國內生產者들이 共同行爲를 통하여 競爭制限的 行爲에 가담하는 것과 同一하다고 볼 수 있다. 競爭制限的 輸入카르텔은 非構成員이 購買市場에서 배제되고 海外供給者들이 輸入카르텔 이외의 經

路를 통해서는 國內에 供給할 수 없을 경우에 持續的으로 가능할 것이다. 이와 같은 狀況條件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輸入카르텔은 海外供給者와 排他的 購買協定을 체결하거나 國內市場의 流通經路를 장악할 수 있다. 때로는 輸入國政府의 規制로 인하여 輸入카르텔에 대한 競爭이 人爲的으로 배제될 수도 있다. 競爭制限的 輸入카르텔이 성공적일 경우 이는 國內消費者 및 海外供給者에게 모두 否定的 影響을 미칠 것이며 貿易과 競爭이 모두 제한을 받게 된다.

둘째, 海外市場에서의 購買와 관련하여 輸入카르텔이 需要獨占力을 갖게 되면 競爭狀態보다 낮게 輸入價格을 조정할 수 있다. 輸出國으로서는 카르텔構成員들이 각자 獨立的으로 輸入하는 경우와 비교할 때 價格, 物量 측면에서 모두 불리하게 된다. 輸入國의 경우 輸入카르텔의 需要獨占力이 주는 혜택은 대부분 카르텔構成員들에게 귀속되며 輸入國의 消費者에게 귀속된다는 보장이 없다. 輸入카르텔이 需要獨占力을 갖기 위해서는 海外市場에서 상당한 市場占有率을 점하여야 할 것이다. 特定國家가 世界市場에서 特定商品의 獨占的 購買者인 경우는 드물지만, 特定國家의 輸出에 대하여 몇몇 國家들이 중요한 顧客이 되어 이들로 구성된 國際輸入카르텔이 輸出國을 대상으로 短期的인 需要獨占力을 행사할 가능성은 常存한다. 특히 輸入카르텔이 海外로부터의 原資材輸入과 관련될 경우 原資材의 購買, 國內販賣 이외에도 이를 사용하여 國內에서 生産되는 最終財의 價格까지도 영향을 받는 형태로 발전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그 波及效果는 실로 크다[20].

輸出카르텔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輸入카르텔은 海外供給者의 市場支配力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雙方獨占的 狀況에서는 市場占有率 등에 근거한 相對的 協商能力에 따라 그 결과가 좌우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輸出國만이 獨占化된 경우보다는 輸出國의 市場支配力이 輸入카르텔에 의하여 부분적으로 相殺되는 것이 輸入國에게는 유리할 것이다.

이상의 논의는 輸入카르텔의 競爭法的 地位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 國內市場에서 價格을 인상하거나 供給을 제한하는 效果를 갖는 企業間 共同輸入行爲(輸入카르텔 포함)는 供給을 제한하고 價格을 조작하는 다른 共同行爲와 마찬가지로 競爭法의 適用을 받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各國의 競爭法은 이러한 效果를 가진 輸入카르텔을 여타의 카르텔과 별도로 취급하지 않는다. 美國의 경우 카르텔에 관한 基本的인 競爭法인 Sherman Act가 美國內 去來를 제한하는 어떠한 國內·國際協定에도 適用되므로 輸入카르텔이 國內市場에 대하여 갖는 競爭制限的 效果가 規制받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Wilson Tariff Act는 輸入카르텔에 관한 한 Sherman Act를 보강해 준다. 그러나 유럽國家들은 輸出國의 市場支配力을 상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輸入카르텔을 競爭政策의 適用對象에서 除外하거나 政府가 이를 承認하는 政策을 취하고 있다.

다. 貿易商社

貿易商社란 財貨 및 用役의 輸出入을 위하

20) 需要獨占力이 반드시 輸入카르텔을 통해서만 행사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물론 아니며 獨占的 國內企業, 貿易商社, 公企業 혹은 國營輸入機關 등의 輸入行爲에도 적용될 수 있다.

여 設立된 企業을 말하며 그 주된 機能은 生産보다는 販賣·購買行爲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貿易商社는 주로 民間企業이지만 開途國의 경우 政府가 깊이 개입하는 경우도 있다. 貿易商社는 特定部門의 中小企業을 대신하여 이들의 輸出入을 촉진하기 위한 경우도 있으나 日本의 綜合貿易商社와 같이 몇몇 大企業들이 輸出入에 국한되지 않고 광범위한 機能을 가진 경우도 있다[21]. 貿易商社는 輸出入 兩面에 모두 관련될 수 있기 때문에 그 效果는 貿易商社의 특별한 機能과 運營方式에 따라 좌우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貿易商社가 갖는 肯定的 效果는 먼저 輸出의 경우 貿易商社는 輸出企業, 특히 中小企業이 海外市場에 進入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따라서 海外市場에서 競爭을 촉진할 수 있고 輸入의 경우에도 國內市場에 대하여 유사한 競爭促進的 效果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肯定的인 效果를 고려해서 貿易商社의 設立을 장려하는 國家도 있는데 이는 輸出의 측면에서 더욱 그러하다.

貿易商社는 競爭과 貿易에 대하여 否定的인 效果를 가질 수도 있는데 이는 단순히 貿易商社의 存在 그 자체에 基因한다기보다는 그 規模가 크며 市場에서 獨占的 地位를 갖고 市場支配力을 濫用할 경우에 가능하다. 競爭政策次元의 관심사항은 貿易商社가 輸入流通經路를 장악하여 外國企業들을 差別하는 등 競爭과 貿易을 제한하는 경우 및 日本, 韓國 등의 경우와 같이 貿易商社가 製造業體의 所有 및 經營에 參與함으로써 過度한 市場集中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이다[22].

일반적으로 貿易商社는 그 去來行爲가 競爭制限的이거나 特定市場에서 獨占的 市場支配力을 濫用할 경우 競爭法의 適用對象이 될 수 있겠으나 國別 競爭法이 貿易商社에 대하여 具體的인 適用條項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適用事例 또한 극히 드물다. 貿易商社의 競爭法的 地位는 輸出入의 어느 측면을 보느냐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輸出의 측면에서는 輸出카르텔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國內市場에 대하여 競爭制限的 效果를 갖지 않는 한[23] 輸出國으로서 自國의 競爭法을 적용할 이유는 없다. 輸出機會를 확대시키는 貿易商社의 役割을 肯定的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장려하는 國家도 있는데 美國의 경우 1982년의 Export Trading Company Act는 輸出商社에 대한 競爭法 適用除外를 확대시키고 있다. 同法의 主要目的으로는 輸出金融에 대한 制限을 緩和하고 美國의 中小企業들로 하여금 輸出商社를 통하여 輸出費用을 낮추는 것 등이 있다. 비록 自國競爭法의 適用을 받지는 않더라도 貿易商社의 輸出行爲가 다른 貿易商社 혹은 輸出業者와의 連帶下에 輸出市場에서 競爭制限的 效果를 가질 경우 輸入國競爭法의 制裁를 받을 수 있

21) 日本의 경우 綜合貿易商社(sogoshosha)들은 貿易의 모든 측면을 관장할 뿐 아니라 流通經路를 장악하고 國家間 合作投資를 주선하며, 原資材供給, 硏究開發, 輸送, 金融서비스 등의 機能도 하고 있다. 또한 製造業體에 대한 所有, 經營參與 등을 통하여 生産과 輸出入이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매우 複合的인 樣相을 띠고 있다.

22) 日本의 경우 80년대초 6個 綜合貿易商社가 GNP의 30%(總賣出額), 總輸出의 40%, 總輸入의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1982년의 경우 13個 綜合貿易商社가 對美輸出의 26%를 차지했을 만큼 綜合貿易商社가 貿易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美國의 경우 80년대초 輸出商社가 總輸出의 20% 정도를 차지했는데 이 중 日本貿易商社의 美國支社들이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23) 特定部門에 있어서 貿易商社가 總輸出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이를 이용하여 貿易商社가 特定輸出市場에 대한 國內企業의 新規進入을 방해하는 등의 경우를 말한다.

는 가능성은 常存한다.

貿易商社의 輸入行爲가 갖는 競爭次元의 效果는 輸入國 및 輸出國의 競爭政策當局에게 모두 우려의 대상이 된다. 貿易商社가 輸入카르텔과 유사한 機能을 갖는 한, 輸出國으로서는 貿易商社가 自國輸出에 대하여 需要獨占的 市場支配力을 행사하는지가 관심의 초점인 한편 輸入國으로서는 貿易商社가 國內市場에서의 販賣時 市場支配力을 濫用하는지가 관심의 초점이 될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효과를 갖느냐 하는 것은 貿易商社의 規模, 각 市場에서의 市場占有率, 代替메커니즘의 存在與否 등에 달려 있지만 특히 貿易商社가 輸入品의 流通過程에서 갖는 役割은 輸出國과 輸入國 모두에게 共通의 關心事項이 될 것이다[24].

라. 輸出自律規制[25]

최근에 들어 輸出自律規制(voluntary export restraints)는 輸出을 제한하기 위하여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수단이 되었다. 廣義의 輸出自律規制는 關聯當事國 政府의 介入程度에 따라 세가지 類型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첫째, 政府間의 公式的인 輸出秩序化協定(orderly marketing agreements), 둘째, 政府間 合意에 따르는 水準으로 輸出을 제한하기 위한 輸出業體間의 輸出自律規制, 셋째, 政府의 直接的인 介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의 輸出自律規制 등이다[26]. 輸出自律規制는 결국 輸出을 줄이고 輸出價格을 인상하는 結果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競爭政策的 側面에서 중요한 고려대상이 된다. 또한 企業間 共同行爲를 조장하고 양쪽 市場에서 모두 競爭制限的 效果를 갖는 등 輸出自律規制가 갖는 反競爭的 效果는 일반적인 數量制限과 유사하다. 또한 GATT와 같은 國際貿易規範이나 各國의 競爭法上 輸出自律規制의 地位가 不明確하기 때문에 競爭政策當局으로서는 해결하기 힘든 문제점이 많이 발견된다[27].

輸出自律規制는 그 效果의 側面에서는 여타 數量制限措置들과 유사하지만 그 形成動機나 實行手段의 特性에서는 상이한데 이러한 差異點들이 競爭法的 地位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28]. 輸出自律規制는 輸入國이 輸出國에 대하여 特定商品의 輸出을 제한하도록 압력을 가하거나 요청함으로써 발생한다. 이 경우 交易當事國間의 合意가 先行되지만 輸出制限方法에 대한 最終決定은 輸出國이 결정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數量과 價格 어느 것에도 적용 가능하다. 輸出自律規制는 대부분 限時的이며 特定交易相對 및 特定商品에 대하여 差別的으로 제한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29].

24) 貿易商社는 國內市場의 流通段階를 잘 파악하고 있으므로 國內市場에 진출하는 海外企業의 競爭力을 강화시켜 줄 수도 있으나 流通網에 대한 支配力을 통하여 貿易障壁을 형성할 수도 있다.

25) 輸出自律規制를 순수히 貿易政策手段으로 파악하여 Ⅳ章에서 다룰 수도 있으나 이는 狹義의 輸出自律規制이며 보다 넓은 의미에서는 카르텔, 貿易商社, 기타의 制限的 去來行爲와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에 本章에서 취급하기로 한다.

26) 마지막 유형의 輸出自律規制는 輸入國의 保護主義的 壓力을 미리 예상하고 價格을 올리기 위한 手段이 되기도 하는데 이 경우 輸出카르텔과 유사하다.

27) 國際貿易에서 輸出自律規制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이유를 그 法的 地位의 不明確性에 두는 主張도 있다.

28) 예컨대 輸出카르텔과 輸出自律規制는 유사한 효과를 가질 수 있으나 前者의 경우 일반적으로 輸入國의 요청에 의해서가 아니라 海外市場에서의 輸出收益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형성된다. 그러나 政府承認下에 輸出카르텔이 輸出自律規制의 實行手段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29) 產業別로 보면 輸出自律規制는 鐵鋼, 自動車, 食料品, 衣類, 纖維, 機械, 工具, 신발, 家電製品 등에 흔하며 輸出國別로는 日本, ANICs, 아시아開途國들의 輸出企業들이 많이 관련되어 있다.

國別 競爭法에 의하여 輸出自律規制가 共同行爲를 금지하는 條項에 의하여 규제될 수도 있으나 실제 適用可能性은 特定 輸出自律規制가 共同行爲의 法的 定義에 부합되는지의 與否, 競爭法 適用의 領土制限, 政府介入의 程度 등에 의하여 制約을 받을 수밖에 없다. 輸出自律規制에 대한 接近方法은 國家別로 상이한데 輸出自律規制를 多者間 自由貿易體制의 基本原則에 위배되는 貿易障碍要因으로 보는 國家들도 새로운 產業의 發展이나 旣存產業의 構造調整 등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關稅나 쿼타와 같은 傳統的 手段보다는 바람직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예컨대 輸入國으로부터 보다 강한 保護主義的 措置를 회피하는 수단으로서 特定部門에 대하여 限時的으로 사용되는 輸出自律規制는 自由貿易體制에 대한 보다 심각한 왜곡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合理化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輸出自律規制는 심각한 競爭制限的 效果를 가질 수 있으며 이의 規制問題가 향후 중요한 문제로 부각될 것이다. 이는 특히 民間次元에서 制限的 去來行爲의 動機로 형성된 輸出自律規制일 경우에 더욱 그러하다. 輸出自律規制는 輸入國의 國內企業에 대한 競爭壓力을 감소시키고 數量制限, 價格上昇 등의 카르텔效果를 가질 수 있다. 輸入國의 國內企業들이 外國企業들에게 輸出自律規制를 통한 輸出制限의 壓力을 가할 경우에도 競爭次元의 問題가 발생한다. 輸入國의 市場이 獨寡占構造를 가지고 있거나 輸出自律規制가 總輸入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경우 이러한 효과는 더욱 클 것이다. 輸出國의 경우에 있어서도 輸出自律規制를 통하여 個別輸出企業의 固定輸出쿼타가 유지되는 한 技術革新動機를 감소시키는 등 競爭弱化要因이 될 수 있으며 輸出市場에서의 市場占有를 증대시키려는 動機를 제공하지 못하고 輸出市場에 대한 新規進入의 可能性이 배제되기도 한다.

政府介入의 程度가 클수록 輸出自律規制가 競爭法의 適用對象이 될 가능성은 적다. 輸出秩序化協定과 같은 國家間 公式協定은 相互間의 貿易利害關係에 근거한 合意이기 때문에 競爭法 適用의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美國의 경우 政府가 輸出自律規制에 개입할 法的 根據가 불충분하므로 民間企業들이 外國의 輸出自律規制에 대하여 美國의 競爭法에 근거하여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중요한 사항은 輸出國政府가 對美輸出企業들의 輸出自律規制를 어떻게 취급하느냐인데 때로는 輸出國 政府가 法的 强制性을 띤 對美輸出自律規制를 自國企業들에게 강요하는 方法을 취함으로써, 美國서 문제가 제기될 경우 "主權强制의 原則" (sovereign compulsion doctrine)으로 대응하기도 한다[30].

마. 垂直的 制限

垂直的 制限이란 生產者에서 最終使用者에 이르는 財貨 및 用役의 流通過程에 가해지는 制限的 條件들을 일컫는데 이는 價格 및 非

30) 日本의 對美自動車輸出이 그 대표적인 경우이다. 自動車의 對美輸出自律規制가 美國 競爭法에 저촉될 수 있다고 판단한 日本政府는 단순한 行政指導보다 더 강력한 수단을 사용함으로써 美國側의 獨占禁止提訴에 主權强制原則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價格 制限으로 분류될 수 있다. 垂直的 制限行爲의 效果가 國際去來行爲에 고유한 것은 결코 아니며 國別 競爭法의 전통적인 관심사항이었으나 國際去來行爲의 競爭政策的 意味를 분석함에 있어서도 중요한 示唆點을 제공한다. 價格關聯 垂直的 制限行爲의 類型으로는 再販賣價格維持, 差別的 價格政策, 掠奪的 價格政策 등이 있다. 競爭政策의 초점이 자유로운 市場機能의 保障과 競爭에 의한 價格決定에 있는만큼 流通過程을 따라 價格이 결정되는 방식은 競爭政策當局의 관심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데 理論的으로는 不公正價格行爲의 각 類型에 대한 國別 競爭法이 國際去來에 있어서의 垂直的 制限行爲를 규제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 再販賣價格維持에 대한 國別 競爭法은 外國 製造業者가 國內에서의 小賣價格을 책정할 수 있는 정도를 결정할 것이고, 差別的 價格政策을 금지하는 國別 競爭法條項은 外國의 供給者가 競爭狀態의 去來相對 혹은 消費者에게 差別的 價格을 책정하는 행위를 규제할 것이다. 掠奪的 價格政策을 금지하는 國別 競爭法條項 또한 外國供給者의 不公正價格行爲를 규제함에 있어서 적절한 의미를 갖는다[31].

非價格 垂直的 制限行爲의 類型으로는 排他的 去來協定이나 販賣의 領土制限(territorial restrictions) 등이 있다. 各國이 이에 대해 갖는 입장은 國家 혹은 地域에 따라 상이한데 歐洲經濟共同體의 경우 國別市場의 統合 및 單一市場形成이라는 目標와 관련하여 相互市場을 침투하기 위한 행위를 장려하는 반면 會員國間 貿易障壁의 强化를 저지하려 했다. 이에 따라 排他的 去來協定은 國別市場의 相互浸透와 地域內 流通을 용이하게 하는 수단으로서 肯定的 評價를 받는 반면, 領土制限은 貿易障壁으로 간주되어 로마條約 85條의 競爭制限으로 취급된다. 하지만 市場統合이 基本目標가 될 수 없는 國家에서는 이와 상이한 관점을 갖게 되는데 美國의 경우 이러한 행위들은 그 자체가 競爭法의 違反이거나(per se violation) 혹은 그 競爭促進的 效果와 競爭制限的 效果가 合理的으로 평가되어(rule of reason) 競爭法 違反與否가 결정되어 왔다[32].

바. 多國籍企業의 貿易關聯行爲

多國籍企業은 현재 世界貿易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며 輸出自律規制와 함께 그 重要性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多國籍企業은 주로 內部擴張(internal expansion), 新規海外投資(green-field foreign investment), 國際合併(international merger) 등에 의하여 성립되는데 各國에 있어서 投資의 主要手段이 되며 經濟의 國際化를 가속시키는 데 기여한다. OECD(1977)에 의하면 多國籍企業은 特定國家의 市場 혹은 世界市場에서의 競爭에 대하여 肯定的, 否定的 效果를 모두 가질 수 있는데, 多國籍企業이 '單一國籍企業'

31) 美國의 경우 Robinson-Patman Act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듯이 競爭者 혹은 競爭 自體를 배제하기 위해 고안된 差別的, 掠奪的 行爲를 금지하고 있다. 國別 競爭法에 따른 價格關聯 垂直的 制限行爲의 規制는 GATT의 덤핑防止條項 혹은 國別 貿易政策의 不公正貿易關聯條項과 매우 유사한데 주된 관심사항은 價格이 費用以下로 책정되었는지의 與否를 어떻게 測定할 것인가의 問題이다.

32) 垂直的 制限行爲의 競爭制限的 效果란 商品內競爭(intra-brand competition)을 저해하는 효과이며, 競爭促進的 效果란 製造業者가 垂直的 制限을 통하여 流通過程의 效率性을 제고함으로써 商品間 競爭(inter-brand competition)을 촉진시키는 효과를 일컫는다. 즉 後者의 경우에는 垂直的 制限이 水平的 競爭(horizontal competition)을 촉진함을 의미한다.

에 비하여 특별히 競爭制限的 去來行爲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아니라고 결론짓고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多國籍企業이 갖는 經濟的 比重과 광범위한 영향은 동일한 去來行爲에 있어서도 單一國籍企業의 경우보다 그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 多國籍企業의 貿易關聯行爲 중 競爭政策的 關心對象이 되는 類型은 그룹內 市場·生産分割(intra-group allocation of markets and production), 移轉價格政策(transfer pricing), 相互補助(cross-subsidization) 등의 그룹內 協定인데 이러한 多國籍企業의 行爲는 投資國 혹은 投資誘致國의 競爭政策과 상충될 수 있다[33].

그룹內 市場·生産分割協定이란 多國籍企業이 各國의 子會社들에게 市場과 生産을 制限 혹은 割當하는 內部的 協定을 일컫는다. 일반적으로 그룹內에서 市場과 生産을 分割하는 直接的인 方法으로는 母會社가 子會社의 輸出이나 生産을 규제하거나 技術移轉條件에 제한을 가할 수 있으며 간접적인 方法으로는 流通條件, 原資材, 中間財의 購買義務 등에 제한을 가할 수 있다. 동일한 그룹에 속한 企業들간에 市場과 生産을 적절히 分割하는 行爲는 效率性의 源泉이 될 수 있고 多國籍企業 全體의 成果를 極大化하는 수단으로서도 필요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各國 經濟가 國際化되고 世界貿易에서 多國籍企業의 比重이 증가함에 따라 市場과 生産을 分割하는 行爲는 投資國과 誘致國에게 모두 競爭次元의 우려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는 多國籍企業이 特定市場에 있어서 상당한 市場占有를 갖고 貿易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경우 더욱 그러하다. 또한 多國籍企業이 海外 子會社에 대하여 가하는 輸出制限措置는 誘致國의 輸出促進政策과 背馳된다. 國家에 따라서는 그룹內 制限行爲를 규제하기 위하여 多國籍企業의 國內 子會社에 대하여 輸出義務, 國産原資材·中間財의 使用義務 등을 부과하기도 한다.

移轉價格政策이란 同一그룹所屬의 企業間에 流通되는 財貨 및 用役에 대하여 價格을 책정함을 일컫는다. 多國籍企業의 경우 去來의 상당부분이 所屬企業間에 일어나는데 移轉價格은 市場機能에 의해 결정되지 않고 그룹전체의 利益極大化 등의 이유로 결정됨으로써 독립된 企業間에 결정되는 '準據價格'(arm's length prices)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相互補助란 企業이 特定業種에서의 販賣로써 획득한 財源을 다른 業種이나 다른 地域에서의 활동을 위해 移轉시킴을 일컫는데 相互補助를 위한 수단으로서는 移轉價格造作 이외에도 資本의 無償供與, 營業損失의 補塡 등이 있을 수 있다. 移轉價格政策 등을 통한 相互補助는 통상적인 행위이나 輸入價格이나 輸出價格의 조작을 위해서 濫用되는 한 이는 競爭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多國籍企業의 경우 그 活動範圍가 여러 國家에 걸쳐 있기 때문에 相互補助를 통한 價格造作이 더욱 용이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多國籍企業이 特定市場의 競爭者 등을 배척하기 위하여 낮은 價格을 책정하고 이를 보상받기 위하여 다른 市場에서는 獨占的 地位 등을 이용하여 높은 價格을 책정할 경우 이는 명백히 地位濫用的 價格政策이 된

33) 그룹(group)은 多國籍企業의 母會社와 子會社들로 구성된 企業集團이라는 의미인데 이는 일개 國家次元의 그룹이나 個別企業과는 상이한 槪念이다.

다. 이 경우 價格을 인하시킨 市場에서는 既存의 效率的인 供給者를 배척하고 新規進入을 저해하는 등 掠奪的 價格政策과 동일한 효과를 갖는다[34].

대부분 國家들의 경우 多國籍企業의 그룹內 協定이 여타 企業들에게 競爭制限的 效果를 미칠 정도로 獨占的 地位를 濫用하지 않는 한 그 자체가 競爭法에 저촉된다고 보지는 않는다. 이는 '企業單一體'(enterprise unity)의 理論에 따라 같은 그룹에 속하고 통합된 經營權의 統制下에 있는 企業들은 競爭法 適用의 觀點에서는 單一經濟主體로서 고려될 수 있으며 따라서 그룹內 企業間의 計劃된 行爲는 經營權 行使의 結果이기 때문에 競爭法이 금지하고 있는 共同行爲의 範疇에 속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資本 및 技術關聯 去來行爲

가. 多國籍企業의 企業合併

多國籍企業의 企業合併은 國際合併의 問題와 직결된다. 多國籍企業의 企業合併이 競爭政策的 關心對象이 되는 경우는 대부분 投資國보다는 誘致國의 觀點에서 合併에 따르는 競爭制限的 效果가 問題視되기 때문이다[35]. 誘致國으로서는 多國籍企業의 母企業이 직접적으로, 혹은 國內 子會社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國內企業을 合併할 경우 이러한 合併이 自國市場에 대하여 갖는 經濟力集中, 市場構造의 獨寡占化 등의 反競爭的 效果가 國內企業들간의 合併과 유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36]. 대부분의 國家들은 競爭法 혹은 外資導入에 관한 特別法 등을 통하여 多國籍企業에 의한 國內企業의 合併을 규제하고 있는데 外國人投資比率의 上限線을 책정한다든지 일정한 國內市場占有率을 資格要件으로 하는 등의 방법이 동원되고 있다. 原則的으로는 投資國의 觀點에서도 國內企業이 外國企業을 合併할 경우 國內市場에 대한 競爭制限의 可能性을 想定할 수 있다. 예컨대 投資國의 市場에서 獨占的 市場支配力을 가진 企業이 그 市場에서 이미 상당한 市場占有率을 갖고 있거나 혹은 강력한 潛在的 進入者인 外國企業을 合併할 경우는 분명히 自國市場에 대하여 競爭制限的 效果를 가질 것이다. 또한 外國企業들간의 合併이 國內市場에 미치는 競爭制限的 效果도 가능한 현상이지만 이러한 유형의 合併은 흔하지 않으며 誘致國의 觀點에서 그 심각성이 보다 작을 것이다.

合併 및 經濟力集中에 대한 認識에는 國家間에 큰 차이점이 발견되며 合併에 대한 各國의 政策 또한 여타의 制限的 去來行爲보다 産業, 雇傭, 貿易과 관련된 利害關係가 크기 때문에 合併에 관한 國別 競爭政策條項을 조화시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最小限의 獨立企業들로 구성된 競爭的 市場構造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合併에

34) 그러나 多國籍企業의 價格政策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各國의 費用差異, 稅金, 消費者選好度, 流通構造, 換率 등의 變數를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地位濫用的 價格政策과 外生的 要因에 따른 價格差別을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다.

35) 最近 日本의 對美直接投資 중 企業合併에 대하여 美國內에서는 그 競爭制限效果를 우려하고 있다.

36) 理論的으로는 外國企業이 國內企業을 合併하는 경우와 國內企業들간의 合併은 合併後 國內市場에서의 企業數가 다르기 때문에 그 競爭制限的 效果 또한 상이할 것이다. 그러나 多國籍企業의 合併은 실제로 合併以前에 多國籍企業의 子會社가 國內市場에 진출해 있었던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와 같은 구분은 큰 의미가 없다. 어쨌든 多國籍企業의 合併이 世界市場의 集中度를 높이는 것은 분명하다. 多國籍企業의 企業合併이 갖는 競爭制限的 效果에 대해서는 OECD(1977), pp. 26~29를 참조할 것.

관한 國別 競爭政策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물론 獨立企業들이 輸出入카르텔 등과 같은 共同行爲를 통하여 競爭制限을 야기할 수도 있으나 競爭制限的 共同行爲를 방지하려는 政府의 노력은 合併을 통하여 獨寡占化가 상당히 진척된 市場에서보다는 獨立企業들로 구성된 市場에서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나. 工業所有權 및 技術移轉契約

技術移轉은 世界貿易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各國의 技術發展과 產業構造調整을 원활히 해주는 역할을 한다. 더구나 技術移轉은 貿易 및 投資에 대한 進入障壁이 있을 경우 海外市場에 진출하는 중요한 수단으로서의 기능도 갖고 있다. 技術移轉契約은 特許, 登錄商標, 노하우 등의 工業所有權이 존재함으로써 성립되는데 이러한 工業所有權이 技術供與者의 利益을 보호하고 移轉된 技術에 대한 收益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技術移轉契約이 競爭政策當局의 관심대상이 되는 이유는 工業所有權이 技術의 供與者나 受容者에게 獨占的 市場支配力을 부여하는 한 이의 濫用이 競爭制限的이기 때문이다. 市場을 할당하고 輸出을 규제하며 競爭을 배제하는 등의 조건을 技術移轉契約이나 合作投資契約 등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모든 행위가 競爭政策的 關心對象이 된다.

OECD(1972)에 의하면 特許法과 競爭法은 각각의 근본적 목표에 관한 한 특별한 相互矛盾關係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特許에 의한 排他的 權利가 特許의 應用에만 행사되고 부당하게 競爭을 제한하지 않는 한 이는 硏究開發動機를 부여하고 公益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競爭政策과 調和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特許의 競爭制限的 效果는 特許關聯 技術移轉契約에 포함되는 조건들이 競爭에 否定的 影響을 미칠 경우에 발견되는데 垂直的 領土制限의 경우 技術供與者는 受容者가 技術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商品의 販賣領域을 제한함으로써 市場分割의 效果를 갖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대부분 國家들의 경우 그 자체가 競爭法에 위배된다고 보지 않고 "條理의 原則"(rule of reason)에 따라 평가된다. 즉, 特許權 所有者의 權利, 公益을 위하여 技術革新을 보장할 필요성과 契約條件이 競爭을 제한하는 정도가 서로 비교된다.

登錄商標는 需要者들에게 商品의 質과 生產者에 대한 신뢰를 부여함으로써 旣存企業이 새로운 市場을 개척하는 데 중요한 수단이 되며 때로는 商品과는 별도로 그 자체가 가치를 갖고 있는 것으로 인식된다. 競爭과 관련된 登錄商標의 주된 문제는 類似登錄商標 혹은 僞造登錄商標의 사용과 같은 不公正行爲이다. 최근에는 企業間 合作投資를 통하여 技術을 移轉하고 공동으로 硏究開發, 製造, 販賣, 流通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合作投資는 특히 尖端產業에서 많이 발견되며 閉鎖的인 海外市場에 進入하는 수단으로 많이 사용되기도 한다. 이 경우에도 技術移轉契約條件이 갖는 競爭制限的 效果는 유사하다고 본다.

Ⅳ. 國別次元의 分析(Ⅱ): 貿易政策의 競爭政策的 意味

일반적으로 自由主義的 貿易政策은 競爭政策의 經濟的 目標를 촉진하지만 保護主義的 貿易政策은 그 반대의 효과를 갖고 있다. 國際化가 진전됨에 따라 各國의 貿易政策은 競爭政策的 觀點에서 많은 문제를 제기하게 되는데 이는 相對國의 競爭政策뿐만 아니라 自國의 競爭政策에도 해당된다. 競爭政策的 觀點에서 貿易政策을 분석할 경우 주요관심사항은 海外企業과 競爭하는 國內企業에게 인위적인 優位를 부여하는 貿易政策의 諸類型이다. 海外市場에서의 競爭에 관한 한 이는 輸出促進政策이 될 것이며 國內市場에서의 競爭에 관한 한 關稅 및 非關稅 輸入障壁이 될 것이다. 특히 非關稅障壁이 國際貿易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國內產業을 보호하는 주된 수단이 되고 있다. 價格만을 조절하는 關稅와는 달리 非關稅障壁은 貿易에 대한 直接的인 規制이기 때문에 國內의 市場構造 및 競爭에 대한 영향 또한 보다 직접적이어서 競爭政策的 觀點에서 특히 중요하다. 이외에도 相對國의 不公正貿易行爲에 대응하는 報復的 貿易政策 또한 競爭政策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1. 輸出促進政策

輸出을 촉진하는 貿易政策은 일반적으로 輸出과 관련된 費用의 일부를 政府가 부담함으로써 가능하다. 이 경우 輸出補助金이 갖는 經濟的 效果는 補助金의 구체적 형태보다는 규모에 달려 있다. 輸出補助金은 때로는 輸出價格이 費用以下로 책정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는데 이 경우 費用과 輸出價格의 차이만큼을 國家經濟全體가 부담하게 될 것이다. 特定輸出產業에 대한 補助金은 資源의 效率的인 分配를 왜곡시켜 補助金을 받지 않는 產業에 대해서는 否定的인 效果를 갖는다. 이러한 歪曲效果에도 불구하고 政府가 輸出補助金制度를 채택하는 이유는 사용되지 않는 資源의 사용을 촉진하고 產業構造調整過程에서 國內產業이 國際競爭力을 갖도록 한다는 것이다.

國際的 次元에서 特定國家의 輸出補助金政策은 다른 國家들의 消費者에게는 利益을 줄 수 있지만 效率的인 生產者들에게는 상당한 經濟的 費用을 초래한다. 따라서 輸出補助金政策을 채택한 國家는 自國의 政策에 의해 가장 피해를 입는 國家들이 對應措置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인식해야만 할 것이다. 相對國의 輸出補助金政策에 의해 피해를 입을 경우 防禦的 次元에서 自國의 生產者들에게도 補助金을 지급하는 國家가 늘어날 것이며 補助金支給에 있어서의 國家間 競爭은 各國의 補助金이 증가되는 결과만을 가져올 뿐이다. GATT의 相計關稅條項은 이러한 補助金支給競爭을 막기 위한 制度的 裝置였다. 두 國家의 경우 輸出國의 補助金과 동일한 수준의 相計關稅를 輸入國이 부과할 경우 단순히 輸出國에서 輸入國으로 補助金이 이전될 것이며 輸出國으로서는 補助金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오히려 선호할 것이다. 그러나 두 國家가 第3國의 輸出市場에서 競爭할

경우에는 補助金을 지급하는 輸出國은 補助金을 지급하지 않는 輸出國에 비교할 때 競爭的 優位를 확보하게 되며 이 경우 補助金支給競爭은 加速化될 것이다. 輸出促進政策은 自國 및 相對國의 競爭政策的 關心對象이 될 可能性이 매우 높지만 실제로 競爭政策의 次元에서 취급되는 경우는 별로 없으며 GATT 혹은 各國의 貿易政策次元에서 주로 취급되어 왔다.

2. 輸入規制政策

輸入規制政策은 國內市場에서의 競爭에 있어서 海外生產者들에게 불리한 與件을 인위적으로 형성함으로써 國內生產者들을 보호하는 貿易政策이다. 이는 그 經濟的 效果에 따라 輸入價格을 引上시키는 '類似關稅政策'(tariff-like policies)과 輸入量을 直接的으로 制限하는 數量制限(quantitative restrictions)으로 구분된다.

가. 類似關稅政策

類似關稅政策은 關稅와 마찬가지로 輸入商品의 價格을 직접적으로 인상시키지만 關稅와는 달리 價格引上이 輸入國政府의 稅收增大가 되지 않는 政策手段으로서 海外輸出業者에게 부과되는 最低價格制度, 輸入品에 價格引上壓力을 가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덤핑防止措置, 輸入費用을 증가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各種 行政規制 등이 이에 해당된다. 類似關稅政策의 問題點은 輸入品의 價格引上이 輸入國 政府의 稅收增大에 기여하지는 못하면서 國內의 消費者에게 그 부담이 轉嫁된다는 점이다. 또한 國內商品의 價格이 상승하기도 하는데 이는 類似關稅政策으로 인하여 國內商品에 대한 需要가 상대적으로 늘어나거나 혹은 國內生產業者의 獨占力이 그만큼 증가하기 때문이다. 類似關稅政策의 經濟的 費用은 높은 費用으로 生產되는 國內商品이 낮은 費用으로 생산되는 外國商品을 代替하는 非效率性과 이에 따른 競爭歪曲에 있다. 類似關稅政策이 競爭에 대하여 갖는 否定的인 效果는 특히 進入障壁이 높은 獨寡占的 產業의 경우에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輸出國의 입장에서는 비록 相對國의 類似關稅政策이 갖는 價格引上效果가 自國輸出企業에게 손실을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에 대응하는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報復可能性은 類似關稅政策의 實質保護效果 및 그 具體的 形態가 GATT나 國別貿易政策體系內에서 어떠한 취급을 받느냐에 따라 좌우된다.

나. 輸入數量制限

輸入物量에 대한 上限線을 책정함으로써 輸入을 제한하는 방법으로는 쿼타, 輸出自律規制 이외에도 數量制限的 效果를 갖는 輸入國政府의 行政規制, 制限的 政府購買行爲 등이 있다. 數量을 제한함으로써 결국 輸入商品의 價格, 國內 代替財의 價格을 引上하는 효과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또한 價格引上이 輸入國政府의 稅收增大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數量制限은 類似關稅政策과 유사하지만 消費者가 부담하는 價格과 世界市場價格과의 차이가 輸入權의 所有者에게 주어진다는 것이 類似關稅政策과 상이한 점이다. 數量制限은 市場의 競爭構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國內企業들이 상당한

市場支配力을 갖고 있는 경우 數量制限과 類似關稅政策은 國內市場의 競爭에 대하여 상이한 효과를 갖고 있다. 일반적으로 國內產業이 競爭的인 경우 동일한 輸入量을 목표로 하는 類似關稅政策 및 數量制限이 國內價格引上에 대하여 갖는 효과는 동일할 것이다. 하지만 國內產業이 獨寡占的일 경우 數量制限은 類似關稅政策보다 國內價格을 더욱 인상시키는 효과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37]. 數量制限은 輸入商品의 品質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數量制限이 輸入商品의 量에만 적용될 경우 輸入業者의 利潤은 個當 價格에 정비례하게 되며 따라서 보다 高價인 高品質商品을 輸入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경우 數量制限의 競爭歪曲效果는 더욱 심화된다.

輸入쿼타의 경우 相對國의 報復措置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統制된 貿易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여타의 數量制限措置들이 주로 效率性이 높은 外國의 特定輸出業體을 겨냥하는데 비하여 輸入쿼타制度는 그 適用에 있어서 無差別的이며 이에 따른 輸入減少에서 가장 큰 손실을 보는 企業은 가장 非效率的인 輸出企業 내지 輸入商이다. 輸出自律規制의 경우에는 그 雙務的인 特性 때문에 여타의 數量制限措置들과는 상이한 競爭歪曲效果를 갖는다. 輸出自律規制로 인한 輸入減少의 1次的 效果는 價格上昇 및 國內生產增加이지만 輸出自律規制와는 무관한 海外企業들로부터의 輸入이 증가하여 總輸入의 減少效果는 다소 상쇄될 것이다. 이 경우 輸入國은 輸出自律規制를 체결하지 않았던 國家들과도 유사한 協定을 체결하려고 할 것이며 이는 결국 統制된 貿易의 比重을 증대시키는 효과만 가져온다[38].

3. 不公正貿易行爲에 대한 國別 貿易政策

不公正貿易行爲에 대한 制裁는 國別 競爭政策의 次元에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競爭法體系와는 별도로 貿易關聯 不公正行爲를 취급하는 國別次元의 通商法體系가 형성되기도 한다. 序論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競爭政策과 貿易政策의 基本目標는 표면상의 유사점에도 불구하고 構造的 葛藤을 내포하고 있으며 具體的 行爲를 보는 관점이 상이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不公正貿易行爲에 관한 國別 通商法體系가 競爭政策的 觀點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를 간략히 논의하고자 한다. 先進國의 경우 不公正貿易行爲에 대한 通商法次元의 接近方式은 별도의 法體系를 갖지 않고 GATT와 같은 國際貿易規範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와 EEC와 같이 GATT의 내용과 유사한 具體的 法體系를 별도로 유지하는 경우로 구별된다. 美國의 경우는 중요한 例外라고 볼 수 있는데 美國은 GATT가 형성되기 이전부터 이미 포괄적인 通商法을 유지해 왔으며 이 중 일부는 GATT의 母體가 되기도 했다. 美國의 通商法은 GATT가 취급하지 않는 國際去來行爲까지도 그 適用對象으로 하며 美國의 貿易政策當局은 不公正貿

37) 數量制限의 경우 처음에는 輸入價格의 引上分만큼 價格을 상승시키나 일단 輸入이 數量制限의 上限線에 도달하면 海外競爭이 國內企業의 價格引上을 제어하는 기능이 없어지기 때문에 國內企業은 殘餘需要에 대하여 獨占力을 행사할 것이다.

38) 美國이 對日 컬러TV 輸入을 규제하기 위해 1977년 輸出秩序化協定(OMA)을 체결하자 韓國과 臺灣의 對美輸出이 크게 늘어나서 결국 1980년 이들 國家들과도 輸出秩序化協定을 체결한 事例가 있다.

易行爲를 규제하는 광범위한 權限을 부여받고 있다[39].

輸出促進 혹은 輸入規制를 위한 貿易政策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不公正貿易行爲에 대응할 목적으로 제정된 各國의 通商法體系는 市場機能 및 競爭에 대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不公正貿易行爲가 초래하는 不均衡的 競爭狀態를 조정하기 위해 通商法이 마련되었다고 하지만 이러한 通商法을 제정, 집행하는 것 자체가 海外競爭者들에 대한 進入障壁을 높임으로써 國內市場의 競爭을 제한할 수 있으며 國內民間企業들이 海外競爭力을 배척하는 수단으로 通商法을 濫用할 가능성도 있다. 競爭政策과 不公正貿易行爲에 대한 通商法體系는 市場機能을 인위적으로 歪曲하는 要因을 제거한다는 공통된 목표를 갖고 있다고 인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兩者는 각자가 保護하려는 利益의 本質 및 適用方法에 있어서 차이점을 나타낸다. 競爭政策은 競爭을 제한하거나 新規進入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기본적으로 競爭的인 市場構造와 資源의 效率的 配分을 유지하고자 하기 때문에 市場成果의 向上, 費用의 極小化 및 規模의 經濟 實現 등을 강조하며 따라서 주된 관심사항이 競爭者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競爭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다. 競爭政策의 觀點에서 보면 國內, 海外를 불문하고 非效率的인 競爭者는 당연히 도태되어야 하며 效率性, 規模의 經濟, 技術的 專門性, 낮은 要素價格 등의 要因이 작용하여 價格이 낮을수록 좋을 것이다. 반면에 不公正去來行爲에 대응하는 通商法은 國內企業에게 피해를 주는 不公正한 貿易으로부터 國內産業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外國企業이 갖는 競爭的 優位와 이로 인한 國內産業의 피해가 '合法的'인 상태에서 이루어졌는지의 與否가 通商法의 適用與否를 결정하게 된다.

39) 美國通商法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OECD (1984) 및 Schott(1989) 등을 참조할 것.

V. 韓國의 政策現況과 競爭政策的 示唆點

1. 韓國의 國際化關聯 政策現況

競爭政策的 觀點에서 對外去來와 관련된 韓國의 政策現況을 분석함에 있어서 중요한 法律은「獨占規制 및 公正去來에 관한 法律」(이하 公正去來法),「對外貿易法」,「外資導入法」등이다. 貿易에 관한 사항은 對外貿易法이, 資本 및 技術去來에 관한 사항은 外資導入法이 對外去來를 규제하고 있는 가운데 公正去來法은 競爭政策의 基本法이기 때문에 이 三者의 相互關係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本章에서는 각 法體系에서 競爭政策的 意味를 가지면서 國際化와 관련된 사항들을 정리하고 本 論文에서의 論議와 관련시킴으로써 競爭政策的 示唆點을 유도하고자 한다. 〈表 1〉에서는 政策現況을 간략히 정리한다.

公正去來法은 獨占行爲 및 不公正行爲의 類型을 市場支配的 地位의 濫用, 不當한 共同行爲, 企業結合, 不公正去來行爲, 事業者團體의 競爭制限的 行爲, 再販賣價格維持行爲, 不當한 國際契約의 締結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먼저 市場支配的 地位의 濫用에서

〈表 1〉 韓國의 國際化關聯 政策現況： 競爭政策的 次元의 檢討

區 分	關係法令	內 容	備 考
多國籍企業의 貿易關聯行爲	公正去來法	· 市場支配的 地位의 濫用禁止 (3條 各號) · 不公正去來行爲의 禁止(15條 1項) · 再販賣價格維持行爲의 制限(20條 1項) · 不當한 國際契約의 締結制限 (23條 1項)	· 多國籍企業에 관한 明示的 條項이 아님
輸出入카르텔	公正去來法	· 事業者 및 事業者團體의 競爭制限的 共同行爲 禁止(11條 1項, 18條 1項)	· 輸出入카르텔에 관한 明示的 條項이 아님
	對外貿易法	· 輸出入秩序維持를 위한 貿易業者間의 去來條件에 관한 協約締結 認定 (47條 1項) · 輸出入秩序維持와 組合員의 共同利益 增進을 위한 輸出入組合 設立許可 (55條 1項) · 輸出組合과 外國生産者團體間의 去來條件에 관한 協約締結認定(47條 2項) · 輸出入秩序維持를 위한 政府의 調整命令權 認定(48條 1項)	· 去來條件은 價格, 數量, 品質 등을 포함 · 輸出入共同行爲의 明示的 認定 · 필요한 경우 政府介入 可能性을 보장함
多國籍企業의 企業結合	公正去來法	· 競爭制限的 企業結合의 制限(7條 1項) · 持株會社의 設立禁止(7條의2) · 相互出資의 禁止(7條의3) · 出資總額의 制限(7條의4) · 金融·保險會社의 議決權 制限 (7條의5)	· 多國籍企業에 관한 明示的 條項이 아님
	外資導入法	· 外資의 導入基準(3條 1項) · 外國人投資의 認可(7條 1, 2項) · 外國人投資의 申告(8條 各號) · 外國人投資의 禁止(9條 各號)	· 多國籍企業의 企業結合이 갖는 競爭制限的 側面에 관한 언급 없음
技術移轉契約	公正去來法	· 不當한 國際契約의 締結制限： 技術導入契約의 制限(23條 1號)	· 一般論的 原則임
	外資導入法	· 技術導入契約의 申告(23條 1項)	· 競爭制限的 側面에 관한 언급 없음
貿易商社	對外貿易法	· 海外市場開拓, 貿易機能多樣化 및 中小企業貿易活動支援을 위한 綜合貿易商社의 指定(13條 1項)	· 競爭制限的 側面에 관한 언급 없음
輸出自律規制	對外貿易法	· (47條, 48條, 55條 등 輸出入 카르텔에 대한 對外貿易法 關聯條項 參照)	
垂直的 制限	公正去來法	· 再販賣價格維持行爲의 制限(20條 1項) · 差別的, 掠奪的 價格政策의 禁止 (15條 1項) · 排他的 去來協定(15條 1項)	· 輸出入에 관한 明示的 條項이 아님
	對外貿易法	· 不公正한 輸出入行爲의 禁止 (44條 1項) · 不公正한 輸出入行爲防止를 위한 輸出入組合의 事業(56條 2號)	· 垂直的 制限의 具體的 內容을 明示하지 않음

는 國際化와 관련된 특별한 내용이 발견되지 않으며 地位濫用이란 어느 정도의 市場支配力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특별히 논의의 대상이 되지는 못하며 다만 多國籍企業의 市場支配力 濫用行爲가 지적된다. 그러나 〈表 1〉에서 보듯이 多國籍企業의 貿易關聯 競爭制限行爲는 市場支配的 地位의 濫用뿐만 아니라 不公正去來行爲의 禁止條項, 再販賣價格維持行爲의 禁止條項, 不當한 國際契約의 締結制限條項 등과 부분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지만 어떤 條項도 市場·生産의 割當이나 國際的 價格濫用과 같은 多國籍企業의 競爭制限的 貿易關聯行爲와 直接的인 聯關性이 충분하도록 明示的으로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중요한 사실은 對外貿易法이나 多國籍企業의 形成에 관한 基本法이라 할 수 있는 外資導入法에서도 多國籍企業의 競爭制限的 貿易關聯行爲를 규제하는 條項을 전혀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다.

不當한 共同行爲와 事業者團體의 競爭制限的 行爲는 모두 카르텔의 效果와 관련된다는 점에서 같이 취급될 수 있다. 公正去來法은 産業合理化, 不況克服, 産業構造調整, 中小企業의 競爭力向上 및 去來條件의 合理化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競爭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事業者의 共同行爲 및 事業者團體의 行爲를 금지하고 있는데 輸出入에 있어서의 共同行爲에 관해서는 明示的인 條項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나 〈表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對外貿易法에서는 輸出入카르텔에 해당하는 輸出入組合을 明示的으로 認定하고 있으며 組合의 形態를 취하지 않더라도 貿易業者間의 輸出入共同行爲를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다. 對外貿易法의 輸出入秩序維持란 개념은 輸出入에 있어서의 競爭을 촉진한다는 의미보다는 오히려 過多競爭을 방지하고 輸出入自體를 촉진한다는 貿易政策的 意味로 해석된다[40]. 중요한 사실은 對外貿易法 62條에서 同法 47條와 48條에 의거한 協約이나 政府의 調整命令은 公正去來法에 優先한다고 明示하고 있다는 것이다. 對外貿易法上 輸出入共同行爲에 관한 關聯條項들은 반드시 輸出入카르텔에만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Ⅲ章에서 논의한 輸出自律規制와도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다고 해석된다.

企業結合의 問題에 있어서는 多國籍企業의 企業結合이 주된 관심사항이 될 것이다[41]. 일반적으로 外國人投資企業이나 外資導入業體가 企業結合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表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公正去來法과 外資導入法의 중복된 적용을 받고 있으나 公正去來法의 경우 競爭의 維持·促進이 목적인만큼 外資導入의 促進과 外資의 效率的 活用·管理가 목적인 外資導入法과는 企業結合에 대한 規制內容이 판이하게 다르며 때로는 企業結合에 대한 견해가 상반될 가능성이 있다[42]. 公正去來法의 企業結合制限條項은 多國籍企業의 企業結合에 관한 한 明示的 條項이 아닌만큼 適用可能性이 극히 제약되며 持株會社의 設立禁止條項에 있어서도 外國人投資事業을 영위하기 위한 持株會社의 設立은 오히

40) 실제로 對外貿易法은 輸出入秩序에 대한 定義를 내리지 않고 있으나 48條 2項, 56條 各號의 내용을 참작할 때 輸出入秩序는 保護主義的 槪念으로 파악된다.

41) 公正去來法 7條 1項에서 정하는 企業結合의 개념에 따른다. 多國籍企業의 企業合併은 企業結合의 한 類型으로서 本文에서의 논의가 그대로 적용될 것이다.

42) 公正去來法과 外資導入法의 企業結合에 관한 자세한 規制內容은 金仁埈(1982), p. 11, 〈表 1〉을 참조할 것.

려 承認하고 있다. 外資導入法 또한 多國籍企業의 企業結合이 갖는 競爭制限可能性을 規制할 수 있는 條項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公正去來法上 不當한 國際契約의 締結制限은 技術導入契約 이외에도 借款·合作投資契約, 著作權導入契約, 商品·用役輸入代理店契約 등에도 적용되는 國際契約에 관한 一般原則이다. 따라서 技術導入契約의 경우에도 부당한 共同行爲, 不公正去來行爲 및 再販賣價格維持行爲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한다는 一般論的인 原則만을 말할 뿐이다. 外資導入法의 경우에는 契約의 申告義務만을 언급할 뿐 競爭制限的인 側面에 관한 關聯條項은 없다. 不公正去來行爲 및 再販賣價格維持行爲에 대한 公正去來法의 關聯條項들 또한 國際去來行爲에 관한 明示的인 內容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Ⅲ章에서 논의된 사항 중 貿易商社, 輸出自律規制, 垂直的 制限 등에 관해서는 〈表 1〉에서와 같이 오히려 對外貿易法에서 關聯條項을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競爭政策的 考慮事項은 배제되고 產業·貿易政策的 考慮事項만이 중시되고 있다. 이외에도 對外貿易法은 特定商品의 輸入이 國內產業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競爭政策的 示唆點

本稿에서는 國際化, 開放化와 관련된 競爭政策의 主要問題를 並列的, 分類的인 方法으로 分析하고자 했다. 특히 國別次元의 分析에 있어서는 國際去來行爲 및 貿易政策이 갖는 競爭政策的 意味를 부각시키고자 했으며 이러한 논의를 기준으로 하여 韓國의 國際化關聯 政策現況을 소개했다. 여기에서는 本稿의 논의를 바탕으로 國際化時代를 맞이하여 競爭政策的 次元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을 논하고자 한다[43].

첫째, 國際化, 開放化란 결국 保護主義的 貿易政策의 漸進的 廢棄와 自由主義的 貿易政策의 採擇을 前提로 하는데 保護主義的 貿易政策의 사용이 배제될 경우 國際去來行爲에 대한 競爭政策의 强化는 다분히 保護主義的인 性格을 갖는 非關稅障壁의 役割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지적된다. 이는 貿易政策에 관한 國際的인 合意는 상당한 水準에 도달한 반면 競爭政策에 관한 國家間 合意는 아직도 극히 유치한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과도 관련이 있다. 競爭政策强化의 具體的 內容으로는 각종 國際去來行爲의 競爭制限的 效果에 대한 規制를 明示化하는 것뿐만 아니라 競爭法 適用의 領土主義, 主權免責의 限度 등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競爭政策의 保護主義的 特性을 십분 활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측면에서의 制度的 補完이 해결되어야만 하는데 예컨대 韓國의 政策現況에서 보았듯이 國際去來行爲의 競爭制限的 側面을 規制할 수 있는 法的 條項을 競爭法體系內에 明文化한다든지 상이한 政策間의 優先順位를 再調整하는 등의 問題가 解決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保護主義的 貿易政策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保護主義的 性格을 갖는 競爭政策의 採擇은 결국 相對의 對應措置에 따라 國家間 傳染性을 가질 것이므로 明文化된 競爭政策의 採擇 및 明文化된

43) 최근 公正去來法의 改正論議가 政治圈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與野의 改正案을 살펴보면 國際化에 대비하려는 시도가 전혀 없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優先順位의 決定 등은 이 점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문제들이다.

셋째, 保護主義的 競爭政策 이외에도 相對國의 不公正貿易行爲에 대응하는 通商法體系를 강화함으로써 國際化에 따른 制度補完이 가능한데 이는 오히려 現實的인 實效性이 의문시되고 國際貿易規範에 위배될 可能性이 문제시되며 相對國의 報復可能性에 直面할 短點이 지적된다.

넷째, 國際化에 대비하여 競爭政策을 改善해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產業·貿易政策과의 相互關係가 중시되며 상이한 政策間의 內部的 矛盾이 없는 방향으로 綜合的인 制度改善이 요구된다. 〈表 1〉에서 볼 수 있듯이 對外貿易法과 外資導入法은 그 立法趣旨가 公正去來法과 상이하기 때문에 동일한 經濟現象에 대한 規制內容이 상이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결국 關聯制度의 相衝되는 부분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한다.

다섯째, 國際的 次元의 통일된 競爭規範에 대한 國際協商테이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이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本稿에서는 國際化의 競爭政策的 意味를 고찰함에 있어서 分析的 側面에만 치중한 결과 經驗的 事例硏究가 결여되었으며 취급된 國際去來行爲의 類型이나 關聯政策의 側面에 있어서도 누락된 企業行爲 및 政策이 발견된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問題의 本質을 提起하는 데 그치고 향후 보다 深層的인 事例硏究와 이에 근거한 政策代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硏究가 擴大될 것이다.

▷ 參 考 文 獻 ◁

金仁埈, 『外資導入에 대한 公正去來制度의 運用方案』, 政策硏究資料 82-46, 韓國開發硏究院, 1982.

梁明朝, 『國際獨占禁止法 : 美國法의 理論과 實際』, 博英社, 1986.

尹暢皓·李奎億, 『產業組織論』(全訂版), 法文社, 1988.

Davidow, J., "Some Reflections on the OECD Competition Guidelines," *Antitrust Bulletin*, 12 : 441, 1977.

_____, "The Seeking of a World Competition Code : Quixotic Quest?" O. Schachter and R. Hellawell (eds.), *Competition in International Busines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1, pp. 362~365.

_____, "The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Antitrust Principles," S. Rubin and G. Hufbauer (eds.), *Emerging Standards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vestment*, Rowman & Allanheld, 1983, pp. 119~138.

Larson, D., "An Economic Analysis of the Webb-Pomerene Act," *The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Vol. XIII (2), 1970, pp. 461~500.

OECD, *Glossary of Terms Relating to Restrictive Business Practices*, Paris, 1965.

_____, *Report on Restrictive Business Practices Relating to Patents and Licenses*, Paris, 1972.

_____, *Export Cartels*, Paris, 1974.

_____,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Paris, 1976.

_____, *Restrictive Business Practices of Multinational Enterprises*, Paris, 1977.

_____, *Report on Restrictive Business Practices Relating to Trademarks*, Paris, 1978.

_____, *The Role of Competition Policy in a Period of Economic Recession with Special Reference to Crisis Cartels*, Paris, 1981.

_____, *Competition and Trade Policies: Their Interaction*, Paris, 1984.

Scherer, F.M., *Industrial Market Structure and Economic Performance* (2nd ed.), Houghton Mifflin Company, 1980.

Schott, J., "US Trade Policy: Implications for US-Korean Relations," T. Bayard and S.G. Young (eds.), *Economic Relations between the U.S. and Korea: Conflict or Cooperati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1989.

Schotter, A., *Free Market Economics: A Critical Appraisal*, New York, St. Martin's Press, 1985.

UNCTAD, *Draft International Code of Conduct on the Transfer of Technology*, U.N. Doc. TD/CODE TOT/47, 1985.

貨物自動車運送産業에 대한 政府規制의 改善方案

金 鍾 奭

本 硏究에서는 우리나라 貨物自動車運送産業에 대한 각종 政府規制의 問題點과 改善方案을 제시하였다. 주요 개선방안으로서는 事業區域制限의 廢止, 事業供託金制度의 導入을 통한 免許制度의 改善, 톤급에 의한 業種區分의 廢止 등을 제시하였다.

종합적으로 고찰해 볼 때, 현재의 業界慣行은 이미 높은 경쟁상태에 도달하여 있으며, 정부의 비현실적인 규제가 오히려 건전한 競爭秩序의 확립에 障碍가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政府規制가 현실의 市場狀況과 사업자들의 合理的 事業欲求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으며, 貨物自動車運送産業에 있어서의 政府規制改善이란 政府規制의 現實化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持込制의 抑制, 直營企業化의 推進 등의 政策目標의 妥當性과 政策手段의 實效性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I. 序 論

貨物自動車運送産業은 여러가지 요인을 고려할 때 본질적으로 경쟁적일 수밖에 없는 산업이다. 市場進入에 있어 기술적 장애가 없으며, 생산에 있어서 規模의 經濟가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국내외의 例를 보더라도 中·小規模의 사업자들이 대규모의 회사들과 매우 경쟁적으로 共存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승객이나 화물의 운송사업에 대한 규제는 늘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 規制擁護論者들은 사업의 公益的 側面을 강조하여, 貨主의 保護와 公路의 安全을 위해 政府規制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反對論者들은 그간의 규제의 경험으로 볼 때 政府

筆者: 本院 硏究委員

* 筆者는 本 硏究의 진행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준 全國貨物自動車運送事業組合聯合會 全鎭煥 專務, 經濟企劃院 金修泫 事務官, 交通開發硏究院 白榮樂 先任硏究員과, 草稿를 읽고 유익한 論評을 하여 준 商工部 鄭俊石 課長과 本院의 劉承旻 博士에게 감사를 드리고자 한다. 本稿의 작성과 자료의 정리에 수고를 아끼지 않은 本院의 李仁燦 硏究員과 朴燦洽 硏究助員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의 規制가 浪費的이며 불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Breyer(1982)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는 구조적으로 경쟁적인 산업에 전통적 규제수단인 進入과 價格의 規制가 적용된 전형적인 例로서, 그 경우 얼마나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였는지를 잘 나타내는 사례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구조적으로 경쟁적일 수밖에 없는 산업에서 政府介入의 명분은 주로 過當競爭의 방지와 消費者保護이나, 전통적인 규제수단은 항상 行政便宜的인 料金構造와 높은 料金水準, 그에 따른 消費者效用의 減少로 나타난다고 한다. Breyer는 근본적으로 過當競爭(excessive competition)이라는 개념은 "빈 상자(empty box)"와 같아서 아무런 내용이 없는 개념이며, 과당경쟁은 전통적인 규제수단보다는 不公正去來行爲의 團束과 禁止로서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잘 알려진 바와 같이 Stigler(1971)는 정치적인 이유로 정부가 업계에 포획되어 규제라는 수단을 통해 被規制者의 利益을 도모한다고 주장하고, 그것을 실증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例로서 美國의 貨物自動車運送事業에 대한 규제를 제시하고 있다.

美國의 경우 1975년 이래 점진적으로 진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1980년의 Motor Carrier Act의 제정으로 본격적인 料金과 免許規制의 緩和를 추진하였다. 업계와 관련 勞動組合의 반대 속에 이루어진 이 규제완화의 결과에 대하여 많은 연구가 있으나[1], 일반적으로 우려되던 소규모 기업의 대량도산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화주들의 전반적인 滿足度의 增加, 料金의 下向壓力, 生産性增加, 事業收益率의 減少 등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2].

Ⅱ. 貨物自動車運送事業의 經濟的 特徵

일반적으로 運送事業에 대한 수요는 「誘導需要(derived demand)」라는 점이다. 즉, 운송서비스 자체가 수요의 목적이 아니라, 다른 경제활동을 위한 수단으로서 수요되기 때문에 그 근원이 되는 경제활동에 의해 운송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밀접하게 영향을 받으며, 특히 경기의 변동에 영향받게 된다는 점이다.

또한, 운송수단간(예 : 자동차와 철도)의 代替可能性(intermodal substitutability) 때문에 특정지역에서 어떤 운송사업자가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더라도 獨占力의 발휘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것은 특히 철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운송사업에 대한 진입의 장벽이 매우 낮아 항상 潛在的 競爭者의 시장참여의 가능성 때문에 특히 그러하다고 할 수 있다. 운송산업의 또 다른 특징은 다른 시장에 비해 非價格競爭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이다. 즉, 특정 운송수단의 경쟁력은 가격에 의해서 뿐 아니라, 소비자의 효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信賴度, 速度, 安全性 등의 다른 요

1) Moore(1983), Breen(1982), Alexis(1983) 참조. 특히 de Jong and Shepherd(1986)의 ch. 14에 광범한 문헌소개가 있음.

2) MacAvoy and Snow(1977), Breen(1977), Sloss(1970) 등은 주로 美國과 캐나다의 경우 貨物自動車運送産業 規制가 일반적으로 生産費用을 높이고 비규제상태보다 높은 요금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들에 의해서도 결정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운송사업에서는 가격이 낮다는 사실만으로는 市場確保의 충분한 조건이 되지 못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Ⅲ. 우리나라 貨物自動車 運送産業 現況

1. 概 觀

우리나라의 화물자동차운송산업은 自動車運輸事業法에 의해 크게 路線貨物自動車運送事業, 區域貨物自動車運送事業, 自動車運送斡旋事業의 세가지 사업분야로 분류되어 있다. 노선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일정한 노선에 따라 주로 소화물을 수탁받아 定期로 混積輸送하는 사업이며, 구역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일정한 지역내에서 專貰契約에 의해 화물운송을 담당하는 사업으로서 타지역에 상주하여 영업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用達貨物運送業(1톤이하), 個別貨物運送業(1~5톤), 全國貨物運送業이 여기에 속한다. 그리고, 자동차운송알선사업은 화물과 차량을 알선·중개하거나, 화주로부터 운송을 위탁받아 대행하는 사업으로서 대부분의 이삿짐센터가 여기에 속하며 주로 구역화물운송업자를 알선대상으로 하고 있다. 1987년 현재 면허종류별 업체 및 차량현황은 〈表 1〉에 나타난 바와 같다.

〈表 1〉 免許種類別 業體 및 車輛現況

(1988. 6. 30 현재)

業種別	業體數	免許臺數
路線貨物	27	1,480
全國貨物	1	847
一般區域貨物	1,064	61,401(13,891)
用達貨物	984	21,107(17,806)
計	2,076	84,835

註 : ( )안은 개별면허이며 전체에 포함.
資料 : 交通部.

1981년 이후 5년간 국내화물운송량은 1億 7,500萬톤에서 2億 6,000萬톤으로 38.6% 증가하였고, 그중 화물자동차에 의한 수송비중은 1981년 59.5%에서 1986년 63.8%로 증가추세에 있다. 그러나, 〈表 2〉에 볼 수 있듯이 비영업용 화물자동차의 급증으로 인하여

〈表 2〉 貨物自動車 增加推移

(단위 : 臺)

	計	營業用	自家用	官 用
1981	244,077	54,234	180,584	9,259
1982	264,214	55,929	199,215	9,070
1983	303,719	58,763	235,576	9,380
1984	358,967	61,132	288,249	9,586
1985	411,409	62,545	338,555	10,309
1986	473,567	71,578	390,625	11,364

資料 : 交通部, 『交通統計年報』, 1987.

〔圖 1〕 産業의 問題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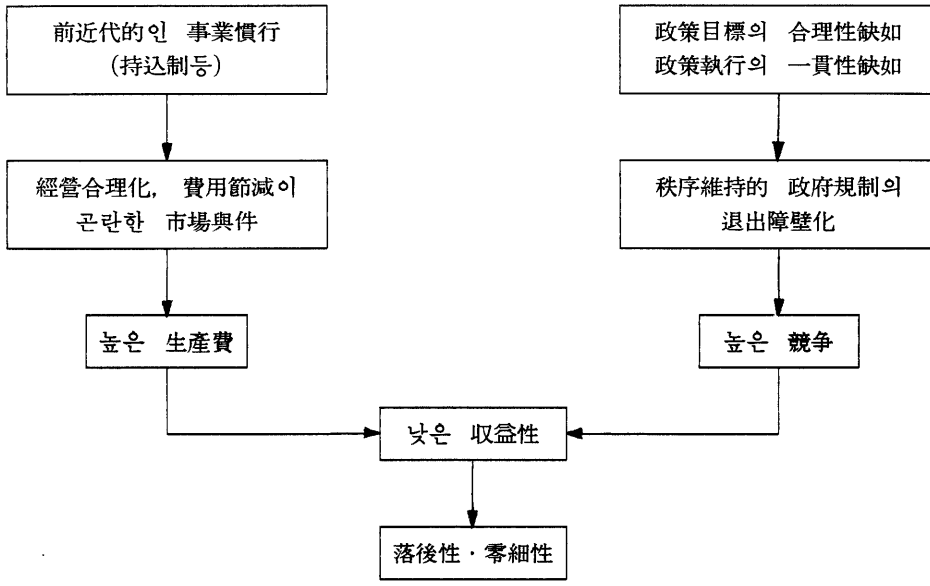

영업용 차량에 의한 수송비중은 1981년에 25.9%에서 1986년에는 21.5%로 감소하였다.

2. 産業의 問題點

우리나라의 화물자동차운수산업은 다른 부문의 발전단계와 비교해 볼 때, 그리고 외국의 화물자동차운송산업과 비교해 볼 때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이 산업의 落後性과 零細性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여러가지 요인을 생각할 수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持込制와 같은 불합리하고 전근대적인 사업관행이 만연하고 있어, 시장여건이 經營合理化나 費用節減에 곤란할 뿐 아니라, 정부의 規制와 政策이 退出障壁化하여 업종별로 높은 경쟁상태를 나타내어 산업전반의 수익성이 매우 낮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다[3]

이러한 산업 자체의 落後性과 零細性의 문제는 국민경제의 타부문에도 영향을 미쳐, 화물운송수단간의 合理的 運送分擔의 配分을 왜곡시키며, 특히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선호경향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는 그 자체로서 화물자동차운송산업의 시장을 잠식하는 것일 뿐 아니라,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사용률이 낮고 국가적 관점에서 重複投資라는 점에서 資源의 浪費를 초래하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화물자동차 운송산업의 낙후성은 화물운송서비스에 크게 의존해야 하는 流通業과 製造業分野의 在庫管理와 市場擴大에 애로를 초래하고 있고, 이들 분야의 기업들이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선호하게 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 화물자동차운수산업의 또 다른

3) 持込制의 背景, 性格, 問題點에 관하여서는 附錄 참조.

문제점으로서 動態的 沈滯性을 지적할 수 있다. 즉, 경제전반의 발전에 맞추어 기술과 서비스의 수준이 향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조한 산업생동력으로 인해 技術革新과 새로운 서비스의 開發이 타분야에 비해 微弱하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상태로서는 경제발전에 따르는 物動量의 增加를 뒷받침하지 못하여 궁극적으로 成長의 隘路部門化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3. 當面課題

이상과 같은 우리나라 貨物自動車運送産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당면과제로서 크게 두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첫째는 산업의 生動力을 제고시켜 산업체질을 강화함으로써 앞으로의 外國企業의 國內市場 進出에 대비해야 할 것이며, 둘째는 經濟全般의 발전수준에 상응하는 선진산업화로서 基幹産業인 화물자동차 운송산업이 타 분야의 발전에 기여하며, 고급서비스의 개발로 국민생활수준 향상에도 기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정책적으로는 산업정책적 지원과 경쟁촉진을 통한 산업체질의 강화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산업정책적 지원으로서는 주요지역에 貨物터미날의 건설촉진, 産業道路網의 확충, 關聯稅制의 合理化 등의 정부지원이 요구되는 정책을 고려할 수 있으며, 경쟁촉진정책으로서는 산업체질의 강화와 생동력의 제고를 위하여 현행의 산업보호적 차원에서 발생한 각종 경쟁제한적인 政府規制를 改善하고 완화하여, 前近代的인 事業慣行의 改善을 도모하고 경영합리화와 산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市場與件을 형성해야 할 것이다.

本稿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송산업의 발전을 위한 산업정책적 지원보다는, 산업체질강화를 위한 政府規制의 改善과 競爭促進에 초점을 맞추어 政府規制의 문제점과 改善方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Ⅳ. 政府規制現況 및 問題點

1. 規制政策

가. 經 過

交通部는 1981년 5월과 1983년 7월 두 차례에 걸쳐서 「貨物自動車運送事業經營改善」을 추진하였다. 1981년 방안의 주요골자는 1991년까지 업계의 고질적 병폐인 持込制를 폐지하고 단계적으로 直營企業化를 추진하겠다는 것이었다. 그 추진방법으로서 매년 각 회사 보유대수의 10% 이상씩을 직영차량화하며, 추진실적이 10% 미달일 때는 미달대수만큼을 減車 不利益處分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그후 추진실적이 부진하자, 1983년에 기업화추진이 부진할 경우의 減車 不利益處分을 더욱 강화하고 추진실적이 뛰어난 업체는 增車등의 이익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1차의 經營改善方案을 더욱 강화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措置들은 업계의 뿌리 깊은 관행인 持込制를 행정처분과 규제에 의해서만 폐지하려 하였을 뿐 지입제발생의 근본

적인 원인에 대한 解決方案이 되지 못하여 많은 부작용과 사업자들의 저항을 초래하던 중, 화물자동차운송업계가 1983년 10월 國會에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請願을 제출하고 국회가 이를 받아들여, 결국 1984년 11월 交通部는 종래의 減車措置등의 處罰的 行政措置를 유보하기로 결정하여 사실상 持込制를 폐지하여 직영기업화를 추진하려는 정책목표는 그 실효성을 상실하고 말았다.

그후 1985년 7월 종래의 强制的 企業化推進政策을 다소 수정하여 기존의 5톤미만의 지입차주들에게 個別免許를 발급하여 개인사업자로 독립시키고, 개별면허가 발급된 기존 회사의 면허상실분은 직영을 조건으로 면허를 보충하여 주기로 하였다. 1985년부터 매년 대상대수의 25%를 발급하여 1988년까지 持込車主 전부에게 個別貨物免許를 발급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持込車主들이 개별면허를 발급받기 위하여서는 회사측과 持込料 및 公課金의 정산을 마쳐야 하며, 회사측과의 합의를 전제로 하였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회사측과 지입차주들간에 많은 마찰과 금품강요 등의 잡음이 발생하였으며[4], 1988년말에는 개별면허를 발급받지 못한 지입차주들이 시위·농성 등의 집단행동을 하기도 했다.

더구나, 直營을 조건으로 회사측에 보충발급된 면허에 대하여 상당수의 회사들이 이를 다시 再持込하여, 정부의 持込制廢止施策을 무의미하게 하였다. 이에 交通部는 1988년 5월에 위반회사에 대한 減車處分등의 不利益處分을 골자로 한 시정방안을 내놓았으나, 경과규정에서 많은 예외를 인정하여 사업자간의 불평등의 문제를 야기하였으며, 持込制는 이러한 정부의 多年間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업계의 뿌리 깊은 관행으로 남아 있다.

나. 問題點

이상과 같이 최근 10년간의 交通部의 貨物自動車運送產業政策의 경과를 살펴 볼 때, 가장 먼저 지적할 수 있는 것이 政府政策의 一貫性 缺如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持込制抑制, 企業化推進의 목표를 추진함에 있어서, 대부분의 정책수단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보다는 실적위주의 對症療法的인 대응이었고, 따라서 제도의 合理的 改善보다는 주로 不利益處分 위주의 强制的行政規制가 그 주종을 이루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매년 10% 또는 25%씩 추진"이라는 算術的이고 直線的인 목표위주의 집행은 결국 많은 저항과 부작용을 초래하였으며, 종내는 그러한 行政措置自體의 無力化, 變更, 그리고 그에 따른 정책의 一貫性 喪失이라는 악순환을 거듭하게 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정책목표 자체의 妥當性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간 交通部는 持込制의 폐지, 直營化·企業化의 추진을 정책목표로서 추진해 왔으나 과연 그 목표가 현재 얼마나 달성되었으며, 목표 자체가 과연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러한 목표의 달성이 貨物自動車運送產業의 발전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批判的이고도 客觀的인 評價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4) 個別免許가 다른 운수사업의 면허와 마찬가지로 발급 즉시 高價의 프리미엄이 발생하여, 회사측에서 합의해 주는 행위 자체가 상당한 經濟的 利權이 되어 버린 데 그 이유가 있다고 하겠다.

〈表 3〉 規制概要

	區域貨物業			路線貨物業	斡旋業
	全國貨物	一般區域貨物	用達貨物		
事業參與	登 錄	免 許	免 許	免 許	登 錄
料 金	申 告	申 告	申 告	認 可	申 告

우선, 持込制는 우리나라 운송업계의 뿌리 깊은 관행으로서 오랜 기간에 걸쳐 정착된 민간의 商慣習인 것이다. 持込制가 업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기본적으로 自由市場經濟體制에서 經濟主體間의 自由意思에 의한 契約은 양자간에 모두 유익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사회적 해악을 초래하지 않는 한 그 계약은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지입제의 문제는 그 제도의 문제를 해결 또는 극소화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며, 지입제 자체를 부정하고 폐지하려는 노력은 항상 그 제도를 유지해 온 經濟主體들의 합리적인 私益追求本能에 의해 무력화될 것이며 사실상 그간의 경험이 이를 잘 나타내주고 있다고 하겠다.

또한, 交通部의 直營企業化 推進施策은 1985년에 개별면허 발급을 계기로 다소 신축적 변화를 보였으나, 아직도 政策의 基本基調는 直營·企業化의 推進이라고 하겠다. 물론 산업내의 대부분의 기업이 견실한 資本能力과 經營能力을 지닌 직영회사들이 될 수 있다면 무엇보다도 바람직한 결과라고 하겠으나, 消費者와 貨主를 보호하고 타산업의 운송수요에 부합할 수 있는 사업형태가 반드시 기업화된 直營事業者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인식에 의해 交通部도 1985년에 個別免許制度를 도입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貨物自動車運送產業을 구성하고 있는 絶對多數의 사업자들이 빈약한 자본능력과 경영능력을 가진 零細事業者라는 현실을 고려할 때, 直營企業化의 추진이 不利益處分을 주요수단으로 한 종래의 行政規制로서만 달성될 수는 없을 것이며, 이 또한 그동안의 경험이 잘 나타내주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區域貨物 運送產業

가. 事業區域制限

1) 制度現況

區域貨物 運送事業免許는 각 市·道知事가 발급하며, 면허받은 사업구역외에서 상주하여 영업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현행 業種別 事業區域은 〈表 4〉에 나타난 바와 같다.

2) 區域制限의 問題點

우리나라는 국토면적이 협소한데다가 전국 도로망의 발달로 인해 전국의 거의 모든 지역이 1日往復運行이 가능하며 현행과 같이 전국을 9개의 사업구역으로 세분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시된다. 또한, "常住營業行爲"의

〈表 4〉 業種別 事業區域

業 種	事 業 區 域
一般區域 및 特殊車	- 9개의 事業區域 · 서울, 경기, 인천 · 부산, 경남 · 충북 · 대구, 경북 · 광주, 전남 · 충남 · 전북 · 강원 · 제주
用 達	- 特別市, 直轄市, 市·郡別 (필요시 2이상의 시·군을 하나의 사업구역으로 할 수 있음)

개념이 불명확하고 현실적으로 사업구역제한을 위반한 영업행위가 전국적으로 일반화되어 있으나 이의 단속이 어려워 規制의 實效性이 없으며 사실상 死文化되어 있다.

현행제도는 또한 제3지에로의 수송이나 물동량의 지역간 변화에 대하여 화물차의 신축적 이동을 억제하고 있어 空車率을 낮추어 運送效率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을 억제하고 있으며, 화물차량이 등록지로 회차하고자 할 때 제3지를 경유하여서라도 空車運行을 면하고자 하는 차주의 입장을 이용하여 화주 또는 알선업자들이 過積 또는 부당한 斡旋料를 강요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나. 免許制度

1) 制度現況

區域貨物 運送事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각 구역별로 市·道知事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당업체가 객관적인 수송능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하여 〈表 5〉에 나타난 바와 같은 시설등의 최저기준을 요구하고 있으나, 최저기준을 갖추었다고 해도 반드시 면허가 발급되

〈表 5〉 施設등의 基準

業 種	最低臺數 (臺)	最低資本金 (百萬원)	最低保有車庫面積 (臺當m²)	備 考
路線貨物	30	200	대형(10톤이상) 36 중형 (5~10톤) 26 소형 (5톤미만) 13	
一般 區域貨物	1	100	대형(10톤이상) 36 중형 (5~10톤) 26 소형 (5톤미만) 13	○ 도지사 승인을 얻어 차고면적 1/2을 감. ○ 개인면허의 경우 타인 소유의 차고시설 사용 계약으로 가능.
用達貨物	1	50	10	○ 요금 미터기 설치
全國貨物 (登錄制)	200	3,000	路線貨物과 同一	○ 5개이상의 사업구역에 각 1개소 이상의 영업소 설치

는 것은 아니다. 新規免許의 발급은 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事業用 自動車의 供給基準 策定要領에 의하여 각 市·道知事가 교통량조사등에 의거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익년도 공급기준을 책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車輛 增車를 결정하고 있다.

2) 免許制度의 問題點

免許의 讓受渡에 대한 市場價格(프리미엄)의 형성으로 인해 면허의 발급과 증차분의 배정이 특혜화되어 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면허의 제한적인 발급에 의한 것으로서, 市場狀況의 變化, 物動量의 季節的·地域間 變化에 대하여 사업자들에 의한 자율적이고 신축적인 事業의 擴大 또는 縮小를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특히, 물동량이 감소하여 사업을 휴·폐지하거나 減車經營을 하고자 하여도 면허를 일단 양도한 후에 면허를 재발급받기 어려워, 화물차량이 물동량에 비해 과잉공급 상태에 있어도 화물차량의 감소보다는 運賃 덤핑에 의한 價格競爭이 유발되어 물동량 감소시에 業界의 收益性이 急減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表 6〉 營業用 貨物自動車 免許 推移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81~86 增減率
區域貨物	免許臺數(臺)	52,368	54,501	57,415	59,738	61,103	70,111	33.9
路線貨物	免許臺數(臺)	1,866	1,428	1,348	1,394	1,442	1,467	△21.4

資料: 交通部, 『交通統計年報』, 1987.

〈表 7〉 外國의 貨物運送規制 比較

	英 國	美 國	캐나다	스웨덴	日 本	韓 國
市場參與規制	申告制	申告制	申告制	許可制[1]	許可制	許可制
運賃規制	X	X	X	X	O	O
業種區分	X	X	△	X	O	O
自家用車輛의 營業規制	X	X	△	X	O	O
車輛의 最低數 規制	X	X	X	X	O	O
斡旋事業規制	X	X	X	X	O	O
過多積載規制	O	O	O	O	O	O
法定勞動時間 遵守規制	O	O	O	O	O	X
混積規制	X	X	X	X	X	O
事業區域規制	X	X	△	X	O	O

註: O; 규제가 있음 X; 규제가 없음 △; 일부 규제
1) 스웨덴은 2.5톤미만은 면허철폐되었고 2.5톤이상은 규제하나 허가절차가 단순.
資料: 交通開發硏究院.

또한, 그간의 면허, 증차분 배정관행이 衡平의 原則이나 經濟效率性의 原則에 부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많다. 이로 인하여 우수한 경영능력과 기술개발의지를 지닌 잠재적 사업자들의 사업참여 기회가 제한되어 왔다.

우리나라 화물자동차 운수산업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되고 있는 持込制의 근본적인 발생원인이 免許의 制限的이고 임의적인 발급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持込制는 사업면허의 소유자와 화물차량의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데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持込制에 의해 발생하는 여러 문제는 농업에 있어서의 小作制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와 개념상 성격을 같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業種區分制度

1) 制度現況

〔圖 2〕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貨物車輛의 積載積量 톤급에 의해 업종을 用達貨物과 一般區域貨物로 구분하여 별개의 면허가 발급되고 있으며, 개별화물면허는 前述한 바와 같이 持込制 抑制·廢止方針의 일환으로서 일반구역 업종내의 持込車主들에 대한 個別·獨立化方針에 의해 발생한 것이다.

2) 問題點

積載積量 1톤을 기준으로 업종구분을 하는 것은 그 자체가 恣意的인 구분이어서 새로운 차종의 출현과 物流變化에 대하여 업계가 신축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저해하고 있다. 특히, 개별화물 면허가 발급되는 1톤과 5톤 사이의 차종 중, 업계에서 가장 收益性이 높고 효율적인 것으로 알려진 1.4톤 화물차가 개별면허발급 이후 급증하자 이에 대해 용달업자들이 강력히 반발하여 個別貨物의 톤級制限의 解除를 반대하고 規制를 계속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1988년 9월). 그러나 이미 업계내의 관행은 다수의 개별화물 사업자들이 구역간 운송뿐 아니라 용달사업영역인 구역내 운송에도 이미 참여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業種間의 領域다툼이 계속되고 있다.

라. 運賃과 料金 決定過程

1) 制度現況

현행의 규정에 따르면 각 지방조합별로 관할 市·道知事에게 協定運賃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 규정상으로는 자율화되어 있다.

2) 問題點

1988년말 현재 신고가 접수된 바 없으며, 화주와 차주간에 自由契約 형식에 의한 料金決定方式이 일반적인 관행이어서 申告制가 사실상 유명무실하고 死文化되어 있으며, 시장상황에 따라 運賃의 上昇·下落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한, 현재 형성되어 있는 運賃水準도 申告制實施 이전의 官認料金(1981년 수준)보다 낮은 수준에서 거래가 이

〔圖 2〕 業種區別現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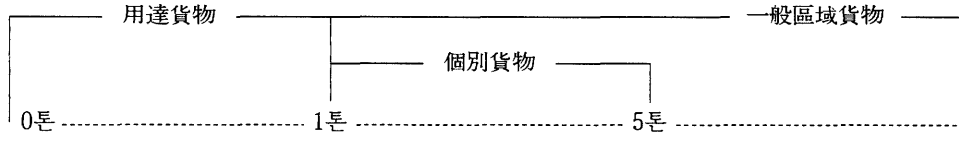

루어지고 있어 과거 許可制下에서 결정된 운임이 얼마나 높은 수준이었는지를 알 수 있으며, 이것이 현재 업계에서 주장하는 貨物車輛 過剩供給의 한 요인이 되었다고 사료된다.

현행제도가 신고제라고 하여도 經濟企劃院의 物價指針에 의하여 신고의 접수를 거부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 運賃을 規制하는 許可制처럼 운용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규정상 신고의 주체가 지방조합이어서, 업자간의 사실상의 共同料金 決定行爲를 인정하고 있다.

3. 路線貨物 運送業

가. 規制現況

新規路線의 開設, 路線의 變更, 既存路線에의 參與에 경유지 각 市·道知事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運行車種의 變更, 車輛의 增加 또는 減少도 事業計劃書에 포함되는 사항이므로 정부의 허가를 필요로 한다. 노선별 요금도 정부의 인가사항이다.

나. 問題點

사업경영상의 주요결정이 사실상 거의 대부분 정부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어서, 대부분의 업체들이 脫法으로 營業行爲를 하고 있다. 특히, 低收益路線의 無斷抛棄, 缺行事例가 빈발하고 있으며, 정기노선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구역업종 형태의 영업을 겸하는 경우도 있으며, 경유지 관할 市·道知事의 허가를 받지 않은 노선을 운행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각 市·道知事가 지역의 노선업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排他的이고 恣意的인 免許慣行이 존재하여 노선의 배분과 운영이 物動量의 季節的 變化와 地域間 變化에 신축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노선화물 운송업에도 상당수의 차량이 持込制에 의해 운행되고 있어, 지입차량에 의한 變態營業行爲가 만연하고 있다. 그리고, 운임도 대부분의 업체가 인가요금 수준보다 낮은 수준을 받고 있다.

V. 改善方案

1. 政策目標와 手段의 合理化

持込制의 廢止, 直營企業化의 추진이라는 정책목표의 타당성과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그동안의 정책수단에 대하여 근본적인 再檢討와 再評價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입제의 폐지는 다년간에 걸쳐 강제적으로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持込制는 업계의 뿌리 깊은 慣行으로 남아 있는 현실이다. 이것은 지입제의 順機能에 대한 사업자들의 必要性이 존재하기 때문이며, 문제의 본질은 지입제 자체가 아니라, 持込制에 의한 弊端과 副作用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제도의 改善은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며, 盲目的인 持込制廢止 노력은 이미 實效性을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規制制度의 改善에 있어서도 종래와 같은

不利益處分 중심의 권위주의적이고 강제적인 行政規制가 아니라 관계전문가, 사업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서, 사업자들의 私的誘因과 動機에 합당한 합리적 規制方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후술하는 事業供託金制度의 도입을 통한 免許制度의 改善은 지입제의 부정적 요소를 극소화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와 같이 영세사업자가 절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產業與件 속에서 直營企業化를 추진한다면, 일부 零細事業者의 淘汰, 獨立性 喪失, 吸收·合併을 필수적으로 초래하게 될 것이고, 이 과정에서 많은 저항에 부닥치게 될 것이다. 運送事業의 企業化에는 많은 자본이 소요될 것이고 여기에는 投資形態의 資本流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인데, 자본의 속성상 현재와 같은 事業收益性 아래서는 企業化를 위한 資本投資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직영기업화의 추진은 對症療法的인 목표위주의 행정처분으로는 불가능할 것이며, 投資收益性을 제고할 수 있는 產業政策的 接近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2. 事業區域制限의 廢止

현재 전국화물운송사업은 登錄制이나 登錄基準이 까다로워 1988년말 현재 韓進 1個社만이 全國貨物運送事業者로 등록되어 있다. 따라서, 最低車輛保有臺數, 資本金, 車庫面積, 營業所 設置基準 등의 등록기준을 완화하여 전국화물운송업체수를 늘려 경쟁을 촉진해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區域免許를 가진 모든 사업자가 전국을 상대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事業區域制限을 철폐하고 전국의 單一事業區域化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事業區域規制는 이미 사실상 死文化되어 있어 대부분의 구역화물사업자들이 전국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철폐하여도 현실적으로 예상되는 혼란이나 피해는 경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사업구역제한을 철폐할 경우 특정지역에 常住營業하는 타지역차량의 密集現象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들의 車庫未備로 인한 無斷駐車의 가능성이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주요지역에 대한 화물터미날 건설의 촉진과 함께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3. 免許制度의 改善

현행제도는 면허의 발급·배분과정에서 經濟效率性에 대한 고려가 없고, 사업자간의 衡平의 原則에도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우선 중·단기적으로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出願者에게는 면허당 일정한 금액의 供託金만 납부하면 의무적으로 면허를 내어주고, 면허를 반납할 때 공탁금을 되찾아가는 事業供託金制度의 도입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도 장기적으로는 市場與件을 고려하여 공탁금액을 점진적으로 감소시킴으로써 登錄制로 전환시켜야 할 것이다.

이 事業供託金制度 아래서는 物動量의 變化에 따라 화물차량의 공급이 자동적으로, 그리고 신축적으로 변화하게 될 것이다. 즉, 예상되는 물동량의 변화에 대하여 事業規模의 擴大와 縮小를 사업자들이 스스로 결정하게 되고, 현행과 같은 정부의 공급기준에 의한 일방적 증차방식에 의한 폐단은 발생하지

않게 될 것이다. 또한, 이 制度 아래서는 일정금액의 공탁금을 납부한 후에도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效率的인 事業者만이 사업에 참여할 것이며, 非效率的인 限界事業者들은 장기적으로 자진퇴거하게 되어 資源使用의 效率性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임의적인 증차의 결정과 특혜화된 면허의 배분을 둘러싼 잡음과 부조리의 소지를 근본적으로 제거하여 衡平性을 提高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운수업계의 최대의 과제인 持込制의 減少效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지입제의 가장 부정적 요소로 지적되고 있는 持込車主에 대한 掠奪的 慣行이 자연히 소멸될 것이다.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의 면허는 현행과 같이 전매를 허용하되, 事業供託金制에 의해 발급되는 新規免許는 전매가 허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 제도는 면허에 발생한 고가의 市場價値를 公益을 위해 정부가 흡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이렇게 모아진 기금은 화물자동차 운수산업의 발전을 위해 사용하거나, 화주보호를 위한 營業保證金의 형태로 운영될 수도 있을 것이다.

공탁금의 수준을 현재의 프리미엄 수준에서 실시하면 貨物車輛의 급격한 增車는 없을 것이며, 정부의 정책적 고려에 따라 供託金額을 조정하여 면허의 공급량을 간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事業供託金은 사업참여에 대한 금전적 추가부담으로 인식될 수 있으며, 새로운 제도의 도입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정기간 現行制度와 병행하여 점진적으로 실시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4. 業種區分의 廢止

前述한 바와 같이 用達業, 個別貨物, 區域貨物間의 구분이 사실상 무의미해져 이를 철폐하고 현실화하여, 용달업자도 구역제한 없이 장거리운송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個別貨物免許의 톤級制限을 철폐하여 어느 사업자든지 市場變化에 능동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용량의 화물차를 구입하여 사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5. 運賃制度의 改善

현행 申告制에서 신고의 주체가 각 地方組合인 것을 改善하여 각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運賃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재 화물자동차 운송업계는 충분히 경쟁적인 상태에 있으므로, 本稿에서 제시하는 競爭促進을 위한 制度改善이 전제된다면, 운임은 시장 자체의 有效競爭을 통하여 가장 효율적인 수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소비자(貨主)들이 운임에 관한 市場情報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여 운송사업자간에 價格競爭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같은 방향의 화물에 대하여 混積을 허용하는 것을 運送效率의 向上이라는 측면에서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나, 本稿에서 제시한 면허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混積의 慣行이 자연히 감소·소멸될 것이다.

6. 個人免許(個別貨物, 用達)業者의 共同事業場 奬勵

현재 개인면허업자의 共同事業場 運營이 이미 많이 존재하고 있으나, 이를 정책적으로 더욱 장려해야 할 것이다. 공동사업장에서도 알선업자를 통하지 않고 직접 受託行爲를 할 수 있도록 誘導·勸奬하며, 공동사업장간에 廣告宣傳을 통한 경쟁을 촉진하여 서비스의 향상을 기하고 運賃上昇을 抑制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선 소규모 공동사업장도 합법적 알선행위를 할 수 있도록 斡旋業 資格要件을 완화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공동사업지역에 대한 배타적인 旣得權이 발생하며, 타업자의 지역내 영업행위를 방해할 우려가 있으나, 이는 公正去來法의 강력한 施行으로 규제해야 할 것이다.

7. 路線貨物業에 대한 規制의 改善方案

가. 改善方案

新規路線의 開設, 路線의 延長, 變更, 旣存路線에의 參與 등에 前述한 바와 같은 義務免許制(事業供託金制) 方式으로 전환하여, 路線決定 및 配車, 車輛增·減車에 사업자들의 자율적 의사결정을 존중해야 할 것이다. 이는 또한 非收益路線으로부터의 退出도 자유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運賃은 현재의 관행이 대부분 認可料金 수준보다 낮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운임을 완전자율화하여도 급격한 상승은 예상되지 않으며, 義務免許制 아래서는 각 노선에의 진입이 자유로워 항상 潛在的 競爭이 존재하기 때문에 부당하게 運賃을 인상하거나 暴利를 취할 수 없을 것이다.

나. 期待效果

우선 그간의 경직된 노선배정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路線間의 收益性의 隔差, 路線間의 橫的補助現象이 사라지고, 경제성이 있는 노선만으로 업계의 노선구조가 정부의 간여없이 합리적으로 재구성될 것이다. 또한 路線參與의 自由化로 인하여 각 노선의 運賃構造가 생산원가에 근접하게 되어, 산업전체의 效率性과 生産性이 제고될 것이다. 특히, 물동량이 많은 주요 간선노선에는 여러 개의 회사가 참여하여 경쟁을 통한 서비스와 運送效率의 向上과 저렴한 運賃의 維持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奧地路線과 非收益路線에 대한 운임의 상승과 그러한 노선 자체의 폐지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資源의 效率的 配分과 合理的 使用을 위한 필요적 과정으로서, 물동량이 적고 운송비용이 높은 노선은 非定期區域貨物 運送業이나 農協車輛등의 非營業用專門貨物車輛이 기능을 대체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적 특성에 따라 公益을 위해 노선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각 지방정부별로 運行補助金 支給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다.

Ⅵ. 結　　論

지금까지 각 규제별 문제점을 살펴보고 改善方案을 제시하였다. 여기서는 화물자동차 운송산업에 대한 政府規制의 전반적인 評價와 政策課題를 제시함으로써 本稿를 마치고자 한다. 종합적으로 考察해 볼 때, 현재의 業界慣行은 이미 높은 競爭狀態에 도달하여 있으며, 政府의 비현실적인 規制가 오히려 건전한 競爭秩序의 확립에 障碍가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경제적 관점에서 바람직하고 건전한 경쟁행위가 法規定 때문에 秩序破壞行爲, 不法行爲로 인식되고 있으며, 非現實的인 規制 때문에 규정을 준수하고자 하는 선의의 사업자들이 규제를 위반하는 사업자들에 비해 不利益을 당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規制가 현실의 市場狀況과 사업자들의 合理的 事業欲求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화물자동차운송산업에 있어서의 政府規制改善이란 政府規制의 現實化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화물자동차 운송산업의 零細性, 落後性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產業體質의 强化와 生產性의 向上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종래의 秩序維持, 產業保護 차원의 소극적 규제정책에서 탈피하여, 競爭與件의 造成을 통해서 適者生存의 原則이 지켜지는 적극적 體質强化政策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政府에 의한 합리적인 長期政策目標의 樹立과 이의 일관성있는 추진이 산업발전에 긴요하다고 하겠다. 특히, 그간 정부에 의해 추진되었던 持込制의 抑制, 直營企業化 추진 등의 政策目標가 과연 타당한 것인지,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政策手段이 實效性이 있고 合理的인 것이었는지에 대하여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 參 考 文 獻 ◁

交通部, 『交通統計年報』, 各年度.

交通新聞社, 『交通年鑑』, 1988.

韓國科學技術院 시스템工學센터, 『貨物運送業에 대한 規制의 經濟的 影響에 관한 硏究를 통한 貨物自動車運送事業 制度改善』, 1985, 4.

韓國產業經濟開發硏究所, 『用達貨物自動車運賃制度改編과 運賃料率算定에 관한 硏究』, 1988, 9.

Alexis, Marcus, "The Political Economy of Federal Regulation of Surface Transportation," Roger G. Noll and Bruce M. Owen(eds.), *The Political Economy of Deregulation*,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Washington, D.C., 1983.

Beilock, Richard, and James Freeman, "The Effect on Rate Levels and Structure of Removing Entry and Rate Controls on Motor Carriers,"

Journal of Transport Economics and Policy, Vol. 21, No. 2, 1987, pp. 167~188.

Breen, Denis A., "The Monopoly Value of Household-goods Carrier Operation Certificates,"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20, Autumn 1977, pp. 327~366.

———, *Regulatory Reform and the Trucking Industry: An Evaluation of Motor Carrier Act of 1982*, Bureau of Economics, Federal Trade Commission, March 1982.

Breyer, Stephen, *Regulation and Its Reform*, Harvard University Press, Cambridge, MA., 1982.

de Jong, H. W., and W. G. Shepherd (eds.), *Mainstreams in Industrial Organization–Book* II, Kluwer Academic Publishers, Dordrecht, The Netherlands, 1986.

MacAvoy, Paul W., and John W. Snow, *Regulation of Entry and Pricing in Truck Transportation*,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Washington, D.C., 1977.

Moore, Thomas Gale, "The Record on Rail and Truck Reform," *Regulation*, Nov/Dec. 1983, pp. 33~41.

———, "The Beneficiaries of Trucking Regulation,"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Oct. 1978, pp. 327~343.

Sloss, James, "Regulation of Motor Freight Transportation: A Quantitative Evaluation of Policy," *Bell Journal of Economics and Management Science*, Aut. 1970, pp. 327~356.

Stigler, George J., "The Theory of Economic Regulation," *Bell Journal of Economics and Management Science*, Spring 1971, pp. 3~26.

Strickland, Allyn D., *Government Regulation and Business*, Houghton Mifflin Co., Boston, 1980.

Weiss, Leonard W., and Michael W. Klass(eds.), *Regulatory Reform: What Actually Happened*, Little, Brown and Co., Boston, 1986.

〈 附 錄 〉

持込制의 背景과 問題點[5)]

自動車運送事業法 第26條는 "自動車運送事業者는 如何한 方法을 不問하고 그 名義로서 自動車運送事業을 他人에게 經營하게 하지 못한다"로 規定하고 있으며 持込經營은 原則的으로 不法이다.

그러나 商行爲法인 商法에서는 適法한 經營活動인 委·受託經營(持込經營)을 認定하고 있으며, 또한 稅法上으로도 運輸業體(會社)는 法人經營者로 持込車主는 個人經營者로 規定하고 稅法上 基準에 따라서 各各 一般課稅者 및 課稅特例者로 分類하고 있으므로 商法 및 稅法上으로는 運輸業體의 持込經營形態를 認定하고 있는 셈이다.

즉, 持込制度는 免許權者와 車輛所有者가 分離되어 있는 一種의 委·受託經營形態로서 運輸業體는 經營上의 免許權을 갖고 經營資產인 車輛은 個別車主의 所有로 되어 있다. 車主는 免許權의 讓許에 의해 個人의 計算으로 經營活動을 하면서 所定의 經營管理費를 支拂하는 特殊한 經營形態이다.

가. 持込經營體制의 生成

8.15 解放後 舊朝鮮貨物自動車株式會社의 殘存貨物自動車를 保有裝備로 하여 大韓通運 등 直營體制의 貨物自動車業體가 發生하여 貨物運送體制를 갖추던 初期에 麗順反亂事件에 이어 6.25戰亂이 발생함으로써, 各 道內에 산재하였던 事業用 貨物自動車는 全部 軍警의 作戰과 後退 및 收復過程에서 撤廢되어 거의가 破損당하고 만 現實下에서 運輸當局에서는 事業用 貨物自動車의 確保와 運送體制의 時急한 整備를 위하여 免許된 運輸業體의 명의로 등록하는 車輛은 持込制로 인정하였다. 이에 당시 資本金이 영세하여 貨物自動車의 구득과 등록을 하지 못하던 運輸業體自體보다는 貨物自動車 運送用役處理가 必要하던 각계인사가 戰亂으로 破損된 廢棄車輛을 조립하거나, 미군 불하차량을 입수하거나 외국으로부터(주로 日本) 중고차량등을 輸入하거나 하여 運輸業體 명의로 등록하고 차주중심의 經營行爲를 하고 등록된 회사에서는 車輛管理, 交通事故 防止 및 收拾對策, 納稅指導政策, 非常動員體制 整備 등의 業務를 處理하게 됨으로써 持込制 運營體系가 이루어진 것이다.

나. 持込經營의 存在理由

1) 政府의 免許施策

運送業은 公益事業의 속성을 갖고 있으므로 運輸事業法上 資格을 갖춘 자에게만 免許를 賦與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現實的으로 무리한 최소면허기준대수를 시행 강요하여 持込經營을 繼續的으로 放置한 결과가 되었다. 運送業은 실질적으로 소자본을 투입하여 단 1臺로서도 사업을 경영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외형상 會社體制를 유지하면서 내용면으로는 지입차주의

5) 여기에 수록된 내용은 韓國科學技術院 附設 시스템工學센터에서 발간한「貨物運送業에 대한 規制의 經濟的 影響에 관한 硏究를 통한 貨物自動車運送事業制度改善」(1985. 4)에서 持込制에 관한 내용 중 주요부분을 발췌요약한 것임.

집합으로 회사를 운영할 수 있다.

2) 運送業體의 投資意慾喪失

韓國銀行의 『企業經營分析(1983)』에 의하면 運送部門의 총자본 순이익률은 최근 몇년간 평균 3% 水準을 유지하고 있어 現實的으로 銀行利子率이나 市中利子率을 훨씬 하회하고 있다.

이러한 運送業體의 낮은 收益性은 직영체제보다 지입체제를 선호하는 근본원인 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 또한 貨物自動車의 運行特性上 전국을 운행함에 따른 時·空間的 제약 때문에 個別車輛은 운행시 회사의 管理範圍를 벗어나 있는 것이 보통이며, 그 결과 회사 또는 차주간에 收入·支出에 대한 불신이 개재될 가능성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그 결과 업체는 직영경영이 지입경영보다 못하다는 판단 아래 持込經營을 선호하고 있으며 형식상 최소량의 직영차량만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으며, 극단적으로는 直營車輛이 1臺도 없는 경우도 있다.

다. 持込經營의 問題點

1) 持込車輛의 管理 困難

全國을 대상으로 독자적인 經營行爲를 하

〈附表 1〉 貨物業體의 持込率

(1984. 6. 30 현재)

業 種	總車輛臺數	持込車輛臺數	持 込 率	備 考
區 域	38,392	33,081	86.2%	
特 殊	10,325	8,921	86.4	
路 線	1,332	1,204	90.4	
全 體	50,049	43,206	86.3	

資料 : KAIST 調査.

〈附表 2〉 車主當 持込車輛臺數

(1984. 6. 30 현재)

區 分	1臺	2臺	3臺	計
總持込車主	96.8%	3.2%	-	100%

資料 : KAIST 調査.

〈附表 3〉 持込料 現況(1989.4 현재)

(단위 : 千원/月)

	서 울	부 산	충 남	전 북	제 주
5~8톤	81.3	73.75	60	64	40
8톤이상	96.8	88.75	77	70	45

資料 : 全國貨物自動車運送事業組合聯合會.

는 지입차량의 동태를 把握하고 統制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결과적으로 政府는 필요로 하는 行政力을 個別車輛에 浸透시키기 어려운 실정이며, 會社側은 事故處理, 保險管理 등 行政處理에 不便을 겪고 있다.

2) 斡旋業體 亂立誘導

持込車主들은 거의 전부가 斡旋業體와 連結하여 物動量을 確保하고 있기 때문에 斡旋業의 存在를 正當化시킨다. 대부분의 持込車主들은 斡旋業體의 操縱下에 있으며 斡旋業體가 "밉지만 할 수 없이 相對한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物動量確保問題는 대단히 심각한 것으로 생각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問題點은 다음과 같다.

① 斡旋業體에의 過多依存, 斡旋手數料의 過多支拂과 斡旋業者의 橫暴傾向

② 運賃덤핑傾向의 심화로 인한 運送秩序破壞

③ 貨主 및 斡旋業者에 의한 過積强要

3) 統計資料의 蒐集困難

持込車輛은 本社와 이렇다 할 連結이 없기 때문에 그 운행에 대한 자료를 회사가 수집할 수 없고, 따라서 運賃政策과 供給基準策定 등 합리적인 運輸政策의 樹立이 어렵다.

4) 社會問題의 惹起

會社는 持込料를 徵收하고 對持込車主支援業務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支援業務에 무관심하거나 持込料의 引上 및 其他 公課金의 부당한 請求에 의해 會社와 持込車主間에 摩擦이 생겨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運轉士의 法定勞動時間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어 勞務管理面에서도 問題의 素地를 안고 있다.

빈 면

韓國開發硏究院 硏究叢書 案內

1 韓國「인플레이션」의 原因과 그 影響
金光錫 著 18 切 判/ 122쪽 高級洋裝/3,000원

2 穀價政策의 計劃化～次善의 糧穀政策
文八龍 著 18 切 判/ 158쪽 高級洋裝/3,000원

3 韓國農業의 成長(1918～1971)
潘性紈 著 18 切 判/ 250쪽 高級洋裝/4,000원

4 韓國家計의 貯蓄行態
金光錫 著 18 切 判/ 146쪽 高級洋裝/3,000원

5 農產物價格分析論～理論과 政策
文八龍 柳炳瑞 共著 18 切 判/ 318쪽 高級洋裝/5,000원

6 *TRADE AND DEVELOPMENT IN KOREA*
洪元卓 A.O. Krueger 編 18 切 判/ 254쪽 高級洋裝/4,400원

7 *SOCIAL SECURITY IN KOREA*
朴宗淇 著 18 切 判/ 198쪽 高級洋裝/4,000원

8 *PUBLIC ENTERPRISE AND ECONOMIC DEVELOPMENT: THE KOREAN CASE*
L.P. Jones 著 18 切 判/ 294쪽 高級洋裝/4,400원

9 韓國의 外換·貿易政策
金光錫 L.E. Westphal 共著 18 切 判/ 336쪽 高級洋裝/5,000원

10 *FACTOR SUPPLY AND FACTOR INTENSITY OF TRADE IN KOREA*
洪元卓 著 18 切 判/ 236쪽 高級洋裝/4,000원

11 勞動供給과 失業構造
金秀坤 著 18 切 判/ 202쪽 高級洋裝/4,000원

12 韓國의 鐵鋼需要分析
宋熙秊 著 18 切 判/ 250쪽 高級洋裝/3,500원

13 韓國鐵鋼工業의 成長
金胤亨 著 18 切 判/ 508쪽 高級洋裝/6,800원

14 *PLANNING MODEL AND MACROECONOMIC POLICY ISSUES*
金迪敎 編 18 切 判/ 492쪽 高級洋裝/6,400원

15 *INDUSTRIAL AND SOCIAL DEVELOPMENT ISSUES*
金迪敎 編 18 切 判/ 342쪽 高級洋裝/5,000원

16 韓國의 人口問題와 對策
金善雄 編 18 切 判/ 532쪽 高級洋裝/6,800원

17 韓國電力需要 및 價格의 分析
張榮植 著 18 切 判/ 252쪽 高級洋裝/4,400원

18 市場構造와 獨寡占規制
李奎億 著 18 切 判/ 370쪽 高級洋裝/5,600원

19 賃金과 勞使關係
金秀坤 著 18 切 判/ 244쪽 高級洋裝/4,000원

20 韓國의 人口와 人口政策
洪思媛 著 18 切 判/ 214쪽 高級洋裝/4,000원

21 *TRADE, DISTORTIONS AND EMPLOYMENT GROWTH IN KOREA*
洪元卓 著 18 切 判/ 410쪽 高級洋裝/6,000원

22 成長과 構造轉換
金光錫 M. Roemer 共著 18 切 判/ 194쪽 高級洋裝/5,000원

23 韓國의 綜合輸送體系
林浩奎 著 18 切 判/ 306쪽 高級洋裝/5,000원

24 韓國企業의 財務行態
南相祐 著 18 切 判/ 204쪽 高級洋裝/3,500원

25 韓國經濟의 高度成長要因
金光錫 朴埈卿 共著 18 切 判/ 166쪽 高級洋裝/3,500원

26 *COMMUNITY DEVELOPMENT AND HUMAN REPRODUCTIVE BEHAVIOR*
洪思媛 著 18 切 判/ 198쪽 高級洋裝/4,000원

27 農業投資分析論
文八龍 林栽煥 共著 18 切 判/ 250쪽 高級洋裝/4,000원

28 纖維・電子工業의 特性과 需給構造
金榮奉 著 18 切 判/ 180쪽 高級洋裝/3,500원

29 鐵鋼工業의 特性과 需給構造
南宗鉉 著 18 切 判/ 192쪽 高級洋裝/4,000원

30 韓國의 所得分配와 決定要因(上)
朱鶴中 編 18 切 判/ 470쪽 高級洋裝/6,400원

31 韓國의 國土・都市・環境
宋丙洛 編 18 切 判/ 410쪽 高級洋裝/6,000원

32 韓國의 保健財政과 醫療保險
朴宗淇 著 18 切 判/ 272쪽 高級洋裝/4,500원

33 石油化學工業의 現況과 展望
具本英 著 18 切 判/ 236쪽 高級洋裝/4,000원

34 成長과 都市化問題
宋丙洛 E.S. Mills 共著 18 切 判/ 270쪽 高級洋裝/4,500원

35 韓國의 流通經濟構造
林浩奎 著 18 切 判/ 306쪽 高級洋裝/5,000원

36 韓國工業化패턴과 그 要因
金光錫 著 18 切 判/ 272쪽 高級洋裝/4,000원

37 保健醫療資源과 診療生活圈
延河清 金學泳 共著 18 切 判/ 336쪽 高級洋裝/5,500원

38 韓國의 教育과 經濟發展
金榮奉 N.F. McGinn 外 18 切 判/ 272쪽 高級洋裝/4,500원

39 貿易・外援과 經濟開發
A.O. Krueger 著 田英鶴 譯 18 切 判/ 256쪽 高級洋裝/4,000원

40 *MACROECONOMIC AND INDUSTRIAL DEVELOPMENT IN KOREA*
朴宗淇 編 18 切 判/ 414쪽 高級洋裝/6,000원

41 *HUMAN RESOURCES AND SOCIAL DEVELOPMENT IN KOREA*
朴宗淇 編 18 切 判/ 384쪽 高級洋裝/5,000원

42 *KOREAN REGIONAL FARM PRODUCT AND INCOME: 1910~75*
A. Keidel 著 18 切 判/ 268쪽 高級洋裝/4,500원

43 韓國의 農村開發
文八龍 潘性紈 D.H. Perkins 共著 18 切 判/ 396쪽 高級洋裝/6,000원

44 需給構造와 物價政策
李 烘 著 18 切 判/ 288쪽 高級洋裝/5,000원

45 經濟開發과 政府 및 企業家의 役割
司空 壹 L.P. Jones 共著 18 切 判/ 410쪽 高級洋裝/6,000원

46 *PRIMARY HEALTH CARE IN KOREA*
延河清 著 18 切 判/ 214쪽 高級洋裝/4,000원

47 韓國 經濟·社會의 近代化
金滿堤 E.S. 메이슨 外 18 切 判/ 530쪽 高級洋裝/6,800원

48 輸出主導型 成長經濟의 外換政策
李天杓 著 18 切 判/ 228쪽 高級洋裝/4,000원

49 韓國의 所得分配와 決定要因(下)
朱鶴中 著 18 切 判/ 432쪽 高級洋裝/7,000원

50 國民經濟와 福祉年金制度
延河清 閔載成 共著 18 切 判/ 428쪽 高級洋裝/7,000원

51 技術革新의 過程과 政策
金仁秀 李軫周 共著 18 切 判/ 402쪽 高級洋裝/7,000원

52 韓國의 經濟開發과 人口政策
R. 레페토 金善雄 外 18 切 判/ 328쪽 高級洋裝/5,000원

53 韓國의 金融發展：1945～80
D.C. 콜 朴英哲 共著 18 切 判/ 334쪽 高級洋裝/5,600원

54 韓國의 賃金構造
朴烜求 朴世逸 共著 18 切 判/ 440쪽 高級洋裝/5,200원

55 *SOURCES OF ECONOMIC GROWTH IN KOREA*
金光錫 朴埈卿 共著 18 切 判/ 238쪽 高級洋裝/5,400원

56 轉換期의 韓國經濟와 金融政策
金重雄 南相祐 共著 18 切 判/ 354쪽 高級洋裝/5,600원

57 北韓의 經濟政策과 運用
延河清 著 18 切 判/ 348쪽 高級洋裝/4,200원

58 地方財政調整制度와 財源配分
李啓植 著 18 切 判/ 280쪽 高級洋裝/5,200원

59 벤처캐피탈의 役割과 課題
姜文秀 著 18 切 判/ 236쪽 高級洋裝/4,400원

60 家計貯蓄과 租稅政策
李啓植 著 18 切 判/ 366쪽 高級洋裝/8,000원